

2011년 7월 호주 멜버른 제18회
국제식물학회 채택

조류, 균류와 식물에 대한 국제명명규약 (멜버른규약)

2012

한국어판

장진성 · 홍석표 [역 · 편집]



2011년 7월 호주 멜버른 제18회
국제식물학회 채택

조류, 균류와 식물에 대한 국제명명규약 (멜버른규약)

2012

한국어판

장진성 · 홍석표 [역 · 편집]

국립수목원

**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
for
algae, fungi, and plants
(Melbourne Code)**

adopted by the Eighteenth International Botanical Congress
Melbourne, Australia, July 2011

prepared and edited by

J. McNEILL, Chairman
F R. BARRIE, W R BUCK, V DEMOULIN, W GREUTER,
D L. HAWKSWORTH, P S. HERENDEEN, S. KNAPP,
K. MARHOLD, J. PRADO, W F. PRUDHOMME VAN REINE,
G. F. SMITH, J. H WIERSEMA, Members
N J. TURLAND, secretary
of the Editonal Committee



Koeltz Scientific Books
2012

Regnum Vegetabile Volume 154

ISSN 0080-0694

ISBN 978-3-87429-425-6

REGNUM VEGETABILE is the book series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Plant Taxonomy and is devoted to systematic and evolutionary biology with emphasis on plants, algae, and fungi. Preference is given to works of a broad scope that are of general importance for taxonomists.

All manuscripts intended for publication in **REGNUM VEGETABILE** are submitted to the Editor-in-chief. Authors interested in publishing in the series are requested to send an outline of their book, including a brief description of the content, to the Editor-in-chief. Proposals for new book projects will be scrutinized by the editorial advisory board.

Editor-in-chief: S. Robbert Gradstein

Muséum National d'Histoire Naturelle, Dept. Systématique et Evolution Cryptogamie
Case Postale 39, 57 rue Cuvier, 75231 Paris cedex 05, France
E-mail: sgradst@gwdg.de, gradstein@mnhn.fr

Production Editor: Franz Stadler

Institute of Botany, Slovak Academy of Sciences, Bratislava, Slovak Republic and
Vienna, Austria
E-mail: production@iapt-taxon.org

Editorial advisory board: W.R. Buck (New York), L.J. Dorr (Washington, D.C.),
J.W. Kadereit (Mainz), M. Kempa (Bratislava), S. Knapp (London), K. Marhold (Bratislava), T.F.
Stuessy (Vienna)

Publisher: Koeltz Scientific Books, P.O. Box 1360, D-61453 Königstein, Germany
(koeltz@t-online.de, <http://www.koeltz.com>) on behalf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Plant Taxonomy, c/o Institute of Botany, Slovak Academy of Sciences, Dúbravská
cesta 9, SK-845 23 Bratislava, Slovakia (office@iapt-taxon.org, <http://www.iapt-taxon.org>)

© 2012,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Plant Taxonomy, c/o Institute of Botany,
Slovak Academy of Sciences, Dúbravská cesta 9, SK-845 23 Bratislava, Slovakia
E-mail: office@iapt-taxon.org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by film, microfilm, or any other means, or be translated into any other language,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

EDITORIAL COMMITTEE FOR THIS CODE

J. McNeill, *Royal Botanic Garden, Edinburgh, 20A Inverleith Row, Edinburgh EH3 5LR, U.K.; and Royal Ontario Museum, Toronto, Canada; j.mcneill@rbge.ac.uk* (Chair)

N. J. Turland, *Missouri Botanical Garden, P.O. Box 299, St. Louis, Missouri 63166-0299, U.S.A.; nicholas.turland@mobot.org* (Secretary)

F. R. Barrie, *Missouri Botanical Garden, P.O. Box 299, St. Louis, Missouri 63166-0299, U.S.A.; address for correspondence: Botany Department, The Field of Natural History, 1400 S. Lake Shore Drive, Chicago, Illinois 60605, U.S.A.; fbarrie@fieldmuseum.org*

W. R. Buck, *The New York Botanical Garden, Bronx, New York 10458-5126, U.S.A.; bbuck@nybg.org*

V. Demoulin, *Département des Sciences de la Vie, Université de Liège, Sart Tilman, Institut de Botanique B 22, 4000 Liège, Belgium; v.demoulin@ulg.ac.be*

W. Greuter, *Herbarium Mediterraneum, c/o Orto Botanico, Via Lincoln 2/4, 90123 Palermo, Italy; and Botanischer Garten & Botanisches Museum Bertin-Dahlem, Free University of Berlin, Königin-Luise-Str. 6-8, 14195 Berlin, Germany; w.greuter@bgbm.org*

D. L. Hawksworth, *Departamento de Biotología Vegetal II, Facultad de Farmacia, 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 Plaza Ramón y Cajal, Madrid 28040, Spain; and Department of Life Sciences, The Natural History Museum, Cromwell Road, London SW7 5BD, U.K.; d.hawksworth@nhm.ac.uk*

P. S. Herendeen, *Chicago Botanic Garden, 1000 Lake Cook Road, Glencoe, Illinois 60022, U.S.A.; pherendeen@chicagobotanic.org*

S. Knapp, *Department of Life Sciences, The Natural History Museum, Cromwell Road, London SW7 5BD, U.K.; s.knapp@nhm.ac.uk*

K. Marhold, *Institute of Botany, Slovak Academy of Sciences, Dúbravská cesta 9, 845 23 Bratislava, Slovak Republic; and Department of Botany, Faculty of Science, Charles University, Benátská 2, 128 01 Praha, Czech Republic; karol.marhold@savba.sk*

J. Prado, *Institute de Botânica, Herbário, C.P. 68041, CEP 04045-972, São Paulo, SP, Brazil; jprado.01@uol.com.br*

W. F. Prud'homme van Reine, *Naturalis Biodiversity Center, P.O. Box 9514, 2300 RA Leiden, The Netherlands; willem.prudhommevanreine@naturalis.nl*

G. F. Smith, *Office of the Chief Director: Biosystematics Research & Biodiversity Collections. South African National Biodiversity Institute, Private Bag X101, Pretoria, 0001 South Africa / H.G.W.J. Schweickerdt Herbarium, Department of Plant Science, University of Pretoria, Pretoria, 0002 South Africa / Centre for Functional Ecology, Departamento de Ciências da Vida, Universidade de Coimbra, 3001-455 Coimbra, Portugal; g.smith@sanbi.org.za*

J. H. Wiersema, *USDA,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National Germplasm Resources Laboratory, Bldg. 003, BARC-West, Beltsville, Maryland 20705, U.S.A.; john.wiersema@ars.usda.gov*

조류, 균류와 식물에 대한 국제명명규약 (멜버른규약)

발행일 : 2016년 10월 31일
발행처 : 국립수목원
발행인 : 이유미
역·편집 : 장진성, 홍석표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415
전화 : 031-540-2000
팩스 : 031-540-1088
홈페이지 : www.kna.go.kr

편집디자인·인쇄 : 디자인포스트
TEL : 031-916-9516
E-mail : post0036@naver.com



ISBN 979-11-87031-42-0

**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 for algae, fungi, and plants
(Melbourne Code)
Korean Edition**

The edition is permitted for translation into Korean from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Plant Taxonomy

Copyright for Korean edition: © 2016, The Korea National Arboretum

ISBN : 979-11-87031-42-0

Translation authors : Chin-Sung Chang and Suk-Pyo Hong

발 간 사

학명은 국가와 언어를 초월하여 생물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수단으로, 생물종의 관리와 연구, 이용에 있어 정확한 학명의 사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식물이나 버섯 등의 균류, 또는 지의류의 이름의 사용에 있어 학명보다는 국명을 위주로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학명은 분류학자를 비롯한 일부 전문적인 집단에서 사용하는 학술 용어 정도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취미활동으로서 식물 등의 사진 촬영과 이를 인터넷상의 동호회 활동 또는 개인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유하는 추세가 급증하면서, 학명 사용에 대한 저변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기준에 사용하고 있는 학명의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잘못 된 학명이 새로운 정보로 계속해서 양산되기도 합니다.

또한 세계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f Biodiversity Conservation)의 지구식물보전전략 (Global Strategy of Plant Conservation)에 따라 세계적으로 지구상의 식물목록을 정리하고, 식물을 작성하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반도의 식물은 세계적으로 식물의 hotspot으로 여겨지는 중국과 비교적 일찍 식물들이 서양에 소개된 일본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저평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제 강점기 동안 일본이나 국내에서 출판된 문헌과 그 이후 국내에서 출판된 문헌에 기재된 식물명에 대한 인지도는 더욱 낮습니다. 더욱이 명명규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반복적인 학명의 단순 인용은 오류의 재생산을 통해 한반도 식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세계적으로 공유하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이에 명명규약에 따르는 정확한 학명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정확한 학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 산림식물자원을 관리하는 우리 국립수목원의 임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립수목원은 학명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명명규약에 대한 한국어판을 출판함으로써 학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번역판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한자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가능한 풀어서 설명하였고 이러한 작업은 본 번역판을 작성해 주신 서울대학교 장진성, 경희대학교 홍석표 교수님의 특별한 노력과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립수목원은 앞으로 출판되는 명명규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한국어판을 번역하여 출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한국어판이 우리나라 식물과 균류, 지의류의 학명을 이해하고, 정확히 사용할 수 있는 지침으로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판을 낼 수 있도록 2015년부터 2년에 걸쳐 명명규약을 번역하고, 원고를 준비해 주신 서울대학교 장진성 교수님과 경희대학교 홍석표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10월
국립수목원장 이유미

목 차

서 문	XI
조항, 노트 및 권고 사항에 대한 번호 재조정에 대한 요약	XXI
규약에서의 주요 날짜	XXIX
전문 (전문 1-14)	1
제1부 원칙 (원칙 1-6)	3
제2부 규약과 권고 (제1조-62조)	4
제1장 분류군과 계급 (제1조-5조)	4
제2장 학명의 계급, 기준표본의 지정 및 선취권 (제6조-15조)	7
제1절 계급의 정의 (제6조)	7
제2절 기준표본의 지정 (제7조-10조)	10
제3절 선취권 (제11조-12조)	24
제4절 선취권 원칙의 제한 (제13조-15조)	30
제3장 계급에 따른 분류군의 명명법 (제16조-28조)	37
제1절 과보다 상위 계급에 있는 분류군의 학명 (제16조-17조)	37
제2절 과와 아과 및 족과 아족의 학명 (제18조-19조)	39
제3절 속과 속 이하 학명 (제20조-22조)	43
제4절 종의 학명 (제23조)	48
제5절 종 계급 이하 분류군 (종 이하 분류군)의 학명 (제24조-27조)	52
제6절 재배 식물의 학명 (제28조)	56
제4장 유효 출판 (제29조-31조)	57
제1절 유효 출판의 조건 (제29조-30조)	57
제2절 유효 출판의 날짜 (제31조)	62
제5장 학명의 합법적 출판 (제32조-45조)	64
제1절 일반적인 규정 (제32조-37조)	64
제2절 새로운 종의 학명 (제38조-40조)	72
제3절 새로운 조합, 새로운 계급의 학명, 대치명 (제41조)	80
제4절 특정 그룹의 학명 (제42조-45조)	85

제6장 인용 (제46조-50조).....	89
제1절 명명자 인용 (제46조-50조).....	89
제2절 인용에 대한 일반적인 권고 (권고50A-G).....	99
제7장 학명의 폐기 (제51조-58조).....	102
제8장 무성세대 균류 또는 다형성 생활주기 균류의 학명 (제59조).....	113
제9장 정자법 및 학명의 성 <Gender> (제60조-62조).....	115
제1절 맞춤법 (정자법) (제60조-61조).....	115
제2절 성 <Gender> (제62조).....	125
제3부 규약 관리를 위한 규정.....	128
부칙 1. 잡종의 학명 (제H1조-12조).....	130
용어 - 규약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	138
학명 색인.....	152
주제 색인.....	172
번역본 후기.....	197

서 문

2011년 7월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된 제18회 국제식물학회에서는 항상 녹색식물 뿐만 아니라 조류나 균류를 포함하였지만, 오랫동안 식물명명법이라 지칭한 규약의 조항에 있어 몇 가지 매우 중요한 변경이 있었다. 이번 명명규약의 신판에는 이러한 결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제목의 변경이다. 1950년에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7회 국제식물학회 이후, 이 규약의 기존판은 *International Code of Botanical Nomenclature*, 즉 통상 ICBN로 축약하면서 "국제식물명명규약"으로 출판되었다. 멜버른의 회의에서는 제목의 "Botanical" (식물학)이라는 말은 이 규약이 녹색식물에만 적용되어 균류와 다양한 조류가 제외된 것을 의미한다는 오해 가능성이 크다는 균류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약의 명칭을 *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 for algae, fungi, and plants* "조류, 균류와 식물에 대한 국제명명규약"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새로운 제목의 이 규약을 언급할 때에는, 약어 ICN을 사용하기로 한다.

조류, 균류 및 녹색식물의 학명을 관리하는 여러 조항은 향후 국제식물학회의 명명부서에서 개정된다. 이처럼, 멜버른규약은 2011년 멜버른에서 열린 제18회 국제식물학회의 결정을 정리한 것이다. 이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17회 국제식물학회 후에 출판된 6년 전 비엔나 규약을 대체하며, 전 규약과 마찬가지로 전체는 영어(영국)로 집필되어 있다. 비엔나 규약은 중국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터키어로 번역되었으며, 이 멜버른규약도 몇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이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멜버른규약은 최근 기존 어느 규약보다도 명명에 관한 조항이 실질적으로 많이 개정되었다. 이는 멜버른 회의에서 승인된 중요한 변경을 위한 것 뿐만 아니라, 편집위원회가 학명의 합법적인 발표 조항을 보다 논리적으로 재편성 할 것과 편집위원회의 책임에서 규약의 전체적인 투명성과 일관성을 위해 철저한 검토를 실시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이 개정에도 불구하고, 멜버른규약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표현과 배치는 비엔나 규약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 비엔나 규약과 멜버른규약의 사이에 번호가 변경된 조항, 노트 및 권고에 대한 주요 핵심을 제공하였다.

더욱 확연한 변경은 부칙 (잡종의 명명법에 관한 부칙1은 제외)은 본문과 함께 출판될 필요가 없고, 전자적으로 공개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멜버른 회의에서 합의한 것이다. 그 결과 이 책은 규약의 본문만 출판한다. 즉 전문, 제1부 원칙, 제2부 조항과 권고, 제3부 규약의 적용 규정, 부칙1 잡종의 학명, 용어해설, 학명 색인 및 사항 색인으로 구성된다. 부칙 2-8의 별책은, 후에 인쇄물과 전자출판으로 간행될 예정이다.

부칙 2-6은 비엔나규약처럼 보전명과 폐기명 및 인용금지작업을 다루겠지만, 부칙 7 및 8은 신규이며, 구속력 있는 결정을 부칙에 포함하는 멜버른 회의에서의 결정을 반영하고 있다. 즉, 본 규약의 제38.4조는 기재 표현이 "기재문 또는 분류군 고유특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 해당 학명이 정식으로 발표된 것으로 다룰지 여부와 제53.5조에서는 학명 간 소명이 충분히 유사해서 혼동이 발생할 경우 해당 학명을 동일명으로 다루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정리 한 것이다.

규약의 제목 변경과 부칙의 분리에 이어서 멜버른 회의에서는 명명법의 조항에 관한 다섯 가지 주요 변화가 있었다. 즉, 인정되는 전자출판의 형식을 결정 한 것, 비화석 생물체의 새로운 분류군의 기재문이나 분류군 고유특징을 위해 라틴어 대신 영어 사용이 선택 가능하게 된 것, 균류의 새 학명의 합법적인 발표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등록을 필요로 한 것, 다형적 생

활사를 가지고 균류의 이명 (다른 이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 것, 화석의 명명법에 대해 형태 분류군의 개념을 포기한 것이다.

명명법부서 (Nomenclature Section)에서는 2005년 빈 회의에 의해서 설립된 전자출판에 관한 특별위원회가 준비한 일련의 제안 (Chapman & al. in Taxon 59:1853-1862. 2010 참조)을 압도적 다수로 승인하였다. 이것은 식물, 균류, 조류의 새로운 학명(및 기준표본 선정)이 유효하게 발표되기 위해서는 인쇄물 게재가 필수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대체 수단으로 국제표준연속간행물 번호 (ISSN) 또는 국제표준도서 번호 (ISBN)를 가진 출판물에서 PDF (Portable Document Format)형식으로 온라인 출판을 허가하였다. 특별위원회는, 이 새로운 규약의 개시일로 2013년 1월 1일 (멜버른규약의 출간 예정 이듬해 연초)을 제안했으나 명명법부서 (Nomenclature Section)는 그 실시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2012년 1월 1일로 앞당기기로 결정하였다. 이 날짜가 본 규약의 출판에 선행하고 이 변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새 규약의 초안을 도입한 의결의 상세한 보고를 2011년 9월에 17개의 저널에 동시에 게재하였다. 또한, 이 영문 보고서는 다른 8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예, Knapp & al. in Taxon 60: 1498-1501. 2011 참조).

ISSN이나 ISBN을 가진 온라인 출판물에서의 PDF에 의한 전자출판에 관한 규정은 이 규약 제29조에 포함하였으며, 전자적인 것과 다른 방식으로 유효 발표가 되지 않는 여러 조건도 제30조에 기재하였다. 전자출판의 경우 잠정적인 출판 및 유효 출판 후의 모든 변경이 포함되어 있다. 제31조에서는 유효 출판날짜를 다루었으며, 전자출판 특유의 문제를 포함하였다. 권고 29A는 전자출판의 최선의 관행 (최적의 실시 방법)이며, 특히 장기 파일 기록 보관법에 관하여 일련의 권고를 제시하고 있다. 제29부터 제31조에는 12개의 새로운 예제가 첨가되었고, 전자출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새 분류군명의 합법적인 발표를 위해서는 라틴어 기재문이나 분류군 고유특징을 첨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요건은 1906년 비엔나규약 (Briquet, Règles Int. Nomencl. Bot. 1906)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이 요건과 경쟁했던 1907년 미국규약 (Arthur & al. Bull. Torrey Bot. Club 34: 167-178. 1907)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 분열은 1930년 영국의 케이브리지, 제5회 국제식물학회에서 해소되었고 그 요건의 발효일은 1935년 1월 1일로 연기되었다. 조류와 화석의 학명은 당시 면제 받았지만, 조류는 이후 1958년 1월 1일부터 이 요건이 필수가 되었고, 화석은 언어의 제한이 1993년 도쿄 회의에서 처음 도입되고, 1996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어 기재문이나 분류군 고유특징은 영어나 라틴어로 기재하였다. 멜버른 회의의 명명법부서 (Nomenclature Section)에서는 화석의 학명 요건을 균류 학명에도 확장하겠다는 제안이 있었지만, 명명법부서 (Nomenclature Section)에서는 본 명명규약의 관할 하에 있는 모든 생물체에 이 규약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고 또한, 전자출판의 조항처럼 더 포괄적인 규정이 2012년 1월 1일에 유효함을 결정하였다. 전체적인 조항은 제39조 (모든 생물체의 학명에 대해서 제39.2조에 다름)에서 규정한 반면, 화석의 학명에 대한 특별 조항은 제43.1조, 조류의 학명에 대한 조항은 제44.1조에 있다.

2004년 이후, 새로운 균류의 학명과 기재문이나 일러스트레이션 등의 관련 데이터를 등록하기 위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MycoBank (<http://www.mycobank.org/>)를 균류 연구자들은 이용하였다. 등록 시에 MycoBank는 고유 번호를 발행하고 해당 번호를 학명이 발표된 출판물에 인용하게 되어 있다. 이 번호는 Index Fungorum (<http://www.indexfungorum.org/>)에서도 사용되며 Life Science Identifier (LSID: 생명과학 식별자)의 기능도 하고 있다. Taxon을 비롯한 많은 저널은 균류의 새 학명에 관한 논문 출판 여부에 이미 번호 표시를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다. 멜버른 회의는 2013년 1월1일 이후 발표되는 새로운 균류 학명의 합법적인 발표에

는 "학명이 등록되어 있는 승인된 리파지토리(정보보관 장소)에서 발행된 식별자의 초기 발표문의 인용" 의무를 결정하였다(제42조 참조). 이 규약은 균류의 새 분류군의 학명, 새로운 조합, 새로운 계급명, 대치명 <replacement name>에 모두 적용된다.

1910년 브뤼셀 회의 이후, 다형성 생활 주기를 가진 균류의 무성세대(아나몰프, *anamorph*), 유성세대(텔리몰프, *teleomorph*) 및 완전 세대형의 균류에 적용하는 각기 다른 학명에 관한 규정이 있었다. 브뤼셀 규약(Briquet, Règles Int. Nomencl. Bot., ed. 2. 1912)에서는 유성 생식("완전한 상태") 이외의 상태에 주어진 학명은 "단순히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 여겼고, 이런 이름이 필요하지 않은 때가 올 것이라 예상하였다. 멜버른 회의에서는 이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하였지만, 브뤼셀 회의에서 구상된 것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 다형성 생활 주기를 가진 균류의 학명에 관한 규약은 1912년 이후 여러 변화가 있어 왔지만, 한 가지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즉, 모든 생식을 포함하는 분류군(홀로몰프, *holomorph*)의 정명은 유성세대(텔리몰프, *teleomorph*)에 최초로 적용된 학명이라는 점이다. 멜버른 회의에서는 이 제한이 뒤집히고 모든 적법한 균류의 학명은 어떤 기준표본의 생활사에 관계없이 선취권을 확립할 목적으로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함을 결정하였다. 결과적으로 멜버른 회의에서도 명명법 상의 혼동을 완화하기 위해서 균류의 학명 보전과 폐기에 관한 특별한 조항 추가가 승인되었다.

최근 여러 규약에서 제59조는 다형성 균류의 학명을 다뤘지만, 본 규약에서는 1개의 단락으로 축소하였다. 2013년 1월1일 이전에 1개의 세대(몰프, *morph*)에 적용한 학명 중에 프로토로그(<protologue>)에 다른 세대에 적용할 수 있는 학명을 포함하더라도 서명이 될 수 없음을 규정하였다. 또한, 선취권과 관련해서 동등하게 경합하는 균류의 모든 학명에 대해, 명명법상의 유효성을 명확히 하는 노트도 첨가하였다. 명명법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멜버른 회의에서 채택된 주요 규정은 제14.13조에 정리되었는데 해당 위원회의 심사 후, 학명의 리스트는 일괄적으로 보전되어 규약의 부칙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제56.3조는 폐기하는 유사한 학명 리스트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새로운 제57.2조는 무성세대(아나몰프, *anamorph*)로 기준표본을 지정된 선취권을 가진 학명과 유성세대(텔리몰프, *teleomorph*)에 근거한 학명이 1개의 분류군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정식 보전 또는 폐기의 제안이 제출되어 기각 하지 않는 한, 선취권이 있는 무성세대(아나몰프, *anamorph*) 학명은 유성세대(텔리몰프, *teleomorph*)의 학명을 대체할 수 없다.

스톡홀름규약(Lanjouw & al. in Regnum Veg. 3. 1952) 이후 부분적인 출현이 확인되는 화석이 많아 화석의 학명을 위한 특별한 규약이 정해졌다. 세부적인 것은 긴 시간 동안 변경되어 왔지만, 최신의 명명규약에서도 "형태 분류군(*morphotaxa*)"의 개념이 채택되어 왔다. 형태 분류군은 명명법상의 목적으로 단 1개의 부분, 생활사 단계, 또는 보전 상태를 명명상의 기준표본으로 한다. 명명법부서(Nomenclature Section)는 일련의 제안(보다 자세한 내용은 Cleal & Thomas in Taxon 59: 261-268; 312-313. 2010 참조)을 채택하면서 형태 분류군의 개념을 폐기하였는데 이로 인해 화석, 명명법의 규약이 적용되는 실제 대상으로 존재하는 화석과 화석의 근원이 된 추정상의 복원물로만 존재하는 생물체와의 구별이 명확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학명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전자만 가능하여 형태 분류군의 개념은 필요하지 않다고 합의하였다. 2개 이상의 화석이 같은 생물에 속하면 통상의 방법으로 이름의 선취권을 경합시켜도 학명을 불안정하게 하지는 않는다. 제1.2조에서 화석 분류군(형태 분류군이 아닌)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제11.1조에서 1개의 단일 생물 분류군, 또는 1개의 단일 개체였을지 모르는 다른 부분, 다른 생활사의 각 단계, 또는 다른 보전 상태를 나타내는 화석 분류군에 다른 학명의 사용이 허가됨을 규정하고 있다.

멜버른 회의에서는 다른 중요한 여러 조항 변경이 채택되었지만, 이 내용은 위에 언급된 5가지 변경 내용보다 훨씬 더 기술적 내용이었다. 이는 ICN에 의해 제공되는 생물체의 학명 사용자에게는 보다 광범위하게 관계되는 내용이다. 보다 전문적인 변경의 몇몇에 대해서 아래에 설명하였다.

학명의 공식 출판을 위한 요건을 다루는 본 규약 중에 절 (section) 개편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최근 모든 규약에서 관련된 가장 어려운 문제점은 새 분류군 학명의 합법적인 출판의 조항과 기존 분류군의 재명명, 즉, 새로운 조합, 새로운 계급명, 대치명 (replacement name)의 합법적인 출판에 대한 조항들이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또한, 오류의 계급 설정과 같은 문제의 배치는 다소 비논리적이며, 또, 일러스트레이션에 의한 분석 도표 등과 같은 다른 규정의 배치도 어느 정도 중복되었다. 본 규약에서는 이 부분을 별도의 장 (제5장: 학명의 합법적인 출판)으로 새로 구성하여 보다 논리적으로 구성하였다. 자주 인용하는 조항 [예, 기재문이나 분류군 고유특징의 합법화에 요구되는 조항이 제32.1조(d)가 아니라 제38.1조(a)]이 다른 번호로 변경되어 적용하기에 다소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제5장이 훨씬 이해하기 용이하고, 적용하기 쉽게 정리되었다고 확신한다.

제5장은 4개의 절로 구성된다. 제1절 일반적 규정 (제32-37조)은 유효 발표를 위한 요건, 학명의 형식, 날짜의 결정, 출판 저자의 승인과 계급의 명시를 위한 요건, 인용금지 작업에 발표되어 합법적인 발표가 되지 않는 학명에 관한 규정 등 모든 학명에 적용되는 규약이 포함된다. 제2절 새 분류군의 학명 (제38-40조)은 기재문이나 분류군 고유특징을 위한 필요한 점, 기재문이나 분류군 고유특징의 언어 및 기준표본 지정을 위한 요구 등에 대한 특별한 요구가 포함된다. 제3절 새로운 조합, 새로운 계급명, 대치명 (replacement name) (제41조)은 그 학명과 기본명 또는 대치이명 (replaced synonym)의 허용되는 계급 및 학명의 기본명 또는 대치이명 (replaced synonym)의 출전 인용에 대한 요건, 연도별 요건 변화 등에 관련된 모든 규정을 포함한다. 제4절 특정군의 학명 (제42-45조)은 균류 (제42조), 화석 (제43조), 조류 (제44조) 및 이 규약에서 다루지 않는 생물체에 원래 귀속된 분류군 (제45조)의 학명에만 적용되는 모든 규정을 포함한다.

멜버른 회의에서는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꽤 많은 변화가 제안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이전 회의 대부분과 비슷하게, 발표된 제안 중 승인된 것은 1/4 이하 (24%)에 그쳐서, 오히려 보수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약에 대한 많은 유용한 투명성과 개선으로 이어지는 몇 가지 중요한 변경이 채택되었다. 여기서는 주요 주목할 변경된 점만 기술하고, 명명법 부서 (Nomenclature Section)에서 결정한 전체 내용은 별도로 보고서를 출간하였다 (McNeill & al. in Taxon 60: 1507-1520. 2011).

멜버른 회의에서는 규약 자체에 어떤 변경도 없었지만 "새 분류군의 학명", "새로운 조합" 및 "대치명 (replacement name)"이라고 하는 명확한 용어 정의에 대한 제안을 받았다 (제6.9조-6.11조). 이는 규약 전체에서 이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였고, "기본명을 가진 속명"과 같은 어설표 표현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새 분류군 학명의 합법적 발표를 위한 규약과 상기 언급된 새로운 조합, 새로운 계급명 및 대치명 (replacement name)을 위한 합법적 발표를 위한 규약과의 구별도 더욱 명확하게 정리하였다. 부수적으로 제7조의 새로운 조합의 기준표본 지정, 혹은 새로운 계급명(본 규약 제7.3조)에 대한 두 단락을 대치명 (replacement name)을 다루는 단락(본 규약 제7.4조) 앞에 배치함으로써 더 논리적인 구성이 되었다.

대치명 (replacement name)을 출판할 때에는 용어 nomen novum (새 이름) (또는 축약형 nom. nov.)의 사용은 여전히 권장하고 있지만 (권고 32A.1), 멜버른 명명법 부서 (Nomen-

clature Section)에서는 용어 "replacement name <대치명>"을 "nomen novum <새 이름>" 및 "avowed substitute <공인대치명>" 보다 선호하는 용어로 수정하였다.

인가명 (sanctioned names) 및 1753년 이후로 출발점을 가진 분류군의 학명에 대한 기준표본 지정 규약은 다른 학명의 기준표본 지정 규약과 다를 수밖에 없긴 하지만, 지난 수 년간의 규약의 변화에 있어 "원재료 (original material)" 정의의 도입 같은 경우처럼 늘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멜버른 회의에서는 이런 두 경우의 학명 기준표본 지정에 대해 분명하게 정리를 하였다. 제7.8조는 본 규약에서는 출발점이 1753년 이후의 분류군 학명의 기준표본 지정만을 다뤘다. 인가명 (sanctioned names)의 기준표본 지정에 대해서는 멜버른 명명법부서 (Nomenclature Section)의 특별위원회 회의의 결과로 결정되어, 종 및 종내 분류군의 학명에 관해서는 속과 속의 하위 구분의 학명에 관한 규약과는 조금 다른 규약을 의무화하였고, 제9.10조와 제10.2조(b)(제10.5조도 함께)에 각각 제시하였다. 학명의 본래 기준을 제외한 인가명의 경우는 제48.3조에 규정하였다.

용어 "아이조렉토타입 (isolectotype)", "아이조네오타입 (isoneotype)" 및 "아이조에피타입 (isoepitype)"은 규약 하에서 특정 의미를 가진 어떤 요소에도 적용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명명규약에 사용된 적이 없었다. 이 용어들의 의미는 명확하여 규약 (부칙을 포함)에 채용할 필요가 있다. 더욱, 이런 용어가 규약에 없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멜버른 회의에서는 이 제안이 채택되어, 이 용어들은 본 규약의 권고9C에 포함시켰다.

발표 때에 서명이었던 학명은 보전되지 않는 한 서명인 채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규약은 오랫동안 고수되어왔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는 상당수 과명은 발표 시에 서명이던 속명에서 형성되었고, 그 이후에 속명이 보전되었다. 규약은 비록 소급 적용을 하지만, 이 규약의 효과는 그렇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이전 규약에서는 후에 속명이 보전되더라도, 해당 속명에서 형성된 과명은 적명이 되지 못하였다. 이런 경우에는 과명 자체가 보전이 되어야 비로소 그 과명이 적법화가 되었다. 멜버른 회의에서는 수정안이 채택되어 제18.3조와 제19.6조에 속명을 보전 하는 것으로 그 속명에서 형성된 과명과 과와 속사이의 분류계급의 학명은 모두 적법화 된다는 규약을 확립하였다.

보전에 관한 규약 중 3가지가 적지만 중요한 변경이 되었다. 종, 속 및 과의 계급에 해당되는 학명만 보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 속 이하 구분의 학명에 근간을 둔 속명 또는 종 이하 분류군의 학명에 근거한 종명의 보전된 기준표본의 보전명 문제가 인식되었다. 속의 하위 구분이나 종 내 분류군의 학명은 보전할 수 없기 때문에, 보전의 목적을 무효화할 가능성으로 보전기준표본이 아닌 규약의 다른 규정에 의해 지정된 기준표본을 필연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전 규약의 부칙에 수록된 부분에서는 무시됨). 예를 들어, 세인트루이스 회의에서 *Stipa robusta* Scribn.이 다른 보전 기준표본과 함께 보전됨에도 불구하고, *Stipa viridula* var. *robusta* Vasey는 원기준표본 (*S. lobata* Swallen에 해당)을 기준표본으로 유지하였다. 결과적으로 현재 사용되는 조합의 *Achnatherum robustum* (Vasey) Barkworth에서는 의도된 보전 기준표본이 아닌, 변종명의 기준표본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 문제는 제14.1조에 다음의 문장이 추가가 되면서 멜버른 회의에서 해결되었다. "속명 또는 종명의 기본명이 보전 없이 현재 상황에서 계속 사용될 수 없을 때, 속의 하위 구분 또는 종 이하 분류군의 학명은 부칙 3과 4에 각각 보전된 기준표본과 동시에 목록화하여 보전할 수 있다". 회의에서는 이 규정을 기존의 보전명 모두에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예로서, *S. viridula* var. *robusta*는 현재 *S. robusta*의 보전된 기준표본으로 보전된다.

해당 학명이 보전된 기준표본으로 명시적으로 이름이 보전되었는지에 관계없이, 보전명의 기준표본은 (제14.8조의 적용) 실제적으로 보전된 바와 같이, 보전명의 철자 또한 바뀌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관해서 제14.8조에 명시하였다.

학명은 그 적용뿐 아니라 그 철자와 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전되는 경우가 있지만, 발표 문헌과 낱자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제14조 노트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규약에서는 "학명 그 자체에 대한 학명의 보전, 즉 동명에 대한 학명의 보전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규정은 일반적으로는 유지되어 왔지만, 현재 특별한 예외는 부칙 2B에 포함된 선태식물과 종자식물의 과명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제14.15조는 학명이 합법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어도 후에 발표된 동명인 경우에 해당 학명이 인용된 발표 문헌은 모든 상황에서 인정되며, 결과적으로 변경이 되지 않도록 (새 보전 제안은 제외) 규정한다.

과명의 기준을 포함한 과와 속사이의 분류계급의 학명은 과명처럼 같은 속명에 근거해야 하지만 (제19.4조), 특히 오랫동안 정착되어 온 복수의 과가 통합 될 때 과와 속사이의 분류계급의 선취권이 있는 학명이 가장 친숙한 학명이 아닌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은 멜버른 회의에서 수용되어 제19.5조에 제시하였다. 이 규정의 의하면 부칙2B의 목록에 열거된 보전과명처럼 동일 속명에 근거한 과의 하위계급 학명도 (제19.4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다른 방식으로 형성된 학명에 대해 선취권을 갖는다.

학명을 1인 또는 복수의 명명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에 관한 규약은 귀속성 개념 (제46.3조)에 강하게 근거하고 있다 ("새로운 학명 또는 분류군의 기재문 또는 분류군 고유특징을 1명 또는 복수의 인명과 직접적으로 관련시키는 작업"). 그러나 통상 기재문 또는 분류군 고유특징의 원저자가 명백하더라도 (예, 출판물의 저자) 각 기재문 또는 분류군 고유특징에 저자명이 직접적으로 제시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따라서 멜버른 회의에서는 제46.2조에 "또는 명백하게 관련된"이라는 문구를 추가 수정하기로 동의하였다.

제48조는 "원래의" 기준표본을 명확하게 제외한 기존의 학명을 사용하면, 후동일명이 된다는 것을 오랫동안 확고히 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적어도 종 및 종 내 분류군의 계급에 있어서 초기 학명에 원기준표본이 존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이 조항의 적용은 제한적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원래의" 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잉여명에 관한 제52조에서 기준의 포함 규정에서 채택된 유사한 방법으로 기준표본의 삭제를 규정함으로 규약을 보다 실용적으로 수정하였다 (본 규약의 제48.2조 참조).

다음 내용은 멜버른규약에서 문제점을 보다 분명히 한 변경이다. 계통적으로는 균류에 근접하지만, 미포자충류류 (*Microsporidia*)는 국제동물명명규약 (ICZN)의 규정 하에 두기로 명시하였다. 과명과 마찬가지로, 과보다 상위 계급의 학명은 귀속하는 속의 학명에서 (과명이 아닌) 파생해서 명명한다. 과계급 보다 상위의 자동적으로 기준표본 지정이 되는 학명의 어미에 대해서는 본 규약에서는 모든 것이 조항 (제16.3조 및 제17.1조)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전에는 대부분이 권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다뤘다. 제56조에 포함된 규정에 의해 명확해진 것은 제56조 하에 일단 학명의 폐기가 전체위원회 (General Committee)에서 승인되면, 제14.16조에서 보전명이 규정되는 것처럼 학명의 폐기가 인정된다. 이전 규약에서는 제14조에 부수적으로 기술되어 있을 뿐이었다. 채집품 전체 또는 그 일부분의 인용은 포함된 표본의 인용으로 간주하는 것도 명확하게 정리하였다 (제9.5조).

용어 해설은 비엔나 규약의 새로운 정리로서 기본적인 구성은 유지하였지만, 본 규약에서는 수정, 갱신을 하였다. 용어 해설에 새로 첨가된 용어는 "명명자 인용 (author citation)",

"구속력 있는 결정 (binding decision)", "요소 (element)", "아이조에피타입 (isoeoptype)", "아이조렉토타입 (isolectotype)", "아이조네오타입 (isoneotype)", "새로운 분류군명 (name of a new taxon)", "생물 (organism)", "인용금지 작업 (suppressed work)" 및 "기준표본 지정 (type designation)"이다. 대폭 수정한 기존 용어는, 예로 "기본명 (basionym)"과 "혼동을 유발하는 유사한 이름 (confusingly similar names)"이 있다; 추가로, "새로운 계급명 (name at new rank, status novus)"이나 "대치명 (replacement name, 공인대치명, avowed substitute)" 등 규약에서 우선적으로 이용되는 용어를 반영, 변경하였다. 5개의 용어 ["건조 표준집 (exsiccata)", "형 분류군 (form taxon)", "홀로모र्फ (holomorpha)", "형태 분류군 (morphotaxon)" 및 "식물 (plant)"]는 더 이상 (또는 어떤 특별한 형태로도)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하여 삭제하였다. 이런 용어 해설은 본 규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명확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역할을 반영하고 있으며, 규약 중에서 사용되는 단어와 관련된 정확한 용어를 설명하게끔 노력하였다. 용어 해설은 본 규약에 사용하는 생물체의 명명법에 도움이 되는 모든 용어를 망라하고 있지 않으며, 이런 내용을 원하는 이용자는 Hawksworth, Terms used in Bionomenclature (2010; <http://bionomenclature-glossary.gbif.org/> 참조)의 용어를 참고하기 바란다.

최근 규약에서는 본문은 3가지 다른 크기의 활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권고와 노트는 조항보다 작은 활자로, 또, 예제와 각주는 권고와 노트보다 작은 활자로 구성하였다. 이 판에서도 이런 활자 크기를 유지하면서, 필수적인 규약 (조항), 보완적인 정보 또는 조언 (노트와 권고) 및 설명에 도움이 되는 소재 (예제와 각주)의 구별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멜버른규약에서는 각 조항단락 번호(및 전문과 원칙의 각 단락 번호)를 흰색에 검은 배경으로 하였으며, 권고의 단락 번호는 이런 표시를 하지 않아 양자의 구별을 보다 분명히 하였다. 노트는 당장 알기 어렵지만, 규약의 다른 부분에서 명확히 또는 암묵적으로 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 조항번호와 같은 방법으로 강조 표시한 문자 "i" ["information(정보)"의 의미]로 표시하였다. 노트는 구속력이 있지만, 조항과는 다르게 새로운 규정이나 개념을 포함하지 않는다. 예제는 더 작은 글꼴로 하면서 안쪽으로 들여쓰기를 하여 구별하였다.

대부분의 예제는 기존 편집위원회에 의해서 준비한 것과 추가 몇 개는 명명법부서 (Nomenclature Section)의 제안에 근거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편집위원회가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런 유형이 아닌 사례도 일부 존재한다. 일부 앞부분에 별표 (*)를 붙이고, "투표의 예"라 불리는데, 이는 국제식물학회 명명법부서 (Nomenclature Section)에 의해 정식으로 승인된 예제이며, 규약에 완전히 또는 명확하게 부합하지 못하는 사례도 포함한다. 따라서 의결된 예제는 규약에 필적하고, 설명에 유용하게 쓰려는 목적만으로 편집위원회에 의해 제공된 다른 예제와 비교가 된다. 멜버른규약에서는 각주 (제7조 예제 13까지)에 별표의 중요성을 설명했고, 또, 용어 해설에도 "의결된 예제"를 수록하여, 의결된 예제의 역할을 보다 명백하게 정리하였다.

최근 모든 판과 마찬가지로 본 규약의 관할 하에 있는 학명은 계급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이탤릭으로 인쇄되어 있다. 본 규약은 이런 인쇄 형식이 단지 편집 스타일과 관습으로서 명명법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구속력 있는 표준을 제시하고자 함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통일성에 관심을 가지는 편집자나 저자는, 대체로 이 명명규약의 예를 수용해서 다수의 식물학과 균류학 잡지에서 채용하고 있고 이 형식을 따르고자 한다. 식물의 학명을 더 분명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초기의 명명규약에서 전통적이지만 일관성이 없었던 전문용어와 라틴어인 다른 단어를 이탤릭체로 표기하지 않았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전에 편집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이번 위원회에서도 출전문헌의 인용방식과 형식적인 표현 통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다. 출전문헌을 인용한 서적의 제목은 Taxonomic litera-

ture, ed. 2, by Stafleu & Cowan (Regnum Veg. 94, 98, 105, 110, 112, 115, 116. 1976-1988; with Supplements 1-6 by Stafleu & Mennega in Regnum Veg. 125, 130, 132, 134, 135, 137. 1992-2000, 그리고 7-8 by Dorr & Nicolson in Regnum Veg. 149, 150. 2008-2009)에 일치 시키고, 또는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축약하였지만, 첫 글자는 대문자를 사용하였다. 저널의 제목에 대해서는 그 축약형을 Bridson & al. (2004), BPH-2를 따랐다. 이 규약을 편집할 때, 언어와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기 위해서 보다 철저한 교정을 실시하였다. 예, "specific rank"와 "specific epithet"는 일관되게 사용되는 반면, "species name" 과 "specific name"은 다양하게 사용하였으나 전자에 통일시켰다. 이 일의 대부분은, 우리 중의 한 명이 (NJT)이 맡았지만, 편집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Werner Greuter)의 도움을 받아 이 규약의 표현을 매우 상세하게 재검토할 기회가 있었고, 특히 많은 모순적인 것과 애매한 곳을 제안 받아 수정을 할 수 있었다.

권고 46A 노트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규약 속에서 나타나는 학명의 명명자 인용은 Brummitt & Powell (1992)의 Authors of plant names의 명명자와 일치시켜 표준화하였다. 명명자 인용형식은 International Plant Names Index에도 채택되어 갱신하고 있어, <http://www.ipni.org/ipni/authorsearchpage.do>에 접속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규약에서는 1753년 이전의 저자에 대한 인용은 "ex" 앞에 표시함을 허용하지만 (제46조 예제35 참조), 명명자가 1753년 이전의 저자인 경우 학명에 귀속시키는 관습이 없음을 주의해야 한다.

멜버른규약은 1954년 파리 회의 이후 거의 변경 없이 기능해 온 제3부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준비하였다. 2008년 2월부터 2010년 12월 사이에 Taxon에 모두 338건의 규약 수정 제안이 발표되었다. 그 개요는 보고 담당위원 (Rapporteurs)에 의한 의견과 함께 2011년 2월 Taxon (60: 243-286)에 게재되었다. 또한, 규약의 제3부 규정에 의해 국제식물분류학회 (IAPT)의 회원 (또한 몇몇 다른 사람들)들에게 예비적이며 구속력이 없는 우편투표의 기초 자료로 제공되었다. 우편투표 결과는 비엔나에 있는 국제식물분류학회 본부에서 당시 IAPT의 서기관리관이었던 Alessandra Ricciuti Lamonea와 조수가 함께 정리하였다. 회의 초반부터 명명법부서 (Nomenclature Section) 위원들에게는 그 결과가 제공되었다. 이 내용은 멜버른 회의에서 이루어진 결정과 함께, 2011년 10월에 Taxon (60: 1507-1520)에 표로 요약하여 발표하였다.

명명법부서 (Nomenclature Section)는 7월 18일 월요일부터 7월 22일 금요일까지 호주의 멜버른에 있는 멜버른대학 (파크빌 캠퍼스), 경제 및 무역관, 코프랜드 극장 (강의실)에서 개최되었다. 204명의 등록 회원이 참가하였고, 개인 표에 396개의 연구기관표가 첨가되어 모두 투표 가능 수는 합계 600표가 되었다. 이는 2005년 비엔나 회의의 경우처럼, 이전의 많은 회의와 비교할 때 상당한 출석자 수였지만, 기록적인 출석자 수 (297명의 등록회원과 연구기관 표 494표로 총투표 가능 수 791표)였던 1999년 세인트루이스 회의보다는 훨씬 적었다. 규약의 제3부 규정대로 사전에 임명된 명명법부서 (Nomenclature Section) 임원은 S. Knapp (회장), B. J. Lepschi (기록 위원), J. McNeill (보고담당 위원장) 및 N. J. Turland (보고담당 부위원장)이었다. A. M. Monro는 기록 위원을 보조하였다. 각 명명법부서 (Nomenclature Section)는 규약이 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자체의 절차적 규약을 정하는 권리가 주어졌다. 이전의 경우처럼, 규약을 변경하기 위한 제안의 승인을 위해서는 적어도 60%의 찬성이 요구되었다. 우편 투표에서 75%이상의 반대표를 받은 제안은 현장에서 다시 제안되지 않는 한, 기각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명명법부서 (Nomenclature Section)에서는 멜버른규약의 편집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관례대로, 부서의 출석자만으로 위원회의 위원이 임명되어, 규약에 규정된 것과 같이 보고담당위원장 (Rapporteur-general)이 위원장이 되며, 필연적으로 보고담당부위원장 (Vice-Rapporteur)이 총무가 된다. 멜버른 회의의 명명법부서 (Nomenclature Section)의 선임위원회 (Nominating Committee)는 보다 국제적 대표자를 모으기 위해서 편집위원회의 인원을 통상적인 12명에서

14명으로 늘리기로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2011년 12월 5일 영국 런던의 자연사박물관에서 개최되어 1주일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 규약의 본문 내용의 초안에는 위원장이 정리한 명명법부서 (Nomenclature Section)에서 결정된 변경 부분 뿐만 아니라, Werner Greuter가 준비한 제 32-45조 개편 초고도 포함시켰다. 새 규약의 초안은 회의 직전에 전자메일로 배포되었다. 편집위원회의 회의의사록 초록은 Pacific Transcription, Queensland에 의해 녹취가 되었고, Anna Monro가 편집하였다.

편집위원회의 직무는 특히, 위원회에 회부된 문제를 다루는 것, 명명법부서 (Nomenclature Section)에 의해 동의된 변경을 도입하는 것, 애매한 어법을 명확하게 하는 것,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예제를 추가하는 것 등이다.墨尔本 회의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편집위원회 직무의 조건은 합법적인 발표에 관한 절을 재편하는 특별한 직무와 더불어, 그 의미가 영향을 받지 않는 한, 표현, 예제, 또는 조항 및 권고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 등, 통상의 권한이 주어졌다. 가능한 (조항의) 현재의 번호를 유지할 것도 조건에 포함되었다.

전체 편집위원회는 부칙1 (잡종)을 포함한 규약 본문에 전념하였다. 이들 부분의 새로운 전자 초안은 편집위원회 회의 직후에 마무리되고 내용의 점검과 보충 검토를 위해서 1월 20일에 전 위원에게 제공되었다. 그 결과, 수정된 초안이 정리되어 4월 6일 전위원회 회람되었다. 2012년 1월 1일부터 전자출판에 관한 규정의 실행은 유효 (또한 무효)한 전자출판에 관한 명확한 예제를 첨가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다행히 편집위원회 위원장과 비서를 포함한 5명의 위원이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국제생물과학연합 (International Union of Biological Sciences)이 후원한 베를린식물원에서 열린 국제생물명명법위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 on Nomenclature) 회의에 참석한 것이 규약의 전자출판에 관한 절을 완성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후 6월 6일에 거의 최종에 가까운 초고가 완성되었고, 7월 2일에는 최종 초안이 마지막 교정을 위해 위원회 전 위원에게 회람되었다. 이후 몇 가지 모순과 오류가 발견되었으며 지속적인 서식 결정을 갖추는 사이에 수정되었다.

Franz Stadler이 학명 색인을 개정하였고, 보고조사위원이 사안별 색인을 개정하였다.

이 기회에, 새로운 명명규약의 출판에 공헌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다. 즉, 편집위원회의 멤버들에게는 그들의 인내와 호의 및 협력에 대해, Anna Monro에게는 명명법부서 (Nomenclature Section)의 의사록의 미가공의 녹음을 신속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에 대해, 관련된 새로운 예제를 포함한 조언과 제안을 기꺼이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국제식물분류학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Plant Taxonomy)와 역대의 사무국장, Tod Stuessy 및 Karol Marhold에게는 국제식물분류학회가 전통적으로 가진 명명법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런던에서 개최된 편집위원회 회의의 여비와 약간의 보조 경비를 위한 자금 제공으로 유지해 준 것에 대해, 그리고 런던 자연사 박물관에는 회의실과 전자 접속의 제공으로 그 회의의 개최를 용이하게 해 준 것에 대해 모두 감사드린다.

명명규약이 현재 잘 실행되는 것은 모두 새로운墨尔本규약의 출판이 가능하게 도와주신 분들 뿐만 아니라, 국제식물학회 회기(会期)외에도 지속적으로 기능하고 주로 학명의 보전 또는 폐기에 관한 제안을 심의하는 **명명상임위원회 (Permanent Nomenclature Committees)의 다수의 위원과 국제식물학회의 명명법부서 (Nomenclature Section)에서 설치된 특별위원회 (Special Committees)를 통해 특정 명명법상의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책을 찾은 위원들 덕분이다.

 **[역자 주] 명명상임위원회 (Permanent Nomenclature Committees)는 General Committee (전체위원회), Committee for Vascular Plants (관속식물명명위원회), Committee for Bryophytes (선대류명명위원회), Committee for Algae (조류명명위원회), Committee for Fungi (균류명명위원회), Committee for Fossils (화석명명위원회), Editorial Committee (편집위원회)로 구성된다.

조류, 균류와 식물에 대한 국제명명규약은 이 규약이 적용되는 학명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수많은 편의를 주기 위해서 많은 분류학자가 실질적이면서 광범위하게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규약의 편의를 받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우리는 이 모든 작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조류, 균류와 식물에 대한 국제명명규약은 국제식물학회의 최종적인 권한 하에서 출판된다. 규약의 수정에 관한 규정은 제3부 (128 쪽)에 기술하였다. 다음 국제식물학회는 2017년 7월 23일부터 29일 중국 셴젠 (심천 深圳)에서 개최하며, 명명법부서 (Nomenclature Section)는 그 전 주(7월 18일-22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 명명규약 수정 제안을 위한 안내 및 절차와 형식에 대한 지시는 2014년 초, *Taxon* 학술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다른 국제적인 명명규약과 마찬가지로 ICN은 법률상의 지위를 가지지 않고 저자와 편집자 및 명명규약이 적용되는 학명의 이용자에 의한 조항의 자발적 수락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는 이 멜버른규약이 이런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것으로 믿고 있다.

에딘버러와 세인트루이스, 2012년 9월 30일

John McNeill, Nicholas J. Turland

조항, 노트 및 권고 사항에 대한 번호 재조정에 대한 요약

멜버른 명명위원회에서는 편집위원에 보다 논리적 방식으로 학명의 합법적 출판(제32-45조)에 대한 조항을 재편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 결과, 제5장의 조항, 노트 및 권고를 상당부분 재조정을 하였다. 다음 요약은 이러한 모든 변경 내용과 규약의 다른 부분에서의 변경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예제는 관련된 학명을 통해 색인에서 쉽게 추적이 되어 생략하였다.

1. 비엔나규약에서 멜버른규약으로

제41.3조(c)	제38.12조
제41조 노트1	제38조 노트1
제41조 노트2	제38.7조
제42.1-42.3조	제38.5-38.7조
제42.4조	제38.9조
제43.1조	제35.1조
제43조 노트1	제35조 노트1
제44.1조	제38.8조
제44.2조	제38.10조
제45.1-45.2조	제33.1-33.2조
제45.3조	제53조 노트1
제45.4조 문장 1	제45조 노트2
제45.4조 문장 2-3	제45.1조
권고 45A.1	권고 32A.1
권고 45B.1	권고 31B.1
권고 45C.1	권고 31C.1
제46.4-46.7조	제46.5-46.8조
제46조 노트2	제46.4조
제46조 노트3-4	제46.9-46.10조
제59.1조	대치
제59.2-59.7조	삭제
59조 노트1	대치

권고 59A.1-3	삭제
제60.11-60.12조	제60.12-60.13조
권고 60G.1(a)(3)	권고 60G.1(b)에 포함
권고 60G.1(b)	권고 60G.1(c), 권고 60G.1 예제4-5추가, 권고 60G 노트1
권고 60G 노트1	권고 60G.1(b)에 포함
제H.10.2조	제H.10조 노트 1
제H.10.3조	제H.10.2조
제H.10조 노트1	제H.10조 노트2
제25.1조 문장 2	삭제
제29.1조 문장 2	제30.1조
권고 29A.1	삭제
제30.1-30.5조	제30.4-30.8조
제30조 노트 1-2	제30조 노트3-4
권고 30A.1-3	권고 30A.2-4
제31.2조	제31.3조
제31조 노트1	삭제
제32.1조(a-c)	제32.1조
제32.1조(d-e)	제38.1조
제32.2-32.4조	제38.2-38.4조
제32.5-32.6조	제38.13-38.14조
제32.7-32.8조	제32.2-32.3조
제32.9-32.10조	제34.1-34.2조
제32조 노트1	제32조 노트3
권고 32A.1	권고 38A.1
권고 32B.1	권고 38B.1
권고 32C.1	권고 38C.1
권고 32D.1-3	권고 38D.1-3

권고 32E.1	권고 38E.1
권고 32F.1	권고 34A.1
제33.1조	제35.2조
제33.2-33.7조	제41.3-41.8조
제33.8조	삭제
제33.9-33.12조	제37.6-37.9조
제33조 노트1	제41조 노트1
제33조 노트2	제41조 노트3
제33조 노트3	제37조 노트1
권고 33A.1	권고 41A.1
제34.1-34.2조	제36.1-36.2조
제34조 노트1	제59조 노트3
권고34A.1	권고 50G.1
제35.1-35.5조	제37.1-37.5조
제36.1조	제39.1조
제36.2조	제44.1조
제36.3조	제43.1조
권고 36A.1	권고 39A.1
제37.1-37.7조	제40.1-40.7조
제37조 노트1-4	제40조 노트1-4
권고 37A.1	권고 40A.1
제38.1조 (수정)	제43.2조
제38.2조	제43.3조
제39.1조	제44.2조
권고 39A.1	권고 44A.1
제40.1조	제32.4조
제40조 노트1	제32조 노트2
제41.1-41.3조(a-b)	제38.11조

2. 멜버른규약에서 비엔나규약으로

전문 제2	신규
전문 제3-8	전문 제2-7
전문 제9-10	신규
제6.9-6.11조	신규
제6조 노트3-4	신규
제7.3조	제7.4조
제7.4조	제7.3조
제7.7-7.8조	제7.7조
제7.9-7.10조	제7.10-7.11조
제7조 노트1	제7.9조
권고 8B.3	신규
제9.3조	제9조 노트2
제9.4-9.9조	제9.3-9.8조
제9.10조	제7.8조
제9.11-9.23조	제9.9-9.21조
제9조 노트2-4	신규
제9조 노트5-7	제9조 노트3-5
권고 9A.4	권고 9A.5
권고 9C.1	신규
권고 9D.1	신규
제11조 노트1	제11조 노트4 문장1
제11조 노트2-4	제11조 노트1-3
제11조 노트5	제11조 노트4 문장2
제13조 노트1	제13.5조
제14.13조	신규
제14.14조	제14.13조
제14.15조	신규
제14.16조	제14.14조

제16.3조 (일부)	권고 16A.1-3
권고 16A.1	권고 16B.1
제18조 노트1-2	신규
제18조 노트3	제18조 노트1
제19.5조	신규
제19.6-19.8조	제19.5-19.7조
제22조 노트2	제22.7조
제29.2-29.3조	신규
제29조 노트1	신규
권고 29A.1-2	신규
제30.1조	제29.1조 문장2
제30.2-30.3조	신규
제30.4-30.8조	제30.1-30.5조
제30조 노트1-2	신규
제30조 노트3-4	제30조 노트1-2
권고 30A.1	신규
권고 30A.2-4	권고 30A.1-3
제31.2조	신규
제31.3조	제31.2조
권고 31B.1	권고 45B.1
제31C.1	제45C.1조
제32.1조	제32.1조(a-c)
제32.2-32.3조	제32.7-32.8조
제32조	제40.1조
제32조 노트1	신규
제32조 노트2	제40조 노트1
제32조 노트3	제32조 노트1
권고 32A.1	권고 45A.1

제33.1-33.2조	제45.1-45.2조
제34.1-34.2조	제32.9-32.10조
권고 34A.1	권고 32F.1
제35.1조	제43.1조
제35.2조	제33.1조
제35조 노트1	제43조 노트1
제36.1-36.2조	제34.1-34.2조
제37.1-37.5조	제35.1-35.5조
제37.6-37.9조	제33.9-33.12조
제37조 노트1	제33조 노트3
제38.1조	제32.1조(d-e)
제38.2-38.4조	제32.2-32.4조
제38.5-38.6조	제42.1-42.2조
제38.7조	제41조 노트2, 제42.3조
제38.8조	제44.1조
제38.9조	제42.4조
제38.10조	제44.2조
제38.11조	제41.1-41.3조(a-b)
제38.12조	제41.3조(c)
제38.13-38.14조	제32.5-32.6조
제38조 노트1	제41조 노트1
권고 38A.1	권고 32A.1
권고 38B.1	권고 32B.1
권고 38C.1	권고 32C.1
권고 38D.1-3	권고 32D.1-3
권고 38E.1	권고 32E.1
제39.1조	제36.1조
제39.2조	신규

권고 39A.1	권고 36A.1
제40.1-40.7조	제37.1-37.7조
제40조 노트1-4	제37조 노트1-4
권고 40A.1	권고 37A.1
권고 40A.2-4	신규
제41.1조	신규 (제33조와 41조)
제41.2조	신규 (제41조부터)
제41.3-41.8조	제33.2-33.7조
제41조 노트1	제33조 노트1
제41조 노트2	신규
제41조 노트3	제33조 노트2
권고 41A.1	권고 33A.1
제42.1-42.3조	신규
제42조 노트 1	신규
권고 42A.1-2	신규
제43.1조	제36.3조
제43.2조	제38.1조 (수정)
제43.3조	제38.2조
제43조 노트1	신규
제44.1조	제36.2조
제44.2조	제39.1조
제44조 노트1	신규
권고 44A.1	권고 39A.1
제45.1조	제45.4조 문장2-3 추가
제45조 노트1	신규
제45 노트2	제45.4조 문장1 추가
제46.4조	제46조 노트2
제46.5-46.8조	제46.4-46.7조
제46.9-46.10조	제46조 노트3-4

제46조 노트2-3	신규
제48.2-48.3조	신규
권고 50G.1	권고 34A.1
제53조 노트1	제45.3조
제56.3-56.4조	신규
권고 56A.1	신규
제57.2조	신규
제59.1조	대치
제59조 노트1	대치
제59조 노트2	신규
제59조 노트3	제34조 노트1
제60.11조	신규
제60.12-60.13조	제60.11-60.12조
권고 60G.1(b)	권고 60G.1(a)(3), 권고 60G 노트1
권고 60G.1(c)	권고 60G.1(b) 문장1-4 추가
권고 60G 노트1	권고 60G.1(b) 마지막 문장 추가
제62조 노트2	신규
제H.10.2조	제H.10.3조
제H.10조 노트1	제H.10.2조
제H.10조 노트2	제H.10조 노트1

규약에서의 주요 날짜

규약의 특정 규정이 유효 개시 또는 중단되는 날짜

1753년	5월	1일	조항 7.8, 13.1(a), (c), (d), (e)
1789년	8월	4일	조항 13.1 (a), (c)
1801년	1월	1일	조항 13.1(b)
1801년	12월	31일	조항 13.1(d)
1820년	12월	31일	조항 13.1(f)
1821년	1월	1일	조항 13.1(d)
1848년	1월	1일	조항 13.1(e)
1886년	1월	1일	조항 13.1(e)
1887년	1월	1일	조항 37.2
1890년	1월	1일	조항 37.4
1892년	1월	1일	조항 13.1(e)
1900년	1월	1일	조항 13.1(e)
1908년	1월	1일	조항 38.7, 38.8
1912년	1월	1일	조항 20.2, 43.2
1935년	1월	1일	조항 39.1
1953년	1월	1일	조항 30.4, 30.6, 30.7, 30.8, 36.2, 37.1, 37.3, 38.13, 41.3, 41.4, 41.5, 41.6, 41.8
1958년	1월	1일	조항 40.1, 44.1, 44.2
1973년	1월	1일	조항 30.6, 33.1
1990년	1월	1일	조항 9.22, 40.6, 40.7
1996년	1월	1일	조항 43.1
2001년	1월	1일	조항 7.10, 9.15, 9.23, 43.3
2007년	1월	1일	조항 40.4, 41.5
2011년	12월	31일	조항 39.1, 44.1
2012년	1월	1일	조항 29.1, 39.2
2013년	1월	1일	조항 42.1, 57.2, 59.1

주요 분류학 그룹에 적용되는 날짜와 관련된 조항

모든 생물 분류군	조항 7.10, 9.22, 9.23, 20.2, 29.1, 30.4, 30.6, 30.7, 30.8, 33.1, 36.2, 37.1, 37.2, 37.3, 37.4, 38.7, 38.8, 38.13, 39.2, 40.1, 40.6, 40.7, 41.3, 41.4, 41.5, 41.6, 41.8
조류	조항 7.8, 13.1(e), 40.4, 44.1, 44.2

선택	조항 7.8, 13.1(b), (c), 39.1, 40.4
회석	조항 7.8, 9.15, 13.1(f), 43.1, 43.2, 43.3
균류	조항 13.1(d), 39.1, 40.4, 42.1, 57.2, 59.1
관속식물	조항 13.1(a), 39.1, 40.4

합법적인 발표 날짜를 규정한 조항

조항 13.1 (a-f) (조항 13 노트 1도 참조)

조류, 균류와 식물에 대한 국제명명규약

전문

1. 생물학에서는 한편으로는 분류학적 군 또는 단위의 계급을 지정하는 용어를 다루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각각의 분류학적 군에 적용 되는 학명을 다루는, 전 세계 각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하고 간단한 명명법 체계가 필요하다. 분류학적 군에 학명을 부여하는 목적은, 그 분류군의 특징과 기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분류군을 인용하는 수단을 부여함과 동시에, 그 분류군의 분류학상 계급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 규약은 분류학군에 학명을 부여하기 위한 안정된 방법을 규정하고, 실수나 애매한 원인이 되는 또는 과학적 혼란을 야기하는 학명 사용을 피하고 이를 막고자 함이 목적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목적은 불필요한 학명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고자 함이다. 그 외의 고려할 것은 학명의 엄밀한 문법적 정확성, 규약성과 어조, 대략 어느 정도 일반적인 관습, 사람에 대한 경의 등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부수적이다.

2. 이 규약에서 생물체¹는 조류, 균류와 식물 모두를 포함한다.

3. 원칙은 이 규약에서 관리되는 명명시스템의 근간을 형성한다.

4. 항목에 걸친 규정은 여러 조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조항 (때에 따라 노트 에 명확하게 되어 있음)과 권고로 구성된다. 예제²는 규약과 권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추가되었다. 용어 해설에서는 이 규약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5. 규정은 과거의 명명규정을 체계화하여 장래의 명명 체계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에 어긋나는 학명은 유지할 수 없다.

6. 권고는 보조적인 측면을 다루는 것으로 특히 장래의 명명 체계가 보다 큰 일관성과 명확성을 가지도록 할 목적으로 한다. 권고에 반하는 학명은 이런 이유 때문에 폐기되지는 않지만, 그 예를 따라서는 안 된다.

7. 이 규약의 관리를 규정하는 항목은 마지막 부칙 (부칙 3)에 규정한다.

1 다른 명사가 없는 한, “생물체”라는 단어는 이 규약에서 취급되는 생물체, 즉 전통적으로 식물학자, 균류학자, 그리고 조류학자들이 연구하는 생물체를 의미함.

2 제7항 *예제 13의 주석 참고.

- 8.** 이 규약의 규정은 전통적으로 조류, 균류, 또는 식물로 취급되던 모든 생물체에 적용되며, 이는 화석이든 비화석이든 관계없이, 남조류 (*Cyanobacteria*)¹, 통곰팡이류 (chytrids), 난균류 (oomycetes), 점균류 (slime moulds), 및 광합성 원생생물 (photosynthetic protists)과 분류학적인 비 광합성 유연균 [단, 미포자충류 (*Microsporidia*)는 제외]을 포함한다. 부칙1에서는 잡종의 학명을 규정한다.
- 9.** 보전되거나 폐기되거나 인가된 작업, 그리고 구속력 있는 결정은 부록 2-8에 수록되어 있다.
- 10.** 부칙은 주요 본문 부분과 같이 출판되거나 또는 분리된 형태라도 규약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한다.
- 11.**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은 국제재배식물명명위원회에서 준비되며, 농학, 임학 및 원예학의 생물체의 특별한 범주에 적용 되는 학명의 사용과 구성을 다룬다.
- 12.** 학명을 바꾸는 오직 정당한 이유는 충분한 분류학적 연구 결과에 대한 보다 확실한 지식이 있거나 또는 규정에 어긋난 학명을 폐기할 필요가 있을 때이다.
- 13.** 관련 규정이 없거나 규정 결과가 의심스러울 때 오래된 관습을 따른다.
- 14.** 이 규약은 모든 기존 규약들에 우선한다.

1 다른 원핵생물체에 관한 명명법에 대해서는 국제세균명명규약 (*Bacteriological Code*)을 참고 [또한, 이 규약은 1999년 국제원핵생물명명규약 (*Labeda, Int. J. Syst. Evol Microbiol* 50: 2246, 2000)으로 변경되었지만, 1992년에 출판된 현행판은 원래의 표제를 쓰고 있음].

제1부

원칙

원칙 1

조류, 균류와 식물의 명명법은 동물과 박테리아의 명명법과 독립적이다. 이 규약은 조류, 균류, 식물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들 분류군들의 초기 취급방법과는 무관하게 처리한다 (전문 제8 참고).

원칙 2

분류학적 생물체에 대한 학명의 적용은 명명법상의 기준표본에 의해 결정된다.

원칙 3

분류학적 생물체의 학명은 출판의 선취권에 근거한다.

원칙 4

분류학적 한계, 지위, 그리고 계급을 갖는 각 분류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에 따라 가장 먼저 출판된 하나의 정명만을 가진다.

원칙 5

분류학적 생물체의 학명은 어원에 관계없이 라틴어로 주어진다.

원칙 6

학명의 규약은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소급해서 적용한다.

제2부

규약과 권고

제1장

분류군과 계급

제1조

1.1. 이 규약에서는 계급에 상관없이 모든 분류학적 군은 분류군 (단수형: taxon, 복수형: taxa)이라 부른다.

1.2. 화석 형태에 근간을 둔 분류군 (규조류 제외)은 화석분류군이다. 화석분류군은 원기재문, 추후 기재문, 또는 분류군고유특징에 명시된 바에 따라, 부모생물체의 한 부분, 그 이상의 남은 부분, 1개, 또는 그 이상의 생활사 단계, 또는 1개나 그 이상의 보존 상태를 포함한다 (제11.1조와 제13.3조도 참조).

예제 1. *Alcicornopteris hallei* J. Walton (Ann. Bot. (Oxford), ser. 2, 13: 450. 1949)은 화석종으로 원기재문에는 압축화석부분과 석화된 부분으로 보존된 종자고사리류 (pteridosperm)의 엽축, 포자낭 및 포자가 포함된다.

예제 2. *Protofagacea allonensis* Herend. & al. (Int. J. Pl. Sci. 56: 94. 1995)은 화석종으로, 원기재문은 꽃가루를 갖춘 수꽃이 달린 기산꽃차례 (dichasia, 岐散花序), 과실 및 각두 [컵 (cup), 殼斗]에 관한 2개 이상의 부분과 생활사 단계로 되어있다.

예제 3. *Stammostoma* A. Long (Trans. Roy. Soc. Edinburgh 64: 212. 1960)은 *S. huttonense*, 단일 종을 근간으로 기재된 화석 속으로 화분포속기 (花盆捕觸器: lagenostome)의 주변에 하나의 열린 형태의 띠 (open collar)모양을 이루는 완전히 합생된 주피를 가진 배주가 해부학적으로 보존되었다. Rothwell & Scott (Rev. Palaeobot. Palynol. 72: 281. 1992)은 후에 *Stammostoma*속은 배주가 붉은 각두 (컵)를 포함하도록 확대하였다. 따라서 *Stammostoma*라는 속명은 *S. huttonense*를 포함하면서 이전에 적법적으로 출판된 속명의 기준표본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어느 한계를 동반한 속에서나 그 외의 어떤 일부분, 생활사 단계, 또는 보존 상태에 해당되는 속에 대해서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제2조

2.1. 종의 계급이 기본이면서, 모든 개체의 생물체는 연속적인 종속 관계에 있는 계급의 무한 수의 분류군에 소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3.1. 분류군의 근간이 되는 계급은 상위부터 하위 순서대로 배열한다: 계, 문, 강, 목, 과, 속, 종. 따라서 각 종은 한 속에, 각 속은 한 과 등과 같이 귀속된다.

① 노트 1. 학명은 조합된 것 (제21.1조, 제23.1조, 제24.1조)이기 때문에 종 및 속 하위 구분은 속에, 그리고 종이하분류군은 종에 반드시 소속시켜야 한다. 그러나 규정에서는 속보다 상위의 계급에 관한 분류군은 소속 위치 불명으로 배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제 1. 원기재에 *Haptanthus* Goldberg & C. Nelson (Syst. Bot. 14: 16. 1989)는 특정 과를 귀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재되었다.

예제 2. 화석속 *Paradinandra* Schönenberger & E. M. Friis (Amer. J. Bot. 88: 478. 2001)은 “넓은 의미의 진달래목”이라 하였으나, 과의 소속에 관해서는 “소속 위치 불명 (incertae sedis)”으로 하였다.

3.2. 잡종분류군 (복수는 nothotaxa)의 일차 계급은 속간 잡종과 중간잡종이 된다. 이 계급은 속과 종처럼 동일하다. 접두어 “notho”은 잡종의 특성을 나타낸다 (부칙 2 참조).

제4조

4.1. 분류군의 2차 계급은 상위부터 하위의 순서대로, 과와 속 사이에는 족, 속과 종 사이에는 절과 열, 그리고 종 이하 분류계급에는 변종과 품종이 있다.

4.2. 만약 분류군의 많은 수의 계급이 필요하다면, 1차 또는 2차 계급을 나타내는 용어에 접두어 “아 (亞, sub-)”를 붙여서 만들 수 있다. 따라서 1개의 생물체는 (상위부터 하위까지) 다음 계급의 분류군에 소속시킨다. 계, 아계, 문, 아문, 강, 아강, 목, 아목, 과, 아과, 연, 아연, 속, 아속, 절, 아절, 열, 아열, 종, 아종, 변종, 아변종, 품종, 아품종.

① 노트 1. 2차 계급 (제4.1조)을 채택하던 안하던 간에, 1차 계급 (제3.1조)에 “sub-”를 붙여 계급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4.3. 혼란이나 오류를 야기하지 않는 전제 하에 새로운 계급을 삽입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4.4. 속간 잡종이 최상위 계급인 점을 제외하고는, 잡종분류군의 하위 계급은 일반 분류군 (비잡종분류군)의 하위 계급과 동일하다 (부칙1 참조).

❶ **노트 2.** 이 규약에서 “과의 하위구분”이란 말은 과와 속의 사이에 위치하는 계급의 분류군만을 나타내고, “속의 하위구분”은 속과 종의 사이에 있는 계급의 분류군만을 의미한다.

❶ **노트 3.** 농학, 임학 및 원예학에서 사용되는 생물체의 특정 범주의 명칭은 제28조 노트 2, 4와 5를 참조한다.

❶ **노트 4.** 기생 식물, 특히 균류를 분류할 때에는 형태학적보다는 대부분 생리학적 관점에서 종, 아종 또는 변종으로 분류군을 인정하는 명명자는 기생 식물이 다른 숙주에 적응하고 있는 특징으로, 종내에서 종의 특별한 형태 [special form (forma specialis)]를 구별하기도 하지만, 이런 특별한 형태의 명명법에 대해서는 본 규약의 규정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제5조

5.1. 제3조와 제4조에서 명시한 계급의 상대적인 순서는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37.6조 및 제37.9조 참조).

권고 5A

5A.1. 표준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단축형이 권장된다: cl. (강 class), ord. (목 order), fam. (과 family), tr. (목 tribe), gen. (속 genus), sect. (절 section), ser. (열 series), sp. (종 species), var. (변종 variety), f. (품종 form), 접두어 sub-, 또는 잡종분류군에 대해서는 접두어 notho-을 더해서 설정된 부가적인 계급은 각각 같은 접두어를 더해서 만든다: 예 subsp. (아종 subspecies), nothosp. (종간잡종 nothospecies), subg. (아속 subgenus). 단, “subgen.”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제2장

학명의 계급, 기준표본의 지정 및 선취권

제1절

계급의 정의

제6조

6.1. 유효출판이란 제29-31조에 일치한 출판을 의미한다.

6.2. 합법적 출판의 학명은 제32-45조, 또는 제II.9조에 일치한 출판이다 (제61조도 참조)

i 노트 1. 명명법상 합법적인 출판은 새로운 이름이나 때로는 자동명 (제22.1조 및 제26.1조)을 만들지만, 합법적 학명 자체는 그 학명의 기준표본 (제7.1조)을 포함하는 것 이외의 어떤 분류학적 한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6.3. 이 규약에는 다른 명시가 없는 한, 학명이라는 단어는 적법적이든 비적법적이든 합법적으로 출판한 이름을 의미한다 (제12조 참고).

i 노트 2. 동일 학명이 동일 기준표본에 근거하면서 각기 다른 명명자에 의해 다른 날짜에 독립적으로 출판되었을 때, 이런 “동명 (同名 isonym)”중에 가장 먼저 출판한 이름이 명명법상의 계급을 가진다. 이 학명은 언제나 먼저 합법적으로 출판한 문헌을 인용하며, 후에 발표된 동명은 폐기할 수 있다 (단, 제14.15항 참조).

예제 1. Baker (Summary New Ferns: 9. 1892)와 Christensen (Index Filic.: 44. 1905)는 *Alsophila kalbreyeri*를 *A. podophylla* Baker (1881) non Hook. (1857)의 대치명 <replacement name>으로 각자 독립적으로 출판하였다. Christensen이 출판한 *Alsophila kalbreyeri*는 *A. kalbreyeri* Baker의 후에 발표된 동명이기 때문에, 명명법상의 계급이 없다 (제41조 예제 19 참조).

예제 2. “*Canarium pimela* Leenh. nom. nov.”를 출판했을 때, Leenhouts (Blumea 9: 406. 1959)은 서명 *C. pimela* K. D. Koenig (1805)을 재사용하여 자신을 저자로 하여 같은 기준표본을 지정했다. 그 결과 이는 명명법상의 계급이 없는, 이후에 발표된 동명을 만들었다.

6.4. 서명이란 제18.3조, 제19.6조, 또는 제52-54조에 규정된 학명이다 (제21조 노트 1 및 제24조 노트 2도 참조). 출판되었을 때에 이 명명규약에 의해 서명이었던 학명은 이후에 제18.3조 또는 제19.6조에 의해 제시되거나, 보전 또는 인가되지 않는 한 적명이 될 수 없다.

예제 3. *Anisothecium* Mitt. (1869)는 출판되었을 때, 이전에 지정된 *Dicranella* (Mull. Hal.) Schimp. (1856)의 기준표본을 포함하고 있었다. *Dicranella*는 다른 기준표본과 함께 보전 이름으로 알려져서, *Anisothecium*은 적법적인 학명이 아니다.

예제 4. *Skeletonemopsis* P. A. Sims (1995)이 출판되었을 때에는 *Skeletonema* Grev. (1865)의 기준표본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명이었다. *Skeletonema*가 다른 기준표본으로 보전되었을 때에도, *Skeletonemopsis*는 여전히 서명인 상태로 사용이 가능하려면 보전명이 되어야 한다.

6.5. 적명은 규약에 합치하는 학명으로서, 즉 제6.4조에 정의된 것과 같이 서명이 아닌 학명이다.

6.6. 과 또는 그 이하 하위 계급에서는 특정의 한계, 위치 및 계급을 가진 분류군의 올바른 이름(정명, 正名)은 규약(제11조 참조)에 따라, 그 분류군에 대해서 적용한 적명이다.

예제 5. 속명 *Vexillifera* Ducke (1922)는, 1속1종인 *V. micranthera*에 근거한 적명이다. 마찬가지로, 속 이름 *Dussia* Krug & Urb. ex Taub (1892)도 1속1종인 *D. martinicensis*에 근거한 적명이다. 이 2개의 속명은 두 속이 다른 속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모두 올바른 이름(정명)이다. 그러나 Harms (Repert. Spec. Nov. Regni Veg. 19: 291. 1924)는 *Vexillifera*와 *Dussia*를 동일 속으로 통합하였는데, 이 특정 한계를 가진 속의 정명은 *Dussia*이다. 따라서 적명 *Vexillifera*는 다른 분류학적 판단에 의해 정명이거나, 또는 정명이 아닐 수 있다.

6.7. 속 이하의 계급에 위치하는 분류군의 학명은, 속명과 결합된 1개 또는 2개의 소명으로 구성되며 조합이라 한다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 참조).

예제 6. 조합의 예: *Mouriri* subg. *Pericrene*, *Arytera* sect. *Mischarytera*, *Gentiana lutea*, *Gentiana tenella* var. *occidentalis*, *Equisetum palustre* var. *americanum*, *Equisetum palustre* f. *fluitans*.

6.8. 자동명이란 해당 학명이 출판된 출판물에 자동명 자체가 제시되거나 제시되지 않더라도, 제22.3조와 제26.3조에 의해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학명이다 (제32.8조, 권고 22B.1, 권고 26B.1 참조).

6.9. 새로운 분류군의 이름은 (즉, 새로운 속 *genus novum*, *gen. nov.*, 새로운 종 *species nova*, *sp. nov.*) 전적으로 합법적으로 새로 출판한 이름이다. 즉, 기존에 합법적으로 출판한 이름에 근거하거나 새로운 조합명, 새로운 계급의 이름이나 대치명 (<replacement name>)은 새로운 분류군의 이름이 아니다.

예제 7. *Cannaceae* Juss. (1789), *Canna* L. (1753), *Canna indica* L. (1753), *Heterotrichum pulchellum* Fisch. (1812), *Poa sibirica* Roshev. (1912), *Solanum umtuma* Voronts. & S. Knapp (2012).

6.10. 새로운 조합, 또는 새로운 계급의 이름은 이전에 적법적으로 출판된 이름에 근거한 이름, 즉 기본명을 근간으로 한 이름이다. 기본명은 최종소명, 또는 새로운 조합의 어간이거나 새로운 계급의 이름이 된다.

예제 8. *Centaurea benedicta* (L.) L. (1763)의 기본명은 *Cnicus benedictus* L. (1753)이며, 소명을 수반하는 학명이다.

예제 9. *Crupina* (Pers.) DC. (1810)의 기본명은 *Centaurea* subg. *Crupina* Pers. (Syn. Pl. 2: 488. 1807)이며, 그 아속의 소명이 속명이 된다. *Centaurea crupina* L. (1753)는 기본명이 아니다 (제 41.2조(b)를 참조).

예제 10. *Anthemis* subg. *Ammanthus* (Boiss. & Heldr.) R. Fern. (1975)의 기본명은 *Ammanthus* Boiss. & Heldr. (1849)이며, 아속의 소명은 그 속명에서 유래했다.

예제 11. *Ricinocarpaceae* Hurus. (J. Fac. Sci. Univ. Tokyo, ser. 3, Bot., 6: 224. 1954)의 기본명은 *Ricinocarpeae* Mull. Arg. (Bot. Zeitung (Berlin) 22: 324. 1864)이며, 이 과와 족의 학명 유래가 된 *Ricinocarpos* Desf. (1817)은 아니다 (제41.2조(a)와 제49.2조도 참조)

❶ 노트 3. 본 규약에서 사용하는 “명명법상의 새로운 제안”이라는 어구는 다음 모든 범주나 또는 각 범주 중 일부를 지칭한다. 새로운 분류군의 이름, 새로운 조합, 새로운 계급명과 대치명 <replacement name>이다.

❶ 노트 4. 새로운 조합은 동시에 새로운 계급의 이름이 될 수 있다. 기본명에 대한 명명법상의 새로운 제안은 두 경우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제 12. *Aloe vera* (L.) Burm. f. (1768)는 *A. perfoliata* var. *vera* L. (Sp. Pl.: 320. 1753)에 근거한 새로운 조합이면서, 새로운 계급의 학명이다.

예제 13. *Centaurea weldeniana* Rchb. (1831)에 근거한 *C. jacea* subsp. *weldeniana* (Rchb.) Greuter는 "comb. in stat. nov." (Willdenowia 33: 55. 2002)으로 출판되었지만, *C. jacea* var. *weldeniana* (Rchb.) Briq. (Monogr. Centaurees Alpes Marit: 69. 1902)라는 조합과 *C. amara* subsp. *weldeniana* (Rchb.) Kusan (Prir. Istraz. Kral. Jugoslavije 20: 29. 1936)라는 아종 계급의 학명이 이미 출판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조합명도 새로운 계급명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jacea* subsp. *weldeniana* (Rchb.) Greuter는 명명법상 새로운 제안이 된다.

6.11. 대치명 (replacement name, 공인대치명 avowed substitute, 새로운 대치명, nomen novum, nom. nov.)은 적명이든 서명이든 기존에 출판된 이름, 즉 대치이명에 근간을 둔 새로운 이름이다. 대치이명이 적명인 대치명이 될 경우 최종소명, 학명 또는 어간 (stem)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제58.1조 참조).

예제 14. *Caulerpa pinnata* C. Agardh (1817)는 *Fucus pinnatus* Huds. (1762)의 서명인 후동일명, *F. pinnatus* L. f. (1782)에 근거한다. - *Centaurea chartolepis* Greuter (2003)는 *Chartolepis intermedia* Boiss. (1856)에 근거를 하고 있지만, 이는 *Centaurea intermedia* Mutel (1846)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명 *intermedia*를 *Centaurea*속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 *Cyanus segetum* Hill (1762)은 *Centaurea cyanus* L. (1753)에 근거하는데, 이는 소명 *cyanus*가 *Cyanus*속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23.4조). - *Mycena coccineoides* Grgur. (2003)는 *Omphalina coccinea* Murrill (1916)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이는 *M. coccinea* (Murrill) Singer (1962)이 *M. coccinea* (Sowerby) Quél. (1880)의 서명인 후 동일명이기 때문이다.

제2절

기준표본의 지정

제7조

7.1. 학명은 과 또는 과 이하 계급 분류군에 대하여 명명법상의 기준표본 (분류군의 학명의 기준표본)에 근거하여 적용한다. 또한, 학명이 최종적으로 속명에 근거할 때, 과보다 상위의 계급에 있는 분류군도 기준표본에 근거하여 적용한다 (제10.7조 참조).

7.2. 명명법상의 기준표본은 정명이든 이명이든 관계없이, 어떤 분류군의 학명에 영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요소이다. 명명법상의 기준표본은 반드시 해당 분류군의 가장 전형적, 또는 대표적인 요소가 될 필요는 없다.

7.3. 새로운 조합이나 새로운 계급의 학명 (제6.10조)은 설명 기본명의 기준표본이 현재 해당 분류군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되더라도, 기본명의 기준표본으로 기준화한다 (단, 제48.1조 참조).

예제 1. *Carrière*는 *Pinus mertensiana* Bong.을 *Tsuga*속에 옮겼다. 그러나 해당 기재문에서 밝힌 것처럼, 새로운 조합 *T. mertensiana*를 *Tsuga*속의 다른 종인 *T. heterophylla* (Raf.) Sarg.로 적용을 잘못하였다. *Tsuga mertensiana* (Bong.) *Carrière*라는 조합은 *T. heterophylla*에 적용되지 않지만, *Tsuga*속으로 *P. mertensiana*가 적용될 경우에는 이 조합은 유지된다. 원저자명인 Bongard을 (제49조 하에서) 괄호 속에 인용하는 것은 이 학명의 기본명을 표시함과 동시에 이 학명의 기준을 의미한다.

예제 2. *Delesseria gmelinii* J. V. Lamour. (1813)은 *Fucus palmetto* S. G. Gmel. (1768)에 대한 적법적인 대체명 <replacement name>이지만, 소명의 변경은 *D. palmetta* (Stackh.) J. V. Lamour.의 동시 출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해진 것이다 (제11조 노트 2 참조). 현재는 Lamouroux가 언급한 모든 재료가 다른 종인 *D. bonnemaisonii* C. Agardh (1822)에 해당되지만, *Delesseria gmelinii*에 근거한 모든 조합은 (*F. palmetta*의 기준표본을 제외하지 않음, 제48.1조 참조), *F. palmetta*와 같은 기준표본을 가진다.

예제 3. 새로운 조합의 *Cystocoloeus ebeneus* (Dillwyn) Thwaites (1849)는 비록 Thwaites에 의해 일러스트레이션된 자료가 *Racodium rupestre* Pers. (1794)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기본명 *Conferva ebenea* Dillwyn (1809)의 기준표본에 따라 기준표본이 지정된다.

7.4. 비록 해당 분류군에 잘못 적용해서, 해당 분류군의 기준표본을 포함해서는 안 되지만, 대체명 <replacement name> (제6.11조)은 대체된 이명의 기준표본으로 기준화한다 (단 제41조 노트 3과 제48.1조 참조).

예제 4. *Myrica lucida* McVaugh (1969)는 *M. laevis* G. Don (1832)에 대한 서법적인 동일명인 *M. laevis* O. Berg (1862)을 대신한 대체명 <replacement name>으로 출판되었다. 따라서 *M. lucida*의 기준표본은 *M. laevis* O. Berg (non G. Don)의 기준표본인 Spruce 3502 (BR)이 된다.

7.5. 제52조에 의해서 서명이 되는 학명은 규약에 의해 채택되어야 하는 학명의 기준표본에 의해 (자동기준표준화)되거나, 또는 그 서명의 명명자에 의해 지정 또는 명확히 지시된 별도의 기준표본에 의해 기준표본이 지정된다. 그러나 만약, 어떠한 기준도 지정되지 않거나, 명확히 지시되어 있지 않고, 또한 선행 학명의 기준이 그 서명의 명확히 의도된 기준을 포함하지 않는 하위의 분류군에 포함되어 있다면 (제52.2조 참조), 기준표본 지정은 자동적으로는 하지 않는다. 자동적 기준표본 지정은 제15조에 의해 인가된 학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예제 5. *Bauhinia semla* Wunderlin (1976)는 제52조 (제52조 예제 9 참조)에 의해 서명이 된다. 그러나 *B. retusa* Roxb. (1832) non Poir. (1811)에 대한 대치명 (replacement name)으로서 이 학명의 출판은 채택되어야 하였던 학명 (*B. roxburghiana* Voigt, 1845)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 (*B. retusa* 기준표본)를 명확하게 지정하였다.

예제 6. *Hewittia* Wight & Arn. 기준인 *H. bicolor* Wight & Arn. (1837)은 서법적인 기본명 *Convolvulus bicolor* Vahl (1794) non Desr. (1792) 외에, 적명인 *C. bracteatus* Vahl (1794)을 이명으로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52조에 의해 서명이 된다. Wight & Arnott이 채택한 종소명 "bicolor"는 *H. bicolor*의 기준표본이 되며, 이 때문에 *Hewittia*속의 기준이 *C. bicolor*의 기준임을 분명히 했었고, 이는 종소명으로 채택되어야 하였던 *C. bracteatus*의 기준이 아니다.

예제 7. Mason & Grant (Madroño 9: 212. 1948)은 *Gilia splendens*을 합법적으로 출판하였을 때 "해당 종의 긴 화통을 가진 유형"으로 *G. grinnellii* Brand (1907)을 근간으로 한 *G. splendens* subsp. *grinnellii*를 포함했기 때문에, *G. splendens*는 제52조에 의해 서명이 된다. Mason & Grant는 *G. splendens*가 이미 합법적으로 출판 되었다고 믿어 기준표본을 지정하지 않았지만, *G. grinnellii*의 기준표본이 자동적으로 *G. splendens*의 기준표본이 되지는 않는다; 이 후 보존된 기준으로 채택된 *G. grinnellii*의 기준표본을 레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으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7.6. 자동명의 기준표본은 그 이름의 근원이 된 학명의 기준표본과 동일하다.

예제 8. *Caulerpa racemosa* (Forssk.) J. Agardh var. *racemosa*의 기준표본은 *C. racemosa*의 기준표본이 된다; *C. racemosa*의 기준표본은 기본명인 *Fucus racemosus* Forssk.의 기준표본, 즉, Herb. Forsskål No. 845 (C)이 된다.

7.7. 이전에 유효하게 출판된 기재문 또는 분류군 특징을 출전 인용함으로써 합법적으로 출판된 새 분류군의 학명 [제38.1조(a)]은, 합법화 작업을 시도한 명명자에 의해 다른 기준을 명확하게 지정한 경우가 아닌 이상 기재문 또는 분류군 특징의 문맥에서 선별된 요소에 의해 기준표본 지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합법화 작업을 시도한 명명자에 의해 명확하게 배제된 요소로 기준을 지정하는 것은 안 된다 (제7.8조도 참조).

예제 9. 학명 *Adenantha bicolor* Moon (1824)은 해부도가 없는 일러스트레이션과 기재문만으로, 즉, "Rumph. amb. 3: t. 112"을 Moon이 출전 인용하는 것만으로 합법화가 되었다. 합법적 출판에 관련된 기재문의 근원이 된 표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학명의 레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은 기재문에 따른 일러스트레이션, 즉 t. 112 (Rumphius, Herb. Amboin. 3. 1743)이 된다. 큐 (Kew)식물원에 있는 Moon에 의해 채집된 "*Adenantha bicolor*"라고 레이블이 붙어 있는 표본은, Moon 자신이 이 표본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표본이 아니다.

예제 10. *Echium lycopsis* L. (Fl. Angl.: 12. 1754)은 기재문도 분류군 고유특징도 없이, Ray (Syn. Meth. Stirp. Brit., ed. 3: 227. 1724)를 출전 인용하여 출판되었다. Ray의 출판에서는, "*Lycopsis* 속"의 1종이 기재문도 분류군 고유특징도 없이, Bauhin (Pinnax. 255. 1623)을 포함한 그 이전의

출전문헌을 인용해 논의하였다. *Echium lycopsis*의 합법적 출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재문헌은 Bauhin의 것이며, 그 기준은 그의 저술의 문맥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따라서 Klotz (Wiss. Z. Martin-Luther-Univ. Halle-Wittenberg, Math.-Naturwiss. Reihe 9: 375-376. 1960)가 기준으로 선택한 Morison herbarium (OXF)의 Sherard 표본은 아마 Ray가 찾은 것이지만 기준표본으로는 부적격이다. 우선 첫 번째로 수용할 수 있는 선택은 Ray와 Bauhin 두 사람이 인용한 *Dodoneus* (Stirp. Hist. Pempt.: 620. 1583) "*Echii altera species*"의 일러스트레이션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이 선택은 Gibbs (Lagascalia 1: 60-61. 1971)에 의해 시사되어, 후에 Stearn (Ray Soc. Pobl. 148, Introd.: 65. 1973)이 공식적 기준표본으로 선택하였다.

예제 11. *Hieracium oribates* Brenner (1904)는 *H. saxifragum* subsp. *oreinum* Dahlst. ex Brenner (Meddeland. Soc. Fauna Fl. Fenn. 18: 89. 1892)의 공식 출판 기재문을 출전 인용함으로써 기재문 없이 합법적으로 출판되었다. Brenner는 먼저 발표한 이름과 원재료의 일부를 명확히 제외하였기 때문에, *H. oribates*는 새 분류군의 학명이며, 대치명 (replacement name)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된 요소를 이 학명의 기준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7.8. 명명법상 출발점인 1753년 5월 1일 (제13.1조 참조) 이후의 새로운 분류군 학명은 합법적으로 출판 (제32-45조)한 내용에서 선별된 요소에 의해 기준화한다.

① 노트 1. 식물화석 (제1.2조)과 다른 유사 분류군, 또는 속 계급의 이하 이름의 기준표본의 지정은 상기 규약과 다르지 않다.

7.9. 선취권 취지를 위해서 (제9.19조, 제9.20조 및 제10.5조), 기준표본의 지정은 유효하게 출판되었을 경우 (제29-31조)에만 선취권을 인정받는다.

7.10. 선취권의 취지를 위해서 (제9.19조, 제9.20조 및 제10.5조) 기준표본의 지정은 명확히 기준표본을 지정한 명명자에 의해 인정되고, 동시에 기준의 요소가 기준 ["type"(typus), 기준] 또는 이와 동등한 단어를 포함하는 명명자의 직접 인용으로 명확히 지시하여야 한다. 또한, 2001년 1월 1일 이후는, 기준표본 지정의 표명에 "designated here" (hic designatus, 여기에 지정한), 또는 이와 동등한 어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만 인정을 받는다.

① 노트 2. 제7.9조와 제7.10조는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 또한 제10조에 의한 동등한 경우), 네오타입 (neotype, 신기준표본)과 에피타입 (epitype, 추가기준표본) 지정에만 적용한다.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의 지정은 제40조를 참고한다.

예제 12. *Chlorosarcina* Gerneck (1907)는 원래 2개의 종 *C. minor*와 *C. elegans*로 구성되었다. Vischer (1933)는 *C. minor*를 *Chlorosphaera* G. A. Klebs로 옮겼고, *C. elegans*를 *Chlorosarcina*에 남겼다. 그러나 Vischer는 "type", 또는 이와 동일한 표현을 언급하지 않아서, *Chlorosarcina*의 기준표본 지정에 충분치 않았다. Starr (ING Card No. 16528, Nov 1962)는 처음으로 기준을 지정하면서 "LT."라는 축약형을 이용했고, *Chlorosarcina elegans*를 선택하였다.

****예제 13.**¹ Hitchcock & Green (Sprague, Nom. Prop. Brit. Bot.: 110-199. 1929)이 사용한 "standard species (표준종)"란 어구는 현재의 "type"과 동등하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이 출판물의 기준표본 지정은 인정된다.

1 본 규약의 이 경우나 혹은 다른 곳에서 별 표시가 앞에 부착된 것은 해당 규약의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거나 문제를 적절하게 다루지 않았을 경우 학명의 실행을 지배관리하기 위해 국제식물학회에서 수용된 '추천 예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추천 예제는 규약과 비견할 만한 것으로, 단순 실례의 목적으로 편집위원에서 제공된 다른 예제와 대비된다.

권고 7A

7A.1. 분류군 학명의 기초가 되는 재료 (표본), 특히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이나 다른 공개된 수집물은 진정성을 가진 연구자들에게 그 재료를 이용, 허락하는 방침을 가진 공공의 식물표본관에 보관되어야 하며, 또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보존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제8조

8.1. 종 또는 종 이하 분류군 학명의 기준표본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 또는 네오타입 (neotype, 신기준표본)]은 식물표본관, 그 외의 수집, 또는 연구기관에 보관되고 있는 단일 표본, 또는 1개의 일러스트레이션¹을 의미한다 (단, 제8.5조 참조; 제40.4조와 제40.5조도 참조).

8.2. 기준표본 지정 취지를 위해서, 1개의 표본이란 단일 종 또는 종 이하 분류군의 동시에 확보된 단일 채집품, 또는 단일채집품의 일부이어야 하며, 혼합표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제9.14조 참조). 표본은 1개의 생물체, 1개, 또는 복수의 생물체의 부분, 또는 다수의 소형 생물체로 구성될 수 있다. 통상 1개의 표본은 단일 표본대지에 붙어 있거나 이에 상응한 상자, 포장, 병 또는 현미경용 슬라이드와 같은 1개의 표본용기에 담겨 있어야 한다.

예제 1. "*Echinocereus sanpedroensis*" (Raudonat & Rischer, *Echinocereenfreund* 8 (4): 91-92. 1995)는 뿌리, 분리된 가지, 완전한 꽃, 반으로 자른 꽃 및 열매 2개로 구성된 식물체로 구성된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에 근거하고 있다. 레벨에 의하면 이 재료는 다른 시기에 같은 재배 개체에서 채취하여 알코올로 1개의 병에 보존된 것으로 복수의 채집품에 속하며, 따라서 기준표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Raudonat & Rischer의 학명은 제40.2조에 의해 합법적 발표가 아니다.

8.3. 1개의 표본은 각 부분이 같은 표본의 일부라는 것이 레이블에 명시되어 있는 한, 2개 이상의 대지나 용기에 나누어져 있을 수 있다. 단일 채집품으로 만들어진 복수의 (대지상이나 용기 중의) 표본은 단일표본의 부분이라는 것이 레이블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그 유래가 1개의 생물체인지 복수인지에 관계없이 복제표본²이 된다 (단, 제 8.5조 참조).

예제 2. *Delissea eleeleensis* H. St. John의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 *Christensen* 261 (BISH)는 2개 표본으로 구성되어 있고, 1개는 "fi. bottled"라는 주석표 (annotation)을 붙인 1장의 표본 대지에 붙은 표본 (BISH No. 519675)이며, 다른 한 개는 "*Cyanea*, *Christensen* 261"이라는 레이블이 붙은 병에 보관된 꽃차례의 알콜 액침 표본이다. 이 주석표는 화서의 액침 표본이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의 부분을 이루 복제표본이 아니며, 또한 추가적 자료가 레이블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별개로 보존된 아이조타입 (isotype, 동기기준표본) (BISH No. 519676)의 일부도 아니다.

1 본 규약에서는 어느 경우에도,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용어는 생물체의 한 부분 여러 부분을 묘사하는 그림이나 사진을 지칭한다. 즉, 표본의 사진이거나 주사형 전자현미경 사진 등이다.

2 본 규약에서는 어느 경우에도 복제표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표본실 관리 시에 통상 사용하는 의미를 지칭한다. 이는, 동일한 채집자에 의해 동시에 채집된 단일종 또는 종 이하 분류군의 단일 채집품의 일부에 해당된다.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을 선택하는 연구자는 이질적인 채집품이 혼합되어 있을 가능성을 항상 고려하고,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제 3. *Johannesteijsmannia magnifica* J. Dransf.의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은 Dransfield 862 (K)가 5장의 표본 대지에 나눠 붙인 1장의 잎, 1개의 상자에 담긴 꽃차례와 과일차례가 1개의 병에 든 액침 표본으로 구성된다.

예제 4. *Chephaelis acanthacea* Steyererm의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 *Cuatrecasas* 16752 (F)는 "sheet 1"과 "sheet 2"와 레이블을 붙인 2장의 표본 대지의 단일 표본으로 구성된다. 2장의 표본 대지에는 각각 F-1153741과 F-1153742 라는 서로 별개의 식물표본실 수납번호 (accession numbers)가 붙어 있으며, 상호 참조적인 레이블은 이것이 단일 표본임이 확인된다. 3번째 표본 대지인 *Cuatrecasas* 16572, F-1153740에는 상호 참조적인 레이블이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복제표본이다.

예제 5. *Eugenia ceibensis* Standl.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인 Yuncker & al. 8309는 F에 보관되어 있는 1장의 표본 대지에 붙은 표본이다. 작은 단편이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의 지정 후에 표본에서 분리되었고, 현재는 LL에 보관되어 있다. 그 표본의 단편이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의 사진과 함께 표본 대지에 붙어 있고, "fragment of type!"이라고 레이블이 붙어 있다. 이 표본의 단편은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과 동일한 식물 표본관에 영구히 보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 표본의 일부가 아니다. 이러한 표본의 단편은 복제표본, 즉 아이조타입 (isotype, 동기준표본)이다.

8.4. 분류군의 학명 기준표본은 영구히 보존되어야 하며, 살아 있는 생물체나 배양체의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 단, 균류와 조류의 배양체는 대사의 불활성 상태 (예, 동결 건조, 또는 동결보존 된 상태)로 보관되면 기준으로 인정한다.

예제 6. "*Dendrobium sibuyanense*" (Lubag-Arquiza & al. - Philipp. Agric. Sci. 88: 484-488. 2005)의 경우는 "기준표본은 필리핀 로스파노스대학교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Los Baños, UPLB) 원예학부의 난초 재배 시설에 살아있는 표본으로 유지, 관리된다. 채집자: Orville C. Baldos & Ramil R. Maragigan, 2004년 4월 5일"라는 기술과 함께 기재되었다. 그러나 여기 언급된 기준은 생체표본이며 기준표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이 학명은 기준표본이 지정되지 않은 비합법적으로 출판된 이름이다 (제40.1조).

예제 7. 균주 CBS 7351은 동결 건조에 의해 대사가 불활성인 상태에서 영구히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Candida populi* Hagler & al. (Int. J. Syst. Bacteriol. 39: 98. 1989)의 기준표본으로 수용된다 (권고 8B, 2도 참조).

8.5. 에피타입 (epitype, 추가기준표본, 제9.8조)을 제외하고는 종 또는 이보다 하위 계급의 화석 분류군의 학명 기준표본은 항상 1개의 표본이다 (제9.15조 참조). 1개의 표본 전체를 명명법상의 기준으로 고려한다 (권고 8A, 3 참조).

권고 8A

8A.1.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 또는 네오타입 (neotype, 신기준표본)이 일러스트레이션인 경우는, 그 일러스트레이션의 기원이 된 1개 또는 복수의 표본은 학명 적용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료로 이용하여야 한다 (제9.15조도 참조).

8A.2. 제40.5조에 의해 일러스트레이션이 학명의 기준으로 지정된 경우 일러스트레이션 자료의 채집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권고 38D, 2도 참조).

8A.3. 만약 화석 분류군의 학명 기준표본이 몇 개의 단편(화석재의 절편, 탄구(炭球)식물의 단편, 기타)으로 구별될 경우에는 분류군 고유특징을 완성하기 위해 사용한 모든 단편을 명료하게 표시해야 한다.

8A.4. 기준표본으로 지정된 단일 표본이 다수의 표본요소가 대지에 부착되었을 경우 프로토로그 <protologue>¹에 언급하여야 하며, 그 표본요소에는 적절하게 표시해서 기입하여야 한다.

권고 8B

8B.1. 언제든 실행가능하다면, 새롭게 기재된 조류, 또는 균류 분류군에서는 학명의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 자료에서 살아있는 배양주가 분리되어야 하며, 적어도 2개의 연구기관에 배양주, 또는 유전자자원 수집물이 보관되어야 한다 [이는 제8.4조의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 표본에 대한 요구를 배제하는 조치는 아니다].

8B.2. 학명의 기준표본이 대사적으로 불활성한 상태로 영구히 보존된 배양주일 경우 (제8.4조 참조), 그 배양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모든 살아있는 분리주는 기준표본으로부터 유래하였지만, 이것 자체는 명명법상의 기준이 아님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 "ex-type" (ex typo, 전생체기준표본) "ex-holotype" (ex holotypo, 전생체정가기준표본), "ex-isotype" (ex holotypo, 전생체정가기준표본) 등과 같이 언급하여야 한다.

8B.3. 배양주가 기준표본으로 지정될 경우 배양주의 상황은 "대사적으로 불활성 상태로 영구 보존"이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 반드시 언급되어야 한다.

제9조

9.1. 종 또는 종 이하 분류군 이름의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이란 명명법상의 기준으로 명명자가 사용 또는 지정한 1개의 표본 또는 일러스트레이션이다 (단, 제40.4조 참조).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이 현존하는 한, 해당 이름의 적용은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에 의해 결정된다 (단, 제9.15조 참조).

① 노트 1. 분류군의 학명 기재원문에 기준표본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다면, 원명명자의 지정이 최종적인 결정이 된다 (단, 제9.11조와 제9.15조 참조). 만약, 명명자가 단 1개의 요소 (표본)만을 사용하였다면, 그 요소 (표본) 자체가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으로 인정된다. 새 분류군의 이름이 이전에 출판된 분류군의 기재문, 또는 분류군 고유특징에 근거하였다면, 이전의 출판 명명자가 사용한 재료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표본에 대한 개념이 적용된다 (제7.7조 참조; 단 제7.8조 참조)

예제 1. *Opegrapha oulocheila* Tuck. (1866)이 설정될 때, Tuckerman은 "나에게 이용할 수 있는 Schweinitz's 식물표본관 (필라델피아 자연과학협회 표본실 Herbarium, Academy of Natural Sciences, Philadelphia)의 유일한 표본"으로 표기하였다. "type" (기준표본)이라는 단어 또는 동등한 어구를 프로토로그 <protologue>에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표본 (PH)은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이 된다.

예제 2. 학명 *Phoebe calcarea* S.K. Lee & F.N. Wei (1983)는 "*Du'an Expedition 4-10-004, IBK*"을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으로 지정하면서 합법적으로 출판하였지만, 이 채집번호의 표본은 IBK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sp. nov."와 "Typus"로 주석이 달리고, 프로토로그 <protologue>에 있는 다른 모든 내용이 상세하게 부합하는 "*Duan Exped. 4-10-243*"이라는 채집번호로 표시된 표본이 IBK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 기준표본 인용은 명백한 오류이므로 수정되어야 한다.

1 프로토로그 <protologue>(from 그리스어 πρώτος, protos, 첫; λόγος, logos, 출판): 합법적 출판 시 학명과 관련된 모든 요소, 즉, 기재문, 분류군 고유특징, 일러스트레이션, 출전문헌, 이명, 분포자료, 표본인용, 토의와 견해를 의미한다.

9.2. 원래 출판 당시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나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이 사라진 경우 또는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이 1개 이상의 분류군에 속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 제9.11조와 제9.12조에 따라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은 원재료로부터 명명법상의 기준으로 지정된 1개 표본이거나, 또는 일러스트레이션이 된다. 인가명의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은 프로토로그 <protologue>와 인가처리 된 내용 중 (제9.10조), 1개 또는 양쪽 모두와 관련된 요소 (표본)에서 선택할 수 있다.

9.3. 원 재료란 이 규약의 취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a) 해당 학명이 기재문 또는 분류군 고유특징이 근거로 하였다고 지칭한 표본 또는 일러스트레이션 (프로토로그 <protologue> 이전에 또는 동시에 출판되지 않았거나 출판된 것이라도); (b) 해당 학명이 합법적으로 출판되었을 때의 기재문 또는 분류군 고유특징의 명명자가 보지 않았더라도,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과 합법적 출판 때에 학명의 기준 [신타입 (syntype, 등가기준표본) 또는 파라타입 (paratype, 종기준표본)]이라고 지정한 표본; 그리고 (c) 합법적 출판의 기재문 또는 분류군 고유특징 명명자나, 그 이름의 명명자가 해당 표본을 본 것에 무관하게, 해당 학명의 아이조타입 (isotype, 동기준표본) 또는 아이조신타입 (isosyntype, 동기준표본)(단, 제7.7조, 제7.8조 및 제9.10조도 참조)이다.

i 노트 2. 제7.8조에 해당되는 이름의 경우 프로토로그 <protologue> 자체의 내용에 의한 요소만을 원재료로 간주한다.

i 노트 3. 제7.7조에 해당되는 이름의 경우 합법화 작업을 한 명명자가 명확하게 다른 기준표본을 지명하지 않았다면, 기재를 합법화한 내용의 요소만을 원재료로 간주한다.

i 노트 4. 제9.10조에 해당되는 학명의 경우 프로토로그 <protologue> 내용으로부터의 요소는 원재료이며 인가작업의 내용의 요소도 원재료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9.4. 아이조타입 (isotype, 동기준표본)은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의 복제표본이며, 언제나 단일 표본을 의미한다.

9.5. 신타입 (syntype, 등가기준표본)은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이 없을 때 프로토로그 <protologue>에 인용된 모든 표본이거나, 또는 프로토로그 <protologue>에 기준으로 지정된 2개 또는 그 이상의 열거된 모든 표본을 지칭한다 (제40조 노트 1도 참조). 전체 채집품이나, 일부 수집에 대한 언급은 표본이 포함된 인용으로 간주한다.

예제 3. *Laurentia frontidentata* E. Wimm의 프로토로그 <protologue>에서는 (제40조 예제2 참조), 2개의 표본관에 보관돼 있는 단일의 채집품이 기준으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적어도 2개의 표본이 존재함에 틀림없으며, 이들은 신타입 (syntype, 등가기준표본)이다.

예제 4. *Anemone alpina* L. (1753)의 프로토로그 <protologue>에서는 이름 없는 변종 β 와 γ 에서 2개 표본인 "Burs. IX: 80"과 "Burs. IX: 81"이 인용된다. 이 표본은 Burser Herbarium (UPS)에 현존하고 있으며, *A. alpina*의 신타입 (syntype, 등가기준표본)이다.

9.6. 만약 프로토로그 <protologue>에 2개 또는 그 이상의 표본이 동시에 기준표본으로 지정되어 있고, 프로토로그 <protologue>에 인용되었으나 홀로타입 (holotype, 정기

준표본)도, 아이조타입 (isotype, 동기준표본)도 신타입 (syntype, 등가기준표본)도 아닌 표본들은 파라타입 (paratype, 종기준표본)이라 한다.

예제 5. *Rheedia kappleri* Eyma (1932)는 잡성화 (1 개체에 양성화와 단성화 존재)식물로 그 학명의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은 수꽃의 표본, *Kappler 593a* (U)이다. Eyma는 양성화의 표본 *Forestry Service of Surinam B. W. 1618* (U)을 파라타입 (paratype, 종기준표본)으로 지정하였다.

① 노트 5.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이 지정되지 않은 대부분 경우에는 인용된 모든 표본은 신타입 (syntype, 등가기준표본)이 되기 때문에, 파라타입 (paratype, 종기준표본)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명명자가 두 개 이상의 표본을 기준으로 지정한 경우(제9.5조), 나머지 인용표본은 신타입 (syntype, 등가기준표본)이 아니라 모두 파라타입이 된다.

예제 6. *Eurya hebeclados* Y. Ling (1951)의 프로토크로그 <protologue> 중, 저자는 2개 표본을 동시에 기준으로 지정하고 *Y. Ling 5014*를 "typus, ♂", *Y. Y. Tung 315*를 "typus, ♀"로 하였다. 따라서 이 표본들은 신타입 (syntype, 등가기준표본)이 된다. Ling은 다시 기준의 지정 없이 표본 *Y. Ling 5366*도 인용하였다. 이 표본은 파라타입 (paratype, 종기준표본)이다.

9.7. 네오타입 (neotype, 신기준표본)은 종기재 당시의 원재료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소실된 경우에 명명법상의 기준표본으로 선택된 1개 표본, 또는 일러스트레이션을 의미한다 (제9.16조도 참조).

9.8.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 또는 이미 지정된 네오타입 (neotype, 신기준표본), 또는 합법적으로 출판한 이름과 관련된 모든 원재료가 불명확하여서 분류군 이름을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한 식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에피타입 (epitype, 추가기준표본)은 설명용 기준으로 뽑힌 1개의 표본 또는 일러스트레이션을 지칭한다. 에피타입 (epitype, 추가기준표본)이 보충하는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 또는 네오타입 (neotype, 신기준표본)이 명확하게 인용되지 않았다면 에피타입 (epitype, 추가기준표본)의 지정은 유효하지 않다 (제9.20조 참조).

예제 7. 학명 *Vitellaria paradoxa* C. F. Gaertn. (1807)의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 표본은 출처를 모르는 1개의 종자 (P)이다. 이 종자는 해당 종의 특징을 보이지만, 현재 인식된 잎과 화서의 특징과 구별되는 2개 아종의 어느 쪽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Hall & Hindle (Taxon 44: 410. 1995)은 *Bassia parkii* G. Don (1838)의 기준인 Park (BM)을 *V. paradoxa*의 에피타입 (epitype, 추가기준표본)으로 지정하였다. 따라서 *Bassia parkii*는 *V. paradoxa* subsp. *paradoxa*의 이명이 되고, 2번째 아종인 *V. paradoxa* subsp. *nilotica* (Kotschy) A. N. Henry & al. (1983)은 유지된다.

예제 8. Podlech (Taxon 46: 465, 1997)은 표본 Herb. Linnaeus No. 926.43 (LINN)을 *Astragalus trimestris* L (1753)의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으로 지정하면서, 동시에 에피타입 (epitype, 추가기준표본) (Egypt. Dünen oberhalb Rosetta am linken Nilufer bei Schech Mantur. 9 May 1902, Anonymous (BM))을 추가하였다. 왜냐하면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에 "이 종을 위한 중요한 식별형질을 보여주는" 열매가 없기 때문이다.

예제 9. *Lichen saxatilis* L. (1753)의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은 Galloway & Elix (New Zealand J. Bot. 21: 405. 1983)에 의해 지정된 스웨덴 산의 표본이며 Herb. Linnaeus No. 1273.62 아래에서 2번째 개체이다. 이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이 학명 *Parmelia saxatilis*

(L.) Ach. (1803)의 현재 사용하는 이름에 부합하는지, 형태적으로는 구별되지 않는 *P. serrana* A. Crespo & al. (2004)에 해당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분자 유전자 배열 데이터는,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에서는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Molina & al. (Lichenologist 36: 47. 2004)은 염기서열 자료를 이용한 1998년에 채집된 스웨덴 산의 *P. saxatilis*의 표본 (MAF6882)을 에피타입 (epitype, 추가기준표본)으로 지정하고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을 보완하였다.

9.9. 이 규약에서 기준표본이라 정의한 용어 사용은 (제9.1-2조와 제9.4-8조) 정의된 이외의 다른 의미로 이용한 경우에는 수정되어야 할 오류로 취급한다 [예, 실제 네오타입 (neotype, 신기준표본)인 경우에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으로 용어를 사용한 경우].

예제 10. Borssum Waalkes (Blumea 14: 198. 1966)은 표본 Herb. Linnaeus No. 866.7 (LINN)을 *Sida retusa* L. (1763)의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으로 인용하였다. 그러나 *S. retusa*의 프로토로그 <protologue> 중에서는 Plukenet (Phytographia: t. 9, fig. 2. 1691)과 Rumphius (Herb. Amboin. 6: t. 19. 1750)의 일러스트레이션을 Linnaeus가 인용하였다. 따라서 *S. retusa*의 원재료는 이들 3개 요소이며 (제9.3조), Borssum Waalkes의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은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으로 수정해야 한다.

이 노트 6. 제7.10조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 네오타입 (neotype, 신기준표본), 그리고 에피타입 (epitype, 추가기준표본)으로 수정하는 경우가 충족되고, 제40.6조[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을 수정하는 경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잘못 사용된 용어 수정을 할 수 있다.

9.10. 제13.1조(d)에서 구체적으로 열거된 작업 중에서 종이나 종 이하 학명의 기준과 이로 인한 인가 (제15조)의 경우는 프로토로그 <protologue>의 이름과 관련된 요소 중, 또는 인가된 처리에서 선택할 수 있다.

9.11. 만약에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이 종이나 또는 종 이하 분류군 이름의 명명자가 언급하지 않거나,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 또는 기존에 지정된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이 소실되거나 파괴되었을 때, 또는 기존으로 지정된 재료가 1개 이상의 분류군에 속하는 경우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이나, 허용된다면(제9.7조), 네오타입 (neotype, 신기준표본)을 대체하는 기준으로 지정할 수 있다.

9.12.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의 지정은 아이조타입 (isotype, 동기준표본)이 존재할 경우에는 이 표본에서 선택하여야 한다. 만약 아이조타입 (isotype, 동기준표본)이 없을 경우에는 신타입(등가기준표본)에서 선택하여야 한다. 만약,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 아이조타입 (isotype, 동기준표본), 신타입 (syntype, 등가기준표본), 또는 아이조신타입 (syntype, 등가기준표본) [신타입(등가기준표본)의 복제표본]이 현존하지 않을 경우에, 파라타입 (paratype, 종기준표본)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만약 인용된 표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재료가 남아있다면, 이를 구성하는 인용되지 않은 표본이나, 인용된 일러스트레이션 및 인용되지 않은 일러스트레이션 중에서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을 선정해야 한다.

9.13. 원재료가 현존하지 않거나 또는 소실되었을 때, 네오타입 (neotype, 신기준표본)을 선정할 수 있다. 제9.16조가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은 항상 네오타입 (neotype, 신기준표본)에 우선한다.

9.14. 만일 1개의 기준표본 (표본대지 또는 그것에 상당하는 것)에 2개 이상의 분류군에 해당되는 부분이 포함된다면 (제9.11조 참조), 그 이름은 원기재문 또는 분류군 고유특징에 제일 잘 일치하는 부분 (제8.2조에 정의된 표본)에 귀속시켜야 한다.

예제 11. 학명 *Tillandsia bryoides* Griseb. ex Baker (1878) 기준표본은 *Lorentz 128* (BM)이다. 그러나 이 표본은 다른 표본과 혼합된 것으로 밝혀졌다. Smith (Proc. Amer. Acad. Arts 70: 192. 1935)는 제9.14조에 따라 Lorentz의 표본의 일부분을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으로 지정하였다.

9.15. 화석종 또는 종 이하 화석분류종 (제8.5조) 학명의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 [또는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은 합법적 출판의 일러스트레이션 (제43.2조)에 근거한 표본 (또는 복수 표본의 1개)이다. 2001년 1월 1일 이전에 (제43.3조 참조), 종 또는 종 이하 계급의 화석식물의 새로운 분류군 학명의 프로토로그 <protologue>중에서 기준표본이 제시되어 있으나 (제40.1조), 합법적 출판의 일러스트레이션 속에서 기준표본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은 반드시 프로토로그 <protologue>에 일러스트레이션이 있는 표본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만약, 원기준표본이 합법적 출판의 다른 일러스트레이션과 일치하는 것이 확인되면 이 선정은 대체된다.

9.16.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 또는 이전에 지정된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이 소실되거나 또는 파손되었거나 남아있는 모든 원재료들이 파손되거나 소실된 기준표본과 분류학적으로 다른 경우, 지금까지 기준표본 지정에 의해 확립된 이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네오타입 (neotype, 신기준표본)을 지정할 수 있다 (제9.18조도 참조).

9.17.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 또는 네오타입 (neotype, 신기준표본) 지정은 단일 채집품을 지칭하지만, 이후에 복수의 표본임을 확인하더라도 이 지정은 수용해야한다 (제9.19조의 조건). 단,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 또는 네오타입 (neotype, 신기준표본)을 지정하는 추가 방식으로 이 표본들을 1개로 줄여서 지정할 수 있다.

예제 12. R. M. Austin은 캘리포니아에서 채집한 재료를 근간으로 *Erigeron plantagineus* Greene (1898)을 기재하였다. Cronquist (Brittonia 6: 173. 1947)는 "Type: *Austin s.n.*, Modoc County, California (ND)"을 쓰면서, ND에 있는 Austin의 자료를 [제1 단계의]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으로 지정하였다. Strother & Ferlatte (Madrono 35: 85. 1988)은 ND의 이 채집품에는 2개 표본이 있음을 알고, 이 중 1개 (ND-G No. 057228)를 [제2단계의]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문헌에서는 양쪽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의 지정 과정을 차례로 인용할 수 있다.

9.18. 제9.16조에 근거하여 선택된 네오타입 (neotype, 신기준표본)이 대신한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 또는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과 분류학적으로 다르다면 변경할 수 있다.

9.19. 제9.11-13조에 따라,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 또는 네오타입 (neotype, 신기준표본)을 최초로 지정한 (제7.9조와 제7.10조) 명명자의 의견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단, (a)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이 재발견되었을 때, 네오타입 (neotype, 신기준표본)의 경우 원재료가 재발견되었을 때 그 선택은 대체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만약 (b)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이나 네오타입 (neotype, 신기준표본)이 프로토크로그 <protologue> 내용과 중대하게 불일치하는 것이 확인되고, 프로토크로그 <protologue>에 모순되지 않는 다른 요소가 이용 가능할 때, (c) 제9.14조에 위반될 경우에는 최초의 선택을 변경할 수 있다.

예제 13. Baumann & al. (J. Eur. Orch. 34: 176. 2006)는 *Gymnadenia rubra* Wettst. (1889)의 프로토크로그 <protologue> 중에서 인용된 1개의 일러스트레이션을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으로 지정하였다. Wettstein은 이 지정에 우선해야 할 신타입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의 지정은 제9.12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따를 수 없다. Baumann & Lorenz (Taxon 60: 1775. 2011)은 신타입 (syntype, 등가기준표본) 중 1개를 선정하여 올바르게 이 학명의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으로 지정하였다.

9.20. 에피타입 (epitype, 추가기준표본)을 최초로 지정한 (제7.9조와 제7.10조) 명명자의 의견은 반드시 따라야 하며, 최초의 에피타입 (epitype, 추가기준표본)이 상실되거나 파괴되어 버렸을 경우에만 다른 에피타입 (epitype, 추가기준표본)을 지정할 수 있다. 에피타입 (epitype, 추가기준표본)이 보조하는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이나 네오타입 (neotype, 신기준표본)은 제9.19조에 따라, 또는 네오타입 (neotype, 신기준표본)의 경우에는 제9.18조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만약 에피타입 (epitype, 추가기준표본)과 이를 보조하는 기준이 분류학적으로 다른 것이 확인되고, 제9.18조, 또는 제9.19조를 적용할 수 없을 때, 해당 이름을 보전된 기준표본과 함께 보전명으로 제안할 수 있다 (제14.9조; 제57조도 참조).

① 노트 7. 에피타입 (epitype, 추가기준표본)은 기준표본을 지정한 명명자와 관련된 기준표본만을 보조한다. 만약 보조하는 기준이 변경된다면, 이 해당 에피타입 (epitype, 추가기준표본)은 변경된 기준표본에 대하여 그 지위를 상실한다.

9.21. 에피타입 (epitype, 추가기준표본)의 지정은 그 에피타입 (epitype, 추가기준표본)이 보관되어 있는 표본관이나 연구기관이 명시하지 않거나, 에피타입 (epitype, 추가기준표본)이 출판된 일러스트레이션일 경우, 충분히 직접적인 문헌인용 (제41.5조)이 되지 않았으면, 그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9.22. 1990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종 또는 종 이하 분류군의 학명의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 또는 네오타입 (neotype, 신기준표본)을 표본 또는 출판되지 않은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지정할 경우 그 기준표본을 보관하고 있는 표본관 또는 연구기관을 특정하지 않는 한, 이 지정은 유효하지 않다.

9.23. 2001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종 또는 종 이하 분류군 학명의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 또는 네오타입 (neotype, 신기준표본)을 지정할 경우 “lectotypus” 또는 “neotypus”이라고 하는 단어, 또는 그 축약형,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대어를 사용해서 표시하지 않는 한 그 지정은 유효하지 않다 (제7.10과 제9.9조도 참조).

권고 9A

9A.1.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이 지정되지 않은 학명의 기준을 지정할 때에는 그 학명 명명자의 연구 방법을 이해한 후에만, 실행해야 한다. 특히, 어떤 분류군이 기재되었을 때에 명명자가 이용한 재료의 일부는 명명자 자신의 표본관에 없을 수도 있고, 아예 다른 표본관에도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명명자의 표본관에 소장된 모든 재료들이 분류군의 기재 때 사용된 것이라고만 볼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9A.2.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의 지정은 관련된 식물군을 충분히 이해했을 경우에만 시도되어야 하며, 선정 때에는 프로토로그 (protologue)의 모든 점을 기본적인 지침으로 고려해야 한다.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지정은 인용된 최초의 요소, 또는 문헌에 언급된 인물이 채집한 표본을 자동적으로 골라내는 것과 같은 기계적인 방법은 비과학적이며, 장래의 혼란이나 변경의 가능성을 야기할 수 있어 피해야 한다.

9A.3.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을 선택할 때에는 프로토로그 (protologue)에 어긋나지 않는 한 학명의 명명자가 의도한 기록을 우선 시 해야 한다. 이런 기록은 원고의 노트, 표본대지의 주석표 (annotation), 구별할 수 있는 그림 및 “typicus (전형적인)”, “genuinus (진의)” 등의 소명을 말한다.

9A.4. 2개 또는 그 이상의 이질적인 요소가 포함되거나 원기재문 또는 분류군 고유특징에 인용되었을 경우, 이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을 지정하여야 한다. 특히, 다른 연구자가 1개 또는 그 이상의 요소를 다른 분류군으로 분리하였다면, 이 중 남은 1개는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단, 이러한 요소가 원기재문이나 분류군 고유특징과 불일치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제9.19조 참조).

권고 9B

9B.1. 네오타입 (neotype, 신기준표본)은 특히 조심스럽고, 동시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선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선정자에게는 프로토로그 (protologue)에 가장 잘 일치하는 표본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이외에는 아무런 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 선정이 오류가 있다면, 추후 변경해야 한다.

권고 9C

9C.1.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 네오타입 (neotype, 신기준표본), 및 에피타입 (epitype, 추가기준표본)의 복제표본은 각각 아이조렉토타입 (isolectotype, 추가선정기준표본), 아이조네오타입 (isoneotype, 추가신기준표본), 및 아이조에피타입 (isoepitype, 추가기준표본)으로 언급한다.

권고 9D

9D.1. 소장기관의 표본 지정 (제40조 노트 4 참조)은 추후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 네오타입 (neotype, 신기준표본), 또는 에피타입 (epitype, 추가기준표본)을 구분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영구적이고 명확한 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권고 40A.3도 참조).

제10조

10.1. 속 또는 속 이하 계급 이름의 기준은 종 이름의 기준표본이 된다 (단, 제10.4조에서 언급된 것은 제외). 기준을 지정, 또는 인용하기 위해서는 종 이름 자체로 충분하다. 즉, 종명은 기준표본과 완전히 동등하다고 간주한다.

① 노트 1. 제9조에서 정의된 것과 같이 “holotype” (홀로타입, 정기준표본), “syntype” (신타입, 등가기준표본), “lectotype” (렉토타입, 선정기준표본)과 같은 용어는 정확하게는 종보다 더 상위 계급의 학명의 기준에는 적용할 수 없지만, 유사하게 사용한다.

10.2. 프로토로그 <protologue> 중에 속 또는 속 이하 계급 이름에, 이보다 앞 또는 이와 동시에 출판된 1개 또는 복수의 출판된 종 이름의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 또는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이 분명히 포함한다면 (제10.3조 참조), 기준은 반드시 이 기준표본에서 선택해야 한다. 단, (a) 학명의 명명자에 의한 기준표본의 기술 (제22.6조, 제40.1조, 및 제40.3조) 또는 지정이 없는 경우 또는 (b) 인가명의 기준표본이 인가 처리에 포함된 종 이름의 기준 중에 선택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예외가 될 수 있다. 만약 이전 또는 동시에 출판된 종명의 기준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기준표본을 다르게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선택된 기준표본이 프로토로그 <protologue>나 또는 인가된 처리와 관련된 어떤 자료와도 같은 종이 아닌 것이 증명된다면, 이 선택은 대체된다.

예제 1. *Anacyclus*속은, 처음에 Linnaeus (1753)에 의해 정의된 것처럼 합법적으로 출판된 3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Cassini (Cuvier, Dict. Sci. Nat. 34: 104. 1825)는 *Anthemis valentina* L. (1753)을 *Anacyclus*속의 기준으로 지정하였지만, 이 종은 당초 *Anacyclus*속에 포함되지 않았다. Green (Sprague, Nom. Prop. Brit. Bot.: 182. 1929)은 “유티래 3종 중, 단 한 종이 이 속에 지금도 남아 있다”라고 하면서 *Anacyclus valentinus* L. (1753)을 “standard species (표준종)”으로 지정했고 (제7조, 예제 13을 참조), 따라서 Green의 이 선택은 반드시 수용되어야 한다 (제10.5조). Humphries (Bull. Brit. Mus. (Nat. Hist.), Bot, 7: 109. 1979)는 Clifford Herbarium (BM)에 있는 1개의 표본을 *Anacyclus valentinus*의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으로 지정하였다. 이 지정에 의해 이 표본은 *Anacyclus*속의 최종적인 기준표본이 되었다.

예제 2. *Castanella* Spruce ex Benth. & Hook. f. (Aug 1862)는 종명에 대한 기술 없이 Spruce에 의해 채집된 단일 표본에 따라 기재되었다. Swart (ING Card No. 2143. 1957)는 *Linden* 1360에 근거한 *C. granatensis* Planch. & Linden (Dec 1862)을 이 속의 기준으로 (‘T’이라 표시함) 처음 지정하였다. Spruce의 표본이 Linden의 자료와 같은 종이라 생각할 수 있는 한, 비록 Spruce의 표본이 *Paullinia paullinioides* Radlk. (1896) 기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Swart에 의한 기준표본 지정은 변경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학명 *P. paullinioides*는 “프로토로그 <protologue>보다 이전 또는 이와 동시에 출판된 종명”이 아니기 때문이다.

10.3. 제10.2조의 취지를 위해서 명명자가 수용하거나, 또는 이명화를 시킨 행위와 무관하게 합법적으로 출판된 종의 이름을 인용하거나, 또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출전 인용을 하거나, 또는 이전 또는 동시에 출판된 종의 이름의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이나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을 인용함으로써 종 이름의 기준표본을 확실히 포함하는 자체를 유효화 할 수 있다.

예제 3. *Elodes* Adans. (1763)의 프로토로그 <protologue>에는 Clusius (1601) “*Elodes*”와 Tournefort (1700)의 “*Hypericum*” 및 *Hypericum aegypticum* L. (1753)을 인용하고 있다. 이들 중 *Hypericum aegypticum*만이 합법적 출판된 종명의 인용이며, 다른 2가지 요소는 모두 종명의 기준은 아니다. 따라서 이후의 저자들이 *Elodes*의 기준표본으로 *H. elodes* L. (1759)을 지정하더라도, *H. aegypticum*의 기준표본이 *Elodes*의 기준표본이 된다 (Robson의 Bull. Brit. Mus. (Nat. Hist.), Bot. 5: 305, 336. 1977을 참조).

10.4. 오직 보전에 의해서만 (제14.9조) 속의 이름의 기준은 1개의 표본, 또는 일러스트레이션이 될 수 있다. 단, 가급적이면 속에 포함된 종의 학명 기준표본 보다는 프로토로그 <protologue> 작성 시 원명명자가 사용한 재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노트 2. 제10.4조에 의해서 지정된 요소가 종명의 기준일 경우, 이 종명을 그 속명의 기준표본으로 인용할 수 있다. 만약 이 요소가 종명의 기준표본이 아니라면, 기준표본 요소의 정명에 대하여 삽입하여 출전 인용을 첨가할 수 있다.

예제 4. *Physconia* Poelt (1965)는 표본 “‘*Lichen pulverulentus*, Germania, Lipsia in *Tilia*, 1767, Schreber (M)”을 보전기준표본으로 보전하였다. 이 표본은 *P. pulverulacea* Moberg (1979)의 기준표본이며, 이 학명은 현재, 부칙3 기준 등록에 인용된다.

예제 5. *Pseudolarix* Gordon (1858)은 Gordon Herbarium의 1개의 표본 (K No. 3455)을 보전기준표본으로 보전되었다. 이 표본은 어떤 종명의 기준도 아니며, 인정되는 실체 “[=*P. amabilis* (J. Nelson) Rehder ...]”가 부칙 3의 등록에 추가된 것이다.

10.5. 속 또는 속 이하 계급 이름의 기준표본을 최초로 지정(제7.9조와 제7.10조)한 명명자의 의견에는 따라야 하지만, 만약 (a) 프로토로그 <protologue>와의 사이에서 명백한 불일치가 밝혀지고 (또는, 제10.2(b)의 인가 작업에 의해 기준표본이 지정된 학명의 인가적 처리), 또는 (b) 이 지정이 대부분 기계적인 방법에 의한 선택에 근거를 둔 경우에는 최초의 명명자의 선택은 변경될 수 있다.

예제 6. Fink (Contr US Natl. Herb. 14(1): 2. 1910)는 “‘첫 종 (first species)’을 속의 기준으로 한다는 조항에 따라 속의 기준표본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Fink의 기준표본 지정은 제10.5조 (b)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Fink는 *Biatorina griffithii* (Ach.) A. Massal.를 *Biatorina* A. Massal.의 기준으로 지정하였지만, 이 선택은 이후 Santesson (Symb. Bot. Upsal. 12(1): 428. 1952)가 다른 기준표본인 *B. atropurpurea* (Schaer.) A. Massal.을 지정함에 따라 변경되었다.

***예제 7.** 미국식물명명규약 (*American Code of Botanical Nomenclature*)의 법규 <카논, Canon> 제 15조 (Bull. Torrey Bot. Club 34: 172. 1907)에 따른 저자들은 일정 규정 아래에서 적합하다고 알려진 “순서상으로 첫 번째 이명 <2개 이름, binomial>의 종”을 기준으로 지정하였는데, 이 기준의 선택 방법은 거의 기계적이라고 판단한다. 이런 이유로, *Delphinium* L.의 최초 기준표본 지정은 미국 규약에 따른 Britton (Britton & Brown, Ill. Fl. N. US, ed. 2, 2: 93. 1913)에 의해 *D. consolida* L. 이지만, 제10.5조(b)에 의해 Green (Sprague, Nom. Prop. Brit. Bot.: 162. 1929)이 지정한 *D. peregrinum* L.로 대체되었다.

10.6. 과 또는 과와 속 사이의 분류계급의 학명도 기준은 이 학명이 근거하고 있는 속명의 기준과 동일하다 (제18.1조 참조). 기준의 지정 또는 인용을 위해서는 속명만으로 충분하다. 속명에 근거하지 않은 과 또는 아과의 학명 기준은 상응하는 대체명 <alternative name> (제18.5조 및 제19.8조)의 기준과 동일하다.

10.7. 기준표본 지정의 원칙은, 과보다 상위계급의 분류군의 학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속명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기준표본 지정이 된 이름 (제16조 참조)은 제외되며, 이런 학명의 기준은 그 학명이 근거된 속명의 기준과 동일하다.

① 노트 3. 속의 하위 분류계급의 몇몇 학명의 기준표본 지정에 대해서는 제22.6조를 참조한다.

권고 10A

10A.1. 아직 기준표본이 지정되지 않은 속명의 속 이하 계급에서 조합명이 출판되었을 경우에는 만약 이 지정이 명백하다면, 속명의 기준은 명명법상의 기준표본이 지정된 해당 속 이하로부터 채택되어야 한다.

제3절

선취권

제11조

11.1. 특정의 한계, 위치 및 계급을 가지는 각각의 과 또는 과보다 하위의 분류군은 단 1개의 정명을 가질 수 있다. 특별한 예외로서 9개 과와 1개 아과에 대해서는 대체명 <alternative name>이 허용된다 (제18.5조 및 제19.8조 참조). 다만 모체의 한 부분, 그 이상의 남은 부분, 1개 또는 그 이상의 생활사 단계, 혹은 1개나 그 이상의 보존 상태를 포함하는 화석 분류군의 경우는 별개의 학명을 사용할 수 있다 (1.2조 참조).

예제 1. 속명 *Sigillaria* Brongn. (Mem. Mus. Hist. Nat. 8: 222. 1822)은 복수의 수피 단편 (fragment) 화석에 의해 명명되었다. 나중에 Brongniart (Arch. Mus. Hist. Nat. 1: 405. 1839)는 *Sigillaria*에 해당하는 부분이 보존된 줄기의 화석도 이 속에 포함시켰다. 일부가 이와 같은 생물 분류군일지도 모르는 해부학적 구조가 보존된 구과가 *Mazocarpon* M. J. Benson (Ann. Bot. (Oxford) 32: 569. 1918)로 불리는 한편, 압축된 같은 구과는 *Sigillariostrobus* Schimp. (Traite Paleont. Veg. 2: 105. 1870)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속명이 적어도 일부는 같은 생물체에 대해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들 모든 속명은 동등한 자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

11.2. 학명은, 해당 학명이 출판된 계급 외에서는 선취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단 제 53.4조 참조).

예제 2. *Campanula* sect. *Campanopsis* R. Br. (Prodr.: 561. 1810)은 속으로 취급할 때에는 이형이 명 (분류학적 이명)인 *Cervicina* Delile (1813)에 대해 보존된 *Wahlenbergia* Roth (1821)를 사용하며, *Campanopsis* (R. Br.) Kuntze (1891)라 하지 않는다.

예제 3. *Solanum* subg. *Leptostemonum* Bitter (Bot. Jahrb. Syst. 55: 69. 1919)는 아속의 기준인 *S. mammosum* L.을 포함하며, 이 계급 중에서 가장 먼저 출판된 이용이 가능한 이름이기 때문에 아속의 정명이 된다. 동형의 *S. sect. Acanthophora* Dunal (Hist. Nat. Solanum: 131, 218. 1813)는 *S. sect. Leptostemonum* Dunal (Candolle, Prodr. 13 (1): 29, 183. 1852)을 포함한 서명이기 때문에, 해당 계급 <절, section> 밖에서는 선취권을 가질 수 없다.

예제 4. *Helichrysum stoechas* subsp. *barrelieri* (Ten.) Nyman (Consp. Fl. Eur.: 381. 1879)은 종의 계급으로 다룰 때에는 *Gnaphalium conglobatum* Viv. (1824)에 의해 *H. conglobatum* (Viv.) Steud. (1840)로 불리며, *G. barrelieri* Ten. (1835-1838)에 의한 *H. barrelieri* (Ten.) Greuter (1967)로 명명하지 않는다.

예제 5. *Magnolia virginiana* var. *foetida* L. (1753)가 종으로 계급이 격상되었을 때에는 *M. foetida* (L.) Sarg. (1889)가 아니라, *Maglolia grandiflora* L. (1759)로 불린다.

① **노트 1.** 제11조 규정은 동일 분류군에 적용된 다른 이름 간에 선취권을 결정함이다. 동일명의 별개 분류군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11.3. 정명은 과부터 속까지 어떤 분류군에 대해서도 같은 계급 내에서 가장 먼저 적법하게 출판된 이름이다. 단, 보전(제14조 참조)에 의해 선취권이 제한될 경우나, 또는 제11.7조, 제15조, 제19.4조, 제56조, 또는 제57조가 적용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예제 6. *Aesculus* L. (1753), *Pavia* Mill. (1754), *Macrothyrus* Spach (1834) 및 *Calothyrsus* Spach (1834)이 1개 속으로 취급될 때에는 해당 정명은 *Aesculus* L. 가 된다.

11.4. 속 하위의 계급 분류군에 있어서, 각 분류군의 정명은 같은 계급 중에서 가장 먼저 출판된 적명의 최종소명¹과 이 이름이 귀속되는 속 또는 종의 정명과의 조합이 된다. 단, 아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즉, (a) 제14조, 제15조, 제56조 및 제57조에 의해 선취권이 제한될 경우 (b) 만약 조합의 결과가 제32.1조(c)에 의해 합법적으로 출판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제53조에 의해 서명일 경우 또는, (c) 만약 제11.7조, 제22.1조, 또는 제26.1조에서 다른 조합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이다.

예제 7. *Primula* sect. *Dionysiopsis* Pax (Jahresber. Schles. Ges. Vaterland. Kultur 87: 20. 1909)는 *Dionysia* Fenzl로 옮길 때, *D.* sect. *Dionysiopsis* (Pax) Melch. (Mitt. Thuring. Bot. Vereins 50: 164-168. 1943)가 되며, 대체명 (alternative name)인 *D.* sect. *Ariadna* Wendelbo (Bot. Not. 112: 496. 1959)는 제 52.1조에 의해 서명이 된다.

예제 8. *Antirrhinum spurium* L. (1753)이 *Linaria* Mill.로 옮길 때, *L. spuria* (L.) Mill. (1768)이 된다.

예제 9. Cassini는 *Serratula chamaepeuce* L. (1753)을 *Ptilostemon* Cass.로 옮겼을 때, 서법적(제 52.1조)으로 이 종을 *P. muticus* Cass. (1826)로 명명하였다. 이 속에서 정명은 *P. chamaepeuce* (L.) Less. (1832)이다.

예제 10. *Rubus aculeatiflorus* var. *taitoensis* (Hayata) T. S. Liu & T. Y. Yang (Annual Taiwan Prov. Mus. 12: 12. 1969)의 정명은 *R. taitoensis* Hayata var. *taitoensis*이다. 왜냐하면 *R. taitoensis* Hayata (1911)가 *R. aculeatiflorus* Hayata (1915)에 대해 선취권이 있기 때문이다.

예제 11. Ball이 *Spartium biflorum* Desf. (1798)을 *Cytisus* Desf.로 옮겼을 때에는 올바른 대체명 <replacement name> *C. fontanesii* Spach ex Ball (1878)을 제안하였다. 왜냐하면, 이전에 *C. biflorus* L'Hér. (1791)이 합법적으로 출판되었기 때문에, *Spartium biflorum*에 기준을 둔 *C. biflorus*는 제53.1조에 의해 서명이기 때문이다.

예제 12. *Spergula stricta* Sw. (1799)가 *Arenaria* L.로 옮겼을 때에 다른 기준에 근거한 학명 *A. stricta* Michx. (1803)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A. uliginosa* Schleich. ex Schldtl. (1808)를 사용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Minuartia* L.로 옮겨지면 종소명 *stricta*가 다시 이용이 가능해져서 이 종은 *M. stricta* (Sw.) Hiern (1899)로 불린다.

1 여기와 다른 부분에 언급되는 규약 중에서 문구인 “최종소명 (final epithet)”은 속 하위, 종 혹은 변종의 어떤 계급이던 간에, 특정 조합의 순서의 마지막에 언급되는 소명을 의미한다.

예제 13. *Arum dracunculus* L. (1753)가 *Dracunculus* Mill.로 옮겨질 때 Linnaeus의 종소명을 사용하면 반복명 <tautonym> (제23.4조)이 되기 때문에, *D. vulgaris* Schott (1832)라고 명명한다.

예제 14. *Cucubalus behen* L. (1753)이 *Behen* Moench 속으로 옮겨질 때 반복명 (tautonym) "*B. behen*"을 피하여 적법적으로 *B. vulgaris* Moench (1794)으로 재명명 되었다. *Silene* L.에서도, 종소명 *behen*은 *S. behen* L. (1753)이 존재하고 있어 사용할 수 없고, 따라서 대치명 <replacement name> *S. cucubalus* Wibel (1799)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종소명 *vulgaris*가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 대치명 <replacement name>은 서명 (제52.1조)이 된다. *Silene*에서는, 이 종의 정명은 *S. vulgaris* (Moench) Garcke (1869)이 된다.

예제 15. *Helianthemum italicum* var. *micranthum* Gren. & Godr. (Fl. France 1: 171. 1847)이 *H. penicillatum* Thibaud ex Dunal의 변종으로 변동될 때 변종소명은 유지하면서 *H. penicillatum* var. *micranthum* (Gren. & Godr.) Grosser (Engler, Pflanzenr. IV. 193 (Heft 14): 115. 1903)로 명명한다.

예제 16. *Thymus serpyllum* var. *arcticus* Durand (Pl. Kaneanae Groenl. 196. 1856)에 근거한 조합 *T. praecox* subsp. *arcticus* (Durand) Jalas (Veröff. Geobot. Inst. ETH Stiftung Rübel Zürich 43: 190. 1970)의 최종소명은 아종의 계급 조합 *T. serpyllum* subsp. *arcticus* (Durand) Hyl. (Uppsala Univ. Arsskr. 1945 (7): 276. 1945)에서 최초로 사용 되었다. 그러나 만약 *T. britannicus* Ronninger (1924)이 같은 분류군에 포함된다면, 아종 계급에서의 정명은 *T. praecox* subsp. *britannicus* (Ronninger) Holub (Preslia 45: 359. 1973)이 된다. 왜냐하면, 최종소명이 조합 *T. serpyllum* subsp. *britannicus* (Ronninger) P. Fourn. (Quatre Fl. France: 841. 1938, "S.-E. [Sous-Espèce] Th. Britannicus")이 아종 계급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① 노트 2. 속 이하 계급의 학명의 합법적 출판은 동시에 동일명이 되는 어떠한 조합도 배제한다 (제53조). 이 경우 같은 속이나 종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동일 최종의 종소명 중 다른 학명과 비교한 선취권의 고려도 하지 않는다.

예제 17. Tausch는 신속 *Alkanna*에 2종을 포함시켰다: *A. tinctoria* Tausch (1824)는 Linnaeus (1762)의 "*Anchusa tinctoria*"에 근거한 새로운 종이며, *A. matthioli* Tausch (1824)는 *Lithospermum tinctorium* L. (1753)에 근거한 대치명 <replacement name>이다. 두 학명은 적법하며, 1824년부터 선취권을 가진다.

예제 18. Raymond-Hamet는 *Cotyledon sedoides* DC. (1808)와 *Sempervivum sedoides* Decne. (1844) 두 종을 *Sedum*속으로 옮겼다. 그는 뒤늦게 출판한 후자인 학명 *Sempervivum sedoides*의 소명을 *Sedum*속에서 조합하여 *Sedum sedoides* (Decne.) Raym.-Hamet (1929)로 하여, 먼저 출판된 전자인 학명에 대해서는 *Sedum candollei* Raym.-Hamet (1929)라는 대치명 <replacement name>을 출판하였다. Raymond-Hamet을 쓴 학명은 모두 적명이다.

11.5. 과 및 과 이하의 계급 분류군에서 동일 계급의 동등한 선취권을 가진 복수의 적명이 있거나, 또는 동일 계급에서 동등한 선취권 <equal priority>을 가진 학명으로 이용 가능한 최종소명이 여러 개가 존재해서 선택이 가능할 때에는, 선택된 학명의 선취권은 유효하게 출판 (제29-31조)된 첫 선택된 학명이며, 해당 계급의 같은 기준표본이면서 최종소명의 적법한 조합의 선택은 다른 경합하는 학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단 제11.6조 참조; 또한 권고 42A, 2도 참조).

① 노트 3. 제11.5조에서 언급된 선택이란, 경합하는 학명 중에서, 또는 필요한 조합의 최종소명 중에서, 1개를 채택하고 동시에 다른 것을 폐기할 것인지, 이명으로 한 것인지, 또는, 동형이명 (명명법상 이명)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예제 19. *Dentaria* L. (1753)과 *Cardamine* L. (1753)이 합쳐지면, 결정되는 속은 *Cardamine*라 부른다. 왜냐하면, 최초로 이를 합친 Crantz (Cl. Crucif. Emend: 126. 1769)가 이 학명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예제 20. *Claudopus* Gillet (1876), *Eccilia* (Fr.: Fr.) P. Kumm. (1871), *Entoloma* (Fr. ex Rabenh.) P. Kumm. (1871), *Leptonia* (Fr.: Fr.) P. Kumm. (1871), 및 *Nolanea* (Fr.: Fr.) P. Kumm. (1871)이 모두 1개 속으로 합쳐질 때, Kummer가 동시에 출판한 속명 중에서 1개만을 사용해야 한다. Donk (Bull. Jard. Bot. Buitenzorg, ser. 3, 18 (1): 157. 1949)는 *Entoloma*를 선택하였는데 이 학명이 다른 학명에 대해 선취권을 갖는다.

예제 21. Brown (Tuckey, Narr. Exped. Zaire: 484. 1818)는 최초로 *Waltheria americana* L. (1753)과 *W. indica* L. (1753)을 합치면서, 합쳐진 분류군의 학명으로 *W. indica*를 선택하였다. 따라서 이 학명이 *W. americana*에 대해 선취권을 갖는다.

예제 22. Baillon (Adasonia 3: 162. 1863)은 최초로 *Sclerocroton integerrimus* Hochst. (1845)와 *S. reticulatus* Hochst. (1845)를 합쳤을 때, 합쳐진 분류군의 학명으로 *Stillingia integerrima* (Hochst.) Baill.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해당 종이 어떤 속 (*Sclerocroton*, *Stillingia*, 또는 그 이외의 속)에 귀속되더라도, *Sclerocroton integerrimus*는 *S. reticulatus*에 대해 선취권을 갖는다.

예제 23. Linnaeus (1753)는 *Verbesina alba*와 *V. prostrata*를 동시에 출판하였는데, 후에 Linnaeus (1771)는 *V. alba*를 이명으로 인용하면서 서명인 *Eclipta erecta*와 *V. prostrata*를 근거로 *E. prostrata*를 출판하였다. 이 분류군을 최초로 합친 Roxburgh (Fl. Ind., ed. 1832, 3: 438. 1832)는 *E. prostrata* (L.) L.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V. prostrata*가 *V. alba*에 대해 선취권을 가진다.

예제 24. Don (1832)에 의해 동시에 출판된 *Donia speciosa*와 *D. fomesa*는 Lindley (1835)에 의해 서법적으로 각각 *Clianthus oxleyi*, *C. dampieri*로 재명명하였다. Brown (Sturt. Narr. Exped. C. Australia 2: 71. 1849)은 2종을 1종으로 합치면서, 서명 *C. dampieri*를 채택하고 *D. speciosa*와 *C. oxleyi*를 이명으로 인용하였는데, 이는 제11.5조를 충족하지 못한다. *Donia speciosa*와 *C. dampieri*를 이명으로 출판한 *Clianthus speciosus* (G. Don) Asch. & Graebn. (1909)는 *C. speciosus* (Endl.) Steud. (1840)의 후동일명이기 때문에 서법적이며, 제11.5조 선택의 조건을 역시 충족하지 못한다. Ford & Vickery (1950)는 합법적인 조합의 *C. formosus* (G. Don) Ford & Vickery를 출판하면서, *D. formosa*와 *D. speciosa*를 이명으로 인용하였다. 그러나 후자인 *speciosa*라는 소명은 *Clianthus*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선택은 불가능하며, 또한 제 11.5조에 반하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 Thompson (1990)는 *Swainsona formosa* (G. Don) Joy Thomps.의 조합을 출판하고, *D. speciosa*를 이명으로 처리함에 따라, 비로소 유효한 선택을 최초로 출판하였다.

11.6. 자동명은 자동명이 만들어진 계급 안에서 같은 날짜와 계급의 학명에 대해 선취권을 가진 것으로 취급한다.

① 노트 4. 제11.6조의 조건에 의하면 자동명의 최종소명이 새로운 조합 속에서 사용되었을 때에는, 조합의 기본명은 이 자동명에서 유래한 학명이거나, 자동명이 유래한 학명의 기본명이 존재한다면, 그 기본명이다.

예제 25. *Synthyris* subg. *Plagiocarpus* Pennell (Proc. Acad. Nat. Sci. Philadelphia 85: 86. 1933)의 출판과 동시에 자동명인 *Synthyris* Benth. (1846) subg. *Synthyris*가 생성된다. 만약, subg. *Plagiocarpus*를 포함한 *Synthyris*가 *Veronica* L. (1753)의 아속으로 인정되면, 정명은 *V. subg. Synthyris* (Benth.) M. M. Mart. Ort. & al. (Taxon 53: 440. 2004)가 되며, 이 이름은 *S. subg. Plagiocarpus*에 의한 *Veronica*속 내 조합에 대해 선취권을 가진다.

예제 26. *Heracleum sibiricum* L. (1753)은 *H. sibiricum* subsp. *lecokii* (Godr. & Gren.) Nyman (Consp. Fl. Eur.: 290. 1879)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생성된 *H. sibiricum* subsp. *sibiricum*을 포함한다. 이렇게 한계가 정해진 *H. sibiricum*이 *H. sphondylium* L. (1753)의 아종으로 포함될 때에는, 그 아종의 정명은 "*H. sphondylium* subsp. *lecokii*"가 아니고, *H. sphondylium* subsp. *sibiricum* (L.) Simonk. (Enum. Fl. Transsilv.: 266. 1887)이 된다.

예제 27. *Salix tristis* var. *microphylla* Andersson (Salices Bor.-Amer.: 21. 1858)의 출판으로 자동명 *S. tristis* Aiton (1789) var. *tristis*가 1858년에 생성되었다. 만약, var. *microphylla*를 포함한 *S. tristis*가 *S. humilis* Marshall (1785)의 변종으로 인정된다면, 그 정명은 *S. humilis* var. *tristis* (Aiton) Griggs (Proc. Ohio Acad. Sci. 4: 301. 1905)이 된다. 그러나 만약 *S. tristis*의 두 변종이 *S. humilis*의 변종으로 인정된다면, *S. humilis* var. *tristis*와 *S. humilis* var. *microphylla* (Andersson) Fernald (Rhodora 48: 46. 1946)를 모두 사용한다.

예제 28. Rollins & Shaw에 의한 분류체계에 따르면, *Lesquerella lasiocarpa* (Hook. ex A. Gray) S. Watson (1888)은 subsp. *lasiocarpa* (종의 기준을 포함, 저자명 없이 인용)와 subsp. *berlandieri* (A. Gray) Rollins & E. A. Shaw의 2개 아종으로, 후자의 아종은 2변종을 포함한다. 이 분류에서 subsp. *berlandieri*의 기준을 포함한 변종의 정명은 *L. lasiocarpa* var. *berlandieri* (A. Gray) Payson (1922)이며, *L. lasiocarpa* var. *berlandieri* (저자명 없이 인용)도, *Synthlipsis berlandieri* var. *hispida* S. Watson (1882)에 의한 *L. lasiocarpa* var. *hispida* (S. Watson) Rollins & E. A. Shaw (1972)도 아니다. 왜냐하면, 학명 *S. berlandieri* var. *hispida* S. Watson의 출판으로 생성된 자동명 *S. berlandieri* A. Gray var. *berlandieri*이 변종의 계급에서는 var. *hispida*에 대한 선취권을 갖는다.

11.7. 선취권의 취지를 위해 화석의 학명 (규조류는 제외)은 화석에 근거한 학명에서만 선취권을 거른다.

예제 29. 속명 *Tuberculodinium* D. Wall (1967)은 비화석 속명 *Pyrophacus* F. Stein (1883)의 생활 주기의 동일 종류의 시스트 (cysts)가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화석속의 학명을 사용해도 좋다.

예제 30. 통상 주라기의 잎-압축 화석은 *Ginkgo huttonii* (Sternb.) Heer, 또는 *Ginkgoites huttonii* (Sternb.) M. Black의 학명으로 언급한다. 두 학명은 이 주라기의 화석종을 확실하게 비화석 속인 *Ginkgo* L.로 볼 것인지, 또는 트라이아스기의 잎-압축 화석 *Ginkgoites obovata* (Nath.) Seward를 기준으로 하는 화석 속 *Ginkgoites* Seward로 판단할지에 따라서 모두 규약에 부합한다.

11.8. 비화석 기준에 근거하는 생물체 (규조류는 제외)의 학명은 화석기준에 근거하는 같은 계급의 학명에 대하여 선취권을 가진다.

예제 31. 만약 비화석 속의 *Platycarya* Siebold & Zucc. (1843)와 화석 속의 *Petrophiloides* Bowerb. (1840)가 합쳐진다면, *Petrophiloides*가 먼저 출판 되었지만 합쳐진 속의 정명은 *Platycarya*가 된다.

예제 32. 속명 *Metasequoia* Miki (1941)는 화석 *M. disticha* (Heer) Miki의 기준을 근간으로 하였다. 비화석 종인 *M. glyptostroboides* Hu & W. C. Cheng가 발견 된 이후, 비화석 기준에 따른 *Metasequoia* Hu & W. C. Cheng (1948)의 보전명이 승인되었다. 이런 보전 작업이 없었다면 *M. glyptostroboides*에 근거한 새로운 속 이름은 *Metasequoia* Miki에 대해 선취권을 가진 것으로 처리되었어야 한다.

예제 33. *Hyalodiscus* Ehrenb. (1845)는 화석을 기준으로 하는 *H. laevis* Ehrenb. (1845)에 근거한 규조의 속명이며 비화석 종도 포함한다. 만약 나중에 출판한 비화석 기준에 근거한 이명의 속명이 있다 하더라도, 이 학명은 *Hyalodiscus*에 대해 선취권이 있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예제 34. Boalch and Guy-Ohlson (Taxon 41: 529-531. 1992)은 비규조류 (프라시노조류)의 2속인 *Pachysphaera* Ostenf. (1899)와 *Tasmanites* E. J. Newton (1875)을 합쳤다. *Pachysphaera*는 비화석 기준에 근거하며, *Tasmanites*는 화석 기준에 근거한다. 1992년에 시행된 명명규약 하에서는 *Tasmanites*에 선취권이 있어 채택하였지만, 현행 명명규약 제11.8조 하에서는 제외되는 대상이 규조류뿐이며, 조류 일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Pachysphaera*라는 이름이 합쳐진 속의 정명이 된다.

① 노트 5. 제53조의 조건에 의하면 기준표본이 화석이던 비화석이던 간에 후일동명은 서명이 된다.

예제 35. 비화석 기준에 근거한 *Endolepis* Torr. (1861)는 화석 기준에 근거한 *Endolepis* Schleid. (1846)의 후동일명으로 서명이 된다.

예제 36. 비화석 기준표본에 근거한 *Cornus paucinervis* Hance (1881)는 화석 기준표본에 근거한 *C. paucinervis* Heer (Fl. Tert. Helv. 3: 289. 1859)의 후동일명으로 서명이다.

예제 37. 비화석 기준표본에 근거한 *Ficus crassipes* F. M. Bailey (1889), *F. tiliifolia* Baker (1885), 및 *F. tremula* Warb. (1894)는 모두 화석 기준표본에 근거한 *F. crassipes* (Heer) Heer (1882), *F. tiliifolia* (A. Braun) Heer (1856), 및 *F. tremula* Heer (1874)의 후동일명으로 서명이다. 따라서 비화석 기준표본에 근거한 3개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 각 선동일명에 대해 보전화시켰다.

11.9. 선취권의 목적상, 잡종으로 부여된 라틴어 형식의 학명은 이에 상응하는 계급의 비 잡종분류군의 학명과 동일한 조항을 따른다 (단 제H8조 참조).

예제 38. ×*Solidaster* H. R. Wehrh. (1932)는 *Aster* L. 과 *Solidago* L.의 잡종에 대한 학명으로 ×*Asterago* Everett (1937)에 대해 선취권을 갖는다.

예제 39. *Anemone* ×*hybrida* Paxton (1848)는 *A.* ×*elegans* Decne. (pro sp.) (1852)에 대해 선취권을 갖는다. 두 분류군을 모두 *Anemone hupehensis* (Lemoine & É. Lemoine) Lemoine & É. Lemoine × *A. vitifolia* Buch.-Ham. ex DC.의 잡종으로 본 경우에는 *Anemone* ×*hybrida* Paxton 가 올바른 학명이 된다 (제H4.1조).

예제 40. *Camus* (Bull. Mus. Natl. Hist. Nat. 33: 538. 1927)는 ×*Agroelymus* E. G., *Camus* ex *A. Camus*를 기재문이나 분류군 고유특징 없이 양친의 속명 (*Agropyron* Gaertn.와 *Elymus* L.)만을 언급하면서 출판하였다. 이 학명은 당시 실시된 규약에 의하면 합법적으로 출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Rousseau (Mem. Jard. Bot. Montreal 29: 10-11. 1952)는 라틴어의 분류군 고유특징을 수반해서 출판하였다. 그러나 당 규약 (제H.9조)에서는 학명 ×*Agroelymus*의 출판년도는 1927년이며, 1952년이 아니라서 이 학명은 ×*Elymopyrum* Cugnac (Bull. Soc. Hist. Nat. Ardennes 33: 14. 1938)에 대해 선취권이 있어 앞선다.

11.10. 선취권의 원칙은 과 이상 상위 계급 분류군의 학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단, 권고 16A 참조).

제12조

12.1. 학명은 합법적으로 출판되지 않는 한, 이 규약에서는 계급을 갖지 못한다. (제 6.3조; 단, 제14.15조 참조).

제4절

선취권 원칙의 제한

제13조

13.1. 여러 생물체 (조류, 균류와 식물)의 학명의 합법적 출판은 각기 다음과 같은 날짜를 출발점으로 정한다 (각 생물체에 대해 각각 주어진 날짜에 출판한 것으로 함).

비화석 생물체:

- (a) 종자식물 (SPERMATOPHYTA)과 양치식물 (PTERIDOPHYTA), 속과 그 이하 학명, 1753년 5월 1일 (Linnaeus, *Species plantarum*, ed. 1). 단, 속보다도 상위의 학명은 1789년 8월 4일 (Jussieu, *Genera plantarum*).
- (b) 선류 (蘚類, MUSCI) [물이끼과 (*Sphagnaceae*)는 제외], 1801년 1월 1일 (Hedwig, *Species muscorum*).
- (c) 물이끼과 (SPHAGNACEAE)와 우산이끼류 (HEPATICAE), 뿔이끼끼강 (ANTHOCEROTAE) 속과 그 이하 학명, 1753년 5월 1일 (Linnaeus, *Species plantarum*, ed. 1). 단, 속보다도 상위의 분류군은 1789년 8월 4일 (Jussieu, *Genera plantarum*).
- (d) 균류 (전문 제8, FUNGI), 1753년 5월 1일 (Linnaeus, *Species plantarum*, ed. 1)]. Persoon (*Synopsis methodica fungorum*, 1801년 12월 31일)에 의해 채택된 녹병균목 (*Uredinales*), 갓노트균목 (흑수병균, *Ustilaginales*) 및 배균류 [*Gasteromycetes* (s. 1.)]의 학명과 Fries [*Systema mycologicum*, vol. 1 (1821년 1월 11일)부터 vol. 3, 추가 색인 (index) (1832년) 및 "*Elenchus fungorum*", vol. 1-2]에 의해 채택된 다른 균류 [접균류 (slime moulds) 제외]의 학명은 인정된다 (제15조 참조). 명명법상, 지의류에 주어진 학명은 지의류를 구성하는 균류에게 적용한다. 미포자충목(微孢子蟲目, *Microsporidia*)의 이름은 국제동물명명규약을 적용한다 (전문 제8 참조).
- (e) 조류 (藻類, ALGAE), 1753년 5월 1일 (Linnaeus, *Species plantarum*, ed. 1). 예외:
구슬말과 (NOSTOCACEAE HOMOCYSTEAE), 1892년 1월 1일 (Gomont, "Monographie des Oscillariées", in *Ann. Sci. Nat. Bot.*, ser. 7, 15: 263-368; 16: 91-264). Gomont의 "Monographie"의 2개 부분은 각각 1892년과 1893년에 출판하였지만, 1892년 1월 1일에 동시에 출판한 것으로 한다.

구슬말과 (NOSTOCACEAE HETEROCYSTEAE), 1886년 1월 1일 (Bomet & Flahault, "Révision des Nostocacées hétérocystées", in Ann Sci. Nat. Bot., ser. 7, 3: 323-381; 4: 343-373; 5: 51-129; 7: 177-262). "Révision"의 4개의 부분은 각각 1886년, 1886년, 1887년, 1888년에 출판하였지만, 1886년 1월 1일에 동시에 출판한 것으로 한다.

먼지말과 [DESMIDIACEAE (s. 1.)], 1848년 1월 1일 (Ralfs, *British Desmidiaceae*).

붓뚜껑말과 (OEDOGONIACEAE), Eoanswk 1900년 1월 1일 (Hirn, "Monographie und Iconographie der Oedogoniaceen", In Acta Soc. Sci, Fenn. 27(1)).

화석 식물 (구조류는 제외):

(f) 모든 생물체, 1820년 12월 31일(Sternberg, *Flora der vorwelt, Versuch 1: 1-24, t. 1-13*). Schlotheim의 *Petrefactenkunde* (1820)은 1820년 12월 31일 전에 출판한 것으로 간주한다.

13.2. 제13.1조의 목적을 위하여, 학명이 속하는 생물체는 해당 학명의 기준표본이 인정되는 분류학상의 위치에 의해 결정한다.

예제 1. *Porella*속과 이 속의 유일한 종인 *P. pinnata*는 Linnaeus (1753)에 의해 선류(蘚類)로 명명되었다; *P. pinnata*의 기준표본은 현재는 태류(苔類)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이 학명은 1753년에 합법적으로 출판된 것이다.

예제 2. *Lycopodium* L. (1753)의 지정된 기준은 *L. clavatum* L. (1753)이며 이 기준표본은 현재는 양치식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식물은 Linnaeus에 의해 선류에 포함된 것이지만, 그 속명과 Linnaeus에 의해 이 속에 포함된 양치식물의 종의 학명은 동시에 1753년에 합법적으로 출판되었다.

13.3. 명명법상, 기준표본이 화석 기원이 아닌 한, 학명은 비화석 분류군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화석 자료는 원산출지의 층서학적 (stratigraphic) 관계에 의해 비화석 자료로부터 구별된다. 층서학적 관계가 의심스러운 경우와 구조류의 경우에는 비화석 분류군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13.4. Linnaeus의 *Species plantarum*, ed. 1 (1753) 및 ed. 2 (1762-63)에 최초로 언급된 속명은 Linnaeus의 *Genera plantarum*, ed. 5 (1754) 및 ed. 6 (1764)에서 출판된 해당 속명의 최초의 기재문과 연관시킨다. *Genera plantarum*, ed. 5에서 사용된 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Species plantarum*, ed. 1에 포함되어 있는 속명의 철자를 변경할 수 없다.

1 **노트 1.** Linnaeus의 *Species plantarum*, ed. 1 (1753)은 각각 1753년 5월과 8월에 출판된 2 권으로 구성되지만, 1753년 5월 1일에 동시에 출판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1조).

예제 3. 속명 *Thea* L. (Sp. Pl.: 515, 1753년 5월 24일; Gen. Pl., ed. 5: 252, 1754)와 *Camellia* L. (Sp. Pl.: 698, 1753년 8월 16일; Gen. Pl., ed. 5: 311, 1754)은 1753년 5월 1일 동시에 출판된 것이다. 이 두 속을 최초로 합친 Sweet (Hort. Suburb Lond.: 157, 1818)는 *Camellia*를 선택하면서, *Thea*속을 이명으로 인용하여, 제11.5조에 의해 *Camellia*가 정명이 된다.

예제 4. *Sideroxylon* L. (1753)는 Linnaeus가 *Genera planrarum*, ed. 5. (1754)에서 "*Sideroxylum*"이라고 쓴다고 해서 변경해서는 안 된다. Linnaeus가 1754년 채택한 *Brunfelsia* L. (1753, 정자법상의 보전명은 '*Brunfelsia*')는 오직 보전에 의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부칙 3 참조).

제14조

14.1. 본 규약에서는 명명규약의 제반 규약, 특히 제13조가 규정하는 명명상의 출발점의 날짜에 시작되는 선취권의 원칙을 엄밀하게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명명법상의 불리한 변경을 피하기 위해서, 보전되는 과, 속 및 종의 학명 목록 (*nomina conservanda*)을 부칙 2-4에 제시하였다 (권고 50E, 1참조). 보전명은 해당 학명이 초기 서명이었다고 해도 적명이 된다. 속명 또는 종명의 기본명이 보전 없이 현재 상황에서 계속 사용할 수 없을 때, 속 이하 계급 또는 종 이하 분류군의 학명은 부칙 3과 4에 각각 보전된 기준표본과 동시에 목록화하여 보전할 수 있다

14.2. 학명의 보전은 명명법의 안정성을 위해서 학명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14.3. 보전명과 폐기명의 적용은 모두 명명법상의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보전속명의 기준으로 인용된 종명의 기준표본은 필요하다면 보전하여 부칙 3에 목록화 할 수 있다.

14.4. 과 또는 속의 보전명은 같은 기준에 근거한 같은 계급의 다른 모든 학명 (동형이 명, 즉, 명명법상의 이명이며 폐기됨)이 관계되는 리스트에 폐기명으로서 인용되는지 아닌지에 무관하게 보전된다. 또, 폐기명으로 리스트 된 다른 기준에 근거한 학명 (이형, 즉, 분류학상의 이명)에 대해 보전된다. 종의 보전명은 폐기명으로 리스트 된 모든 학명에 반해, 또 폐기명에 근거한 모든 조합에 반해 보전된다.

1 **노트 1.** 제 14.5조 (제14.9조도 참조)에 의한 예외로서, 본 명명규약에서는 해당 학명 자체에 반한 학명의 보전, 즉 동명 (同名, 제6조 노트 2: 같은 기준에 근거한 동일한 학명이지만 다른 문헌과 다른 날짜에 합법적으로 출판되고, 또한 다른 저자명을 가진 학명)에 대한 것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오직 먼저 알려진 동명만이 부칙2A, 3, 그리고 4에 제시되어 있다.

1 **노트 2.** 부칙4에 보전명 또는 폐기명으로서 열거된 종명은 새 분류군의 학명이거나, 또는 보다 먼저 출판된 학명에 근거한 조합명으로 출판되었다. 먼저 출판된 학명이 "폐기명에 근거한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제14.4조), 이 학명의 사용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예제 1. *Lycopersicon. esculentum* Mill. (1768)을 사용하고 *L. lycopersicum* (L.) H. Karst (1882)를 폐기하는 것은 동형에 근거한 *Solanum lycopersicum* L. (1753)의 사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14.5. 보전명이 다른 기준에 근거하는 1개 또는 복수의 학명과 경합하고 해당 보전명이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보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합하는 학명 중에서 가장 먼저 출판된 것이 제11조에 의해 채택된다. 그러나 보전명 목록에 등록되지 않은 학명인 보전과명은 부칙 2B에 제기하였다.

예제 2. *Mahonia* Nut. (1818)이 *Berberis* L. (1753)와 합쳐질 경우 *Mahonia*는 보전명이고, *Berberis*는 보전명이 아니지만, 통합된 속의 학명은 앞서 출판된 *Berberis*가 된다.

예제 3. *Nasturtium* W. T. Aiton (1812)는 동일명인 *Nasturtium* Mill. (1754)과 동형(명명법상의) 이명인 *Cardaminum* Moench (1794)에 대해서만 보전되어 있다. 따라서 *Nasturtium*이 *Rorippa* Scop. (1760)와 합쳐질 경우 속명은 *Rorippa*를 사용해야 한다.

예제 4. *Combrtaceae* R. Br. (1810)는 목록에 게재되지 않은 선형하는 다른 이명 *Terminaliaceae* J. St Hil. (Expos. Fm. Nat. 1: 178. 1805)에 대해 보전되어 있다.

14.6. 만약 해당 보전 학명이 동일한 계급의 분류군 이름과 다른 분류군으로 판단될 경우, 기존의 이형이명(분류학적 이명)에 대하여 보전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11조에 의해 해당 이형이명은 복원되어야 한다.

예제 5. 속명, *Luzuriaga* Ruiz & Pav. (1802)는 이보다 일찍 출판한 학명 *Enargea* Banks ex Gaertn. (1788)와 *Callixene* Comm. ex Juss. (1789)에 대해 보전되어 있으나, 만약 *Enargea*가 독립된 다른 속으로 고려된다면 해당 속에 대해서는 *Enargea*를 사용한다.

예제 6. *Roystonea regia* (Kunth) O. F. Cook (1900)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 그 기본명 *Oreodoxa regia* Kunth (1816)가 *Palma elata* W. Bartram (1791)에 대해 보전되었다. 그러나 만약 *R. regia*와 독립종으로 본다면, 학명 *R. elata* (W. Bartram) F. Harper (1946)는 이용 가능하다.

14.7. 폐기명 또는 폐기명에 근거한 새로운 조합은 관련된 보전명의 기준을 포함하는 분류군에 대하여 복원시킬 수 없다.

예제 7. *Enallagma* Baill. (1888)은 *Dendrosicus* Raf. (1838)에 대해 보전되어 있지만, *Amphitecna* Miers (1868)에 대해서는 보전되어 있지 않다. 만약 *Enallagma*, *Dendrosicus*, *Amphitecna*가 합쳐지면, 후자 <*Amphitecna*>는 *Dendrosicus*에 대해 명시적으로 보전되어 있지 않지만, 합쳐진 속명은 *Amphitecna*로 해야 한다.

14.8. 보전명(확실하게 철자를 잘못 쓴 경우는 제외)의 등록된 기준표본과 철자는 제 14.12조의 절차에 따라서만 변경할 수 있다.

예제 8. Bullock & Killick (Taxon 6: 239. 1957)은 *Plectranthus* L'Hér의 등록된 기준을 *P. punctatus* (L. f.) L'Hér.에서 *P. fruticosus* L'Hér.로 변경하고 싶다는 제안을 하였다. 이 제안은 관련 여러 명명법위원회와 국제식물학회에서 승인되었다.

14.9. 학명은 저자가 지정한 기준 또는 본 명명규약의 적용에 의해 결정된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보전할 수 있다(제10.4조도 참조). 이런 학명은 합법적 출판 시점을 그대로 하거나(보전된 기준이 출판 당시에는 명명된 분류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또는 보전된 기준을 해당 분류군에 포함시킨 저자에 의한 나중의 출판을 합법적 출판의 시점으로 보전해도 좋다. 후자의 경우에는 원래의 학명과 보전된 학명은 보전된 학명이 명명된 분류군의 기재문이나 분류군 고유특징을 수반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명(제53조)으로 취급한다.

예제 9. *Bromus sterilis* L. (1753)은 보전된 기준인 1932년에 채집된 표본(*Hubbard* 9045, E)을 Linnaeus가 해당 종을 기재할 때 포함하지 않았음에도, 1753년에 학명이 유효 출판된 시점으로 보전한다.

예제 10. *Protea* L. (1753)은 속명의 보전된 기준이면서 1753년에는 *Leucadendron*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P. cynaroides* (L.) L. (1771)을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Protea*속은 1771년 출판부터 보전된다. 즉, 보전되면, *Protea* L. (1771)는 새로운 속명으로 의도하지 않고 원기준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나, *Protea* L. (1753)의 합법적으로 출판된 동일명인 것처럼 취급한다.

14.10. 보전명은 이에 대응하는 자동명과 함께, 모든 선행되는 동일명에 대해서 보전한다. 보전명의 선행 동일명은 보전에 따라 서명이 아니라, 사용할 수 없는 이름이 된다. 만약 해당 동일명이 서명이 아니라면 같은 기준에 근거하는 다른 학명 또는 조합의 기본명으로 사용 가능하다 (제55.3조도 참조).

예제 11. 속명 *Smithia* Aiton (1789)은 *Damapana* Adans. (1763)에 대해 보전되어 있고, 선동일명인 *Smithia* Scop. (1777)에 대해서도 자동적으로 보전된다. - 부칙3에서 *Blumea* Rchb.는 *Blumea* DC.와 함께 동일명으로 실려 있지 않지만, *Blumea* DC. (1833)는 *Blumea* Rchb. (1828-1829)에 대해 자동적으로 보전된다.

14.11. 특정의 철자 또는 성을 유지하기 위해 학명은 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전된 학명은 선취권을 변경하지 않고 보전된 철자나 성을 후에 도입한 저자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출판한 명명자에게 귀속시킨다.

예제 12. Montagne (1839)에 의해 사용된 *Rhodymenia*라는 철자는, Greville (1830)에 의해 사용된 원전철자 *Rhodomenia*에 대해 보전이 된다. 이 학명은 *Rhodymenia* Grev. (1830)로 인용한다.

① 노트 3. 보전의 날짜는 보전명의 선취권 (제11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 선취권은 합법적 출판의 날짜에만 근거해서 결정을 한다 (제32-45조; 단, 제14.9조와 제14.15 참조).

14.12. 보전명의 목록은 항구적으로 추가나 변경을 할 수 있다. 추가하는 학명에 관한 모든 제안은 그 학명의 보전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견을 가진 양쪽의 입장부터 상세한 설명을 수반해야 한다. 이런 제안은 전체위원회 <General Committee>에 제출되어야 하며(제3부 참조), 동(同)위원회는 이 내용을 여러 해당 분류군의 위원회에 검토하도록 한다 (제34.1조와 제56.2조도 참조).

14.13. 명명법의 안정성을 위해, 균류 [단 지의형 균류 (lichen-forming fungi)와 예전부터 분류학적으로 지으면 균류와 연관된 균류, 예를 들면, *Mycocaliciaceae*를 제외한 지의서식성 (地衣棲息性) 균류 (lichenicolous fungi)를 포함]의 학명목록은 전체위원회 <General Committee>에 제출해야하며, 이 목록은 전체위원회와 관련 국제조직과 협의하여 적절하게 구성된 소위원회, 즉 균류명명법위원회 (제3부 참조)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런 목록에서 채택된 이름은 균류명명규약위원회와 전체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승인되면 규약의 부칙에 올리고, 이 학명의 기준표본과 보전명이 되기위해 경쟁했던 이 명들(인가명 포함)을 함께 목록화한다 (제56.3조도 참조).

14.14. 등록된 보전명은 삭제할 수 없다.

예제 13. 시애틀규약 (1972)은 당시의 균류 학명의 적용 출발점으로 알려진 날짜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던 Fries의 학명 *Alternaria* "Nees ex Wallr. (1833)"를 *Macrosporium* Fr. (1832)에 대해 보전하였다. 시드니회의(1981) 및 시드니규약(1983)에서는 균류의 후적용 출발날짜의 폐지와 Fries에 의한 인가 작업 (Syst. Mycol. 1: xlvii. 1821)에 의해 Nees의 학명을 수용하고, 인정을 받아서 따

로 보전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일단 등록된 보전명은 삭제할 수 없기 때문에 *Alternaria* Nees (1816-1817)는 부칙 3에 등록하였고, 이에 대응한 기각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14.15. 제14.12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름이 합법적으로 출판되지 않거나 또는 후에 발표된 동명으로 출판되지 않는 한, 부칙 2B의 보전과명을 인용한 출판은 모든 조건에서 올바르다고 인정하며, 따라서 변경하지 않는다.

14.16. 학명의 보전 또는 제56조 하에서의 제안이 관련된 분류군의 해당위원회에 의한 검토를 거쳐 전체위원회 <General Committee>에서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이 학명의 보전 (또는 폐기)은 차기 국제식물학회에서 결의에 의해 공인된다 (제34.2조와 제56.4조도 참조).

권고 14A

14A.1. 학명의 보전, 또는 제56조에 의한 폐기 제안이 해당 위원회에 검토를 위해 제출되었을 경우 이 제안에 관한 전체위원회 <General Committee>의 권고를 기다리는 동안에 저자 (또는 명명자)는 가능한 현재 학명의 사용법을 따라야한다 (권고 34A와 56A도 참조).

제15조

15.1. 제13.1조(d)에서 인가된 균류의 학명은 선동일명이나 경합하는 이명에 대해 보전한 이름인 것처럼 취급한다. 해당 학명은 일단 인가가 되면 그 인가 도서의 저자가 다른 곳에서 해당 학명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인가명으로 인정한다. 인가된 학명은 제60조에 의해 수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명 명명자가 사용한 학명의 철자를 그대로 사용한다.

예제 1. Fries는 *Systema mycologicum* (1821)에서 *Agaricus ericetorum* Pers. (1796)를 정명으로 인정하였다. 이후 Fries (1828)는 *A. umbelliferus* L. (1753)의 이명으로 간주하였고, 그의 저서인 *Index* (1832)에서는 정명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ericetorum* Pers.: Fr.은 인가명이다.

예제 2. 인가명인 *Merulius lacrimans* (Wulfen : Fr.) Schum. (1803)의 철자는 그 기본명을 *Boletus*가 "lacrymans" Wulfen (1781)으로 출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된다.

15.2. 인가명의 선동일명은 인가에 의해 서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제한을 받을 뿐이다. 만약 이 선동일명이 서명이 아니면 동일 기준에 근거하는 다른 학명, 또는 조합의 기본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55.3조도 참조).

예제 3. *Patellaria* Hoffm. (1789)는 인가된 속명 *Patellaria* Fr. (1822): Fr.의 선동일명이다. Hoffmann의 학명은 적명이지만 사용할 수 없다. *Patellaria* Fr.: Fr. 와 동일한 기준에 근거한 *Lecanidion* Endl. (1830)는 제52.1조에 의해 서명이 된다.

예제 4. *Agaricus cervinus* Schaeff. (1774)는 인가된 *A. cervinus* Hoffm. (1789): Fr.의 선동일명이다. Schaeffer의 학명은 사용할 수 없지만, 적명이기에 때문에 다른 속의 조합의 기본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 *Pluteus* Fr.에서 조합은 *P. cervinus* (Schaeff) P. Kumm.로 인용하면서 이 학명은 *A.*

atricapillus Batch (1786)에 기준을 둔 이형이명 (분류학적 이명)인 *P. atricapillus* (Batsch) Fayod 에 대해 선취권을 가진다.

15.3. 과와 속을 포함한 계급의 분류군에 있어서, 2개 또는 그 이상의 인가명이 경합하고 있을 때에는 정명 <correct name>은 제11.3조에 근거해서 선택한다 (제15.5조도 참조).

15.4. 속 이하 계급 분류군에 있어서 2개 또는 그 이상의 인가명이 경합하고 있을 때, 또는 인가명으로 동일한 최종소명과 기준을 가지는 2개 이상의 학명이 경합하고 있을 때, 정명 <correct name>은 제11.4조에 근거해서 선택한다.

① 노트 1. 인가 낱자는 인가명의 합법적 출판날짜, 즉 선취권 (제11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특히, 2개 이상의 동일명이 인가되었을 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출판된 것만이 사용될 수 있고, 다른 학명은 제53.2조에 따라 서명이 된다.

예제 5. Fries (Syst. Mycol. 1: 41. 1821)는 *Agaricus flavovirens* Pers. (1793)를 선택하면서, *A. equestris* L. (1753)를 이명으로 취급하였다. 이후 (Elench. Fung. 1: 6. 1828), Fries는 "Nomen prius et aptius arte restituendum (보다 오래 된, 보다 적합한 학명을 즉시 부활시켜야 한다)" 라고 말해 *A. equestris*를 채택하였다. 두 학명이 모두 함께 인가되었지만, 양쪽이 이명 관계에 있다고 볼 때에는 선취권이 있는 *A. equestris*를 사용한다.

15.5. 인가명이 아니거나, 동일 계급의 인가명으로 동일 기준 및 최종소명을 가지지 않는 학명은 그 계급의 인가명의 기준을 포함하면서, 필요한 조합을 위해 그 인가명의 최종소명을 이용 가능한 분류군에 대해 사용하면 안 된다 (제11.4조(b) 참조).

15.6. 보전 (제14조)과 명시적 폐기 (제56.1조)는 인가에 우선한다.

제3장

계급에 따른 분류군의 명명법

제1절

과보다 상위 계급에 있는 분류군의 학명

제16조

16.1. 과보다 상위 계급 분류군의 학명은 복수형의 명사로 다뤄지기 때문에 첫 문자는 대문자로 쓰며, 이런 학명은 다음 중 하나이다. (a) 자동적으로 기준이 대표되는 학명 (제10.7조), 과명처럼 동일 방식으로 (제18.1조; 단, 제16.4조 참조) 속명에 근거한 과의 어미에 그 계급을 지칭하는 적절한 어미를 첨가하며 (제16.3조; 제17.1조 참조), 어간의 어미가 자음으로 시작될 경우는 연결 모음 -o-를 앞에 둔다; 또는 (b) 기술명, (a)와 달리 계급이 달라도 변경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는 학명이다.

예제 1. 과보다 상위 계급의 자동적으로 기준표본 지정되는 학명: *Lycopodium*에 근거한 *Lycopodiophyta*; *Magnolia*에 근거한 *Magnoliophyta*; *Gnetum*에 근거한 *Gnetophytina*; *Pinus*에 근거한 *Pinopsida*; *Marattia*에 근거한 *Marattiidae*; *Caryophyllus*에 근거한 *Caryophyllidae*와 *Caryophyllales*; *Fucus*에 근거한 *Fucales*; *Bromelia*에 근거한 *Bromeliineae*.

예제 2. 과보다 상위 계급의 기술명: *Anthophyta*, *Chlorophyta*, *Lycophyta*, *Parietales*; *Ascomycota*, *Ascomycotina*, *Ascomycetes*; *Angiospermae*, *Centrospermae*, *Coniferae*, *Enantioblastae*, *Gymnospermae*.

16.2. 자동적으로 기준표본이 지정되는 학명의 경우 채택되고 있는 문 (division 또는 phylum)의 학명 기준을 포함하는 아문 (subdivision 또는 subphylum)의 학명, 채택되고 있는 강 (class)의 학명 기준을 포함하는 아강 (subclass)의 학명, 채택되고 있는 목 (order)의 학명 기준을 포함하는 아목 (suborder)의 학명은 각각 대응하는 상위의 계급 학명과 같은 속의 학명에 근거 한다 (제16.4조도 참조).

예제 3. *Pteridophyta* Bergen & B. M. Davis (1906)과 *Pteridophytina* B. Boivin (1956); *Gnetopsida* Engl. (1898)과 *Gnetidae* Cronquist & al. (1966); *Liliales* Perleb (1826)와 *Liliineae* Rchb. (1841).

16.3. 자동적으로 기준지정이 되는 학명의 어미변화는 다음과 같다. 문은 *-phyta* (학명의 어미가 각각 *-phycota* 나 *-mycota*로 끝나는 조류나 균류에 관련되지 않는 한), 아문은 *-phytina* (학명의 어미가 각각 *-phycotina*나 *-mycotina*로 끝나는 조류나 균류

에 관련되지 않는 한), 조류의 강은 *-phyceae*, 그리고 아강은 *-phycidae*; 균류의 강은 *-mycetes*, 아강은 *-mycetidae*, 강은 *-opsida*, 그리고 아강은 *-idae* (그러나 *-viridae*는 아님)로 한다. 과보다 상위 계급의 자동적으로 기준표본 지정되는 학명이, 제17.1조의 규정에 맞지 않는 부적당한 라틴어의 어미로 출판하였을 때, 그 어미는 표준에 맞춰서 변경해야 하지만, 명명자의 인용이나 출판날짜는 변경하지 않는다 (제32.2조 참조). 이런 학명이 라틴어가 아닌 어미로 출판하였을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출판한 것이 아니다.

예제 4. "*Cactarieae*" (Dumortier, 1829, *Cactus*에 근거한다)와 "*Coriales*" (Lindley, 1833, *Coriaria*에 근거)는 모두 목의 계급 분류군으로 출판되었지만, 이들은 모두 각각 *Cactales* Dumort. (1829)와 *Coriariales* Lindl. (1833)로 수정하여야 한다.

예제 5. 반면, 목의 계급 분류군에 대해 출판된 *Acoroidées* (Kirschleger, Fl. Alsace 2: 103. 1853-Jul 1857)는 라틴어가 아닌 프랑스어 어미이기 때문에 "*Acorales* Kirschl."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학명 *Acorales*는 나중에 Reveal (*Phytologia* 79: 72. 1996)이 합법적으로 출판하였다.

① 노트 1. 용어 "divisio"와 "phylum" 및 그에 상당하는 현대어는 하나의 동일 계급으로 취급한다. "divisio"와 "phylum"이 동시에 다른 계급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계급을 나타내는 용어의 임의사용으로 다룬다 (제37조 노트1과 제37.8조 참조).

16.4. 단어의 구성요소인 *-clad-*, *-cocc-*, *-cyst-*, *-monad-*, *-myces-*, *-nemat-*, 또는 *-phyt-*의 1개가 포함하고 있는 속의 학명 중 두 번째 부분의 소유격 단수의 어간 (singular stem)으로 이 조사 성분은 아문의 어미 앞에서도 각각의 경우에 적절한 방식으로 생략할 수 있다. 이런 학명은 그 이름의 유래가 명백하고 프로토토크 <protologue>, 즉 기재문에 명시되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기준이 된다.

예제 6. 저자가 학명 *Raphidophyceae* Chadeff. ex P. C. Silva (1980)는 *Raphidomonas* F. Stein (1878)에 근거하였다고 기록하였다. 학명 *Saccharomyces* G. Winter (1881)는 *Saccharomyces* Meyen (1838)를 따른 이름으로 간주된다. 저자는 학명 *Trimerophytina* H. P. Banks (1975)는 *Trimerophyton* Hopping (1956)에 근거한 이름이라 기록하였다.

① 노트 2. 선취권의 원칙은 과보다 상위의 계급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1.10조; 단, 권고 16A 참조).

권고 16A

16A.1. 저자는 일반적으로 과보다 상위 계급의 분류군에 대해 기준이 지정된 학명 중에서 선택할 경우에는 선취권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17조

17.1. 자동적으로 기준이 지정되는 목과 아목의 학명은 각각 *-ales* (단, *-virales*는 아님)와 *-ineae*로 끝나야 한다 (제16.3조 및 제32.2조 참조).

17.2. 목의 학명으로 의도하였지만, "order" 대신 "cohors", "nixus", "alliance", 또는 "Reihe"과 같은 단어로 계급으로 지정한 이름은 목 (order)의 학명으로 취급한다.

권고 17A

17A.1. 어떤과의 학명에서 유래한 목 (order)의 학명이 기존에 존재하고 있다면, 저자는 그 과를 포함하는 목 (order)을 새로운 학명으로 출판해서는 안 된다.

제2절

과와 아과 및 족과 아족의 학명

제18조

18.1. 과명은 명사로서 이용할 수 있는 1개의 복수형의 형용사다. 즉 이것은 그 과에 포함되는 속의 학명 소유격 단수형으로부터, 그 소유격 단수형의 어미변화 부분 (라틴어에서는 *-ae*, *-i*, *-us*, *-is*; 로마자화한 그리스어에서는 *-ou*, *-os*, *-es*, *-as* 또는 *-ous*, 그리고 이것과 동등한 *-eos*)을 어미 *-aceae*로 바꿔 만든다 (제18.5조 참조). 고전어 기원이 아닌 속명으로 그 소유격 단수형을 정하기 위해서 적당한 유사한 고전적인 이름이 없을 때에는, 속명의 마지막에 *-aceae*를 첨가한다. 동일하게, 속명의 소유격 단수형으로부터 만들어진 과명이 동일명이 될 때에는 주격 단수형의 마지막에 *-aceae*로 할 수 있다. 1개를 선택해야 할 소유격을 가지는 속명에 대해서 원저자가 사용된 소유격을 유지해야 하지만, 예외로서 *-opsis*로 끝나는 학명의 소유격은 항상 *-opsisidis*가 된다.

❶ 노트 1. 속명은 과명의 기본명이 아니고 (제6.10조; 제41.2조 참조), 과명의 기준을 제공하는 이름이다 (제10.6조).

❷ 노트 2. 과명은 속을 포함한 모든 합법적으로 출판된 이름 (학명)에서 형성되며 만일 속명이 제18.3조의 규정에 의거한 서명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름일지라도 사용이 가능하다.

예제 1. 고전어 유래의 속명에서 만들어진 과명 *Rosaceae* (*Rosa*, *Rosae*에서), *Salicaceae* (*Salix*, *Salicis*에서), *Plumbaginaceae* (*Plumbago*, *Plumbaginis*에서), *Rhodophyllaceae* (*Rhodophyllus*, *Rhodophylli*에서), *Rhodophyllidaceae* (*Rhodophyllis*, *Rhodophyllidos*에서), *Sclerodermataceae* (*Scleroderma*, *Sclerodermatos*에서), *Aextoxicaceae* (*Aextoxicon*, *Aextoxicou*에서), *Potamogetonaceae* (*Potamogeton*, *Potamogetonos*에서).

예제 2. 고전어 유래가 아닌 속명에서 만들어진 과명: *Nelumbonaceae* (*umbo*, *umbonis*와 유사에 의한 어형 변화에 따라, *Nelumbo*, *Nelumbonis*에서), *Ginkgoaceae* (어미변화를 하지 않고, *Ginkgo*로부터).

예제 3. *Cactaceae* Juss. (1789)는 *Mammillaria* Haw. (1812)를 선호해서 지금은 폐기된 *Cactus* L. (1753)로부터 유래하였다.

18.2. 과명으로 의도해서 “family”라는 단어 대신 “order” (ordo) 또는 “natural order” (ordo naturalis)라는 표현으로 계급을 제시한 경우에는 출판된 과명으로 인정한다 (제19.2조 참조). 단, 이런 처리로 분류의 순서에 있어 계급을 나타내는 용어가 그릇된 순서 (배열)가 된 경우에는 과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예제 4. *Cyperaceae* Juss (1789), *Lobeliaceae* Juss. (1813), *Xylomataceae* Fr. (1820)은 각각 "ordo *Cyperoideae*", "ordo *naturalis Lobeliaceae*", "ordo *Xylomataceae*"으로 출판되었다.

① 노트 3. 만약 "family"라고 하는 용어가 "order" 또는 "natural order"와 다른 계급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사용된다면, "order" 또는 "natural order"의 랭크로 발표된 학명은과의 학명으로서 발표되었다고 간주할 수는 없다.

예제 5. Berchtold & Presl (*O přirozenosti rostlin ...* 1820)가 목("řad")의 계급으로 출판한 학명은과("čeled")를 때로 목의 하위 계급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하였기 때문에과의 계급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18.3. 서법적인 속명에 근거하는 과명은 과명에 근간을 둔 속명이 보전되지 않거나, 보전될 때까지는 서명이 된다.

예제 6. 보전과명 *Caryophyllaceae* Juss. nom. cons. (*Caryophyllus* Mill. non L.에 근거); *Winteraceae* R. Br. ex Lindl., nom. cons. [*Drimys* J. R. Forst. & G. Forst에 대한 서법적 대치명 (<replacement name>)인 *Wintera* Murray에 근거].

예제 7. *Nartheceum* Huds., nom. cons. (1762)에 근거한 *Nartheceaceae* Fr. ex Bjurzon (1846)는 이 학명의 선동일명인 *Nartheceum* Gerard (1761)에 대해 보전되어 적명이 되었다 (부칙3을 참조).

18.4.과의 학명이 부적당한 라틴 어미를 수반해서 출판되었을 때에는 명명자 인용 및 출판의 날짜를 변경하지 않고 (제32.2조 참조), 그 어미는 제18.1조의 규약에 따라서 변경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해당 학명이 라틴어 어미가 아닌 상태에서 출판되면 이는 합법적으로 출판한 것이 아니다.

예제 8.과 이름으로 출판된 "*Coscinodisceae*" (Kutzing 1844)는 *Coscinodisceaceae* Kutz. (1844)로 수용되며, 올바른 어미를 처음으로 이용한 De Toni (Notarisia 5: 915. 1890)가 명명자로 취급되지 않는다.

예제 9.과 이름으로 출판된 "*Atherospenneae*" (Brown 1814)는 *Atherospermataceae* R. Br.으로 수용되며, 올바른 철자를 처음 사용한 Airy Shaw (Willis, Dict. Fl. Pl., ed. 7: 104. 1966), 또는 "*Atherospenneaceae*"라는 철자를 사용한 Lindley (Veg. Kingd.: 300. 1846)가 명명자가 될 수 없다.

예제 10. 단,과의 이름으로 출판된 *Tricholomees* (Roze in Bull. Soc. Bot. France 23: 49. 1876)는 라틴어가 아닌 프랑스어의 어미로서, "*Tricholomataceae* Roze"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Pouzar (1983; 부칙2A를 참조)가 *Tricholomataceae*로 합법적 출판을 하였다.

18.5. 다음의 과명은 오랫동안 사용한 합법적 출판된 과명으로 취급한다. *Compositae* 국화과(대체과명: *Asteraceae*; 기준 *Aster* L.); *Cruciferae* 십자화과(대체과명: *Brassicaceae*; 기준 *Brassica* L.); *Gramineae* 벼과(대체과명: *Poaceae*; 기준 *Poa* L.); *Guttiferae* 고추나무과(대체과명: *Clusiaceae*; 기준 *Clusia* L.); *Labiatae* 꿀풀과(대체과명: *Lamiaceae*; 기준 *Lamium* L.); *Leguminosae* 콩과(대체과명: *Fabaceae*; 기준 *Faba* Mill. [= *Vicia* L.]); *Palmae* 야자과(대체과명: *Arecaceae*; 기준 *Areca* L.); *Papilionaceae*(대체과명: *Fabaceae*; 기준 *Faba* Mill.); *Umbelliferae* 미나리과(대체과명: *Apiaceae*; 기준 *Apium* L.). *Papilionaceae*가 콩과 *Leguminosae*로부터 독립한 과로 인정을 받을 때, *Papilionaceae*은 *Leguminosae*에 대한 보전된과의 학명이 된다.

18.6. 제18.5조의 괄호 내에 명시된 8개의 과명은 대체명 (alternative name) “nom. alt.” (nomen alternativum)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

19.1. 아과명은 명사로서 사용되는 복수형의 형용사다. 과명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지며 (제18.1조), 어미는 *-aceae*의 대신 *-oideae*를 사용한다.

19.2. 아과명으로서 의도해서 *subfamily*라는 단어 대신 “suborder” (subordo, 아목)라는 표현으로 계급을 제시한 경우에는 출판된 학명으로 인정한다 (제18.2조도 참조). 단, 이런 처리로 분류의 순서에 있어 계급을 나타내는 용어가 그릇된 순서 (배열)가 될 경우에는 아과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예제 1. *Cyrilloideae* Torr. & A. Gray (Fl. N. Amer. 1: 256. 1838)와 *Sphenocleioideae* Lindl. (Intr. Nat. Syst. Bot., ed 2: 238. 1836)는 각각 “suborder *Cyrilleae*”와 “Sub-order ? *Sphenocleaceae*”로 출판하였다.

① 노트 1. 만약 “subfamily”라고 하는 용어가 “suborder”와는 다른 계급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여러 계급에서 사용된다면, 후자의 계급 분류군에 대하여 출판된 학명은 아과의 학명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19.3. 족도 동일하게 명명하면서 어미 *-eae*를 붙이며, 아족도 동일하게 어미에 *-inae*를 붙여 명명한다 (단, *-virinae*는 안됨).

19.4. 과와 속 사이의 분류계급의 학명은 속하는 과의 채택된 적법적인 과명의 기준을 포함할 경우에는 과명의 기준과 같은 속명에 근거한다 (제10.6조; 단 제19.8조 참조).

예제 2. 과명 *Rosaceae* Juss. 기준은 *Rosa* L.이며, 그래서 *Rosaceae*에 속하는 *Rosa*를 포함한 아과와 족은 각각 *Rosoideae* Endl. 및 *Roseae* DC.로 지칭한다.

예제 3. 과명 *Gramineae* Juss. (nom. alt.: *Poaceae* Barnhart 제18.5조 참조)의 기준은 *Poa* L.이며, 따라서 *Gramineae*에 속하는 *Poa*를 포함한 아과, 족 및 아족은 각각 *Pooideae* Asch., *Poeae* R. Br., 및 *Poinae* Dumort.라 지칭한다.

① 노트 2. 제19.4조는 과명의 기준을 포함하는 그 과의 하위 분류군의 학명에만 적용된다 (단, 권고 19A.2 참조).

예제 4. 과명 *Ericaceae* Juss. 기준은 *Erica* L.이며, 그래서 *Ericaceae*에 속하는 *Erica*를 포함한 아과와 족은 각각 이 이름과 경합하는 학명의 선취권은 인정하지 않고, *Ericoideae* Endl. 및 *Ericaceae* D. Don라고 부른다. *Ericaceae*에 속하는 *Rhododendron* L.를 포함한 아과는 *Rhododendroideae* Endl.로 부른다. 그러나 *Rhododendroideae*에 속하는 *Rhododendron*과 *Rhodora* L. 양쪽을 포함한 족의 정명은 *Rhodoreae* D. Don (1834)이며, *Rhododendreae* Brongn. (1843)이 아니다.

19.5. 과와 속 사이의 분류계급 학명은 부칙2B에 학명의 기준을 포함하고 (즉, 과명은 모든 목록에 없는 학명들에 대해 보전됨; 제14.5조 참조), 만일 이것이 제19.4조에 반

하지 않는 한, 기준은 이 이름이 근거하는 속명의 기준 (제10.6조)과 같다 (제19.8조 참조). 만약 한 개 이상(복수)의 기준이 포함될 경우 정명은 부칙2B에 해당되는 과명 중에서 선취권에 의해 결정된다.

예제 5. 부칙2B에 실린 *Malaceae* Small (1903)의 기준인 *Malus* Mill.을 포함한 *Rosaceae* Juss.의 아과는 그 아과가 *Rosaceae*의 기준인 *Rosa* L.를 포함하거나 부칙2B에 실린 *Malaceae*에 선행하는 다른 학명의 기준도 포함한 경우가 아닌 이상, *Maloideae* C. Weber (1964)로 부른다. 이는 *Spiraea* L.과 *Pyrus* L.의 어떤 쪽, 또는 양쪽을 다 포함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Maloideae*보다 먼저 *Spiraeoideae* Arn. (1832)와 *Pyroideae* Burnett (1835)가 출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Spiraeaceae*도 *Pyraceae*도 부칙2B에 실려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Amygdalus* L.이 *Malus*와 같은 아과에 포함되면, *Amygdalaceae* Marquis (1820)가 *Malaceae*에 대해 선취권을 가지면서 부칙2B에 실려 있기 때문에 학명 *Amygdaloideae* Arn. (1832)이 선행하는 아과명으로 인정된다.

예제 6. *Monotropaceae* Nutt. (1818)과 *Pyrolaceae* Link (1829)는 모두 부칙2B에 실려 있지만, *Pyrolaceae*는 *Monotropaceae*에 대해 보전되어 있다. 따라서 *Monotropa* L.과 *Pyrola* L. 양쪽을 포함한 아과는 *Pyroloideae* Kostel. (1834)로 불린다.

19.6. 속명이나 해당 과명이 보전명이 되거나 될 때까지, 서명인 속명에 근거한 과와 속 사이의 분류계급의 학명은 서명이 된다.

예제 7. 서명인 *Caryophyllus* Mill. non L.에 근거한 학명 *Caryophylloideae* Arn. (1832)은 대응하는 과명인 *Caryophyllaceae* Juss.가 보전되었기 때문에 적명이 된다.

예제 8. *Thunbergia* Retz. nom. cons. (1780)에 근거한 *Thunbergioideae* T. Anderson (1860)은 이 이름이 선동일명인 *Thunbergia* Montin (1773)에 대해 보전되었을 때 적명이 되었다 (부칙3을 참조).

19.7. 과와 속 사이의 분류계급 학명이 부적당한 라틴어 어미로 출판되었을 때, 즉, 아과에 대하여 *-eae*, 족에 대하여 *-oideae*, 그 어미는 저자명도 출판날짜도 바꾸지 않고, 제19.1조와 제19.3조에 따라 변경해야 한다 (제32.2조 참조). 그러나 만약 이런 학명이 라틴어가 아닌 어미로 출판하였을 경우 모두 합법적 출판이 아니다.

예제 9. 아과에 대해 출판된 "*Climacieae*" (Grout, Moss, Fl. N. Amer.3: 4. 1928)는 *Climacioideae* Grout (1928)으로 변경한다.

예제 10. 그러나 족에 대해 출판된 *Melantheen* (Kittel in Richard, Nouv. Elem. Bot., ed. 3, Germ Transl.: 727. 1840)은 라틴어가 아닌 독일어 어미를 가지기 때문에, "*Melanthieae* Kitt."로 해서는 안 된다. 학명 *Melanthieae*는 Grisebach (Spic. Fl. Rumel. 2: 377. 1846)에 의해 합법적으로 출판되었다.

19.8. *Papilionaceae*가 콩과 *Leguminosae* (대체명 *Fabaceae*; 제18.5조 참조)에 아과로 포함될 때에는, *Papilionoideae*라고 하는 학명은 *Faboideae*의 대체명으로 이용할 수 있다.

권고 19A

19A.1. 과와 속 사이의 분류계급의 계급으로 변경되거나, 또는 그 반대의 변경이 발생하고, 새로운 계급에 사용가능한 적명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래의 학명은 유지되고 그 어미 (-aceae, -oideae, -eae, -inae)만을 바꾼다.

19A.2. 과와 속 사이의 분류계급이 다른 계급으로 변경되어 새로운 계급에 사용할 수 있는 적명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제19.5조에서 허용하는 한, 그 학명은 앞의 계급에서의 학명이 기초를 두고 있었던 속명에 기초를 둔다.

예제 1. 아족 *Drypetinae* Griseb. (1859)이 족의 계급에 승격되었을 때 *Drypeteae* Hurus. (1954)로 명명되었다. 아족 *Antidesmatinae* Mull. Arg. (1865)이 아과의 계급으로 승격될 때 *Antidesmatoideae* Hurus. (1954)로 명명되었다.

제3절

속과 속 이하 학명

제20조

20.1. 속명은 주격단수의 명사 또는 그렇게 취급되는 1개의 단어로,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쓴다 (제60.2조 참조). 속명은 어떤 말을 어원으로 해도 좋고, 완전히 임의대로 작성해도 좋지만, -*virus*라고 하는 어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예제 1. *Bartramia*, *Convolvulus*, *Gloriosa*, *Hedysarum*, *Ifloga* (*Filago*의 철자순서 바꾼 단어), *Impatiens*, *Liquidambar*, *Manihot*, *Rhododendron*, *Rosa*.

20.2. 속명은 1912년 1월 1일보다 전에 출판되었고, Linnaeus의 이명법에 일치해서 출판된 종명을 수반한 것이 아니라면, 출판 당시에 형태학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라틴어의 전문용어와 일치하면 안 된다.

예제 2. "*Radicula*" (Hill.1756)는 라틴어 전문용어인 "*radicula*"(유근)와 일치하고 Linnaeus의 이명법에 해당되는 종명을 동반하지 않았다. 학명 *Radicula*는 Moench (1794)이 올바르게 처음 종소명과 결합한 출판으로 본다.

예제 3. *Tuber* F. H. Wigg.: Fr.는 1780년에 출판되었을 때 이명 (2개 종명, binary species name) (*Tuber gulosorum* F. H. Wigg.)을 동반하고 있어, 이 속명은 라틴어 전문용어와 일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출판되었다.

예제 4. 속명으로 의도된 "*Lanceolatus*" (Plumstead, 1952)와 "*Lobata*" (Chapman, 1952)는 라틴어 전문용어와 일치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출판된 것이 아니다.

예제 5. *Cleistogenes* Keng (1934)는 출판 당시 사용하던 영어 전문용어의 복수형 "*cleistogenes*"와 일치한다. 이 전문용어는 라틴어에는 없기 때문에, Keng의 학명은 합법적으로 출판되었다. *Cleistogenes*의 대치명 (replacement name)으로 출판된 *Kengia* Packer (1960)는 제52.1조에 의해 서명이 된다.

예제 6. "caulis", "folium", "radix", "spina" 등과 같은 단어는 합법적으로 출판한 속명이 될 수 없다.

20.3. 하이픈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1개, 혹은 2개의 단어로 구성된 속명은 허용하지 않는다.

예제 7. Miller (1754)에 의해 처음 출판되었을 때, "Uva ursi"는 하이픈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분리된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출판된 이름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제32.1 조 (c)); 이 학명은 합법적으로 *Uva-ursi* (출판 당시 하이픈으로 연결)으로 한 Duhamel (1755)에게 귀속된다.

예제 8. *Quisqualis* L. (원래 출판 때 두 단어를 1개로 연결시켜 형성), *Neves-armondia* K. Schum., *Sebastiano-schaueria* Nees, *Solms-laubachia* Muschl. ex Diels (모두 원래 출판 때 하이픈으로 연결)와 같은 학명은 합법적으로 출판한 학명이다.

i 노트 1. 속간잡종의 학명은 H.6조의 규정을 따라 만들어진다.

20.4. 다음의 경우는 속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a) 학명으로서 의도되지 않는 단어.

예제 9. "Anonymos"라는 명칭은 Walter (Fl. Carol.: 2, 4, 9, etc. 1788)에 의해 28개의 다른 속에 학명이 없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였다.

예제 10. Rottboll (Descr. Pl. Rar.: 14, 27. 1772)은 "Schoenus"와 "Scirpus"와 유사한 속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한 "Schaenoides"와 "Scirpoides"는 7쪽에 기술되어 있듯이, 나중에 명명하려던 학명을 대신하여 사용한 단어로써, 속의 이름은 아니다. 이 이름이 없는 속은 나중에 각각 *Kyllinga* Rottb. 및 *Fuirena* Rottb.라고 명명하였다.

(b) 종에 대한 한 개의 단어로 구성된 명칭.

i 노트 2. 도쿄규약 초기편집판 (pre-edition)에서 제시된 "Leptostachys", 또는 "Anthopogon"과 같은 예제는 현재는 인용금지 된 (부칙4) 출판물로부터 채택된 것이다.

권고 20A

20A.1. 속명을 만드는 명명자는 다음 조항을 따라야한다:

- (a) 될 수 있는 한 라틴어 어미를 사용할 것.
- (b) 라틴어에 쉽게 채택하기 어려운 속명은 피할 것.
- (c) 매우 긴, 또는 라틴어로서 발음이 어려운 속명을 만들지 말 것.
- (d) 다른 언어에서 유래하는 단어를 조합해 속명을 만들지 말 것.
- (e) 가능하면 속의 유추 또는 유사성을 속명의 구성 또는 어미에서 나타낼 것.
- (f) 형용사를 명사처럼 사용하는 것을 피할 것.

- (g) 해당 속에 포함되는 종 학명의 종소명에 유사하거나, 이에 유래한 속명을 사용하지 말 것.
- (h) 식물학 또는 일반적으로 균학, 조류학 또는 자연과학에 관계가 전혀 없는 인물에게 속명을 헌정(獻呈, dedicate)하지 말 것.
- (i) 남성이나 여성을 기념할 경우라도, 모든 인명에 근거하는 속명에는 여성형을 사용할 것 (권고 60B; 권고 62A.1도 참조).
- (j) 현존하는 2개의 속명의 일부분씩을 합쳐 속명을 만들지 말 것. 왜냐하면, 이런 속명은 속간잡종의 이름과 혼동하기 쉽기 때문이다 (H.6조 참조).

제21조

21.1. 속 이하 계급의 학명은, 속명과 속 이하 계급의 소명과의 조합이다. 연결용어(아속, 절, 열 등)는 계급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한다.

i 노트 1. 만약 다른 기준표본에 근거하고 동일 이름일 경우 비록 계급이 달라도 같은 속 이하 계급의 학명은 동일명이 되며 (제53.4조 참조), 계급을 표시하는 용어는 학명의 일부로 보지 않는다.

21.2. 속 이하 계급의 학명은 속명과 같은 형식, 또는 소유격 복수형의 명사, 또는 속명과 성이 일치하는 복수형 형용사 중 하나이며, 소유격 단수명사는 아니다. 문자는 대문자로 쓴다 (제32.2조 및 제60.2조 참조).

21.3. 속 이하 계급의 학명은 이에 속하는 속명에 접두어 *Eu-* 를 첨가해서 만들지 않는다 (제22.2조도 참조).

예제 1. *Costus* subg. *Metacostus*; *Ricinocarpos* sect. *Anomodiscus*; *Valeriana* sect. *Valerianopsis*; *Euphorbia* sect. *Tithymalus*; *Pleione* subg. *Scopulorum*; *Euphorbia* subsect. *Tenellae*; *Sapium* subsect. *Patentinervia*; *Arenaria* ser. *Anomaliae*; 그러나 *Carex* sect. "*Eucarex*" 라 하지 않는다.

21.4. 속 이하 계급의 이름 대신 이명 조합 (2개 이름 조합, binary combination)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32.1조(c)에 반하지만, 이렇게 구성된 이름은 합법적으로 출판된 것이라면 명명자인용이나, 또는 출판날짜 변경이 없이 적절한 형태로 변경한다.

예제 2. *Sphagnum* "b. *Sph. rigida*" (Lindberg in Öfvers. Förh. Svenska Vetensk.-Akad. 19: 135. 1862)와 *S.* sect. "*Sphagna rigida*" (Limpricht, Laubm. Deutschl. 1: 116. 1885)는 각각 *Sphagnum* [계급미지정 unranked] *Rigida* Lindb. 및 *S.* sect. *Rigida* (Lindb.) Limpr.라고 인용하여야 한다.

i 노트 2. 속 이하 계급에 위치하는 잡종의 학명은 제H.7조의 규정을 따라 만든다.

권고 21A

21A.1. 특정 종이 속하는 속 이하 계급 학명은 속명과 종소명을 함께 표시하고자 할 때 속명과 종소명 사이에 그 하위계급의 이름을 괄호 안에 넣어야 한다. 원한다면, 그 속 이하 계급의 계급도 표시할 수 있다.

예제 1. *Astragalus (Cycloglottis) contortuplicatus*; *A. (Phaca) umbellatus*; *Loranthus (sect. Ischnanthus) gabonensis*.

권고 21B

21B.1. 권고 21B.2-4가 다른 예외를 제시하고 있지 않는다면, 속명의 형성에 관한 권고 (권고 20A)는 속 이하 계급의 종소명에도 적용된다.

21B.2. 아속 또는 절의 학명에 있어서 소명은 명사가 바람직하고, 아절 이하의 속 이하 계급의 학명에 있어서 복수형 형용사가 바람직하다.

21B.3. 명명자는 속 이하 계급의 학명으로서 새로운 소명을 제안할 경우에, 그 속의 같은 계급의 다른 하위계급의 종소명이 복수형의 형용사형이면, 명사의 종소명을 피해야 한다. 또한,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명명자는 근연 속 이하 계급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 이름이나 근연 속의 학명과 같은 이름은 피해야 한다.

21B.4. 절 또는 아속이 속의 계급으로 승격될 때, 또는 그 반대의 변경이 발생할 때, 명명규약에 어긋나지 않는 한, 원래의 속명 또는 소명이 언제나 유지되어야 한다.

제22조

22.1. 채택된 적명인 속명의 기준을 포함하는 속 이하 계급의 학명은 해당 속명을 그대로 동일하게 반복하고 뒤에 명명자명을 인용하지 않는다 (제46조 참조). 이러한 학명을 자동명이라 한다 (제6.8조; 제7.6조도 참조).

예제 1. 학명 *Rhododendron* L. 기준을 포함한 아속은 *Rhododendron* L. subg. *Rhododendron*으로 명명한다.

예제 2. *Malpighia* L.의 기준 (*M. glabra* L.)을 포함한 아속은 *M.* subg. *Homoistylis* Nied.가 아닌 *M.* subg. *Malpighia*로 부른다. 또한, *Malpighia*의 기준을 포함한 절은 *M.* sect. *Apyrae* DC.가 아니라 *M.* sect. *Malpighia*로 부른다.

① 노트 1. 제22.1조 규정은 채택한 속명의 기준을 포함하는, 하위 분류군의 학명에서만 적용된다 (단, 권고 22A참조).

예제 3. *Solanum* L. sect. *Pseudocapsicum* (Medik.) Roem. & Schult. (Syst. Veg. 4: 569 ('*Pseudocapsica*'), 584 ('*Pseudo-Capsica*'), 1819)의 기준표본인 *S. pseudocapsicum* L.를 포함한 *Solanum* 아속의 정명은, 만약 *S.* subg. *Solanum*과 다른 아속으로 본다면, 이 계급에서 최초의 적명인 *S.* subg. *Minon* Raf. (Autikon Bot 108. 1840)가 되며, "*S.* subg. *Pseudocapsicum*"은 아니다.

22.2. 채택된 기준표본 (즉, 원기준표본, 또는 기준표본으로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요소, 또는 그 이전에 선정된 기준)을 포함한 적법한 속명의 하위계급의 학명은 소명이 속

명의 이름을 변경하지 않고 되풀이한 경우가 아닐 경우 합법적으로 출판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본 규정의 취지를 위해서는 기준이 이전에 선정되었던 아니던 관계없이, 명명법상의 전형적인 기준요소가 포함하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한 경우는 기준을 포함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예제 4. "*Dodecatheon* sect. *Etubulosa*" (Knuth in Engler. Pflanzenr. IV. 237 (Heft 22): 234. 1905)은 속명 *Dodecatheon* L.의 원기준표본인 *D. meadia* L.이 포함된 절에 대해 제안하였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출판되지 않았다.

예제 5. *Cactus* [계급미지정 unranked] *Melocactus* L. (Gen. Pl. ed. 5: 210. 1754)는 *Cactus*속 내에서 계급을 정하지 않고 (제37.3조) 명명된 4개 하위 구분 중 1개에 대해 제안되면서, *C. melocactus* L. (제22.6조에서의 기준)와 *C. mammillaris* L.을 포함하였다. *C. mammillaris*가 (Coulter의 Contr. U. S. Natl. Herb. 3: 95. 1894에 따라) 이후에 *Cactus* L.의 기준표본으로 지정되었어도 이 학명은 합법적으로 출판되었다.

22.3. 속 이하 계급의 학명이 합법적 속명 하에서 최초로 적법하게 출판되었을 때 대응하는 자동명은 자동적으로 형성된다 (제11.6조 및 제32.3조도 참조).

예제 6. *Tibetoseris* sect. *Simulatricis* Sennikov (Komarovia 5: 91. 2008)의 출판에 의해 자동명 *Tibetoseris* Sennikov sect. *Tibetoseris*가 자동적으로 형성되었다. *Pseudoyoungia* sect. *Simulatricis* (Sennikov) D. Maity & Maiti의 (Compositae Newslett. 48: 31. 2010) 출판에 의해 자동명 *Pseudoyoungia* D. Maity & Maiti sect. *Pseudoyoungia*가 자동적으로 형성되었다.

22.4. 속 이하 계급의 학명 소명은 그 학명이 속의 정명과 동일 기준표본을 가지지 않는 한, 속의 정명을 동일 이름으로 반복하지 않는다.

22.5. 속명이 서명이면 속 이하 계급의 학명 소명에서는 해당 속명과 동일한 이름을 반복하지 않는다.

예제 7. Kuntze (Post & Kuntze, Lex. Gen. Phan.: 106. 1903)가 *Caulinia* Moench (1802)의 속명 하에서 *Caulinia* sect. *Hardenbergia* (Benth.) Kuntze를 출판하였을 때, 이 속명은 *Caulinia* Willd. (1801)의 후속동명으로서 자동명 "*Caulinia* sect. *Caulinia*"은 성립되지 않는다.

22.6. 속 이하 계급의 소명이 이 계급에 포함된 종명 중 1개 종의 종소명과 같거나, 또는 유래되었을 때, 속 이하 계급의 학명 원명명자가 다른 기준을 따로 지정하지 않는 한 이 속 이하 계급의 기준은 해당 종의 학명 기준표본과 동일하다.

예제 8. *Euphorbia* subg. *Esula* Pers. (Syn. Pl. 2: 14. 1806)의 기준은, Persoon에 의해서 이에 포함된 종명 중 하나인 *E. esula* L.의 기준이다; Croizat (Revista Sudamer. Bot. 6: 13. 1939)가 기준표본으로 *E. peplus* L. (이 종 역시 Persoon에 의해 해당 아속에 포함됨)을 선정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제 9. *Cassia* [계급미지정 unranked] *Chamaecrista* L. (Sp. Pl.: 379. 1753)의 기준은 Linnaeus에 의해 포함된 5개의 종명 중의 하나인 *C. chamaecrista* L., <폐기명 nom. rej.>의 기준표본이 된다.

i 노트 2. 속 하위계급의 소명이 포함된 종명 중 후동일명인 종소명과 같거나, 또는 이 이름에서 유래하였을 때, 하위계급의 명명법상의 기준은 이 후동일명의 기준표본이 되어야 한다.

권고 22A

22A.1. 속의 정명 기준표본을 포함하지 않고, 아속의 정명 기준을 포함하는 절에서는,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한, 해당 아속명처럼 동일소명과 동일 기준표본을 사용한다.

22A.2. 속의 정명 기준표본을 포함하지 않는 아속은,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 아속에 종속되는 절의 정명의 소명 및 기준과 동일한 학명을 사용한다.

예제 1. *Brizicky*는 *Rhamnus* sect. *Pseudofrangula* Grubov을 아속의 계급으로 승격되었을 때, 새로운 소명을 쓰지 않고, 그 분류군을 *R. subg. Pseudofrangula* (Grubov) *Brizicky*라고 명명하고, 두 학명의 기준이 같도록 하였다.

권고 22B

22B.1. 속의 하위 학명을 출판하면서 자동명이 생성될 때, 명명자는 그 출판물 안에 해당 자동명도 언급해야 한다.

제4절

종의 학명

제23조

23.1. 종의 학명은 속명과 이후에 이어지는 1개의 종소명으로 구성되는 이명 조합 <이명구성, binary combination>으로 종소명은 1개의 형용사, 소유격의 명사, 또는 속명과 동격의 단어이거나, 또는 몇 개 단어의 형태이다. 그러나 탈격 (ablative)에 1개 또는 그 이상의 서술적 명사와 형용사의 조합에 의한 비형식적 단어 <구명**, phrase name>이거나 (제23.6조(a) 참조) 또는 다른 불규칙으로 만들어진 명칭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23.6조(b-d) 참조). 종소명이 2개 또는 그 이상의 단어로 구성되면 그 단어는 합쳐지거나 또는 하이픈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최초에 출판되었을 때 이렇게 연결되지 않은 소명은 폐기하지 않고, 제60.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용 할 때 합치거나 또는 하이픈으로 연결한다.

23.2. 종명의 종소명은 어떤 어원으로 해도 좋고, 또 임의대로 작성해도 좋다 (단, 제 60.1조 참조).

예제 1. *Adiantum capillus-veneris*, *Atropa bella-donna*, *Cornus sanguinea*, *Dianthus monspessulanus*, *Embelia sarasiniorum*, *Fumaria gussonei*, *Geranium robertianum*, *Impatiens noli-tangere*, *Papaver rhoeas*, *Spondias mombin* (어미 변화를 하지 않는 소명), *Uromyces fabae*.

**[역자 주] 구명(句名): 2개의 단어로 구성된 이름이거나 일상적 단어로 구성된 경우

23.3. Linnaeus가 제안한 종소명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기호에 대해서는, 관련 학명의 합법적 출판에 저촉되지 않지만, 사용 가능한 단어로 고쳐 사용한다.

예제 2. *Scandix "pectin" ♀* L.은 *Scandix pecten-veneris*로 고쳐 쓴다. *Veronica "anagallis" ▽* L.는 *Veronica anagallis-aquatica*로 고쳐 쓴다.

23.4. 종소명은 기호를 언어로 교체하거나 또는 교체하지 않더라도, 속명을 완전히 그대로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반복에 의해 형성된 이름은 반복명 (tautonym)이다].

예제 3. "*Linaria linaria*"와 "*Nasturtium nasturtium-aquaticum*"는 반복명 (tautonym)이며 합법적으로 출판할 수 없다.

예제 4. *Linum radiola* L. (1753)을 다른 속인 *Radiola* Hill로 옮길 때에는, Karsten (1882)과 같이 "*Radiola radiola*"로 명명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조합은 반복명 (tautonym)으로 합법적으로 출판할 수 없다. 그 다음의 선취권이 있는 학명인 *L. multiflorum* Lam. (1779)은 *L. radiola*에 대한 잉여명으로 서명이 된다. *Radiola*속에서는 적명인 *R. linoides* Roth (1788)를 사용한다.

23.5. 종소명은 형용사이면서 명사로 사용되지 않을 때, 속명과 문법적으로 일치한다. 동격의 명사이거나, 소유격의 명사인 경우에는 속명의 성에 무관하게 자체 성과 어미변화를 따른다. 소명이 이런 조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수정하며 (제32.2조 참조). 특히 형용사로서 *-cola* 라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 정정 가능한 오류로 본다.

예제 5. 형용사의 소명을 가진 학명: *Helleborus niger* L., *Brassica nigra* (L.) W. D. J. Koch, *Verbascum nigrum* L.; *Rumex cantabricus* Rech. f., *Daboecia cantabrica* (Huds.) K. Koch (*Vaccinium cantabricum* Huds.); *Vinca major* L., *Tropaeolum majus* L.; *Bromus mollis* L., *Geranium molle* L.; *Peridermium balsameum* Peck은 *Abies balsamea* (L.) Mill.의 소명에서 유래하고, 형용사로 취급한다.

예제 6. 소명이 명사인 학명: *Convolvulus cantabrica* L., *Gentiana pneumonanthe* L., *Lythrum salicaria* L., *Schinus molle* L., 모두는 Linnaeus 이전의 속명을 이용한 소명이다. *Gloeosporium balsameae* Davis는 *Abies balsamea* (L.) Mill.의 소명에서 유래하였고, 명사로 취급한다.

예제 7. 수정 가능한 오류: *Polygonum segetum* Kunth (1817)의 소명은 소유격 복수의 명사 ("옥수수 밭의"를 의미); Small은 새로운 조합 *Persicaria "segeta"*를 제안하였지만, 이는 *Persicaria segetum* (Kunth) Small (1903)로 수정 가능한 오류였다. *Masdevallia echidna* Rchb. f. (1855)의 소명은 동물의 속명에 일치한다; Garay는 새로운 조합 *Porroglossum "echidnum"*을 제안하였지만, 이는 *P. echidna* (Rchb. f.) Garay (1953)로 수정 가능한 오류였다.

예제 8. Blanchard는 *Rubus "annicolus"*를 제안하였지만, 이는 *R. annicola* Blanch. (1906)로 수정 가능한 오류였다.

23.6. 아래 지정된 이름은 종의 학명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a)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재적인 명사와 이와 관련된 탈격의 형용사로 구성된 구명 [Linnaeus식 정통 종명 (다명-polynomial)]을 따르는 속명으로 구성된 기재적인 명칭.

예제 9. *Smilax "caule inermi"* (Aublet, Hist. Pl. Guiane 2, Tabl.: 27. 1775)는 불완전하게 알려진 종에 대한 단축된 기재적 인용이다. 그 종은 본문에서 이명 (2개 이름, binomial) 이 주어지지 않고, Burman에서 인용된 구명 <phrase name>을 단순히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b) 속명 다음에 종소명으로서 의도되지 않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단어로 구성된 종의 명칭.

예제 10. *Viola "quails"* (Krocker, Fl. Siles. 2: 512, 517. 1790); *Urtica "dubia?"* (Forsskål, Fl. Aegypt.-Arab.: cxxi. 1775)의 "dubia?" (의심스러운)라는 단어는 Forsskål의 저술 중에서 확실하게 동정하지 못한 종에 대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제 11. *Atriplex "nova"* (Winterl, Index Hort. Bot. Univ. Hung.: fol. A [8] recto et verso. 1788)의 "nova" (새로운)라는 단어는 여기에서는 *Atriplex*의 다른 4종에 대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Artemisia nova* A. Nelson (Bull. Torrey Bot. Club 27: 274. 1900)에서는, *nova*는 다른 종과 새롭게 구별된 종의 종소명으로 사용되었다.

예제 12. *Cornus "gharaf"* (Forsskål, Fl. Aegypt.-Arab.: xci, xcvi. 1775)는 임시 명칭이며, 종명으로 의도된 것은 아니다. Forsskål의 저술 중의 일반명으로 [이는 저자에 의해 수용된 분류군에 대한 명칭, 제36.1조(b)에서 정의된 "예정명" <provisional name>이 아님], 이 저술의 "Centuriae" 부분에서 소명으로는 쓰지 않았다. *Elcaja "roka"* (Forsskål, Fl. Aegypt.-Arab.: xcvi. 1775)는 그런 임시 명칭의 또 하나의 예이며, 이 작업의 다른 부분 (p. c, xcvi, 127)에서도 이 종은 명명되지 않았다.

예제 13. *Agaricus "octogesimus nonus"*와 *Boletus "vicesimus sextus"* (Schaeffer, Fung. Bavar. Palat. Nasc. 1: t. 100. 1762; 2: t. 137. 1763)의 경우는 열거하기 위해서 이용된 서수 형용사가 속명의 뒤를 잇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종은 같은 저술의 마지막 권 (1774)에서 학명 *A. cinereus* Schaeff. 와 *B. unguatus* Schaeff.가 출판을 통해 합법적으로 제시되었다.

예제 14. Honckeney (1782; 제46조 예제 40을 참조)는 *Agrostis*속 하에서 "*A. Reygeri I.*", "*A. Reygeri II.*", "*A. Reygeri III.*" (이는 모두 Reyger, Tent. Fl. Gedan.: 36-37. 1763에 기재하였으나 명명되지 않은 종을 나타냄)과 같은 종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또한, *A. alpina* Scop.에 이은 새롭게 기재된 종에는 "*A. alpina II.*"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이는 단순히 열거하기 위해 이용된 비공식 명칭이며, 합법적으로 출판된 이명 <2개 이름, binomial>의 학명이 아니기 때문에, "*Agrostis reygeri-prima*"처럼 확장해서는 안 된다.

예제 15. *Salvia "africana coerulea"* (Linnaeus, Sp. Pl.: 26. 1753)와 *Gnaphalium "fruticosum flavum"* (Forsskål, Fl. Aegypt.-Arab.: cxix. 1775)는 2개의 주격의 형용사적인 단어가 뒤를 잇는 속명이다. 이것은 종명으로 보서는 안 된다.

(c) 속명 다음에 2개 또는 그 이상의 주격 형용사적인 단어가 이어지는 종의 명칭.

예제 16. 그러나 *Rhamnus "vitis idaea"* Burm. f. (Fl. Ind.: 61. 1768)는 종명으로 간주되어야 하는데, 속명의 뒤에 주격인 명사와 형용사가 같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들 단어는 제23.1조와 제60.9조의 규정에 의해 하이픈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R. vitis-idea*). *Anthyllis "Barba jovis"* L. (Sp. Pl.: 720. 1753)에서는 속명의 뒤에 주격의 명사와 속격의 명사가 이어지는데, 이들은 하이픈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A. barba-jovis*). 마찬가지로, 속명의 뒤에 부정의 소사(小詞)와 형용사로 사용된 과거 분사가 이어지는 *Hyacinthus "non scriptus"* L. (Sp. Pl.: 316. 1753)은 *H. non-scriptus*로 수정한다. 그리고 속명의 뒤에 2개의 동사가 이어지는 *Impatiens "noli tangere"* L. (Sp. Pl.: 938. 1753)은 *I. noli-tangere*로 수정한다.

예제 17. *Narcissus "Pseudo Narcissus"* L. (Sp. Pl.: 289. 1753)에서는, 속명의 뒤에 접두사 (단독으로는 의미를 갖지 못하는 단어)와 주격의 명사가 이어지는데, 이 학명은 제23.1조와 제60.9조의 규정에 의해 *N. pseudonarcissus*로 수정되어야 한다.

(d) 잡종을 의미하는 형식(제H.10.2조 참조).

23.7. Linnaeus에 의해 종소명으로 사용된 구명 <phrase name>은 Linnaeus 자신이 추후 사용한 방법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단, 제23.6(c) 참조).

예제 18. *Apocynum "fol. [foliis] androsaemi"* L. 은 *A. androsaemifolium* L. (Sp. Pl.: 213. 1753 [corr. <수정> L., Syst. Nat., ed. 10: 946. 1759])로, *Mussaenda "fr. [fructu] frondoso"* L. 는 *M. frondoso* L. (Sp. Pl.: 177. 1753 [corr. <수정> L., Syst. Nat., ed. 10: 931. 1759])로 인용한다.

23.8. 제23.6조에 의해 종의 명명 상태가 불확실 할 때에는 관례를 따라야 한다 (전문 제13 참조).

***예제 19.** *Polypodium "F. mas"*, *P. "F. femina"*, 및 *P. "F. fragile"* (Linnaeus, Sp. Pl.: 1090-1091. 1753)는 확립되어 있는 관례에 따라 각각 *P. filix-mas* L., *P. filix-femina* L. 및 *P. fragile* L.로 다뤄야 한다. 마찬가지로, *Cambogia "G. gutta"*는 *C. gummi-gutta* L. (Gen. Pl.: [522]. 1754)로 다뤄야 한다. *Asplenium*과 *Trifolium*의 Linnaeus의 종의 학명에는 각각 "*Trich.*" [*Trichomanes*]와 "*M.*" [*Melilotus*]이 삽입되어 있지만, 이는 삭제해야 한다. 즉, 예로서 *Asplenium "Trich. dentatum"*과 *Trifolium "M. indica"*와 같은 형태의 학명은 *A. dentatum* L.와 *T. indicum* L.와 같이 취급한다 (Sp. Pl.: 765, 1080. 1753).

권고 23A

23A.1. 종소명으로서 사용되는 인명, 또는 국명이나 지명은 소유격 명사형 (*clusii*, *porsildiorum*, *saharae*), 또는 형용사형 (*clusianus*, *dahuricus*)을 선택해야 한다 (제60조, 권고 60C와 60D도 참조).

23A.2. 동일 속 내의 다른 2종의 명칭으로서, 같은 단어의 소유격형과 형용사형을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예, *Lysimachila hemsleyana* Oliv.와 *L. hemsleyi* Franch.).

23A.3. 종소명을 만들 때 명명자는 다음과 같은 지시에 따라야 한다.

- (a) 가능한 라틴어의 어미를 사용할 것.
- (b) 너무 길거나, 라틴어로 발음이 어려운 것을 피할 것.
- (c) 다른 언어로부터 유래된 단어와 합쳐 소명을 만들지 않을 것.
- (d) 2개 이상의 하이픈으로 연결된 단어는 피할 것.
- (e) 속명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단어 <중복중어(重複中語), pleonasm>**를 사용하지 말 것.
- (f) 속의 모두 또는 대부분 종에 공통되는 형질을 의미하는 것은 피할 것.

** [역자 주] pleonasm-플레오나즘: 강조나 수사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논리적으로는 불필요한 말을 덧붙이는 표현 방법

- (g) 같은 속 안에서 대단히 비슷한 소명, 특히 마지막 문자만이 다르거나 2개 문자의 배열만 다른 소명은 피할 것.
- (h) 근연(近緣)의 속에서 이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소명을 피할 것.
- (i) 만약 명명자가 출판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통신, 여행자 노트, 식물표본의 레이블, 또는 이것들과 유사한 자료 중에 발견된 어떤 출판되지 않은 이름에서는 채택하지 말 것 (권고50G 참조).
- (j) 해당 종이 아주 지역적이지 않다면, 거의 알려지지 않거나, 또는 매우 제한된 장소의 이름은 사용하지 말 것.

제5절

종 계급 이하 분류군 (종 이하 분류군)의 학명

제24조

24.1. 종 이하 분류군의 학명은 종의 학명과 종 이하 분류군의 소명과 조합이다. 그 계급을 나타내기 위해서 연결어를 이용할 수 있다.

예제 1. *Saxifraga aizoon* subf. *surculosa* Engl. & Irmsch. 이 분류군은 *Saxifraga aizoon* var. *aizoon* subvar. *brevifolia* f. *multicaulis* subf. *surculosa* Engl. & Irmsch로 인용하여도 좋다. 이 방법에서는 아품종의 학명뿐 아니라, 종내 분류상의 위치가 모두 나타난다.

24.2. 종 이하 소명은 종소명과 같은 방법으로 구성되며 형식은 형용사적이며 명사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속명과 문법적으로 일치 시킨다 (제32.2조 참조).

예제 2. *Solanum melongena* var. *insanum* (L.) Prain (Bengal Pl.: 746. 1903. 'insana'). 'insana'를 'insanum'으로 수정함.

24.3. 분류군의 학명이 상위 분류군의 기준을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genuinus*, *originalis*, *originarius*, *typicus*, *verus* 및 *verdicus* 와 같은 최종소명을 가지는 종 이하 계급의 이름은 자동명 (제26조)이 아니라면 합법적으로 출판된 것이 아니다.

예제 3. "*Lobelia spicata* var. *originalis*" (McVaugh in *Rhodora* 38: 308. 1936)는 합법적으로는 출판되지 않았지만 (제26조 예제1을 참조), 자동명인 *Galium verum* L. subsp. *verum*과 *G. verum* var. *verum*은 합법적으로 출판되었다.

예제 4. *Aloe perfoliata* var. *vera* L. (Sp. Pl.: 320. 1753)는 *A. perfoliata* L. (1753)의 기준표본을 포함하려 한 것이 아니므로 합법적으로 출판되었다.

24.4. 종 이하 분류군의 소명 대신 이명 <2개 이름, binary> 조합 <이명구성>을 이용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32.1조(c)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성된 학명은 합법적으로 출판된 것이며, 명명자의 인용이나 출판날짜를 바꾸지 않고 적절한 형으로 변경해서 사용한다.

예제 5. *Salvia grandiflora* subsp. "*S. willeana*" (Holmboe, Bergens Mus. Skr., ser. 2, 1 (2): 157. 1914)는 *S. grandiflora* subsp. *willeana* Holmboe로 인용하여야 한다.

예제 6. *Phyllerpa prolifera* var. "*Ph. Firma*" (Kützing, Sp. Alg.: 495. 1849)는 *P. prolifera* var. *firma* Kütz.로 변경하여야 한다.

① 노트 1. 다른 종에 속하는 종 이하 분류군은 최종소명이 같은 이름이어도 좋다. 즉, 하나의 종 내의 종 이하 분류군은 다른 종의 이름을 동일 최종소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권고 24B.1 참조).

예제 7. *Rosa glutinosa* var. *leioclada* H. Christ (Boissier, Fl. Orient. Suppl.: 222. 1888)와 *Rosa jundzillii* f. *leioclada* Borbás (Math. Tenn. Közlem. 16: 376, 383. 1880)은 모두 인정된다. 마찬가지로, *Viola tricolor* var. *hirta* Ging. (Candolle, Prodr. 1: 304. 1824)는 *Viola hirta* L.이 이미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된다.

① 노트 2. 동일종 내의 종 이하 분류군 학명은 다른 기준에 근거한 동일 최종소명이면, 계급을 표시하는 용어는 학명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계급이 달라도 (제53.4조) 동일명이다.

권고 24A

24A.1. 종소명에 대한 권고 (권고 23A)는 종 이하 분류군 소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권고 24B

24B.1. 새로운 종 이하 분류군 이름을 제안하고자 하는 명명자는 이전에 동일 속의 종소명으로서 사용된 최종소명은 피한다.

24B.2. 종 이하 분류군을 종의 계급으로 올리거나, 또는 그 반대로 내릴 경우 (계급의 변동이 있을 때), 그 결과로서 만들어진 조합이 규약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 학명의 최종소명은 유지되어야 한다.

제25조

25.1. 명명법상의 취지를 위해 종 또는 종보다 아래 계급 분류군이 하위 분류군을 포함할 경우에는 종속된 분류군의 합으로 간주한다.

예제 1. *Montia parvifolia* (DC.) Greene이 2개의 아종을 포함할 때, 학명 *M. parvifolia*는 이런 종의 전체에 대해 적용한다. 즉, *M. parvifolia*는 *M. parvifolia* subsp. *parvifolia*와 *M. parvifolia* subsp. *flagellaris* (Bong.) Ferris를 모두 포함하는 전체에 대해 적용되며, *M. parvifolia* subsp. *parvifolia*에 대해서만 사용하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제26조

26.1. 채택된 적법한 종명의 기준표본을 포함하는 종 이하 분류군의 학명은 해당 종 이하 분류군이 소속하는 종의 종소명을 최종소명으로 변경하지 않고 되풀이해서 사용하며 이때 명명자명을 적지 않는다 (제46조). 이러한 학명을 자동명 (autonym)이라 한다 (제6.8조; 제7.6조도 참조).

이 노트 1. 제26.1조는 채택된 종명의 기준을 포함하는 종 이하 분류군의 학명에서만 적용한다 (단, 권고 26A 참조).

26.2. 채택된 합법적인 종명의 기준표본 [즉,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 또는 모든 신타입 (syntype, 등가기준표본), 또는 이전에 지정된 기준표본]을 포함하는 종 이하 분류군의 학명은 소명을 변경하지 않고 최종소명을 되풀이한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출판한 것이 아니다. 본 규정의 취지를 위해서는, 기준표본이 이전에 선정되었던 또는 안되었던 관계없이, 명명법상의 전형적인 종의 기준 요소를 포함한 것을 명확하게 제시한 경우는 기준표본을 포함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 한다 (제24.3조도 참조).

예제 2. Maire (Fl. Afrique N. 3: 177. 1955)는 의도된 조합 "*Vulpia myuros* subsp. *pseudomyuros* (Soy.-Will.) Maire & Weiller"을 시도하였지만, 이명으로 "*F. myuros* L., Sp. 1, p. 74 (1753) sensu stricto"를 포함시킴에 따라, 합법적으로 출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Festuca myuros* L.는 *Vulpia myuros* (L.) C. C. Gmel.의 기본명이기 때문이다.

예제 3. Linnaeus (Sp. Pl.: 3. 1753)는 *Salicornia europaea*내에 2개 변종을 명명하면서, *S. europaea*에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과 신타입 (syntype, 등가기준표본)도 인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2개 변종 모두 합법적으로 출판하였다. 이런 합법적 출판에는 후에 Jafri와 Rateeb (Jafri & El-Gadi, Fl. Libya 58: 57. 1979)가 선정한 *S. europaea*의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이 *S. europaea* var. *herbacea* L. (1753)에 속하며, 후에 Piirainen (Ann. Bot. Fenn. 28: 82. 1991)가 종명과 동일한 기준표본으로 *S. europaea* var. *herbacea*의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을 선정한 것과는 무관하다.

예제 4. Linnaeus (Sp. Pl.: 779-781. 1753)는 *Medicago polymorpha*하에 13개의 변종을 명명하였다. *M. polymorpha* L.은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과 신타입 (syntype, 등가기준표본)도 가지지 않으므로, 모든 변종명은 합법적으로 출판하였다. 실제, 이후에 선정된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 (Heyn in Bull. Res. Council Israel, Sect. D, Bot., 7: 163. 1959에 의한)은 1753년에 출판된 어떤 변종명의 원재료의 일부도 아니었다.

26.3. 적법한 종명에서 종 내 분류군의 학명이 처음 합법적으로 출판되면, 이에 상응하는 자동명은 자동적으로 만들어 진다 (제11.6조와 제32.3조도 참조).

예제 5. 학명 *Lycopodium inundatum* var. *bigelovii* Tuck. (Amer. J. Sci. Arts 45: 47. 1843)의 출판에 의해, 또 다른 하나의 변종의 학명 *L. inundatum* L. var. *inundatum*이 자동적으로 성립되었다. 이는 자동명이며, 그 기준은 학명 *L. inundatum* L.의 기준이다 (제7.6조).

예제 6. Pangalo (Trudy Prikl. Bot. 23: 258. 1930)는 *Cucurbita mixta* Pangalo를 기재하였을 때 2개의 변종 즉, *C. mixta* var. *cyanoperizona* Pangalo와 var. *stenosperma* Pangalo를 구별하고, 이를 합쳐 종의 모든 범위로 하였다. 이때, Pangalo가 자동명을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권고 26B.1을 참조), *C. mixta* var. *mixta*가 자동적으로 성립되었다. *C. mixta*에 대해서는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과 신타입 (syntype, 등가기준표본)도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종명은 모두 합법적으로 출판되었다 (제26.2조를 참조). Merrick과 Bates (Bailey 23: 96, 101. 1989)는 기존의 기준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C. mixta* var. *stenosperma*에 해당하는 요소에 의해 *C. mixta*의 네오타입 (neotype, 신기준표본)을 선정하였다. 네오타입 (neotype, 신기준표본) 지정에 따르는 한 제11.6조에 의해 *C. mixta*에서 인정하는 그 변종의 정명은 1930년에 성립한 *C. mixta* var. *mixta*이며, *C. mixta* var. *stenosperma*은 아니다. Merrick과 Bates에 의해 성립된 것처럼 그 변종이 *C. argyrosperma* Huber (1867) 하에서 인정되는 경우, 그 정명은 *C. argyrosperma* var. *stenosperma* (Pangalo) Merrick & D. M. Bates가 아니라 *C. mixta*에 근거한 조합이 필요하다.

권고 26A

26A.1. 정명 (correct name)인 종의 기준표본을 포함하지 않고 아종의 정명 기준표본을 포함한 변종은 본 규약의 조항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종속되는 아종명과 같은 최종소명과 기준을 가진 학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26A.2. 정명인 종의 기준표본을 포함하지 않는 아종은 조항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아종에 종속되는 변종명과 같은 최종소명 및 같은 기준표본을 가진 학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26A.3. 정명인 종의 기준표본을 포함하지 않고, 아종 또는 변종의 정명 기준표본을 포함하는 변종보다 하위의 계급 분류군은, 본 규약의 조항에 반하지 않는 한, 아종 또는 변종의 학명과 같은 최종소명과 기준표본을 가지는 학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반대로, 종의 정명 기준표본을 포함하지 않는 아종 또는 변종은 변종보다 하위의 계급에 있는 분류군의 학명과 같은 최종명을 가지는 학명을 사용하면 안 된다.

예제 1. Fernald는 *Stachys palustris* subsp. *pilosa* (Nutt.) Epling (Repert. Spec. Nov. Regni Veg. Beih. 8: 63. 1934)내에 다섯 개의 변종을 밝혔다. 이들 중 1개 (*S. palustris* subsp. *pilosa*의 기준표본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사용 가능한 적법적인 변종명이 없었기 때문에, *S. palustris* var. *pilosa* (Nutt.) Fernald (Rhodora 45: 474. 1943)라는 조합을 만들었다.

예제 2. 아종의 계급에서 사용 가능한 적명이 없었기 때문에, Bonaparte는 Sadebeck이 조합 *Pteridium aquilinum* var. *caudatum* (L.) Sadeb. (Jahrb. Hamburg. Wiss. Anst. Beih. 14 (3): 5. 1897)에서 전에 사용한 것과 같은 최종소명을 이용하여, 조합 *P. aquilinum* subsp. *caudatum* (L.) Bonap. (Notes Ptérid. 1: 62. 1915)을 만들었다. 이 조합은 모두 *Pteris caudata* L.에 근거하며, 두 학명은 모두 적법적으로 둘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Tryon (Rhodora 43: 52-54 1941)이 *P. aquilinum* var. *caudatum*을 subsp. *caudatum* 하의 4개의 변종 중 1개로 취급한 것과 같다 (제36.2 조도 참조).

권고 26B

26B.1. 자동명이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종 이하 분류군이 형성되는 학명을 출판할 때에는 명명자는 출판 시 반드시 자동명을 언급해야 한다.

제27조

27.1. 두 학명이 같은 기준을 가질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 이하 분류군의 이름에서 최종소명은 해당 분류군이 속하는 종의 정명 종소명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는다.

27.2. 만약 종 이름이 서명인 경우 종 이하 분류군의 최종소명은 종의 종소명을 변경하지 않은 채 동일하게 반복하지 않는다.

예제 1. Honda (Bot. Mag. (Tokyo) 41: 385. 1927)는 *Agropyron japonicum* var. *hackelianum* Honda를 발표하였는데, 이때 종이름인 *A. japonicum* Hoda (1927)는 *A. japonicum* (Miq.) P. Candargy (1901)의 후동일명으로 서명이기 때문에 자동명 "*A. japonicum* var. *japonicum*"은 합법적으로 출판하지 않았다 (제55조 예제3도 참조).

제6절

재배 식물의 학명

제28조

28.1. 야생에서 확보되어 재배되는 식물은 자연계에 생육하는 동일 분류군에 적용되는 학명을 그대로 사용한다.

① 노트 1. 재배 상태에서 형성된 잡종은 부칙1에 규정하는 학명을 사용한다 (제11.9조, 제32.4조와 제50조도 참조).

① 노트 2. 농업, 임업 및 원예 (자연상태 또는 재배 하에서 생겨난)에서 사용하는 식물체의 특별 범주의 부가적, 독립적 지정은 기본적인 범주인 재배품종 (cultivar)을 정의한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 (ICNCP)을 따른다 (전문 제11 참조).

① 노트 3. 재배식물에 대해서는 현 명명규약에 따라 출판된 학명은 허용된다.

① 노트 4. 명명규약에 따라 출판된 학명의 이름은 해당 분류군에 대한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 (ICNCP)의 조항 하에 재배품종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의 조항을 따라 인용부호를 포함한 재배품종의 소명으로 유지해서 사용할 수 있다.

예제 1. *Mahonia japonica* DC. (1821)는 재배품종으로 취급하기도 하며, 이 경우에는 *Mahonia japonica* 'Japonica'로 불린다. 또, *Taxus baccata* var. *variegata* Weston (1770)는 재배품종으로 취급될 때 *Taxus baccata* 'Variegata'로 불린다.

① 노트 5.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은 이 규약에서 제시되는 소명과는 분명히 다른 재배품종의 소명이 제시된다.

예제 2. ×*Disophyllum* 'Frühlingsreigen'; *Eriobotrya japonica* 'Golden Ziad'와 *E. japonica* 'Maamora Golden Yellow'; *Phlox drummondii* 'Sternenzauber'; *Quercus frainetto* 'Hungarian Crown'.

예제 3. *Juniperus* ×*pfitzeriana* 'Wilhelm Pfitzer' (P. A. Schmidt 1998)는 *J. chinensis* L.와 *J. sabina* L.의 교배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4배체의 재배품종이다.

제4장

유효 출판

제1절

유효 출판의 조건

제29조

29.1. 본 명명규약에서의 출판은 인쇄물 (판매, 교환 또는 기증에 의해)을 일반대중에, 또는 최소한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도서관을 겸비한 과학(식물) 연구기관에 배포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2012년 1월 1일 이후에 ISSN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또는 ISBN (국제표준도서번호)을 가진 온라인 출판물 중 PDF (Portable Document Format, 제29.3조 및 권고 29A.1 참조) 형식의 전자 저술물을 배포하는 출판도 유효하다.

예제 1. *Piromyces polycephalus* Y. C. Chen & al. (2002)에 근거한 새로운 조합 *Anaeromyces polycephalus* (Y. C. Chen & al.) Fliegerová & al.을 포함한 논문 (Kirk의 Index Fungorum 1: 1. 2012)은 2012년 1월 1일에 ISSN을 가지고 PDF (전자문서)로 온라인 출판되었을 때, 유효하게 출판되었다.

i 노트 1. 2012년 1월 1일 이전에 배포된 전자 저술물은 유효 출판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예제 2. *Flora of China*의 제20-21권의 국화과 기술은 많은 명명법상의 새로운 제안들을 담았고, PDF로 2011년 10월 25일 온라인 출판이 되었다.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출판되었으며, ISBN도 ISSN도 제시하지 않은 이유로 이 새로운 제안은 유효하게 출판되지 않았다. 유효 출판은 같은 권 (volume)의 인쇄판이 출판된 2011년 11월 11일이 된다.

예제 3. 규조류 *Tursiocola podocnemicola*가 처음으로 기재된 논문은 *Diatom Research website* (인쇄판 ISSN 0269-249X; 온라인판 ISSN 2159-8347)를 통해 "iFirst" PDF 문서 (DOI: 10.1080/0269249X.2011.642498)로 2011년 12월 14일에 온라인으로 배포되었다. 이 논문은 PDF로 ISSN을 동반한 전자출판물로 온라인에서 출판되었지만,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출판되어 유효하게 출판되지 않았다. 이 논문은 단순히 온라인에서 입수 가능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2012년 1월 1일에도 유효 출판이 되지 못 하였다. 유효 출판일은 저널 (*Diatom Res.* 27: 2. 2012)의 인쇄판이 배포된 2012년 2월 28일이 된다.

29.2 제29.1조의 목적은 온라인이 www (World Wide Web, 광역정보서비스, 웹)을 통해 컴퓨터로 접속이 가능한 경우로 정의한다.

29.3. 만약 PDF (전자문서)가 승계되면 전체위원회 (제3부 참조)에 의해 통지하는 후속의 국제표준형식으로 인정한다.

권고 29A

29A.1. PDF에 의한 전자적 인쇄물은 PDF/A 표준기록 (ISO 19005)을 따라야 한다.

29A.2. 전자인쇄물의 저자들은 실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고 보관되며, 관리가 되는 인쇄물에 선취권을 준다 (권고 29A, 1도 참조).

- (a) 전자인쇄물은 신뢰하는 다수의 온라인 디지털 저장소, 예로써, ISO-인증 저장소와 같은 곳에 보관해야 한다.
- (b) 디지털 보관소는 전 세계 1개 지역 이상과 가급적 다른 여러 국가에 존재하여야 한다.
- (c) 도서관에 인쇄물 보관은 전 세계 1개 지역 이상과 가급적 다른 여러 국가에 보관함을 권한다 (단 권고 30A2, 참조).

제30조

30.1. 공개된 모임 (장소)에서 새로운 학명을 출판하는 것, 일반에게 공개되는 채집품이나 식물원 안에 학명을 전시하는 것, 손으로 제작된 원고 (수기인쇄)나 타자기로 친 원고, 또는 기타 미출판 자료로부터 만들어진 마이크로필름을 발행하는 것, 또는 제29조에 제시된 이외의 전자매체에 의해 배포하는 것은 유효한 출판이 아니다.

예제 1. Cusson은 1770년 몽페리에과화학회와 이후의 1782년과 1783년의 파리의학회에서 낭독한 연구보고에서 새로운 속, *Physospermum*의 설정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속의 유효 출판은 1787년 (Hist. Soc. Roy. Méd. 5 (1): 279)이 된다.

30.2. 전자출판물이 단순한 잠정판 (버전)이거나, 출판자가 최종이라고 생각하는 판 (버전)에 의해 대체된 것이거나 대체될 예정인 출판물이라고 입증되거나 관련이 될 경우 해당 전자출판물은 유효 출판이 아니다. 이 경우에 최종 본만이 유효 출판이 된다.

예제 2. 학명 *Rodaucea*는 처음에 저널 *Mycologia* (인쇄판 ISSN 0027-5514; 온라인판, ISSN 1557-2436) 웹사이트를 통해 접속 가능한 PDP문서로 2012년 1월 12일에 온라인의 논문 속에서 출판되었다. 이 문서는 표제에 "In Press (출판 중)"이라 기록되어있고, 이 저널의 웹사이트에는 이 문서가 "Preliminary version (예정판)"으로 조건이 붙어 있다. 이는 출판자에 의해 최종판이라고 간주하지 않은 명백한 증거이다. 이 문서의 최종판은 온라인과 인쇄로 동시에 출판되었고, 이 학명의 올바른 인용은 *Rodaucea* W. Rossi & Santam. in *Mycologia* 104 (print and online): 785. 11 Jun 2012이다.

예제 3. 학명 *Lycopinae*는 처음에 온라인으로 2012년 4월 26일에 *American Journal of Botany* (ISSN 0002-9122, 인쇄본: ISSN 1537-2197, 온라인판)의 웹사이트를 통해 제시된 논문으로서, PDF 문서로 열람이 가능한 "출판 전에 가능한 판"이라 하였다. 이 저널의 웹사이트에서는 "AJB Advance Access의 논문은... 아직 인쇄되지 않고, 발행물로 온라인으로 공개되지 않았다"라는 표현과 함께 "발행물이 공표되기 전에 일부 작은 수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어 (2012년 5월), 이 발표가 출판자에 의한 최종판이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Lycopinae* B. T. Drew & Sytsma가 학명을 포함한 논문이 유효하게 출판된 시기는 2012년 5월 1일, Amer. J. Bot. 99: 945이다.

예제 4. 학명 *Nanobubon hypogaenum* J. Magee가 출판된 논문 (S. African J. Bot. 80: 63-66; ISSN 0254-6299)은 인쇄판 발행 (2012년 5월)에 앞서 "최종적으로 완전히 인용가능"한 형태로 2012년 3월 30일에 PDF 문서로 온라인에서 유효하게 발행하였다. 그러나 저널의 웹사이트에서는 "Corrected Proofs는 저자에 의한 수정을 포함한다. 최종 발행 전에 권 호 수, 출판연도, 쪽 번호 등의 최종적인 인용의 상세사항이 더해질 필요가 있으며 본문이 바뀔 수도 있다."로 명료하게 언급하였다. 따라서 같은 저널 온라인에 출판된 "In Press Corrected Proof"가 붙은 논문은 유효하게 출판하지 않았다.

i 노트 1. 전자출판물의 부적당한 ISSN 또는 ISBN (즉, ISSN 또는 ISBN이 가공의 것, 또는 전자 저술물을 포함하지 않은 연재 간행물, 또는 서적, 즉 ISSN 또는 ISBN의 인용전자 저술물이 게재되어 있는 기사의 공식 보유로 된 것 조작)을 인용하면, 제29.1조에 의해 유효 출판이 될 수 없다.

예제 5. Meyer, Baquero과 Cameron은 새로운 종으로 확신하고 "*Dracula trigonopetala*"을 기재한 논문을 2012년 3월 1일에 온라인에서 PDF/A문서로 출판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저널명과 ISSN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Orchideen Journal* (ISSN 1864-9459)의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가능하며, 이 논문은 "ISSN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이 첨부된 온라인 출판" (제29.1조)으로 적격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논문은 *Orchideen Journal*의 출판에 적합한 형식이 아니며, 분명히 이 저널에 포함됨을 의도한 것이 아니다. 독일어로 번역된 이 논문의 신판은 2012년 8월 15일에 인쇄판 (*Orchideen J.* 19: 107-112)으로 출판되어 논문은 유효하게 출판되었지만, 라틴어 또는 영어의 기재도 분류군 고유특징도 없기 때문에 "*D. trigonopetala*"는 합법적으로 출판되지 않았다.

30.3. 특정 전자출판물의 내용을 유효하게 출판한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이런 변경은 모두 어떠한 것도 유효하게 출판 된 것이 아니다. 유효 출판을 위해서는 내용의 수정이나 개정은 별도로 발행해야 한다.

i 노트 2. 본문에 포함된 하이퍼링크 또는 URL을 경우한 외부 정보원의 내용은 유효 출판의 일부는 아니다. 쪽 번호(만일 예비거나 누락된 경우) 또는, 투명무늬 같은 본문자체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관련 정보도 유효 출판의 일부는 아니다. 여기서 출판 내용이란 출판자가 최종판이라 지칭하는 것만을 의미한다 (제30.2조 참조).

예제 6. *Botanical Journal of the Linnean Society* (인쇄판 ISSN 0024-4074, 온라인판 ISSN 1095-8339)에 수용된 새로운 속인 *Partitatheca*와 4개의 종을 기재한 논문은 예비 쪽 번호 (1-29)를 부여받아 "Early View (조기판)"의 PDF문서로 2012년 2월 1일에 온라인에서 공개되었다. 문서 자체에서, 이 논문은 "출판본 (Version of Record)" (NISO-RP-8-2008에 의해 정의된 논문의 출판에 관한 상태의 표현)라고 밝히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저널의 출판자에 의한 최종판으로 확실하게 인정된다. 이후에 권의 쪽 번호 (229-257)가 추가된 것 이외에는 동일한 전자판이 2012년 2월 27일 인쇄와 동시에 출판되었다. 이 속명의 올바른 인용의 예는, *Partitatheca* D. Edwards & al. in *Bot. J. Linn. Soc.* 168 (online): [2 of 29], 230. 1 Feb 2012이며, 또는 "...168 (online): 230. 1 Feb. 2012." 만으로 충분하다.

예제 7. 새로운 조합 *Rhododendron aureodorsale*은 *Nordic Journal of Botany* (온라인판 ISSN 1756-1051, 인쇄판 ISSN 0107-055X)의 논문으로 발표되었고, 처음에는 온라인에서 2012년 3월 13일에 디지털 객체 식별자 (Digital Object Identifier, DOI)를 갖지만 잠정적인 쪽 번호 (1-EV부터 3-EV) 밖에 없는 "Early View (조기판)", "저널에 포함되기 전에 출판된 기록 온라인판"으로 유효하게 출판하였다. 2012년 4월 20일 인쇄판의 발행과 동시에, 전자판의 쪽 번호가 184-186으로 변경되었고, 인쇄판의 발행일이 추가되었다. 이 조합은, *Rhododendron aureodorsale* (W. P. Fang ex J. Q. Fu) Y. P. Ma & J. Nielsen in *Nordic J. Bot.* 30 (online) 184. 13 Mar 2012 (DOI : 10.1111/j.1756-1051.2011.01438.x)로 인용할 수 있다.

예제 8. *Echinops antalyensis*를 포함한 *Echinops*의 두 새로운 종은 *Annales Botanici Fennici* (온라인판 ISSN 1797-2442, 인쇄판 ISSN 0003-3847)에 논문으로 기재되었다. 이 논문은 잠정적인 쪽 번호 ([1]-4)와 "preprint (인쇄 전)"란 배경무늬로 붙여서, 온라인 PDF문서로 2012년 3월 13일 최종적인 형태로 유효 출판되었다. 2012년 4월 26일에 인쇄판이 출판되었을 때 온라인 문서의 쪽 번호가 수정되고 (95)-98), "preprint"라는 투명무늬는 제외되었다. 이 학명의 올바른 인용은 *E. antalyensis* C. Vural in Ann. Bot. Fenn. 49 (online): 95. 13 Mar 2012이다.

30.4. 1953년 1월 1일 이전에 손으로 제작된 인쇄물 <수기인쇄> 출판은 유효하다. 이 날짜 이후에 제작된 손으로 제작된 인쇄물 <수기인쇄>은 유효한 출판이 아니다.

30.5. 제30.4조의 경우 손으로 제작된 인쇄물 <수기인쇄>은 기계적 또는 그래픽 인쇄 기술 [예를 들면 석판인쇄, 오프셋, 또는 금속성 식각 <에칭>]에 의해 복제된 재생산된 수작업 된 자료를 의미한다.

예제 9. Lévillé의 *Flore du Kouy Tchéou* (1914-1915)은 자필 원고에서 석판인쇄 된 저술이다.

예제 10. *Salvia oxyodon* Webb & Heldr.는 손으로 제작된 인쇄물 <수기인쇄>의 카탈로그에서 유효하게 출판되었다 (Webb & Heldreich, *Catalogus plantarum hispanicarum ... ab A. Blanco lectarum*, Paris, Jul 1850, folio).

예제 11.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Conifer Preservation Society*, vol. 5[1]. 1997 ("1998")는 수기의 추가와 수정이 몇 군데 있는 타자 원고를 복제한 중복의 장이 포함되어 있다. 수기 부분은 1953년 1월 1일 이후에 손으로 제작된 인쇄물 <수기인쇄>이기 때문에 유효 출판은 아니다. 의도 된 새로운 조합(예를 들어 "*Abies koreana* var. *yuanbaoshanensis*", p. 53)은 기본명 인용이 손으로 제작된 부분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출판하지 않았다. 전부가 손으로 쓴 새 분류군에 대한 기술 (61쪽: 학명, 라틴어 기재문, 기준의 언급)은 출판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한다 (권고 50G도 참조).

예제 12. Bentham은 속 *Siphonia* Benth.가 *Siphonia* Rich. ex Schreb. (1791)의 후동일명인 것을 알게 되어, 삭제될 이름인 *Siphonia*를 대신하기 위해 *Plantae hartwegianae* (1841: 84)에 인쇄하였지만 아직 배포되지 않은 분책의 가장자리에 잉크로 "*Lindenia*"를 손으로 적어 추가하였다. 이 분책은 이후 배포되었지만, 손으로 적은 부분은 기계적 또는 그래픽 처리에 의해 복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Lindenia*"는 유효하게 출판되지 않았다.

30.6. 1953년 1월 1일 이후에 상업 카탈로그 중이나 비과학 분야인 신문지상에 출판하거나 1973년 1월 1일 이후에 종자교환 리스트에 출판한 것은 유효 출판으로 하지 않는다.

30.7. 1953년 1월 1일 이후는 표본을 동봉한 인쇄물의 배포는 유효 출판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① 노트 3. 인쇄물이 표본과 독립적으로 배포되었다면 유효하게 출판한 것이다.

예제 13. Fuckel의 건조 표본집 *Fungi rhenani exsiccati* (1863-1874)에 인쇄된 레이블은, 독립적으로 발행되지 않아도 유효하게 출판하였다. 이 레이블은 Fuckel의 이후 보고 논문 (예, *Jahrb. Nassauischen Vereins Naturk.* 23-24. 1870)보다 날짜가 앞선다.

예제 14. Vězda의 건조 표본집 *Lichenes selecti exsiccati* (1960-1995)는 인쇄된 레이블과 함께 발행되고 있으며, 그 레이블은 인쇄된 분책으로도 배포되었다. 이 분책은 유효하게 출판하였으며, Vězda의 레이블에 보이는 명명법상의 새로운 제안은 이 분책으로서 인용하여야 한다.

30.8. 1953년 1월 1일 이후 간행물 중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대학 또는 기타 교육 기관에 제출된 학위논문으로 명시된 독립적인 비 연속간행물 출판은 명확한 언급 (유효 출판을 위한 규약의 요구에 대한)이 있거나, 저자 또는 출판자가 유효한 출판물로 간주하는 다른 내적 증거가 없다면 유효 출판물로 간주하지 않는다.

① 노트 4. 최초의 인쇄판에 ISBN (국제표준서적번호)가 제시되거나, 인쇄자, 출판자, 또는 배포자의 이름이 제시된 것은 유효 출판 의도인 내적 증거로 간주한다.

예제 15. Brandenburg에 의한 "Proefschrift ter verkrijging van de graad van doctor... van Wageningen Universiteit (Wageningen대학의...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학위 논문)"인 "*Meclatis in Clematis; yellow flowering Clematis species-Systematic studies in Clematis L. (Ranunculaceae), inclusive of cultonomic aspect*"는 ISBN 90-5808-237-7이 붙어 있어서 2000년 6월 8일에 유효하게 출판하였다.

예제 16. Rietema가 1975년에 Rijksuniversiteit te Groningen에 제출한 학위 논문 "Comparative investigations on the life-histories and reproduction of some species in the siphonous green algal genera *Bryopsis* and *Derbesia*"는 Verenigde Reproductie Bedrijven, Groningen에 의해 인쇄된 ("Druk")이라고 명확하게 언급되고 있으므로 유효하게 출판하였다.

예제 17. Rexer가 Tübingen의 Eberhard-Karls대학에 제출한 학위 논문 "Die Gattung *Mycena* s.I."에는 "Druck (인쇄): Zeeb-Druck, Tübingen 7 (Hagelloch)"와 인쇄업자를 언급하였기 때문에, 1994년에 유효하게 출판하였다. 따라서 속명 *Roridomyces* Rexer와 *Mycena*의 새로운 종 학명인, *Mycena taiwanensis* Rexer는 합법적으로 출판하였다.

예제 18. Demoulin의 학위논문 "Le genre *Lycoperdon* en Europe et en Amérique du Nord"는 1971년에 심사에 합격하였지만, 그것을 유효하게 출판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적 증거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효하게 출판하지 않았다. 비록 그 복사품이 몇 개 도서관에서 확인이 되지만, 소개된 새로운 종 "*L. americanum*", "*L. cokeri*", "*L. estonicum*"등의 *Lycoperdon*의 학명은 유효하게 출판된 논문 "Espèces nouvelles ou méconnues du genre *Lycoperdon* (Gastéromycètes)" (Dumoulin in *Lejeunia*, ser. 2, 62: 1-28. 1972)에서 합법적으로 출판하였다.

예제 19. Funk에 의해 1980년에 Ohio주립 대학에 제출된 학위 논문 "The Systematics of *Montanoa* Cerv. (Asteraceae)"은 유효하게 출판된 것으로 본다는 내적 증거를 담고 있지 않기에 유효하게 출판하지 않았다. 동일하게 University Microfilms, Ann Arbor에 의해 1980년 이후에 주문을 받고 마이크로피서에서 인쇄되어 배포된 그 학위 논문의 복사물에도 해당된다. 이 학위 논문에서 게재된 학명 *Montanoa imbricate*, V. A. Funk는 유효하게 출판된 논문 "The systematics of *Montanoa* (Asteraceae, *Heliantheae*)" (Funk in *Mem. New York Bot. Gard.* 36:1-133. 1982)에서 합법적으로 출판하였다.

예제 20. Ursula Zinnecker-Weigend에 의한 Ludwig-Maximilians-Universität München (뮌헨대학)에 1990년에 제출된 학위 논문 "Revision der südäfrikanischen Astereengattungen *Mairia* und *Zyrphelis*"는 약 50부가 다른 공공 도서관에 배포되어, 새 분류군의 출판에 필요한 다른 모든 형식을 만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ISBN (국제표준도서번호), 인쇄자, 출판자, 배포자의 이름도 또한 본 규약 하에서 유효 출판을 의도하였다는 어떠한 언급도 없기 때문에 유효하게 출판되지 않았다. 이 학위 논문에서 의도된 학명은 유효하게 논문인 Ortiz & Zinnecker-Wiegand (*Taxon* 60: 1194-1198. 2011)에서 합법적으로 출판하였다.

권고 30A

30A.1. 동일 전자출판물의 예비판 및 최종판은 최초에 발행되었을 때 이를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30A.2. 명명자는 새 분류군의 출판에 의해 단명한 인쇄물, 특히 인쇄 부수가 한정되며, 인쇄 부수가 불확실한 곳에서의 출판을 자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이런 인쇄물은 영구적 보관이 어렵고, 인쇄 부수 관점에서 유효 출판이 불투명하거나 일반인이 보기 힘들다. 또한, 명명자는 새 학명을 대중적인 정기간행물, 초록지, 또는 정보표에 출판하는 것도 삼가해야 한다.

예제 1. Kartesz는 "Nomenclatural innovations"라는 쪽 번호를 달지 않은 인쇄한 삽입물 (부록 insert)을, CD-ROM (콤팩트 디스크; 제30.1조에 의해 효율적으로 출판되지 않음) 상에 작성한 *Synthesis of the North American flora*의 전자판 (1.0)에 올렸다. 이 삽입물은 제29-31조에 의해 유효하게 출판하였으며, Kartesz를 저자로 "A synonymized checklist and atlas with biological attributes for the vascular flora of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Greenland"라는 항목에서, 디스크 상에서도 출판된 41의 새로운 조합 (예, *Dichantheium hirstii* (Swallen) Kartesz in Kartesz & Meacham, Synth. N. Amer. Fl., Nomencl. Innov.: [1], Aug 1999)의 공식 출판의 장이 되었다. 삽입물은 도서관에서 영구히 보존될 것 같지 않으며 도서 목록에 실리지 않고, 일반 대중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Kartesz의 방식은 권하지 않는다.

30A.3. 시간과 공간적으로 이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명명법상의 새로운 내용을 출판하고자 하는 명명자는 분류학 논문을 정기적으로 출판하는 정기간행물에 출판을 우선적으로 시도하거나, 또는 출판된 인쇄물 (인쇄물 또는 전자적으로 배포하는)의 복사본을 분류군에 대해 적절한 목록을 만드는 연구센터에 보내야 한다. 혹 인쇄물로만 존재하는 출판에 대해서는 최소한 10개의 장소, 가능하다면 그 이상이 보관되어야 하며, 전 세계적, 일반적으로 공개된 도서관에 보내야 한다.

30A.4. 명명자 및 편집자는 요약 또는 적요에 명명법상의 새로운 제안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또는 출판물의 색인에 이 부분을 명시하기를 권장한다.

제2절

유효 출판의 날짜

제31조

31.1. 유효 출판의 날짜는 제29조 및 제3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새로운 학명이 출판된 인쇄물이나 전자출판물이 통용된 날짜이다. 별도의 날짜를 확립하는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그 출판물 또는 전자출판물 중에 표기된 날짜를 채택한다.

예제 1. Willdenow의 *Species plantarum*의 각 부분은 다음과 같이 출판되었다: 1(1), Jun 1797; 1(2), Jul 1798; 2(1), Mar 1799; 2(2), Dec 1799; 3(1), 1800; 3(2), Nov 1802; 3(3), Apr-Dec 1803; 4(1), 1805; 4(2), 1806. 이 날짜는 유효 출판의 날짜로 현재 채택된다 (Stafleu & Cowan in *Regnum Veg.* 116: 303. 1988 참조).

예제 2. Fries는 1860년에 *Lichenes arctoi*을 독립적으로 쪽 번호를 붙인 견본인쇄로 먼저 출판하였다. 이는 학술 잡지에 출판된 동일한 내용 (*Nova Acta Reg. Soc. Sci. Upsal.* ser. 3, 3: 103-398. 1861)과 비교해 앞선다.

예제 3. *Diatom Research* 2(2)에는 December 1987의 날짜가 붙어 있다. 그러나 해당호 (issue)의 논문 저자인 Williams & Round는 이어 발표한 논문 (*Diatom Res.* 3: 265. 1988)에서 기존 출판의 실제 날짜는 1988년 2월 18일로 밝히고 있다. 제31.1조에 의해, 이 언급은 본 잡지의 제2권 2호의 다른 출판날짜임을 입증할 증거로 채택한다.

예제 4. 2005년 11월 7일자 *Science Direct*에 *Ceratocystis omanensis* Al-Subhi & al.가 기재된 논문을 최종적인 형태로 온라인에서 볼 수 있지만, 이는 유효하게 출판되지 않았다 (제29조 노트 1). 이 논문은 2006년 3월 7일에 인쇄판 (*Mycol. Res.* 110 (2): 237-245)으로 배포되었고, 이것이 유효 출판날짜가 된다.

31.2. 문헌이 전자출판물과 인쇄물이 동일하게 출판되었을 경우, 제31.1조에 의해 각 문헌과 전자출판물 판의 인쇄날짜가 다르다는 판정이 없는 한, 모두 동일한 날짜에 출판한 것으로 취급한다.

예제 5. *Solanum baretiae*이 합법적 출판된 논문은 2012년 1월 3일, 저널 *PhytoKeys* (ISSN 1314-2003)에 최종판 PDF문서로 온라인 공개 되었다. *PhytoKeys*에 해당하는 인쇄판 (ISSN 1314-2011)은 동일한 쪽 번호와 내용으로 발행 날짜는 없지만, 2012년 1월 6일 날짜의 논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전자판보다 나중이다. 이 학명의 올바른 인용은 *S. baretiae* Tepe in *PhytoKeys* 8 (online): 39. 3 Jan 2012이다.

31.3. 판매되는 정기간행물이나 다른 출판물의 분리인쇄가 미리 발행되었을 경우에는 그 분리인쇄에 붙여진 날짜가 틀렸음을 확인하는 증거가 없는 한, 유효 출판의 날짜로 수용한다.

예제 6. Hieronymus (*Hedwigia* 51: 241-272)에 의해 출판된 *Selaginella*속의 종명은 1911년 10월 15일에 유효하게 출판되었다. 이 논문이 게재된 권 (volume)에 1912년과 날짜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쇄 인쇄물은 먼저 기술한 날짜에 발행되었다고 (2쪽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권고 31A

31A.1. 유효 출판의 날짜는 출판자 또는 출판사의 취급업자가 인쇄물을 일반대중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통상의 운반업자에게 인쇄물을 위탁한 날짜로 한다.

권고 31B

31B.1. 명명자는 자신의 저술 출판날짜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복수의 부분에 나누어 출판되는 저술에 있어서는 다른 분책 또는 부분이 출판된 각각의 정확한 날짜를 각각의 분책 또는 부분의 쪽 번호나 도판의 번호와 함께, 해당 권의 마지막에 출판된 쪽에 표시해야 한다.

권고 31C

31C.1. 정기간행물에 출판된 저술의 발췌 인쇄에는 그 정기간행물의 명칭, 권, 호나 부분 번호, 원래 쪽 번호, 및 발행날짜 (연, 월, 일)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장

학명의 합법적 출판

제1절

일반적인 규정

제32조

32.1. 분류군의 학명 (자동명은 제외)이 합법적으로 출판되기 위해서는 (a) 각 분류군의 출발점의 날짜 (제13.1조) 이후에 유효하게 출판되어야 하며 (제29-31조 참조), (b) 제23.3조, 제60.4조, 제60.6조, 제60.9조, 제60.10조 및 제60.11조에 규정된 내용 이외에는, 라틴어의 알파벳 문자로만 구성되어야 하며, (c) 제16-27조(단, 제21.4조 및 제24.4조 참조) 및 제H.6-7조의 규정을 따른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제61조 참조).

i 노트 1. 분류군을 배열하기 위해, 인쇄기호, 숫자, 또는 라틴어 이외의 알파벳 문자 (종 이하 계급인 번줄을 배열할 때, 그리스 문자 α , β , γ , 등)를 사용하는 것은 분류계급을 제시하는 용어나 수단이 학명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합법적 출판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32.2. 부적당한 라틴어 어미를 가지지만 명명규약에 따라 출판된 학명 또는 소명은 합법적으로 출판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해당 학명, 또는 소명은 명명자명의 인용이나 출판날짜를 수정하지 않고, 제16-19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맞춰 변경을 한다 (제60.12조도 참조).

예제 1. *Cassia* "**Chamaecristae*" L. (Sp. Pl.: 379. 1753)의 소명은 주격 복수형 명사로, Linnaeus 이전의 속의 명칭인 "*Chamaecrista*"에서 유래한다. 그러나 제21.2조에 의하면 이 형용사는 속명과 같은 형식, 즉 주격 단수형 명사이여야 한다 (제20.1조). 따라서 이 학명은 수정해서 *Cassia* [계급 미지정 unranked] *Chamaecrist* L. 라고 인용해야 한다.

32.3. 출판물 내용에서 자동명이 명시되어 있는지 아닌지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명 (제 6.8조)은 성립된 출판날짜로부터 합법적으로 출판된 학명으로 인정한다 (제22.3조 및 제26.3조 참조).

32.4. 라틴어의 소명을 가지는 종 이하 계급의 잡종 학명이 합법적 출판을 위해서는 같은 계급의 비 잡종분류군 학명과 동일한 조항을 따라야 한다.

예제 2. "*Nepeta* \times *faassenii*" (Bergmans, Vaste Pl. Rotsheesters, ed. 2: 544. 1939, 네덜란드어 기 재문을 동반; Lawrence in Gentes Herb. 8: 64. 1949, 영어의 분류군 고유특징 동반)는 라틴어

의 기재문도 분류군 고유특징도 없어, 합법적으로 출판된 것이 아니다. 학명 *Nepeta × faassenii* Bergmans ex Stearn (1950)는 라틴어 기재문이 동반되어 합법적으로 출판되었다.

예제 3. "*Rheum × cultormm*" (Thorsrud & Reisaeter, Norske Plantenavn: 95. 1948)는 나명이며, 합법적으로 출판한 것이 아니다.

예제 4. "*Fumaria × salmonii*" (Druce, List Brit. Pl.: 4. 1908)는 양친을 *F. densiflora* × *F. officinalis*라고 추정한 기술밖에 없으므로 합법적으로 출판한 것이 아니다.

❶ **노트 2.** 속 또는 속 이하 계급의 잡종 학명에 대해서는 제19조 참조한다.

❶ **노트 3.** 이 명명규약이 적용되는 않는 원래의 생물체의 학명에 대한 합법적인 출판은 제45.4조를 참조한다.

권고 32A

32A.1. 명명법상의 새로운 제안을 출판할 경우 저자는 "novus"를 포함하는 표현 또는 그 축약형, 예, *genus novum* (gen. nov., 새로운 속), *species nova* (sp. nov., 새로운 종), *combinatio nova* (comb. nov., 새로운 조합), *nomem. novum* (nom. nov., 새로운 분류군명), *status novus* (stat. nov., 새로운 계급)을 이용하여 새롭게 제안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3조

33.1. 학명은 합법적으로 출판된 날짜가 된다. 합법적 출판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마지막으로 남은 조건이 충족된 날짜가 학명의 출판날짜가 된다. 그러나 학명은 합법적으로 출판된 출전 안에서는 반드시 명확히 수용되어야 한다. 1973년 1월 1일 이후에 출판된 학명은 합법적인 출판을 위한 여러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출판된 학명이 아니다. 단, 합법적인 출판을 위한 조건이 이전에 충족된 출전을 충분히, 그리고 직접 출전 인용 (제41.5조)을 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단, 제41.7조 참조).

예제 1. "*Clypeola minor*"는 Linnaeus의 학위 논문, *Flora monspeliensis* (1756)의 번호가 붙은 학명 목록에서 처음으로 출판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번호의 의미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그 이외의 기재 사항도 없었다. 이 논문이 *Amoenitates academicae*의 제4권 (1759)에 다시 인쇄되었을 때, Magnol의 *Botanicon monspeliense*에서 이 번호는 이전에 출판된 기재문의 인용이라는 설명이 첨가되었다. 그러나 재판된 책에서는 "*Clypeola minor*"는 실리지 않았고, Linnaeus도 더 이상 이 이름을 수용하지 않아 합법적으로 출판된 학명이 아니다.

예제 2. Nakanishi (J. Sci. Hiroshima Univ., Ser. B (2), 11: 75. 1966)는 새로운 종 "*Graphis meridionalis*"를 제안하였을 때, 라틴어 기재문을 제시하였으나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을 지정하지 않았다. *Graphis meridionalis* M. Nakan.은 Nakanishi (J. Sci. Hiroshima Univ., Ser. B (2), 11: 265. 1967)가 이 학명의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을 지정하고 그의 이전 출판물을 직접 출전 인용하였을 때 합법적으로 출판하였다.

33.2. 학명의 원전철자를 수정해도 그 학명의 합법적인 출판날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32.7조 및 제60조 참조).

예제 3. *Gluta "benghas"* (Linnaeus, Mant. Pl.: 293. 1771)의 철자 오류를 수정하여 *G. renghas* L.로 한 경우 수정 날짜가 1883년 (Engler in Candolle & Candolle, Monogr. Phan. 4: 225)이지만, 이 학명의 출판 일시에는 영향이 없다.

제34조

34.1. 인용금지 작업 (opera unique oppressa; 부칙5)으로 목록화되고 출판물에 포함된 지정된 계급의 학명은 합법적으로 출판된 것이 아니다. 해당 작업을 위해 출판물을 부칙5에 첨가하기 위한 제안은 전체위원회 〈General Committee〉 (제3부 참조)에 우선 제출하여야 하며 전체위원회는 각 분류군 위원회에 이 제안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권고 34A참조. 또, 제14.12조와 제56.2조도 참조).

34.2. 특정 출판물을 인용금지 작업 도서로 지정하기 위한 제안은 각 분류군 명명위원회의 심의 이후에, 전체위원회에서 승인될 경우 추후 열리는 국제식물학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출판물은 인용금지 작업 도서로 인정된다 (제14.16조와 제56.4도 참조).

권고 34A

34A.1. 제34.1조에 의거 인용금지 작업에 관한 제안이 관련 해당 명명위원회에 심사가 위탁되었을 경우 명명자는 이 제안에 대한 전체위원회의 권고가 나올 때까지 학명의 현재 취급을 가능한 따라야 한다 (권고 14A와 제56A 참조).

제35조

35.1. 해당 분류군이 귀속되는 속 또는 종의 학명이 동시, 또는 그 이전에 합법적으로 출판되지 않았다면, 속 이하 계급의 분류군 학명은 합법적으로 출판한 것이 아니다 (제 13.4조 참조).

예제 1. Forsskål (Fl. Aegypt.-Arab.: 69-71. 1775)은 "*Suaeda haccata*"와 "*S. vera*"를 포함한 "*Suaeda*"속의 6종에 대한 이명 (2개 이름) 지정 (binary designation)과 기재문, 그리고 분류군 고유특징을 출판하였다. 그러나 Forsskål은 속에 대한 기재문이나 분류군 고유특징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합법적 출판된 학명이 아니다.

예제 2. Müller (Flora 63: 286. 1880)는 신속 "*Phlyctidia*"를 출판하면서 "*P. hampeana* n. sp.", "*P. boliviensis*" (*Phlyctis boliviensis* Nyl.), "*P. sorediiformis*" (*Phlyctis sorediiformis* Kremp.), "*P. brasiliensis*" (*Phlyctis brasiliensis* Nyl.) 및 "*P. andensis*" (*Phlyctis andensis* Nyl.)의 5종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의도된 속명 "*Phlyctidia*"가 출판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이명은 합법적으로 출판되지 않았다. Müller는 속의 기재문도 분류군 고유특징도 없이 새로운 종 "*P. hampeana*"의 기재문과 분류군 고유특징만을 출판하였는데, "*Phlyctidia*"는 단형속이 아니기 때문에, 제38.5조에 의하여 속명의 합법적 출판이 안 된 것이다. 학명 *Phlyctidia*는 Müller (1895)에 의해 합법적으로 출판하면서, 이 속의 짧은 분류군 고유특징을 주고 이 속에 명시적으로 2종만 포함하였다. 종명 *P. ludoviciensis* Müll. Arg.와 *P. boliviensis* (Nyl.) Müll. Arg.도 1895년에 합법적으로 출판되었다.

① 노트 1. 제35.1조는 속명 또는 종명으로 간주하지 않는 단어가 종소명과 소명으로 출판되었을 경우에도 적용 된다 (제20.4조와 제23.6조 참조).

예제 3. 이명 (2개 이름, binary) 지정 "*Anonymos aquarica*" (Walter Fl. Carol.: 230. 1788)는 합법적으로 출판된 학명이 아니다. 이 종과 관련된 첫 번째 합법적 이름은 *Planera aquatica* J. F. Gmel. (1791)이다. 이 학명은 *P. aquatica* (Walter) J. F. Gmel."로 인용하지 않는다.

예제 4. 속명 *Scirpoides* Ség. (1754)가 존재하더라도, 비합법적 이명 <2개 이름, binary> 지정인 "*S. paradoxus*" (RottbØll, Descr. Pl. Rar.: 27. 1772)는 합법적으로 출판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Scirpoides*"는 RottbØll의 문맥에서 속명으로 의도하지 않은 단어이다. 이 종에 대해 합법적으로 출판된 최초의 학명은 *Fuirena umbellata* Rottb. (1773)이다.

35.2. 명명자가 최종소명을 속이나 종의 학명, 또는 축약형과 명확히 결부시키지 않으면 조합 (자동명은 제외)은 합법적 출판이 아니다 (제60.11조 참조).

예제 5. 합법적으로 출판된 조합 Linnaeus의 *Species plantarum*에서는 소명은 속명과 대치하여 오른쪽 끝에 배치되어 소명과 속명은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 이와 동일한 결과로 Miller의 *Gardeners dictionary*, ed. 8에서는 속명의 바로 뒤의 괄호 안에 소명을 포함하여 분명하게 정리하였다. Steudel의 *Nomenclator botanicus*에서는 앞부분에 속명, 다음에 소명의 리스트가 배치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소명을 특정의 속명 또는 종명에 붙이는 인쇄상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예제 6. 합법적으로 출판되지 않은 조합. Rafinesque는 *Blephilia*에서 "이 속의 기준은 *Monarda ciliata* Linn.이다" (J. Phys. Chim. Hist. Nat. Arts 89: 98. 1819)라고 기술하였지만, 그는 소명 *ciliata*와 속명 *Blephilia*를 명확히 연계하지 않아서, *B. ciliata*라는 조합의 합법적 출판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Eulophus peucedanoides*라는 이름은 "*Cnidium peucedanoides*. H. B. et K."를 *Eulophus*의 일람표에 올렸다는 근거로 Bentham & Hooker (Gen. Pl. 1: 885. 1867)를 조합의 시도로 귀속시켜서는 안 된다.

예제 7. *Eriodenna polycarpum* subsp. *verruculosum* Vain. (Acta Soc. Fauna Fl. Fenn. 7 (1): 202. 1890)는 Vainio가 별표를 사용하여 그 아종의 소명을 종의 소명에 명료하게 연계시켰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출판하였다.

예제 8. Tuckerman (Proc. Amer. Acad. Arts 12: 168. 1877)은 "*Erioderma velligerum* sub-sp. nov."를 기재하였을 때, 새 아종은 *E. chilense*에 매우 가깝다고 기술하고 이 종과 구별되는 특징도 언급하였다. 그러나 Tuckerman 자신이 아종의 소명을 종 학명과 명확히 연계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E. chilense* subsp. *velligerum*"은 합법적으로 출판한 것이 아니다.

제36조

36.1. 학명은 다음의 경우에는 합법적인 출판이 아니다. (a) 원 출판 중에 해당 학명이 명명자에 의해 수용되지 않은 경우, (b) 분류군 또는 해당 분류군이 특정한 한계, 지위 또는 계급이 미래에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기대 하에 단순히 그 분류군의 학명 (소위 예정명)을 제안한 것에 불과한 경우, (c) 학명이 이명으로 인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 (d) 분류군에 포함되는 하위 분류군을 예를 든 것에 지나지 않을 경우이다. 제36.1(a)조는 학명에 의문부호 또는 분류학적인 의문을 의미하는 다른 표시를 달아서 출판되었지만, 명명자에 의해 수용된 학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예제 1. (a) Pierre에 의해 (미출판 원고에서) 유일 종에 대해 제안된 "*Sebertia*"는 Baillon (Bull. Mens. Soc. Linn. Paris 2: 945.1891)이 *Sibertia*속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출판한 것이 아니다. Baillon은 *Sebertia*속을 기재하면서, 이에 포함되는 유일한 종 "*Sebertia acuminata* Pierre (미출판)"를 *Sersalisia* R. Br에 포함하여 *Sersalisia? acuminata*로 인용하였다. 이 학명은 제36.1조의 마지막 글의 규정에 의해 합법적으로 출판하였다. 한편 *Sebertia*는 Engler (1897)에 의해 합법적 출판이 되었다.

예제 2. (a) Stickman (1754)의 학위 논문으로 사용된 Linnaeus의 *Herbarium amboinense* 중에서, 왼쪽 란에 열거되어 있는 명칭은 출판 때에는 Linnaeus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따라서 합법적으로 출판된 것이 아니다.

예제 3. (a) Flörke이 *Coralloides gorgonina* Bory를 새로운 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Flörke (Mag. Neusten Entdeck. Gesammten Naturf. Ges. Naturf. Freunde Berlin 3: 125. 1809)의 논문에서 합법적으로 출판하였다. Bory의 의뢰로, Flörke는 Bory의 분류군 고유특징 (및 학명)을 논문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제46.6조에 근거한 Bory가 그 학명의 저자가 되었다. 따라서 Flörke가 이 해당 학명을 수용하였는지 여부는 합법적 출판과는 무관하다.

예제 4. (a) (b) Haworth (Rev. Pl. Succ.: 82. 1821)가 *Mesembryanthemum* sect. *Minima* Haw. (Rev. Pl. Succ.: 81. 1821)에 대해 "*Conophyton*"의 지정을 제안하면서, "만약 이 절이 속임을 증명한다면, *Conophyton*이라는 학명이 적당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Haworth가 이 속명을 채택하지 않거나, 또는 이 속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출판된 속명이 아니다. 이 학명은 *Conophyton* N. E. Br. (1922)으로 합법적으로 출판되었다.

예제 5. (b) Greguss (Földt. Közl. 82: 171. 1952)는 "*Pteridospermaexylon*"과 "*P. theresiae*"라는 이름을 나무 화석의 속과 종에 대해 출판하였다. Greguss는 "나는 해당 종의 이름을 잠정적으로 이 명칭으로 부른다"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였기 때문에 이는 예정명이며, 합법적으로 출판한 이름이 아니다.

예제 6. (b) Havaas (Bergens Mus. Årbok. 12: 13, 20. 1954)에 의해 제안된 "*Sterocaulon subdenudatum*"은 라틴어의 분류군 고유특징과 함께, 새로운 종으로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 쪽 모두 명칭이 "ad int" [ad interim, 임시]이라 표시하였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출판된 것은 아니다.

예제 7. (c) Kunth (Enum. Pl. 4: 348. 1843)는 "*Ornithogalum undulatum* hort. Bouch."라는 이름을 *Myogalum boucheanum* Kunth의 이명으로 인용하였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출판된 것이 아니다. *Ornithogalum* L.의 조합으로, 추후에 *O. boucheanum* (Kunth) Asch. (1866)로 합법적 출판이 되었다.

예제 8. (d) Pierre (Bull. Mens. Soc. Linn. Paris 2: 1296. May 1897)는과의 지정인 "*Rhaptopetalaceae*"을 합법적으로 출판한 것이 아니다.과의 구성 속으로 *Brazzeia* Baill., *Rhaptopetalum* Oliv. 및 "*Scytopetalum*"를 언급한 것에 불과하며, 기재문도 분류군 고유특징도 보이지 않았다. 이 과명은 기재문과 함께 출판된 *Scytopetalaceae* Engi. (Oct. 1897)가 있다.

예제 9. (d) 속의 명칭 "*Ibidium*"은 Salisbury (Trans. Hort. Soc. London 1: 291. 1812)가 합법적으로 출판한 것이 아니다. Salisbury는 단순히 포함되는 4종을 이야기 한 것일 뿐, 속의 기재문도 분류군 고유특징도 제시하지 않았다.

예제 10. Richard는 *Besenna* A. Rich와 *B. anthelmintica* A. Rich (1847)를 동시에 발표하면서, 양쪽에 의문부호를 붙였다 ("*Besenna?*" 및 "*Besenna anthelmintica? Nob.*"). Richard의 의문은 꽃이나 열매를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지만, *Besenna*를 색인 목록 (p. [469])에 (학명임을 의미하는 이탤릭체가 아님) 게재하고 있어 이 학명을 수용하였다.

36.2. 1953년 1월 1일 이후에 같은 명명자에 의해 동일 분류군에 대하여 동일 기준 표본에 근거한 2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학명 [소위 대체명 (alternative name)]이 동시에 제안되었을 경우 이 학명들은 모두 합법적으로 출판된 것이 아니다. 이 조항은 1개 종 내의 종 이하 분류군에 대한 것이나, 또는 1개의 속내 속 이하 구분에 대해서 (권고 22A.1-2 및 권고 26A.1-3을 참조), 같은 조합이 다른 계급에서 동시에 사용되었을 경우와 제59.1조에 제시된 학명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예제 11. Duce (Arch. Jard. Bot Rio de Janeiro 3: 23-29. 1922)가 기재한 *Brosimum* Sw.의 종은 각주 (23-24쪽)에 *Piratinera* Aubl.라는 대체명 (alternative name)을 첨가하여 출판하였다. 이 두 학명은 1953년 1월 1일 이전에 출판하였기 때문에 모두 합법적이다.

예제 12. "*Euphorbia jaroslavii*" (Poljakov in Bot. Mater. Gerb. Bot. Inst. Komarova Akad. Nasuk SSSR 15: 155. 1953)는 대체명 (alternative name) "*Tithymalus jaroslavii*"와 함께 출판되어 모두 합법적으로 출판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 중 1개의 학명 *Euphorbia jaroslavii*는 (첫 글자가 바뀜) Poljakov (1961)가 *Tithymalus*의 조합을 폐기한 후에 이전의 출판에 대한 전체, 그리고 직접적으로 인용하면서 이 학명을 합법적으로 출판하였다.

예제 13. "*Malvastrum bicuspidatum* subsp. *tumidum* S. R. Hill var. *tumidum*, subsp. et var. nov." (Brittonia 32: 474. 1980)의 기재에 의해 *M. bicuspidatum* subsp. *tumidum* S. R. Hill 과 *M. bicuspidatum* var. *tumidum* S. R. Hill의 양쪽 학명을 동시에 합법적으로 출판하였다.

예제 14. Freytag (Sida Bot. Misc. 23: 211. 2002)는 *Phaseolus leptostachyus* "var. *pinnatifolius* Freytag forma *purpureus* Freytag, var. et forma nov."를 1개의 분류군 고유특징과 1개의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을 기준으로 동시에 출판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의도된 조합이 동일하지 않아 모두 합법적으로 출판되지 않았다.

예제 15. Hitchcock (Univ. Wash. Publ. Biol. 17 (1): 507-508. 1969)은 학명 *Bromus inermis* subsp. *pumpellianus* (Scribn.) Wagnon을 사용하면서 기본명 *B. pumpellianus* Scribn.을 충분히 직접적으로 출처를 인용하였다. 이는 아종 중의 복수의 변종을 인정하고, 이 중 1개를 *B. inennis* var. *pumpellianus*라고 명명하였다 (저자명의 인용이 없지만, 분명 같은 기본명과 기준에 근거). 이로 인하여, Hitchcock는 *B. inermis* var. *pumpellianus* (Scribn.) C. L. Hitchc.를 합법적으로 출판하는 요건을 만족시켰다.

제37조

37.1. 1953년 1월 1일 이후에 출판된 새로운 학명 또는 새로운 조합에서 해당 분류군의 계급이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는 합법적인 출판이 아니다.

37.2. 1887년 1월 1일 이후에 출판된 속보다 상위의 학명에 있어서, 제16.3, 17.1조, 18.1조, 19.1조 및 19.3조로 지정하는 어미 가운데 1개를 이용한 경우 상응하는 계급의 지시로서 수용된다. 단 (a) 해당 분류군의 명확하게 표시된 계급과 모순될 경우 (b) 계급의 순서가 제5조에 어긋날 경우(이 경우 제37.6조가 적용), (c) 계급의 순서 중, 동일 계급을 나타내는 용어가 2개 이상 계급상의 지위가 있을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예제 1. Jussieu (Mém. Mus. Hist. Nat. 12: 497. 1827)는 계급을 지정하지 않고 *Zanthoxyleae*를 제안하였다. Jussieu는 현재 족을 나타내는 어미 (-eae)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명은 1887년보다 전에 출판되었기 때문에 계급이 지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Zanthoxyleae* Dumort. (Anal Fam. Pl.: 45. 1829)는 Dumortier가 족 계급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족의 학명이 된다.

예제 2. Nakai (Chosakuronbun Mokuroku [Ord. Fam. Trib. Nov.], "著作論文目錄", 1943)에 학명 *Parnassiales*, *Lophiolaceae*, *Ranzanioideae*, 및 *Urosatheae*를 합법적으로 출판하였다. Nakai는 해당 학명의 계급을 명시적으로 기술하지 않았지만, 학명의 어미로 이름의 각 목, 과, 아과, 족의 계급임을 나타냈다.

37.3. 1953년 1월 1일전에 계급을 명시하지 않고 출판된 새로운 학명, 또는 새로운 조합은 합법적인 출판을 위한 다른 여러 조건을 충족한다면 합법적으로 출판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동일명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3.4조 참조) 선취권의 문제에서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만약 새로운 학명이라면 나중에 출판되는 조합, 새로운 계급의 학명, 또는 특정한 계급의 대치명 (replacement name)에 대한 기본명, 또는 대치되는 이명이 될 수 있다.

예제 3. House (*Muhlenbergia* 4: 50. 1908)는 계급이 없는 그룹인 "*Soldanellae*", "*Sepincoli*", "*Occidentales*" 등을 *Convolvulus* L. 하에서 출판하였다. *Convolvulus* [계급미지정 unranked] *Soldanellae* House 등의 학명은 합법적으로 출판되었지만, 제53.4조에 의해 동일명의 경우를 제외하고 선취권 문제에서는 계급을 갖지 않는다.

예제 4. Tuckerman (*Enum. Meth. Caric.*: 8. 1843)은 *Carex* L. 중에서 *Scirpinae*라는 소명을 계급이 없는 속 이하 계급의 학명으로 사용하였다. 이 분류군은 Kükenthal (*Engler, Pflanzenr.* 38: 81. 1909)에 의해 절의 계급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 학명은 *Carex* sect. *Scirpinae* (Tuck.) Kük. (C. [계급미지정 unranked] *Scirpinae* Tuck.)로 인용한다.

예제 5. Loesener는 종 이하 분류군의 계급을 애매하게 제시하면서 "*Geranium andicola* var. vel forma *longipedicellatum*" (*Bull. Herb. Boissier*, ser. 2. 3 (2): 93. 1903)을 출판하였다. 이 학명을 올바르게 인용하면, "*G. andicola* [계급미지정 unranked] *longipedicellatum* Loes."이다. 이 소명은 나중에 출판된 조합 *G. longipedicellatum* (Loes.) R. Knuth (1912)로 사용되었다.

37.4. 1890년 1월 1일 이전에 출판된 1개의 출판물 전체 (제37.5조) 안에서 종 이하 분류군의 계급이 1개만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 출판물 안에서 명명자의 기재와 상반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나머지는 이 해당 변종의 계급으로 간주한다.

37.5. 계급의 표시에 관한 문제에서는 같은 명명자에 의해 같은 표제로 출판된 모든 출판물, 예를 들면 시기를 달리 해서 출판된 일련의 식물지의 다른 부분 (단, 같은 저술물의 다른 판은 아님)은 하나의 묶음으로 간주하며, 그 출판물에 포함되는 분류군의 계급 지정은 모두 최초의 분책과 함께 출판된 것으로 취급한다.

예제 6. Link의 *Handbuch* (1829-1833)에서는 계급을 의미하는 용어 "O." (ordo)를 3권 전부에서 사용하였다. 이 책자에서 목(order)의 학명은 과 (family)의 학명으로 출판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제18.2조), 그 이유는 제3권 (pp. 272, 337; 제18조 노트 3을 참조)의 order *Fungi*에서 *Agaricaceae*와 *Tremellaceae*에 대해 family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제3권 (Jul-29 Sep 1833)이 제1권과 제2권 (4-11 Jul 1829)보다 후에 출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Handbuch*의 전 3권을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서 본다.

37.6. 분류군에 학명이 제시될 때 제5조에 어긋나는 잘못 적용된 용어로 분류군의 계급이 표시되면 이 분류군의 학명은 합법적으로 출판되지 않았다. 이런 잘못된 배열에는 변종으로 분류된 품종, 속을 포함하는 종 그리고, 과 또는 족을 포함하는 속이 있다.

37.7. 적합한 순서배열을 위해서 제거해야하는 계급을 의미하는 명칭을 가지고 출판된 학명들은 합법적인 출판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즉, 과-목 (family-order) 그리고 계급을 나타내는 단어의 순서 배열이 잘못되어 있고, 계급을 나타내는 계급의 한쪽 또는 양쪽을 제거하는 것으로 적절한 배열을 할 수 있을 때에는 한 쪽이 2차 계급 (제4.1조), 다른 한쪽이 근간이 되는 계급 (제3.1조)이 아닌 한, 어느 쪽의 계급의 학명도 합법적으로 출판된 것이 아니다. 과-속-족과 같은 경우는 2차 계급 (즉, 족)으로 출판된 학명만이 합법적으로 출판된 것이 아니다.

예제 7. Brown (Prodr.: 337. 1810)은 "sectio"("절")이란 용어를 속보다 높은 계급에 잘 못 적용하였기 때문에, "Sectio *Orontiaceae*"는 합법적으로 출판된 학명이 아니다.

예제 8. Huth는 "tribus"("족")이란 용어를 *Delphinium*속에서 절보다 낮은 계급에 잘 못 적용하였기 때문에 "tribus *Involuta*"와 "tribus *Brevipedunculata*" (Huth, Bot. Jahrb. Syst. 20: 365, 368. 1895)는 합법적으로 출판된 학명이 아니다.

① 노트 1. 분류학적 배열 중에 동일 계급을 나타내는 용어가 연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잘못 위치된 계급을 나타내는 용어로 보지 않는다.

예제 9. Danser (Recueil Trav. Bot. Néerl. 18: 125-210. 1921)는 *Polygonum*속에서 10개의 새로운 아종명을 출판하였지만, 아종 (아라비아 숫자로 제시) 내에서 아종 (로마 숫자로 제시)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잘못 위치한 계급을 나타내는 용어로 보지 않아서 제37.6조는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 새로운 아종은 합법적으로 출판한 것이다.

37.8. 분류학적 배열 안에서 동일한 계급을 나타내는 단어가 2개 이상 연속된 순서가 아닌 지위에서 사용되고 있을 때에는 이는 계급을 지칭한 단어의 임의사용을 의미한다. 이런 계급을 나타내는 단어를 수반해서 출판된 학명은 계급이 없는 학명으로 취급한다 (제37.1조와 제37.3 참조).

예제 10. Bentham & Hooker (Gen. Pl. 1-3. 1862-1883)에 의해 "series"("열")이라는 단어와 함께 출판된 학명은 분류학적 배열에서 "열"라는 단어를 7개의 각기 다른 계층적 지위에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계급이 없는 (계급미지정 unranked) 학명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Rhynchospora* (3: 1058-1060. 1883)의 속 -"열"- 절이란 배열은 잘못 적용한 계급을 의미하지 않는다.

37.9. 제37.6조의 예외로서 Fries의 *Systema mycologicum* 중 족 [tribes (tribus)]이라고 지칭한 속은 합법적인 출판이 된 것 중 계급부여가 되지 않은 속 이하 구분의 학명으로 취급한다.

예제 11. *Agaricus* "tribus" *Pholiota* Fr. (Syst. Mycol. 1: 240. 1821)는 출전문헌에서 인가된 것으로, 속명 *Pholiota* (Fr.: Fr.) P. Kumm. (1871)의 합법적으로 출판된 기본명이 된다 (제41조 예제 6 참조).

제2절

새로운 종의 학명

제38조

38.1. 새 분류군의 학명이 합법적으로 출판되기 위해서는 (제6.9조 참고) (a) 해당 분류군의 기재문 또는 분류군 고유특징을 수반하여야 하고, 초기 출판문이 없을 경우에는 이전에 유효하게 출판된 기재문 또는 분류군 고유특징의 출전 인용을 수반해야 한다 (제38.7조, 제38.8조, 및 제H.9조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 또한 제14.9조 및 제14.15조 참고). 또한 (b) 동시에 제32-45조의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i 노트 1. 제38.1조의 예외로, Linnaeus에 의해 *Species plantarum* 제1판 (1753)과 제2판 (1762-1763)에 처음으로 출판된 속명은, 후에 발행된 Linnaeus의 *Genera plantarum* 제5판 (1754)과 제6판 (1764)에 유효하게 출판되었더라도, 각각 해당 저서의 날짜에 합법적 출판이 된 것으로 취급을 한다 (제13.4조 참조).

38.2. 분류군의 분류군 고유특징은 명명자의 견해에 있어서 다른 분류군과 해당 분류군을 구별하는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예제 1. "*Egeria*" (Néraud in Gaudichaud, Voy. Uranie, Bol.: 25, 28. 1826)는 기재문도 분류군 고유특징도 없으며, 또 이전에 출판된 기재문 또는 분류군 고유특징의 출전 인용도 없다 [따라서 नाम (nomen nudum)]. 합법적으로 출판된 것이 아니다.

예제 2. "*Loranthus macrosolen* Steud."는 1843년경에 발행된 Schimper의 아비시니아산 식물 표본집 제2부 No.529, 1288의 인쇄된 레이블에 기재문도 분류군 고유특징도 없이 처음으로 출판되었다. 따라서 이 학명은 Richard (Tent. Fl. Abyss. 1: 340. 1847)가 기재문을 부여하기까지 합법적으로 출판되지 않았다.

***예제 3.** Don의 *Sweet's Hortus britannicus*, ed. 3 (1839)에서는 목록화된 식물에 대해 각각의 꽃의 색깔, 생육 기간 및 종소명의 영어 번역이 일람표 형식으로 실려 있다. 많은 속에서 꽃의 색깔과 생육기간은 모든 종에서 같으며 이런 서술은 분명히 합법적 출판을 위한 기재문 또는 분류군 고유특징으로 의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출판된 기재문이나 분류군 고유특징을 출전 인용하고 있는 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출판물에 제시된 새로운 학명은 합법적으로 출판되지 않았다.

예제 4. "*Crepis praemorsa* subsp. *tatrensis*" (Dvořák & Dadáková, Biológia (Blatislava) 32: 755. 1977)은 "a subsp. *praemorsa* karyotypo achaeniorumque longitudine praecipue differt (subsp. *praemorsa*와는 주로 핵형과 수과의 길이가 다르다)"를 동반하여 출판되었다. 이 기술은 2개의 분류군이 서로 다름을 특정하고 있으나, 이 특징이 어떻게 다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기술은 제38.1조(a)의 "기재문 또는 분류군 고유특징"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예제 5. 속명 *Epilichen* Clem. (Gen. Fungi: 69, 174. 1909)는 기존에 *Karschia*속으로 포함된 종 중 지의류 생육특징 중 지의류의 기생성을 주요 형질로 보고 (*Karschia*는 부패 유기물을 영양원으로 하는 것에 대조적으로), "*Karschia* lichenicola (지의상생의 *Karschia*)"라는 분류군 고유특징과 함께 합법적으로 출판하였다. 이러한 불충분한 분류군 고유특징을 제시한 규정은 좋은 예제는 아니지만, 이런 기술은 Clements의 의견으로 이 속을 다른 속과 구별된다.

38.3. 순수하게 미적인 특징, 경제적, 의학적 또는 요리에의 이용, 문화적 의의, 재배 기술, 지리적 유래, 또는 지질학적 연대와 같은 속성을 기재하는 서술은 제38.1 (a)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예제 6. "*Musa basjoo*" (Siebold in Verh. Bat. Genootsch. Kunsten 12: 18. 1830)는 "Ex insulis Luikiu introducta, vix asperitati hiemnis resistens. Ex foliis linteum, praesertim in insulis Luikiu ac quibusdam insulis provinciae Satzuma conficitur. Est haud dubie linteum. quod Philippinis incolis audit Nippis"라는 서술로 출판되었다. 이 내용은 경제적 이용 (잎에서 아마 섬유를 만들), 재배상의 내한성 (겨의 월동이 안 됨), 지리적 기원 (류큐 열도에서 도입)에 관한 정보를 주고 있지만, 유일하게 언급된 형질인 "잎"에 대한 내용도 기재적 정보가 없어서, 제38.1조(a)의 "기재문 또는 분류군 고유특징"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Musa basjoo* Siebold & Zucc. ex Iinuma는, 후에 Iinuma <이이누마 요코사이 (飯沼慾齋)>가 *Sintei Somoku Dzusetsu* <신정초본도설 (新訂草本圖説)> [Illustrated Flora of Japan], ed. 2, 3: ad t. 1. 1874에서 꽃의 상세도와 일본어 기재문을 함께 합법적으로 출판하였다.

38.4. 어떤 기재적인 서술이 제38.1 (a)조의 "기재문 또는 분류군 고유특징"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의심스러울 때에는 그 결정을 전체위원회 <General Committee> (제3부 참조)에 요청할 수 있다. 전체위원회는 해당 분류군에 관한 전문위원회에서 그 심사를 검토, 요청할 수 있다. 해당 학명이 합법적인 출판이 된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권고는 국제식물학회에서 승인되면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 된다. 이런 결정은 부칙7에 목록화하였다.

예제 7. *Ascomycota* Caval.-Sm. (Biol. Rev. 73: 247. 1998, as "*Ascomycota* Berkeley 1857 stat. nov.")는 문 (phylum)의 학명으로, "spores intracellulares"라는 분류군 고유특징과 함께 출판되었다. Cavalier-Smith (동일문헌)는 Berkeley의 *Ascomycetes* (*Ascomycota*가 아님)의 학명의 출판 (Intr. Crypt. Bot.: 270. 1857)을 직접 출전을 인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Ascomycota*의 합법적 출판은 분류군 고유특징이 제38.1조(a)의 조건을 충족하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에, 제38.4조에 따른 구속력 있는 결정이 요청되었다. 균류명명위원회는 제38.1조(a)의 조건은 최소한 만족하고 있다고 결론지어 (Taxon 59: 292. 2010), *Ascomycota*는 합법적으로 출판된 것으로 취급한다고 권고하였다. 이 권고는 전체 위원회가 지지하였고 (Taxon 60: 1212. 2011) 2011년 제18회墨尔本 국제식물학회에서 승인되었다.

38.5. 1속1종의 학명은 1개의 기재문 (속종명 동시기재 *descriptio generic-specifica*)이나, 또는 분류군 고유특징을 갖추는 규정으로, 가령 이 기재가 속 또는 종만의 기재문 또는 분류군 고유특징을 의도한 것이라면 동시에 합법적인 출판이 된다. 단, 다음과 같은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한다. (a) 해당 속은 출판 시에 1속1종 일 것 (제38.6조), (b) 동일한 기준표본에 근거하기 이전에 합법적으로 출판된 다른 학명이 (어떠한 계급에서도) 존재하지 않을 것, (c) 해당 속과 종의 학명이 다른 점에서도 합법적인 출판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을 것이다. 속-종의 기재문 대신 이전에 출판된 기재문 또는 분류군 고유특징을 출전 인용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38.6. 제38.5조에서 의미하는 1속1종은 가령 해당 명명자가 다른 종도 이 속에 귀속할 수 있음을 지적하여도 하나의 이명 <2개 이름, binomial>이 해당 속에서 유일한 합법적인 출판이 된다.

예제 8. Nylander (1879)은 속의 기재문이나 분류군 고유특징 제시도 없이, 새로운 속 "*Anema*"

하에서, 새로운 종 "*Anema nummulariellum*"을 기재하였다. 동시에 Nylander는 *Omphalaria nummularia* Durieu & Mont.를 "*Anema*"로 옮겼기 때문에, 이러한 학명은 모두 합법적으로 출판된 것이 아니다. 이 학명들은 나중에 Forsell (1885)에 의해 합법적으로 출판되었다.

예제 9. 속명 *Kedarnatha* P. K. Mukh. & Constance (1986)이 1종만 포함되는 새로운 종의 학명 *K. sanctuarii* P. K. Mukh. & Constance는 라틴어 기재 문이 속명만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법적으로 출판되었다.

예제 10. *Piptolepis phillyreoides* Benth. (1840)는 신속 *Piptolepis*에 귀속된 새로운 1속 1종이다. 이 신속과 종의 학명은 속과 종의 기재문을 합쳐 1개의 기재문을 통해 합법적으로 출판되었다.

예제 11. Browne (Civ. Nat. Hist. Jamaica: 269. 1756)가 속의 기재문이나 분류군 고유특징 없이 "*Phaelypea*"를 출판하였을 때 1종만 기재하면서 이 속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Browne는 이 종에 대한 합법적으로 출판된 이명 <2개 이름, binary>이 아닌, 구절의 이름 <phrase-name, 2개 이상의 문장 성분의 이름>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제38.5조는 적용되지 않으며 "*Phaelypea*"는 합법적으로 출판된 이름이 아니다.

38.7. 제38.5조에 따라 1908년 1월 1일 이전에 분석 도표를 수반한 1개의 일러스트레이션 (제38.9조 및 제38.10조 참조) 발표는 기록된 기재문 또는 분류군 고유특징을 대신해서 수용한다.

예제 12. 속명 *Philgamia* Baill. (1894)는 이 속에 유일한 종 *P. hibbertioides* Baill.의 일러스트레이션을 동반한 1장의 도판에 의해 출판되었기 때문에 합법적인 출판을 된다.

38.8. 1908년 1월 1일 이전 출판된 종 또는 종 이하 분류군의 학명은 분석 도표를 포함한 일러스트레이션 (제38.9조와 제38.10 참조)만으로 합법적인 출판을 된다.

예제 13. Velloso (Fl. Flumin. Icon. 11: ad t. 67. 1831)가 "*Polypodium subulatum*"을 출판하였을 때 분석 도표 없이 잎의 일부의 일러스트레이션만 제시하였다. 이 그림은 제38.8조의 규정을 만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 문헌에서 해당 학명은 합법적으로 출판되지 않았다. 추후, Velloso가 고사리종의 기재를 제시함에 따라 (Arch. Mus. Nac. Rio de Janeiro 5: 447. 1881) 합법적으로 출판하였다.

38.9. 본 규약에서는, 분석 도표는 1개 또는 1개 그룹의 그림으로서, 일반적으로 생물체의 주요한 일러스트레이션과는 별개이며 (통상은 같은 쪽 또는 도판 속에 있지만), 독립된 그림 설명이 있던 없던 간에, 동정에 도움이 되는 상세한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제38.10조도 참조).

예제 14. *Panax nossibiensis* Drake (1896)는 분석 도표와 함께 도판상에서 합법적으로 출판되었다.

38.10. 관속식물 이외의 생명군 동정에 도움이 되는 상세한 특징을 보여주는 단일의 그림은 분석 도표를 수반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간주한다 (제38.9조도 참조).

예제 15. 5개의 학명 *Eunotia gibbosa* Grunow (1881)는 뚜껑 [개각(蓋殼)]의 1개 그림을 제시하는 규정으로 합법적 출판을 하였다.

38.11. 새 분류군의 학명이 합법적인 출판이 되기 위해서는 이전에 유효 출판된 기재문 또는 분류군 고유특징의 출전 인용은 아래와 같은 경우로 한정한다. (a) 과 또는과의 하위계급에 있어서 이전에 출판된 그 분류군의 기재문 또는 분류군 고유특징은 과 또는 과와 속 사이의 분류계급에 대한 것이다. (b) 속 또는 속 내 구분에 있어서, 이전에 출판된 그 분류군의 기재문, 또는 분류군 고유특징은, 속 또는 속 내 구분에 대한 것이다. 또한 (c) 종 또는 종 이하 분류군에 있어서, 이전에 출판된 분류군의 기재문, 또는 종 고유 특징은 종 또는 종 이하 분류군에 관한 것이다.

예제 16. "*Pseudoditrichaceae* fam. nov." (Steere & Iwatsuki, *Canad. J. Bot.* 52: 701. 1974)의 출판에는 라틴어 기재문 또는 분류군 고유특징도 없으며, 어떤 출전 인용도 없어 합법적으로 출판된 과명은 아니다. 그러나 과에 포함된 단 1개의 속과 종 "*Pseudoditrichum mirabile* gen. et sp. nov." 이 언급되어 (제36.1조(d) 참조), 이 속과 종의 학명은 1개의 라틴어 분류군 고유특징이 동반되어 제38.5조에 의해 합법적으로 출판하였다.

예제 17. Presl은 이전에 유효하게 출판된 "*Cuscuteae*" (Berchtold & Presl, *Pfir. Rostlin.* 247. 1820)의 기재문을 직접적으로 출전 인용을 하였지만, "*Cuscuteae*" (Presl & Presl, *Delic. Prag.*: 87. 1822)는 목의 학명이기 때문에 (제18조 *예제 5 참조) 과명으로 합법적 출판이 되지 않았다 ("Praemonenda", pp. [3-4]을 참조).

예제 18. *Scirpoides* Ség. (Pl. Veron. Suppl.: 73. 1754)는 속의 기재문, 또는 분류군 고유특징 없이 출판되었다. 그러나 속명은 속의 분류군 고유특징에 대한 간접적 출전 인용(책의 제목과 서문에 전체적인 기술)과 또한 Séguier (Pl. Veron. 1: 117. 1745)에서 직접적 인용을 통해 합법적으로 출판하였다.

예제 19. 제38.11조는 과보다 상위 계급의 학명에는 어떤 제한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Eucommiales* Němejc ex Cronquist (*Integr. Syst. Class. Fl. Pl.*: 182. 1981)는 *Eucommia* Oliv. (1890)에 관련된 라틴어 기재문에 충분히 직접적인 인용을 한 Cronquist가 합법적으로 출판하였다.

38.12. 새로운 종의 학명은 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만족시킨다면 속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출전 인용을 통해 합법적으로 출판할 수 있다 (제38.13 및 38.14 참조). (a) 속명이 이전에 해당 분류군에 대한 기재문 또는 분류군 고유특징을 수반하면서 동시에 기존에 합법적으로 발표되어야 하며, (b) 속명에 대한 명명자나 종명에 대한 명명자가 해당하는 속에 1개 이상의 종이 포함된 것을 언급하지 않을 경우에 한 한다.

예제 20. *Trilepisium* Thouars (1806)는 속의 기재문에 의해 합법적으로 출판하였지만 이 속에 포함되는 종명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후 *T. madagascariense* DC. (1825)가 종의 기재문도 분류군 고유특징도 없이, 속명과 이에 따른 Thouars에 대한 출전 인용을 동반하여 제안하였다. 어느 명명자도 이 속에 1종 이상을 포함하는 것은 제시하지 않아 Candolle의 종명은 합법적으로 출판되었다.

38.13. 학명의 합법적인 출판을 위해서는 이미 기존에 유효하게 출판된 기재문, 또는 분류군 고유특징의 출전 인용은 직접적 혹은 간접적이어도 좋다 (제38.14조). 그러나 1953년 1월 1일 이후에 출판된 학명의 합법적인 출판을 위해서는 제41.5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충분히 그리고 직접적으로 출전 인용을 해야 한다.

38.14. 간접적 출전 인용은 명명자의 인용 또는 다소 다른 방법에 의한 명확한 지시(암시적이어도)이므로, 이미 유효하게 출판된 기재문장 또는 분류군 고유특징이 적용된다.

예제 21. "*Kratzmannia*" (Opiz, Berchtold & Opiz, Oekon.-Techn. Fl. Böhm. 1: 398. 1836)는 분류군 고유특징과 함께 출판되었지만, 명명자 (즉, Opiz)는 이를 분명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제36.1조(a)에 의해 이 학명은 합법적으로 출판된 것은 아니다. *Kratzmannia* Opiz (Seznam: 56. 1852)는 기재문도 분류군 고유특징도 없지만, 명명자가 비로소 명확하게 받아들였고 "*Kratzmannia* O."라는 인용은 1836년에 출판된 분류군 고유특징의 간접적인 출전 인용이 된다.

권고 38A

38A.1. 1753년 이전에 출판된 새로운 분류군의 이름은 기재문 또는 분류군 고유특징을 단지 출전 인용하는 것만으로 합법화하지 못 한다.

권고 38B

38B.1. 새로운 분류군의 기재문 또는 분류군 고유특징이더라도 새 분류군과 근연 분류군의 다른 점을 언급해야 한다.

권고 38C

38C.1. 새로운 분류군을 명명할 때, 명명자는 다른 분류군에 대해 이전에 합법적 출판을 하지 않은 학명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권고 38D

38D.1. 새로운 분류군에 기재문이나 분류군 고유특징을 부여할 때에는 가능하면 동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당 분류군의 상세한 구조를 나타내는 그림을 제공해야 한다.

38D.2. 그림의 설명에는 해당 그림이 근거한 표본을 명시해 두어야 한다 (권고 8A.2조 참조).

38D.3. 명명자는 출판하는 그림에 명확하고, 정확한 축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권고 38E

38E.1. 기생생물체, 특히 기생균류의 기재문 또는 분류군 고유특징에는 항상 그 숙주들을 나타내야 한다. 숙주의 이름은 학명으로 나타내야 하며, 현대어의 일반명의 적용은 자주 의문을 남기기 때문에 현대어로 된 이름만으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

제39조

39.1. 1935년 1월 1일과 2011년 12월 31일 사이의 새로운 분류군 (조류와 모든 화석 분류군을 제외)의 학명은 합법적인 출판을 라틴어의 기재문 또는 분류군 고유특징을 수반하거나 (제38.13조 참조), 이전에 유효하게 출판된 라틴어의 기재문 또는 분류군 고유특징의 출전 인용을 수반해야 한다 (단, 제H.9조 참조; 화석에 대해 제43.1조; 조류에 대해 제44.1조 참조).

예제 1. *Arabis* "Sekt. *Brassicoturritis* O. E. Schulz"와 "Sekt. *Brassicarabis* O. E. Schulz" (Engler & Prantl, Nat. Pflanzenfam., ed. 2, 17b: 543-544. 1936)는 라틴어 기재문이나 라틴어 분류군 고유특징 없이 독일어로 출판되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출판된 학명이 아니다.

예제 2. "*Schiedea gregoriana*" (Degener, Fl. Hawaiiensis, fam. 119. 9 Apr 1936)는 영어 기재문만 있고 라틴어 기재문이 없어 합법적으로 출판된 학명이 아니다. *Schiedea kealiae* Caum & Hosaka (Occas. Pap. Bernice Pauahi Bishop Mus. 11 (23): 3. 10 Apr 1936)의 경우에는 이 학명의 기준표본이 Degener가 이용한 자료의 일부러 라틴어 기재문이 제시되어 합법적으로 출판하였다.

예제 3. *Alyssum flahaultianum* Emb.는 처음에는 라틴어 기재문도 분류군 고유특징도 없이 출판되었다 (Bull. Soc. Hist. Nat. Maroc 15: 199. 1936). 이 학명은 Emberger 사후 그의 프랑스어 원기재문이 라틴어로 번역되어 공표되었을 때 합법적으로 출판되었다 (Willdenowia 15: 62-63. 1985).

예제 4. Wu (Acta Phytotax. Sin. 40: 308. 2002)에 의한 "*Malvidae*"는 합법적으로 출판되지 않았다. Wu는 "*Malvaceae*" (Adanson, Fam. Pl. 2: 390. 1763)를 출전 인용하였는데, *Malvaceae*는 프랑스어 기재문을 동반하고 있지만 제39.1조에서 요구되는 라틴어 기재문 또는 분류군 고유특징이 없었다. *Malvidae*는 나중에 Thorne & Reveal에 의해 합법적으로 출판되었다 (Bot. Rev. 73: 111. 2007).

39.2. 2012년 1월 1일 이후 새로운 분류군의 학명의 합법적인 출판을 위해서는 라틴어나 영어 기재문, 또는 분류군 고유특징을 수반하거나, 이전에 유효하게 출판된 라틴어나 영어 기재문, 또는 분류군 고유특징의 출전 인용 (제38.13조 참고)을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 (화석에 대해서는 제43.1조도 참고).

권고 39A

39A.1. 새로운 분류군의 학명을 출판하는 명명자는 분류군 고유특징과 함께 라틴어 또는 영어의 충분한 기재문을 제시하거나 인용해야 한다.

제40조

40.1. 1958년 1월 1일 이후, 속 또는 속 이하 계급의 새로운 분류군 학명은 그 학명의 기준이 지정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합법적인 출판이 된다 (제7-10조 참조; 단, 일부 잡종 학명에 대해서는 제H9조 노트 1 참조).

40.2. 새로운 종 또는 종 이하 새로운 분류군의 학명은 제40.1조에 규정되고 있는 기준의 지정은 채집품이 제8조 (제40.7조도 참조)에 규정되고 있는 것과 같이 2개 이상의 표본으로부터 구성되어 있다면, 단일 채집품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함으로써 가능하다.

예제 1. Cheng이 "*Gnetum cleistostachyum*" (Acta Phytotax. Sin. 13 (4): 89. 1975)을 기재하였을 때 2개의 채집품, 즉 *K. H. Tsai 142* ("우 Typus"로 기재)와 *X. Jiang 127* ("상 Typus"로 기재)을 동시에 기준표본으로 지정함으로써 합법적으로 출판한 것이 아니다.

① 노트 1. 2개 이상의 표본으로 구성된 전체 채집품 또는 일부가 기준으로 인용된 경우 신타입 (syntype, 동가기준표본) 이라 한다 (제9.5조 참조).

예제 2. *Laurentia frontidentata* E. Wimm. (Engler, Pflanzenr. IV. 276 (Heft 108): 855. 1968)의 프로토크로그 <protologue>에는, "*E. Esterhuysen* No. 17070! Typus- Pret., Bol."이라는 기준표본의 기술된다. 여기에 두 다른 표본관에 복제 표본 [신타입 (syntype, 동가기준표본)]이 존재함을 제시하고 있지만, 단일 채집품을 인용하였기 때문에 이 학명은 합법적으로 출판되었다.

40.3. 기준요소가 기준표본으로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지 않아도 새로운 속 또는 속 이하 계급의 새로운 학명은 1개의 증명만의 직접 혹은 간접적 출전 인용, 또는 이전 혹은 동시에 출판된 1개의 증명의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이나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만의 인용으로 해당 학명의 기준 지정으로 인정된다 (제22.6조도 참조; 단, 제40.6조 참조). 마찬가지로 기준요소가 기준표본으로 분명하게 지정되어 있지 않아도 새로운 종 또는 중하분류군의 새로운 학명에 있어서 1개의 표본 혹은 단일 채집품 (제40.2조), 또는 1개의 일러스트레이션 (제40.4조 또는 제40.5조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의 인용으로 해당 학명의 기준지정으로서 인정된다 (단, 제40.6조 참조).

예제 3. Guillaumin (Mém. Mus. Natl. Hist. Nat., B, Bot. 8: 260. 1962)은 2개 채집품, 즉 *Baumann 13813*과 *Baumann 13823*을 인용하면서 "*Baloghia pininsularis*"를 발표하였지만, 이 중의 어느 것도 기준으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학명을 합법적으로 출판하지 못하였다. 이 학명은 McPherson & Tirel (Fl. Nouv.-Caléd. 14: 58. 1987)이 Guillaumin에 의한 라틴어 기재문을 충분히 직접 인용한 다음, "Lectotype (désigné ici): *Baumann-Bodenheim 13823* (P!; iso-, Z)"이라고 기술하면서 합법적으로 출판하였다 (제33.1조 제46조 예제 20을 참조). McPherson & Tirel에 의한 "lectotype"(선정기준표본)이라는 용어는 제9.9조에 의해 "holotype"(정기준표본)으로 수정할 수 있다.

① 노트 2. 채집된 지역만을 인용하는 것은 1개의 표본 또는 채집품을 인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채집자명, 채집번호, 채집일 등, 실제기준표본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용할 필요가 있다.

① 노트 3. 대사적으로 불활성 한 상태로 보존된 조류와 균류의 배양주는 기준표본으로 인정된다 (제8.4조; 권고 8B.1도 참조).

40.4. 제40조에서 새로운 종 또는 종 내의 새로운 분류군 (화석은 제외, 제8.5조 참조)의 학명에 대한 기준은 2007년 1월 1일보다 앞선 출판의 경우일 때, 1개의 일러스트레이션으로도 인정된다. 2007년 1월 1일 이후는 기준은 반드시 표본이어야 한다 (제40.5조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

예제 4. "*Dendrobium sibuyanense*" (제8조 예제6 참조)는 생체표본을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으로 지정해 기재함으로써 합법적으로 출판되지 않았다. 이후 Lubag -Arquiza & Christenson (Orchid Digest 70: 174. 2006)는 제40.6조에 반해 출판된 그림을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으로 지정하여 합법적으로 출판하지 않았다. 제40.6조에 의하면 1990년 1월 1일 이후는 새로운 종을 명명할 때에는 "lectotype"(선정기준표본)이라는 용어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 이 종에 대한 Clements & Cootes (Orchideen J. 2009: 27-28. 2009)의 "*Euphlebium sihuyanense*"의 출판의 경우도, 이미 언급된 그림을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으로 지정하였지만, 이는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출판되어 제40.4조에 어긋나기 때문에 합법적 출판이 아니다.

40.5. 제40조에 미세조류 또는 미세균류 (화석은 제외: 제8.5조 참조)의 새로운 종 또는 종하 분류군의 새로운 학명의 기준은 표본의 보전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나, 또는 학명의 명명자에 의해 제시된 그 분류군의 특징을 알 수 있는 표본을 보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유효하게 출판된 1개의 그림이라도 인정된다.

40.6. 1990년 1월 1일 이후에 출판된 속 또는 속 이하 분류계급의 새로운 분류군의 학명에 대한 기준표본의 지정은 "typus" 또는 "holotypus", 또는 약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현대어 가운데 1개를 포함해야 한다 (권고 40A.1 과 40A.2도 참조). 그러나 1속1종 (제38.6조에서 정의 한), 또는 속 이하 구분은 동시에 유효 출판 된 종의 기준으로 표시된 새로운 종의 이름만으로도 충분하다.

예제 5. Kruschke (Publ. Bot. Milwaukee Public Mus. 3: 35. 1965)에 의한 "*Crataegus laurentiana* var. *dissimilifolia*"는 2개 채집품을 "기준표본 (type)"으로 인용하였기 때문에 40조 규정에 어긋나 합법적으로 출판된 것이 아니다. Phipps (J. Bot. Res. Inst. Texas 3: 242. 2009)는 Kruschke의 라틴어의 분류군 고유특징을 충분히 직접적으로 인용하였지만, 표본 (*Kruschke K-49-145*)을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이라고 불렀다. Phipps가 "기준(typus)" 또는 "홀로타입 (정기준표본, holotypus)", 또는 같은 의미의 현대어인 축약형으로 사용하지 않아 이 학명은 합법적으로 출판되지 않았다.

40.7. 1990년 1월 1일 이후에 출판된 새로운 종 또는 새로운 종 이하 분류군의 학명에 있어서 그 기준이 1개의 표본 또는 출판되지 않은 일러스트레이션인 경우에는 그 기준이 보관되고 있는 표본관, 채집품, 또는 연구기관을 반드시 명기해야 하다 (권고 40A.3과 40A.4도 참조).

예제 6. *Setaria excurrans* var. *leviflora* Keng ex S. L. Chen (Bull. Nanjing Bot. Gard. 1988-1989: 3. 1990)의 프로토로그 <protologue> 중에서, 채집품 *Guangxi Team 4088*이 "模式" (모식, 중국어로 "type")임이 기입되어 있으며, 그 기준이 보관된 표본실은 "中国科学院植物研究所标本室" [중국과학원식물연구소표본실 "Herbarium, Botanical Research Institute, Chinese Academy of Science"] 즉, PE라고 명기하였다.

이 노트 4. 표본관, 채집품, 또는 연구기관을 명기하기 위해서, 예, *Index herbariorum, part I* 이나 *World directory of collections of cultures of microorganisms*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과 같은 약자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예제 7. 't Hart가 "*Sedum eriocarpum* subsp. *spathulifolium*" (Ot Sist. Bot. Dergisi 2 (2): 7. 1995)을 기재했을 때,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이 보관된 표본관, 수집관, 또는 연구기관을 모두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학명은 합법적으로 출판하지 않았다. 이 학명은 't Hart (Strid & Tan, Fl. Hellen. 2: 325. 2002)가 1995년에 출판한 라틴어의 분류군 고유특징을 충분히 직접적으로 출전 인용한 다음에 "기준표본은 't Hart HRT-27104... (U)"로 기술한 것에 의해 합법적으로 출판되었다 (제33.1조).

권고 40A

40A.1. 명명법상 기준표본 지정은 기재문 또는 분류군 고유특징의 바로 다음에 제시해야 하며, 동시에 라틴어 단어인 "typus" 또는 "holotypus"를 포함시켜야 한다.

40A.2. 새로운 종 또는 종 이하의 새로운 분류군 학명의 기준표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로마자로 출판하여야 한다.

40A.3. 기준표본이 보관되어 있는 표본관, 채집품, 또는 소장기관의 명기 (제40조 노트4 참조)에 이어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을 영구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이용 가능한 번호를 제시해야 한다 (권고 9D.1 참조).

예제 1. *Sladenia integrifolia* Y. M. Shui & W. H. Chen (2002)의 기준은 "*Mo Ming- Zhong, Mao Rong-Hua & Yu Zhi-Yong 05* (holotype, KUN 0735701; isotypes, MO, PE)"로 지정하였다. 여기서 0735701은 Kunming Institute of Botany (쿤밍식물연구소) (KUN)의 식물 표본관에서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을 특정할 수 있는 고유의 식별번호이다.

40A.4. 기준표본이 보관되어있는 표본관, 채집품, 또는 연구기관의 인용은 제40조 노트4에 언급되어 있는 표준적인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한다.

제3절

새로운 조합, 새로운 계급의 학명, 대치명

제41조

41.1. 합법적으로 출판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합, 새로운 계급의 이름 또는 대치명 <replacement name>은 기본명 또는 대치이명 <replaced synonym> (제6.10과 제6.11 조 참조)에 대한 출전문헌을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

41.2. 새로운 조합, 새로운 계급의 이름 또는 대치명 <replacement name>이 합법적으로 출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 (a) 과, 또는 과 이하 이름의 경우 기본명 또는 대치이명 <replaced synonym>은 반드시 과, 또는 과와 속 사이의 분류계급 이름이어야 한다. (b) 속 또는 속 이하 이름의 경우 기본명 또는 대치이명은 반드시 속 또는 속 이하 이름이어야 한다. (c) 종 또는 종 이하 분류군 이름인 경우 기본명 또는 대치이명은 반드시 종 또는 종 이하 이름이어야 한다.

예제 1. *Thusperinanta* T. Durand (1888)는 *Tapeinanthus* Boiss. ex Benth. (1848) non Herb. (1837)의 대치명 <replacement name>이다. *Aspalathoides* (DC.) K. Koch (1853)는 *Anthyllis* sect. *Aspalathoides* DC. (Prodr. 2: 169. 1825)에 근거한다.

41.3. 1953년 1월 1일 이전의 경우 기본명 또는 대치이명 <replaced synonym>에 대한 간접 출전 인용 (제38.14조 참조)은 새로운 조합, 새로운 계급의 이름 또는 대치명 <replacement name>의 합법적인 출판으로 충족된다. 따라서 기본명이나 대치이명의 인용오류, 명명자의 인용오류 (제46조)는 이 학명의 합법적 출판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제 2. Masamune (Bot. Mag. (Tokyo) 51: 234. 1937)는 학명 "*Persicaria runcinata* (Hamilt.)"를 어떤 추가 정보도 없이, 학명 리스트에 포함하였다. 학명 *Polygonum runcinatum*은 Don (Prodr. Fl. Nepal.: 73. 1825)이 합법적 출판을 하였고 해당 문헌에서는 "Hamilton, mss"에 귀속시켰다. "Hamilt."이라는 Masamune의 언급은 Don이 출판한 기본명을 Buchanan-Hamilton을 통해 간접적 출전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조합 *Persicaria runcinata* (Buch.-Harn. ex D. Don) Masam.은 합법적으로 출판되었다.

예제 3. Opiz는 "*Hemisphece* Benth."라 쓰면서 새로운 계급명 *Hemisphece* (Benth) Opiz (1852)을 합법적으로 출판하였는데, 이때 기본명인 *Salvia* sect. *Hemisphece* Benth. (Labiatae. Gen. Spec.: 193. 1833)를 간접적 출전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제 4. 새로운 조합, *Cymbopogon martini* (Roxb.) Will. Watson (1882)은 "309"라는 암시적인 번호 표시와 함께 합법적으로 출판되었다. 이것은 같은 쪽의 선두에 설명되어 있듯이, Steudel이 Syn. Pl. Glumac. 1: 388 (1854) 문헌에서 *Andropogon martini* Roxb에 붙인 종의 일련번호이다. 기본명인 *Andropogon martini*에 대한 출전 인용은 간접적이지만 이런 인용은 확실하다 (단, 제33조 예제 1 또는 권고 60C.2 참조).

예제 5. Miller (1768)는 *The gardeners dictionary*, ed. 8의 서문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Linnaeus의 명명법을 전적으로 적용한다."라고 언급하였다. 본문 중에서는 자주 속의 색인에 Linnaeus의 속을 인용하고 있다. 이를테면 *Opuntia* Mill.에서 *Cactus* L. [pro parte]를 인용하였다. 따라서 이런 인용이 타당할 경우에는 Linnaeus의 이명 <2개 이름, binomial>을 암묵적으로 출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Miller의 학명은 새로운 조합으로 (예로서 *C. ficus-indica* L에 근거한 *O. ficus-indica* (L.) Mill.), 또는 대치명 <replacement name>으로 채택 된다 (예로서, *C. opuntia* L에 근거한 *O. vulgaris* Mill. 이 두 학명과 공통으로 Bauhin & Cherler의 "*Opuntia vulgo herbariorum*"이 인용됨).

41.4. 1953년 1월 1일 이전에 출판된 속 또는 하위계급의 학명에 대해서는 기본명의 인용이 없지만 새로운 분류군이나 대치명 <replacement name>의 합법적인 출판의 조건이 충족되고, 명명자의 추정되는 의향과 동일 분류군에 적용되는 가능성이 있는 기본명 (제6.10조)이 존재할 경우에는 해당 이름을 새로운 조합이나 새로운 계급의 학명으로 취급한다.

예제 6. Kummer는 *Führer in die Pilzkunde* (1871) 노트 (p.12)에서 당시 쓰던 *Agaricus*속의 하위 구분인 (즉, 당시 하위 구분은 Fries의 것으로, 속의 계급으로 채택한다고 언급하였다. 이 책의 전체적인 배열은 Fries의 체계에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Fries가 이전에 "tribus"로 출판한 학명을 기본명으로 간접적 출전 인용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Kummer의 잠재적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Kummer가 Fries를 인용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며 간접적으로라도 기본명에 대한 출처 인용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러나 비록 제41.3조를 적용할 수 없어도 Kummer는 새 분류군 학명의 합법적 출판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분류군 고유특징을 검색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제41.4조의 조항에 의해 *Hypholoma* (Fr.: Fr.) P. Kumm., *H. fasciculare* (Huds.: Fr.)와 같은 학명은, 해당되는 Fries의 학명 (여기에서는, *A. "tribus" Hypholoma* Fr.: Fr 와 *A. fascicularis* Huds.: Fr.)에 근거한 것으로 인정한다.

예제 7. Roxburgh (1814)는 학명 *Scaevola taccada*를 Rheede의 1개의 일러스트레이션 (Hort. Malab. 4: t. 59. 1683)에만 근거한 인용을 통해 합법적 출판을 시도하였다. 이 학명은 이전에 *Lobelia taccada* Gaertn. (1788)로 기재된 식물에 적용하였기 때문에 Roxburgh의 프로토토크 <protologue>에는 *L. taccada*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 출전 인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종의 학명이 아니라 Gaertner의 학명에 따른 새로운 조합 *Scaevola taccada* (Gaertn.) Roxb.으로 간주한다.

예제 8. Moench이 *Chamaecrista* (Methodus: 272, 1794)를 기재할 때 *Cassia* [계급미지정 unranked] *Chamaecrista* L. (Sp. Pl.: 379. 1753)를 출전 인용하지 않은 채 이 소명을 속명에 사용하였고, 또 기준인 *Cassia chamaecrista* L.을 (이명목록에 인용) 포함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속명이 아닌 새로운 계급명, *Chamaecrista* (L.) Moench으로 합법적 출판한 것이다.

예제 9. Stephani & Spruce (Hedwigia 28: 167. 1889)는 이전에 *Lejeunea* subg. *Brachiolejeunea* Spruce (Trans. & Proc. Bot. Soc. Edinburgh 15: 75, 129. 1884)라는 분류군이 출판되었지만, 선행한 출판에 대한 간접 출전 인용없이 *Brachiolejeunea*를 발표하였다. Stephani & Spruce는 *B. plagiochiloides*의 기재문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이 학명은 제38.5조에 근거해서 1속1종 (단형속)의 속종명 동시기제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제41.4조에 의해, 이 학명은 Spruce의 아속명에 근거한 새로운 계급(속명)의 학명 *Brachiolejeuna* (Spruce) Steph. & Spruce로 취급한다.

예제 10. Sampaio가 "*Psoroma murale* Samp." (Bol. Real Soc. Esp. Hist. Nat. 27: 142. 1927)를 출판하였을 때, 동일 분류군에 대해 적용된 *Lichen muralis* Schreb. (1771)의 소명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용없이 채택하였다. Sampaio는 *Lecanora saxicola* Ach.를 이명으로 인용하고 있다. 제41.4조에 의해 *Psoroma murale*은 *Lichen muralis*에 근거한 새로운 조합으로 취급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학명은 합법적 출판이 되었지만 *Lecanora saxicola*에 대한 서법적인 대치명 (<replacement name>)이 된다.

41.5. 1953년 1월 1일 이후 새로운 조합, 새로운 계급의 학명 또는 대치명은 기본명이나 대치이명을 명확하게 언급을 하지 않고 명명자와 쪽 또는 도판의 인용과 날짜를 수반한 합법적인 출판의 출전이 충분히, 그리고 직접 인용되지 않았다면 합법적으로 출판된 것이 아니다 (단, 제41.6조 및 41.8조 참조). 2007년 1월 1일 이후는 새로운 조합, 새로운 계급의 학명, 또는 대치학명은 기본명이나 대치이명이 인용되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출판된 것이 아니다.

예제 11. Kjeldsen & Phinney (Madroño 22: 90. 27 Apr. 1973)는 *Ectocarpus mucronatus* D. A. Saunders를 *Giffordia*속으로 옮기면서 그 기본명과 저자를 인용하였지만 기본명의 합법적 출판의 출전을 인용하지 않았다. 후에 이 기본명의 출전을 충분히 직접적으로 인용함으로써 (Madroño 22: 154. 2 Jul. 1973) 학명 *G. mucronata* (D. A. Saunders) Kjeldsen & H. K. Phinney라는 새로운 조합을 합법적으로 출판하였다.

① 노트 1. 제41.5조의 취지를 위해서, 쪽 인용은 (연속 쪽 번호를 가진 출판물에 대해) 기본명 또는 대치이명 (<replaced synonym>)이 합법적으로 출판된, 또는 프로토로그 (<protologue>)가 기재된 쪽 번호 또는 복수 쪽 번호를 인용한다. 그러나 출판물 전체의 쪽수가 프로토로그가 인쇄되어 있는 쪽의 번호와 일치하지 않은 한, 출판물 전체의 쪽 번호의 인용은 아니다 (참조 제30조 노트 2도 참조).

예제 12. Peeraly (Mycotaxon 40: 337. 1991)는 "*Cylindrocladium infestans*"를 제안하였을 때, 기본명을 "*Cylindrocladiella infestans* Boesew., Can. J. Bot. 60: 2288-2294. 1982"로 인용하였다. 이는 Boesewinkel의 논문 전체의 쪽 번호를 인용한 것으로 인용한 기본명의 프로토로그 (<protologue>)의 쪽 번호만을 언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합은 Peeraly에 의해 합법적 출판한 것이 아니다.

예제 13. Hammer는 기본명 (*Conophytum littlewoodii*)를 인용하지 않고 출전문헌을 충분히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것으로 기본명을 지시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 1월 1일 이전에 출판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조합 *Conophytum marginatum* subsp. *littlewoodii* (L. Bolus) S. A. Hammer (Dumpling & His Wife: New views Gen. Conophytum: 181. 2002)는 합법적으로 출판하였다.

41.6. 1953년 1월 1일 이후에 출판된 학명에 대해서는 명명자 인용의 오류 (제46조)와 기본명 또는 대치이명 (<replaced synonym>)의 인용오류 때문에 새로운 조합, 새로운 계급의 학명, 또는 대치명 (<replacement name>)의 합법적 출판에서 배제시키지 않는다. 단, 인용을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1.5조).

예제 14. *Aronia arbutifolia* var. *nigra* (Willd.) F. Seym. (Fl. New England: 308. 1969)는 "*Mespilus arbutifolia* L. var. *nigra* Willd., in Sp. Pl. 2: 1013. 1800에 근거한" 새로운 조합으로 출

판되었다. Willdenow는 이 식물을 *Mespilus*속이 아닌 *Pyrus*속으로 취급하고 있고, 출판도 1800년이 아니라 1799년이였다. 따라서 이는 출전문헌 인용상의 오류로 취급하며, 이 새로운 조합은 합법적 출판의 무효화로 보지는 않는다.

예제 15. 새로운 계급명, *Agropyron desertorum* var. *pilosiusculum* (Melderis) H. L. Yang (Kuo의 Fl. Reipubl. Popularis Sin. 9 (3): 113. 1987)은 본인이 오류를 범했지만, 합법적으로 출판되었다. Yang이 "*Agropyron desertorum* ... var. *pilosiusculum* Meld. in Norlindh., Fl. Mong. Steppe. 1: 121. 1949" 라고 써서, 계급을 지시하는 인용상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기본명 *Agropyron desertorum* f. *pilosiusculum* Meldelis의 충분한 직접적인 출전 인용으로 간주한다.

41.7. *Index kewensis*나 *Index of fungi*, 또는 합법적으로 출판된 학명이외 다른 문헌을 단순히 인용하는 것만으로는 그 학명의 원래 출판의 충분하고 직접적인 출전 인용이 되지는 않는다 (단, 제41.8조 참조).

① 노트 2. 제41.7조의 취지를 위해, 쪽수가 명시되지 않거나, 별개의 쪽수가 있는 초기 전자 버전의 출판은 확실한 쪽수가 있는 이후, 출판된 버전과 서로 다른 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30조 노트 2).

예제 16. Ciferri (Mycopathol. Mycol. Appl. 7: 86-89. 1954)는 *Meliola*에서 142건의 새로운 조합을 제안하였을 때, 기본명의 출전은 Petrak의 목록, 또는 *Index of fungi*에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출전 인용을 생략하였다. 따라서 이 조합은 모두 합법적으로 출판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Grumann (Cat. Lich. Germ.: 18. 1963)는 *Lecanora campestris* f. "*pseudistera* (Nyl.) Grumm. c.n-L. p. Nyl., Z 5: 521"라는 새로운 조합을 출판하는데, 여기서, "Z 5"는 기본명인 *Lecanora pseudistera* Nyl.의 출전을 충분히 인용하고 있는 Zahlbruckner (Cat. Lich. Univ. 5: 521. 1928)를 인용한 것이지만 Grumann의 조합은 합법적으로 출판되지 않았다.

① 노트 3. 기준에 잘못 적용된 학명으로 알려진 분류군에 대해 새로 출판한 이름은 언제든지 새로운 분류군의 이름이 되며 이런 이름을 합법적으로 출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32-45조의 모든 관련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 과정은 합법적 출판이지만 서명 (제58.1조), 즉 대치이명 <replaced synonym> (제7.4조)의 기준과 동일할 필요가 있는 이름에 대한 대치명 <replacement name>의 출판 방식과는 다르다.

예제 17. *Sadleria hillebrandii* Rob. (1913)는 "*Sadleria pallida* Hilleb. Fl. Haw. Is. 582. 1888. Not Hook. & Arn. Bot. Beech. 75. 1832."에 대한 "nom. nov." [새로운 이름]로 출판되었다. 합법적 출판에 관한 조건은 충족하고 있으므로 (1935년 이전은, 이전의 기재가 어떤 언어로도 단순히 출전 인용하면 출판으로 충족), 새로운 종의 합법적 출판이다. 그러나 이는 Hillebrand가 학명 *S. pallida* Hook. & Arn.을 잘못 적용한 분류군에 부여한 기재문으로 합법적 출판된 새로운 종의 학명으로 Robinson이 언급한 것과 같은 대치명 <replacement name>은 아니다.

예제 18. "*Juncus bufonius* var. *occidentalis*" (Hermann, U.S. Forest Serv., Techn. Rep. RM-18: 14. 1975)는 *J. sphaerocarpus* "auct. Am., non Nees"에 대해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계급"이라고 출판되었다. 그러나 라틴어 기재문 또는 분류군 고유특징과 기준표본의 지정도 없고 이들 조건을 만족시킨 이전 출판의 출전 인용도 없기 때문에, 이 학명은 합법적으로 출판되지 않았다.

41.8. 1953년 1월 1일 이후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기본명 또는 대치이명 <replaced synonym>이 합법적으로 출판되지 않았지만, 충분하고 직접적으로 출전 인용한 것은 수정할 수 있는 오류로 간주하며, 새로운 조합, 새로운 계급의 학명, 또는 대치명 <replacement name>의 합법적인 출판에는 영향을 안 준다.

- (a) 기본명 또는 대치이명 <replaced synonym>으로 인용된 학명이 인용된 출판보다도 먼저 합법적으로 출판되고, 그 인용된 출판에서는 실제 합법적 출판의 장소가 출전 인용되지 않았지만, 합법적 출판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을 경우
- (b) 기본명 또는 대치이명 <replaced synonym>의 합법적 출판의 출전을 인용할 수 없었던 이유를 관계되는 균의 명명법상의 시점이 나중이거나, 또는 일부 균류에 대한 출발점의 날짜를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경우
- (c) 의도된 새조합, 또는 새로운 계급의 학명이 이렇게 다루지 않으면 (적법인지 또는 비 적법적인지) 대치명 <replacement name>으로 합법적 출판된 경우
- (d) 의도된 새조합, 새로운 계급의 학명 또는 대치명 <replacement name>이 이렇게 다루지 않으면 새분류군의 학명으로 합법적 출판된 경우

예제 19. (a) Tryon (1970)은 새로운 조합 *Trichipteris kalbreyeri*에 "*Alsophila Kalbreyeri* C. Chr. Ind. Fil. 44. 1905"을 충분히 직접적으로 출전 인용하면서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기본명으로 의도된 학명의 합법적 출판의 출전이 아니며, 또한 기본명은 이미 같은 기준에 근거한 Baker (1892; 제6조 예제 1 참조)가 출판하였다. Christensen은 Baker의 이전 출판에 대해서 어떤 출전 인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런 Tryon의 인용 오류는 Tryon의 새로운 조합명의 합법적 출판에 대해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따라서 이 학명은 *T. kalbreyeri* (Baker) R. M. Tryon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예제 20. (a) Koyama (Bot. Mag. (Tokyo) 69: 64. 1956)는 의도된 새로운 조합명 "*Machaerina iridifolia*"에 있어 "*Cladium iridifolium* Baker, Flor. Maurit. 424 (1877)"을 충분히 직접적으로 출전 인용하였다. 그러나 *C. iridifolium*은 *Scirpus iridifolius* Bory (1804)에 간간을 두고 새로운 조합이 Baker에 의해 제안된 것이었다. Baker는 Bory를 명시적으로 출전 인용하고 있으므로 제 41.8조 (a)는 적용되지 않고 Koyama에 의한 이 *Machaerina*속에서의 조합은 합법적으로 출판되지 않았다.

예제 21. (b) Raitviir (1980)는 Fries (Syst. Mycol. 2: 96. 1822)의 *Peziza corticalis*를 충분히 직접적으로 출전 인용하면서 조합명 *Lasiobelonium corticale*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기본명의 합법적 출판의 출전은 이 문헌이 아니라, 1980년에 유효하였던 명명규약 하에서는 Mérat (Nouv. Fl. Env. Paris, ed. 2, 1: 22. 1821)이며, 현재의 명명규약 하에서는 Persoon (Observ. Mycol. 1: 28. 1796)이다. Raitviir의 인용오류는 일부는 대부분의 균류의 명명법 상의 시작점의 날짜의 연기에 기인하고, 또 일부는 Fries의 저술이 Mérat의 출전 인용을 거르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는 따라서 Raitviir의 새로운 조합은 합법적 출판이라고 여기지 않으며, 이 학명은 *L. corticale* (Pers.: Fr.) Raitv.로 인용한다.

예제 22. (c) Murray (Kalmia 13: 32. 1983)는 *Mirabilis laevis* subsp. *glutinosa*를 "*Mirabilis glutinosa* A. Nels., Proc. Biol. Soc. Wash. 17: 92 (1904)"에서 "기본명"으로 의도하여, 충분히 직접적으로 출전 인용하면서 새로운 조합으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Mirabilis glutinosa* A. Nels.는 *M. glutinosa* Kuntze (1898)의 서명인 후동일명으로서 기본명이 될 수가 없고, *M. laevis* subsp. *glutinosa*는 *Hesperonia glutinosa* Standl. (1909)의 대치이명 <replaced synonym>이 된다. 제 41.8조(c)하에서 Murray는 *H. glutinosa*에 근거한 새로운 조합을 합법적으로 출판한 것이다. 만약, 이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Murray가 *M. glutinosa*에 대한 대치명 <replacement name>을 출판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학명은 따라서 *M. laevis* subsp. *glutinosa* (Standl.) A. E. Murray로 인용하여야 한다.

예제 23. (c) Butcher (Bromeliaceae 43 (6): 5. 2009)는 *Tillandsia barclayana* var. *minor*라는 새로운 조합을 제안하였지만 기본명인 *Vriesea barclayana* var. *minor* Gilmartin (Phytologia 16: 164.

1968)의 출전 인용이 충분히, 그리고 직접적이지 않았다. Butcher는 *T. lateritia* André (1888)도 충분히 직접적으로 출전 인용하고 있으며, 이는 *V. barclayana* var. *minor*의 대치이명 (replaced synonym)이다. 제41.8조(c)하에 *T. barclayana* var. *minor* (Gilmartin) Butcher는 *V. barclayana* var. *minor*에 근거한 새로운 조합으로 합법적으로 출판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T. lateritia*에 대한 대치명 (replacement name)이 출판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예제 24. (d) Tzvelev (1968)는 대치명 (replacement name) *Agropyron kengii*를 "*Roegneria hirsuta* Keng, Fl. ill. sin., Gram. (1959) 407."을 충분히 직접적으로 출전 인용하면서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는 대치이명 (replaced synonym)으로 의도된 학명의 합법적 출판의 출전이 아니며, 이 학명은 이후에 Keng (1963)에 의해 합법적으로 출판되었다. Tzvelev는 라틴어 기재문이 있으며 기준으로는 단일 채집품을 지정하고 있으므로, 이 대치명 (replacement name)은 합법적으로 출판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출판된 새 분류군의 학명이 된다.

권고 41A

41A.1. 기본명 또는 대치이명 (replaced synonym)의 충분히 직접적인 출전 인용은 제안되는 새로운 조합, 새로운 계급의 이름 또는 대치이명 (replaced synonym)의 바로 다음에 표시해야 한다. 인용은 출판문의 마지막에 출전문헌 목록 또는 동일 저술 중의 다른 부분에, 예로 "loc. cit." ("인용한 곳에")나 "op. cit." ("인용문헌 중에")의 축약형을 사용하는 것 같은 단순한 전후 참조 방식으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

제4절

특정 그룹의 학명

제42조

42.1. 이 규약 (전문 제8)에 의해, 균류 (화석균류와 지의류 형태 균류 포함)로 취급되는 생물체를 지칭하는 새로운 분류군의 학명, 새로운 조합, 신 계급의 학명, 또는 대치명 (replacement name)에서,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출판된 이름은 합법적인 출판을 위해 인정된 학명의 등록기관 (제42.3조)에서 발행하는 식별자를 프로토로그 (protologue)에 인용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예제 1. *Tetramelas thiopolizus* (Nyl.) Giralt & Clerc (2011)의 프로토로그 (protologue)는 "MycoBank no.: MB561208"의 인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새로운 균류의 학명을 합법적으로 출판하기 위해서는 균류명명위원회 (제3부 참조)에 의해 선임된 등록 기관에서 발행하는 식별자의 인용이 필요하다.

42.2 인정된 등록기관에서 제42.1조에 의해 요구되는 식별자의 발행을 위해, 학명의 명명자에 의해 등록되어야 하는 정보는 학명 그 자체와 제38.1 (a)조와 제39.2조 (기재문의 유효화 또는 종고유)와 제40.1조와 제40.7조(기준표본), 또는 제41.5조 (기본명 또는 대치이명 (replaced synonym)의 출전 인용)에 의하여 합법적인 출판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요소이다. 식별자가 부여한 학명이 등록된 정보와 이후 출판된 정보가 다를 경우에는 출판된 정보가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❶ 노트 1. 인증된 등록기관에 의한 식별자의 배포는 학명의 합법적 출판을 위한 요건(제 32-45조)이 그 이후에 충족되는 것은 전제로 하지만, 식별자의 발행 그 자체로 합법적 출판이 성립하거나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42.3. 균류명명위원회(제3부 참조)는 (1) 제42.2조에 의한 필요한 정보를 등록하고 제 42.1조에 의해 필요한 식별자를 출판하고, 국소적 또는 분산적이고 공개 및 접근 가능한 1개 이상의 전자등록기관을 선정하고; (2) 재량에 의한 취소; 그리고 (3) 등록기관의 기구 또는 그 중요한 부분이 기능을 정지했을 경우에는 제42.1조 및 제 42.2조의 요구를 파기할 권한을 가진다. 이런 권한에 의해 위원회가 정한 결정은 국제균류학회의 승인에 맡긴다.

권고 42A

42A.1. 균류로 취급되는 생물체 학명의 명명자는 (a) 등록식별자를 취득하기 위해 연구내용이 출판에 접수된 이후 가능한 신속하게 명명법상의 새로운 제안을 위해 요구되는 정보의 요소를 인증된 등록기관에 등록하고, (b) 그 학명의 출판에 관해, 권수 및 분류의 번호, 쪽 번호, 출판날짜, 그리고 (서적의 경우) 출판자의 출판 장소를 포함한 완전한 출판정보의 내용을 인증된 등록기관에 보고하도록 장려한다.

42A.2. 학명의 선택(제11.5조 및 제53.6조), 정자법상의 선택(제61.3조), 또는 성의 선택(제62.3조)도 유효한 출판을 위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과 더불어, 균류로 취급되는 생물체의 학명에 관한 결과를 출판할 때에는 인증된 등록기관(제42.3조)에 기록하고 출판시 등록 식별자를 인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제43조

43.1. 합법적인 출판이 되기 위해서는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출판된 화석 분류군의 새 분류군의 학명은 라틴어나 영어의 기재문 또는 분류군 고유특징을 반드시 수반하거나, 또는 이전에 유효하게 출판된 라틴어나 영어의 기재문 또는 분류군 고유특징의 출전문헌(제38.13조 참조)을 수반해야만 한다.

❶ 노트 1. 제39.1조는 화석 분류군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1996년 이전에 어떤 언어로든 기재나 또는 분류군 고유특징(제38조 참조)을 입증하는 것이면 수용된다.

43.2. 1912년 1월 1일 이후에 출판된 화석 속 또는 그 이하 계급 화석 분류군의 새로운 학명은 중요한 형질을 제시하는 일러스트레이션, 또는 그림을 수반하거나, 이전에 유효하게 출판된 일러스트레이션 또는 그림의 출전 인용을 수반하지 않는 한 합법적으로 출판된 것이 아니다. 이런 취지를 위해 화석 속 또는 화석 속 이하 계급의 학명이 합법적으로 출판되기 위해서는 1912년 1월 1일 이후에 합법적으로 출판된 학명의 인용 또는 출전문헌(직접 또는 간접)으로 충분하다.

예제 1. Krasser (Akad. Wiss. Wien Sitzungsber., Math.- Naturwiss. Kl. Abt. 1, 129: 16. 1920)가 "*Laconiella*"를 출판하였을 때 단지 1종만을 포함하고 있었다. 당시 의도된 학명 "*Laconiella sardinica*"에는 일러스트레이션 또는 그림, 또는 이전에 유효하게 출판된 일러스트레이션 또는 그림에 대한 출전 인용이 없기 때문에 합법적으로는 출판되지 않았다. 따라서 "*Laconiella*"는 합법적으로 출판된 속명이 아니다.

예제 2. *Batodendron Chachlov* (Izv. Sibirsk. Otd. Geol. Komiteta 2 (5): 9. fig. 23-25. 1921)는 기재문과 일러스트레이션이 함께 출판되었다. 이 새로운 화석 속은 학명을 가진 종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명은 (*Batodendron* Nutt. 1843의 서법적 후동일명이지만) 합법적으로 출판된 것이다.

43.3.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출판된 화석식물의 새로운 종 또는 새로운 종 이하 화석 분류군의 학명에 있어서 최소한 필요한 일러스트레이션 가운데 적어도 1개가 기준 표본을 포함한 것을 지정하지 않으면 합법적 출판이 아니다 (제9.15조도 참조).

제44조

44.1. 합법적 출판이 되기 위해서는 1958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사이에 출판된 비화석 조류의 새 분류군의 학명은 라틴어의 기재문 또는 분류군 고유특징을 수반하거나, 또는 이전 유효하게 출판된 라틴어의 기재문 또는 분류군 고유특징의 출전 인용을 수반해야 한다.

i 노트 1. 1958년 이전에 제39.1조가 조류 분류군의 학명에 적용이 되지 않듯이, 기재문이나 분류군 고유특징 검증 (제38조 참조)은 어떤 언어로도 허용된다.

44.2. 1958년 1월 1일 이후 출판된 종 또는 종 이하 계급의 비화석 조류의 새 분류군의 학명은 명확한 형태적 특징을 보여주는 일러스트레이션이나 그림, 또는 이전 유효하게 출판된 일러스트레이션, 그림에 대한 출전 인용을 수반하지 않는 한 합법적으로 출판된 것이 아니다.

예제 1. *Neoptilota Kylin* (Gatt. Rhodophyc.: 392. 1956)은 독일어 기재문만을 동반하고 있지만, 이는 조류의 학명이며 1958년 이전에 출판하였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출판한 학명이다.

권고 44A

44A.1. 제44.2조에서 요구되는 일러스트레이션 또는 그림은 실제의 표본에 근거해서 만들어져야 하며, 그 표본에는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45조

45.1. 이 규약에서 원래 다루지 않는 생물체에 귀속되었던 분류군이 조류나 또는 균류로 취급되었을 경우 학명의 모든 부분이 명명자가 식물규약 내에서의 합법적 출판과 동등한 계급을 얻기 위해 사용된 관련 다른 규약의 조건만을 충족시키면 된다 (단, 동일명인 것에 관해서는 제54조 참조). 명명자가 해당 분류군이 귀속되는 생물체에 대해 어떤 주장을 하던 관계없이 내부증거에 의해 명명자에 의해 사용된 규약이 결정된다. 그러나 동물명명법에서 동격 (연계)의 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학명은 분류군의 정명으로 인쇄에서 공표하지 않았고, 이것이 출판될 때 까지는 이 규약에서는 합법적 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예제 1. 국제동물명명규약에서 동물 속의 학명으로 사용된 *Amphiprora* Ehrenb. (1843)은 Kützing (1844)에 의해 처음으로 조류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조류, 균류와 식물에 대한 국제명명규약에서 *Amphiprora*는 1844년이 아니라, 1843년이 공식 출판된 것으로 밝혔다.

예제 2. *Petalodinium* Cachon & Cachon-Enj. (Protistologia 5: 16. 1969)는 국제동물명명규약에서 와편모충류 <dinoflagellates>의 속의 학명으로 적합하다. 이 분류군이 조류에게 속하는 것으로 다루어질 경우 그 학명의 원래 출판은 라틴어 기재문 또는 분류군 고유특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44.1조 참조) 학명이 합법적으로 출판되었고, 원저자와 날짜가 유지된다.

예제 3. *Prochlorothrix hollandica* Burger-Wiersma & al. (Int. J. Syst. Bacteriol. 39: 256. 1989)은 국제세균명명규약에 따라 출판되었다. 이 분류군이 조류로 다루어질 때, 이 학명이 살아있는 배양주에 근거하여 (제8.4조), 원래 출판이 라틴어 기재문 또는 분류군 고유특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44.1조) 이 학명은 합법적으로 출판되었고, 원저자와 날짜가 유지된다.

예제 4. *Labyrinthodictyon* Valkanov (Progr. Protozool. 3: 373. 1969, '*Labyrinthodiction*')은 국제동물명명규약에 의해 근족충류속의 학명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 분류군이 균류에 속하는 것으로 다루어질 때, 원래 출판이 라틴어 기재문 또는 분류군 고유특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9.1조), 그 학명은 합법적으로 출판되었고, 원 저자와 날짜가 유지된다.

예제 5. 국제동물명명규약에서 이용가능하게 출판된 *Protodiniferaceae* Kof. & Swezy (Mem. Univ. Calif. 5: 111. 1921. '*Protodiniferidae*')는 조류의 과명으로 합법적으로 출판하였으며, 원저자와 날짜는 유지되나 제18.4조와 제32.2조에 따라 출판의 어미는 변경된다.

예제 6. *Pneumocystis* P. Delanoë & Delanoë (Compt. Rend. Hebd. Séances Acad. Sci. 155: 660. 1912)는 "원생동물" 속으로, "만약 이것이 새로운 속으로 구성된다면 *Pneumocystis Carinii*로 명명할 것을 제안한다"라는 내용으로 속의 계급에 대한 의문을 표명하면서 출판하였다. *Pneumocystis*는 제36.1조 (b)에서는 합법적으로 출판되지 않았지만, 국제동물명명규약의 제11.5.1조에서는 당시 이런 조건부의 학명을 허용하였다. 따라서 *Pneumocystis*는 국제동물명명규약에서는 사용 가능한 이름이며 본 규약 제 45.1조에서도 합법적으로 출판하였다.

예제 7. *Pneumocystis jirovecii* Frenkel (Natl. Cancer Inst. Monogr. 43: 16. 1976, '*jiroveci*')는 원생동물로 취급하며, 영어의 기재문과 함께 기준표본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판되었다. 이런 상황은 국제동물명명규약 제72.3조와 권고 13B에 의해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P. jirovecii*가 균류 학명으로 간주할 경우에는 어미를 수정 (제60.12조) 한 후, 제45.1조에 의해 합법적으로 출판되었다. 이 종을 균류의 종으로 취급한 Frenkel (J. Eukaryot. Microbiol. 46: 91S. 1999)에 의해 당시 효력 있던 국제식물명명규약 판에서는 라틴어의 분류군 고유특징의 출판은 필요하였으나, 현재는 더 이상 이 부분은 필요가 없다. *P. jirovecii*는 1999년이 아닌, 1976년이 출판 날짜가 된다.

❶ 노트 1. 미포자충류 <*Microsporidia*>의 이름은 균류로 간주하지만 이 규약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전문 제8, 제13.1 (d) 참조).

❶ 노트 2. 만약, 초기 규약에서 다루지 않는 생물체로 귀속된 분류군이 식물 (즉, 조류 또는 균류가 아닌)로 취급할 경우 해당 학명의 명명자와 날짜는 합법적인 출판을 위한 제32-45조에 관한 조건을 충족하는 최초의 출판에 의해 결정된다.

제6장

인용

제1절

명명자 인용

제46조

46.1. 출판물 중 특별히 분류학 및 명명법을 다루는 출판물에 있어서는 분류군 고유특징에 대한 출전문헌 참조가 없는 경우라도 관련된 학명 명명자 (제22.1조 및 제26.1조도 참조)를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적용된다.

예제 1. *Rosaceae* Juss., *Rosa* L., *Rosa gallica* L., *Rosa gallica* var. *eristyla* R. Keller, *Rosa gallica* L. var. *gallica*.

46.2. 새 분류군 학명은 그 학명과 합법적으로 출판된 기재문 또는 분류군 고유특징이 학명의 명명자와 동시에 귀속되거나 또는 명백하게 동일 명명자로서 관련이 있을 때, 출판물의 명명자와는 다르더라도 해당 학명의 명명자로 언급한다. 새로운 조합, 새로운 계급의 학명, 또는 대치명 <replacement name>은 해당 학명이 출판된 출판물에서 해당 학명 출판에 어떤 방식으로든 공헌하였다고 명시되었을 경우, 귀속된 명명자를 해당 학명의 명명자로 한다. 제46.5조에 관계없이 명명법상의 새로운 제안의 명명자명은 그 출판물의 명명자명과 다를 경우라도, 적어도 1명의 명명자가 해당 출판문과 기재문에 공통이면서 명시된 대로 항상 인정한다.

예제 2. Sargent (*Trees & Shrubs* 2: 37. 1907)가 출판한 학명 *Viburnum ternatum*은 "Rehd."에 속한다고 언급하고 있고, 이 종의 기술에 대한 항목 끝에 "Alfred Rehder"가 언급된다. 따라서 이 학명은 *V. ternatum* Rehder로 인용한다.

예제 3. Hilliard & Burt (1986)의 논문 *Schoenoxiphium altum*을 포함한 *Schoenoxiphium*의 새로운 종의 학명에 "이하의 새로운 종 분류군 고유특징은 이 학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I. Kukkonen 박사에 의해 제공되었다"라고 적혀 있으므로 Kukkonen에 귀속된다. 따라서 이 학명은 *S. altum* Kukkonen으로 인용한다.

예제 4. Torrey & Gray (1838)는 학명 *Calyptridium*과 *C. monandrum*을 "Nutt. mss."에 귀속시키고 있으며, 서문의 감사의 글에도 기재된 바와 같이 이 기재문은 Nuttall이 쓴 것임을 표시하기 위해 중복인용부호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학명은 *Calyptridium* Nutt. 및 *C. monandrum* Nutt.로 인용한다.

예제 5. Gay의 *Flora chilleana* (1845-1854) 서평에서 *Eucryphiaceae*가 출판되었을 때 (1848), 단지 "W." 밖에 없는 무명의 저자는 "wird die Gattung *Eucryphia* als Typus einer neuen Familie, der *Eucryphiaceae*, angesehen["*Eucryphia*는 새로운 과인 *Eucryphiaceae*의 기준으로 간주된다]"라고 썼다. 이 때문에 과명과 그 합법적 출판을 위한 기재문을 둘 다 Gay (Fl. Chil. 1: 348. 1846)에 귀속시키고 있다. Gay는 이곳에서 "Eucrifiáceas" (제18.4조를 참조)라는 명칭을 이용하고 있지만, 학명은 *Eucryphiaceae* Gay로 인용한다.

예제 6. Candolle이 "*Elaeocarpeae* Juss., Ann. Mus. 11, p. 233"라고 쓰면서, 이 학명을 Jussieu에 귀속시키고, 합법적 출판을 위해 Jussieu (Ann. Mus. Natl. Hist. Nat. 11: 233. 1808)가 명명하지 않은 과의 분류군 고유특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학명은 *Elaeocarpaceae* Juss.라고 인용하고, *Elaeocarpaceae* "Juss. ex DC."라 인용하지 않는다.

예제 7. Green (1985)은 새로운 조합 *Neotysonia phyllostegia*를 Wilson에 귀속시켰고, 같은 논문의 다른 부분에서 그의 협력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학명은 *N. phyllostegia* (F. Muell.) Paul G. Wilson으로 인용한다.

예제 8. *Sophora tomentosa* subsp. *occidentalis* (L.) Brummitt (Kirkia 5: 265. 1966)의 저자명은, 이 새로운 조합명이 Brummitt과 Gillett를 저자로 하는 논문에서 출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귀속되어 있는 대로 사용한다.

❶ 노트 1. 학명의 명명자와 합법적으로 발표된 출판물의 저자명과 다른 때, 양쪽을 "in"이라 단어로 묶어서 인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in"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문헌의 인용일부이며, 출판이 인용되지 않을 때에는 생략하는 것이 좋다.

예제 9. 학명 *Verrucaria aethiobola* Wahlenb. (Acharius, Methodus, Suppl.: 17. 1803)와 원기재문은 "Wahlenhb. Msc."에 귀속되는 1개 단락으로 표시된다. 따라서 이 학명은 *V. aethiobola* Wahlenb로 인용하며, "Wahlenb. ex Ach."이거나 "Wahlenb. in Ach."(만약 출전문헌을 충분히 인용하지 않을 경우)라고 인용하지 않는다.

예제 10. Candolle은 새로운 조합 *Crepis lyrata*를 *Prodromus systematis naturalis regni vegetabilis* (7: 170. 1838)에서 "*C. lyrata* (Froel. In litt. 1837)"로 출판하면서, 160쪽의 각주에서 *Crepis*속의 몇몇 절에 대해 서술한 Froelich에 감사의 글을 명시하였다 ("Sectiones generis iv, v, et vi. acl. Froelich elaboratae sunt"). 따라서 이 학명은 *C. lyrata* (L.) Froel. 또는 *C. lyrata* (L.) Froel. in Candolle (이 뒤에 출판한 곳의 문헌 인용언급)로 인용하고, *C. lyrata* "(L.) Froel. ex DC."로 인용하지 않는다.

예제 11. Arnold는 학명 *Physma arnoldianum*을 논문 (Flora 41: 94. 1858)에서 출판하였다. Arnold는 이 학명을 "*Ph. Arnoldianum* Hepp. lit 12. Decbr. 1857"으로 소개하고 그 원기재문 직후에는 "Hepp. in lit."이라는 표현이 이어진다. 따라서 이 학명은 *P. arnoldianum* Hepp.으로 인용하며, *P. arnoldianum* "Hepp. ex Arnold"로 하지 않는다. Arnold는 이 논문의 저자이지만, 저술 전체 (잡지 Flora)의 저자는 아니므로 출전 전체를 인용할 경우에도 Arnold의 이름을 인용할 필요가 없다.

46.3. 제46조에 따라 귀속이라는 것은 해당 분류군의 새 학명, 또는 기재문, 또는 분류군 고유특징과 함께 1명 또는 복수의 인명이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이명 리스트에 제시된 명명자의 인용이나, 기본명의 출전문헌, 또는 대치이명 (<replaced synonym>)의 문헌 (문헌적 정확함에 관계없이), 또는 동일명에 대한 출전문헌, 또는 공식적인 오류 등 모두를 정명의 명명자 귀속으로 보지 않는다.

예제 12. Roemer & Schultes (Syst. Veg. 4: 686. 1819)는 학명 *Atropa sideroxyloides*를 출판하면

서 학명과 분류군 고유특징을 단일 단락에 "Reliq. Willd. MS." (Willdenow의 유작 원고)라고 적었다. 이는 Willdenow와 학명과 분류군 고유특징, 모두에 직접적인 관련을 의미하며 학명은 *A. sideroxyloides* Willd.라고 인용한다. *A. sideroxyloides* "Roem. & Schult." 또는 *A. sideroxyloides* "Willd. ex Roem. & Schult."처럼 인용하지 않는다.

예제 13. Seringe는 *Sicyos triqueter* Moc. & Sessé ex Ser. (1830)를 "Mociño & Sessé에 의한 멕시코 식물의 원고"라는 기술에 의해 "*S. triqueter* (Moc. & Sessé. fl. mex. mss.)"를 Mociño & Sessé에 귀속시켰다. 그러나 *Malpighia emarginata* DC. (1824)는 Candolle의 "*M. emarginata* (fl. mex. ic. ined.)", <"멕시코 식물상의 미출판 그림">이라는 구절 때문에 이 두 저자를 귀속시키지 못하였다.

예제 14. *Lichen debilis* Sm. (1812)은 Smith가 이명으로 "*Calicium debile* Turn. and Borr. Mss"를 인용함에 따라 Turner과 Borrer에 귀속시키지 못하였다.

예제 15. Opiz (1852)가 "*Hemisphece* Benth."라고 썼을 때, Opiz는 이 속명을 Bentham에 귀속시켰던 것이 아니라, 기본명인 *Salvia* sect. *Hemisphece* Benth.를 간접적으로 출전 인용하였다 (제 41조 예제 3 참조).

예제 16. Brotherus (1907)가 "*Dichelodontium nitidulum* Hook. fil. et Wils."를 출판하였을 때, 그는 기본명인 *Leucodon nitidulum* Hook. f. & Wilson을 간접적 출전 인용을 한 것이며, 그 새로운 조합을 Hooker와 Wilson에 귀속시킨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시에 출판한 그의 새로운 속명 *Dichelodontium*은 Hook. f. & Wilson에게 귀속시켰다.

예제 17. Sheh & Watson (Wu & al., Fl. China 14: 72. 2005)은 "*Bupleurum hamiltonii* var. *paucefulcrans* C. Y. Wu ex R. H. Shan & Yin Li, Acta Phytotax. Sin. 12: 291. 1974"라고 쓰고, 이 새로운 조합을 저자 중의 누구에게도 귀속시키지 않았으나, 기본명 *B. tenue* var. *paucefulcrans* C. Y. Wu ex R. H. Shan & Yin Li를 충분히 직접적으로 문헌 인용하였다.

예제 18. Sirodot (1872)가 "*Lemanea* Bory"라고 썼을 때 실제로 후동일명을 출판한 것이다 (제 48조 예제 1 참조). Sirodot의 인용은 Bory의 선동일명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서, 후동일명인 *Lemanea* Sirodot을 Bory로 명명자를 귀속시킨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제 19. Torrey & Gray (Fl. N. Amer. 1: 324. 1838)는 *Hosackia* [계급미지정 unranked] *Drepanolobus*의 기재를 하면서, 이 학명의 저자를 "*Drepanolobus*, Nutt."이라고 하였다. Nuttall의 미발표된 속의 명칭을 언급한 것은 *Hosackia* [계급미지정 unranked] *Drepanolobus*를 Nuttall로 명명자를 귀속시키지 않았는데, 이는 Torrey와 Gray가 (322 쪽) *Drepanolobus*를 독립 속으로 간주하는 Nuttall의 의견에 반대하였기 때문에 형식상의 오류로 판단한다. 이 학명은 *Hosackia* [계급미지정 unranked] *Drepanocladus* Torr. & A. Gray로 인용한다.

① 노트 2. 새로운 분류군의 학명이 기존에 유효하게 출판한 기재문이나 분류군 고유특징에 대한 문헌을 합법적으로 출판하였을 경우 (제38.1(a)), 기재문이나 분류군 고유특징의 저자명은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명백한 관련이 있다.

예제 20. *Baloghia pininsularis*의 적절한 저자 이름의 인용 (제40조 예제 3 참조)은 Guillaumin이며, McPherson & Trel이 아니다. 왜냐하면, 프로토로그 <protologue>에 이 학명은 Guillaumin의 이전 출판된 라틴어 기재문을 충분히 직접적인 인용이 되어 있어 명명자로 Guillaumin에 귀속시켰다. McPherson & Trel은 합법적 출판에 불가결한 기재문에 명명자인 Guillaumin을 명시적으로 귀속시키지 않았지만, Guillaumin은 그 기재문에 "틀림없이 관련되었다".

예제 21. Guillaumin (Mém. Mus. Natl. Hist. Nat., Sér. B, Bot. 15: 47. 1964)는 "*Pancheria humboldtiana*"을 출판하였지만, 기준은 제시하지 않아, 합법적 출판이 아니다. Hopkins & Bradford (Adansonia 31: 119. 2009)는 홀로타입 (holotype, 정가기준표본)을 "*Baumann-*

Bodenheim 15515 (P! P00143076)로 지정한 후에, 학명을 *Guillaumin*에 귀속시키면서 이 학명을 합법적으로 출판하였다. 또한, "*Pancheria humboldtiana* *Guillaumin*, *Mémoires du Muséum national d'Histoire naturelle*, sér. B, botanique 15: 47 (1964), nom. inval."로 인용하면서 명백하게 *Guillaumin*에 귀속시키는 기재문을 충분하고 직접적으로 출전 인용하였다. 제46.10조에도 불구하고, 이 학명은 *Guillaumin*에 귀속하고 Hopkins & Bradford이 하였던 것처럼 "*Guillaumin ex H. C. Hopkins & J. Bradford*"로 인용하지 않는다.

❶ **노트 3.** 명명자에 대한 귀속이나, 다른 저자(들)과 명백한 관련이 있다는 내용이 없는 때에는 학명, 또는 합법적 기재문 또는 분류군 고유특징은 출판물의 저자(제46.6조에서 정의처럼)에 의해 귀속된 것으로 취급한다.

예제 22. Hooker (Brit. Fl., ed. 4, 2 (1): 277. 1833)는 학명 *Asperococcus pusillus*를 출판하면서, 학명과 분류군 고유특징의 단락 말미에 "Carm. MSS."라고 표시하였고, 동시에 Carmichael에 귀속되는 기재문을 동반하였다. 학명과 분류군 고유특징, 모두 Carmichael과 분명한 직접적인 관여가 되기 때문에 학명은 *A. pusillus* Camich.로 인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같은 출판물의 같은 쪽에 Hooker가 출판한 학명 *A. castaneus*와 분류군 고유특징을 포함한 단락 말미에 "*Scytosiphon castaneus*, Carm. MSS."라 적었다. Carmichael은 "*S. castaneus*"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만, *A. castaneus*에는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비록 원기재문이 Carmichael에 귀속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종명의 올바른 저자는 출판물의 저자로서 *A. castaneus* Hook.로 표시한다.

예제 23. 비록 새로운 학명 또는 합법적 출판을 위한 기재문에 명시적으로 Brown을 명명자에 귀속시키지 않았더라도, Brown은 Aiton의 *Hortus Kewensis*, ed. 2 (1810-1813)에서 출판한 속과 종을 다른 저자로 수용된다. Aiton은 저술물의 후기(5: 532. 1813)에 "많은 새로운 것들이 [Robert Brown]에 의해 첨가되었고, 대부분의 뛰어난 개선점은 *Brown mss.*라는 이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기술하였다. 따라서 이 후반부의 표현은 단순한 귀속이 아니라, 저자를 표시한 것이 된다. 즉, 조합 *Oncidium triquetrum*은 *Epidendrum triquetrum* Sw. (1788)을 간접적 출전 인용을 하면서, *O. triquetrum* (Sw.) R. Br. (1813)로 인용하며, "R. Br. ex W. T. Aiton" 또는 Aiton만을 저자로 명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속의 앞부분에 Brown을 *Oncidium*의 처리한 저자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46.4. 합법적 출판된 학명의 종소명이 합법적으로 출판되지 않은 이명 <2개 이름, binary> 지정으로부터 채택되었고, 해당 명명자에게 귀속하였을 경우에는 인용할 경우에 오직 합법적으로 출판한 학명의 명명자만을 언급한다.

예제 24. Steudel (1854)은 *Andropogon drummondii*를 출판할 때, 이 학명의 저자를 Nees (mpt. sub: Sorghum.)로 하였다. 출판되지 않은 비합법적 이명 <2개 이름, binary> 지정인 "*Sorghum drummondii* Nees"의 인용은 *Andropogon drummondii*를 Nees로 명명자 귀속을 하지 않고, 해당 학명을 *A. drummondii* Steud.로 인용하며, *A. drummondii* "Nees ex Steud."가 아니다.

46.5. 해당 학명이 다른 명명자(들)에 귀속이 되지만 합법적으로 출판된 기재문 또는 분류군 고유특징이 학명의 명명자와 귀속되지 않거나, 또는 불투명하게 명명자로 관련이 있을 때에는 새 분류군 학명은 출판물의 명명자가 학명의 명명자로만 언급된다. 새로운 조합, 새로운 계급의 학명, 또는 새 대치명 <replacement name>은 다른 명명자나 또는 명명자(들)과 관련이 있지만, 그 학명 출판에 공헌하였다는 명명자(들)로 어떤 별도의 기술이 없는 한, 해당 학명이 출판물의 명명자가 학명의 명명자로만 언급한다. 그러나 이 두 경우에는 명명자를 언급할 때 실제출판 명명자의 이름 앞에 관련 명명자명 다음에 "ex"를 삽입해서 붙일 수 있다.

예제 25. Grubov (1977)은 *Lilium tianschanicum*을 새로운 종으로 기재할 때, 학명을 Ivanova에 귀속시켰다. Ivanova가 합법적 출판을 위한 기재문을 준비하였다는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 학명은 *L. tianschanicum* N. A. Ivanova ex Grubov 또는 *L. tianschanicum* Grubov로 인용한다.

예제 26. Boufford, Tsi & Wang (1990)의 논문 중, 학명 *Rubus fanjingshanensis*는 Lu가 기재문을 준비하였다는 표시가 없이 Lu에 귀속하고 있다. 이 학명은, L. T. Lu ex Boufford & al. 또는 Boufford & al.을 명명자로 한다.

예제 27. Seemann (1865)은 *Gossypium tomentosum* "Nutt. mss."로 출판하였으나, 합법적 출판을 위한 기재문에는 Nuttall을 귀속시키지 않았다. 이 학명은 *G. tomentosum* Nutt. ex Seem 또는 *G. tomentosum* Seem으로 인용한다.

예제 28. Rudolphi는 *Pinaceae* (1830)를 "*Pineae*. Spreng."으로 출판하였으나, 이어진 합법적 출판을 위한 분류군 고유특징은 Sprengel에 귀속시키지 않았다. 이 학명은 *Pinaceae* Spreng. ex F. Rudolphi 또는 *Pinaceae* F. Rudolphi로 인용한다.

예제 29. Green (1985)은 새로운 조합 *Tersonia cyathiflora*를 "(Fenzl) A. S. George"에 귀속시켰다. Green은 George가 어떠한 방법으로 공헌하였다는 사실을 어디에서도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합의 저자는 A. S. George ex J. W. Green 또는 J. W. Green로 인용한다.

46.6. 제46조의 취지를 위해 출판의 명명자란 출판물 전체의 명명자이거나, 또는 편집자와는 무관하면서 출판물 중의 학명이 공표된 해당 부분의 명명자임을 의미한다.

예제 30. Wu & Li는 *Flora yunnanica*, vol 3 (1983)에서 *Pittosporum buxifolium*을 Feng에 귀속된 새로운 종으로 발표하였다. 이 식물지에서 돈나무과 *Pittosporaceae*의 기술 부분은 Yin이 저술자이고, 책 전체는 Wu & Li가 편집하였다. 출판의 저자 (합법적 출판을 위한 분류군 고유특징 포함)는 Yin이다. 따라서 이 학명은 *P. buxifolium* K. M. Feng ex W. Q. Yin 또는 *P. buxifolium* W. Q. Yin으로 인용하며, *P. buxifolium* "K. M. Feng ex C. Y. Wu & H. W. Li" 나 *P. buxifolium* "C. Y. Wu & H. W. Li"로 인용하지 않는다.

예제 31. *Vicia amurensis* f. *sanneensis*는 Jiang & Fu에 귀속시키면서, Ma & al. (eds.), *Flora intramongolica*, ed. 2, vol 3 (1989)에 출판하였다. 이 식물지에서 *Vicia*속의 기술 부분의 저자는 Jiang이며, 이 학명이 귀속된 저자 중 1명이다 (제46.2조의 마지막 문장 참조). 따라서 이 학명은 *V. amurensis* f. *sanneensis* Y. C. Jiang & S. M. Fu로 인용되며, *V. amurensis* f. *sanneensis* "Y. C. Jiang & S. M. Fu ex Ma & al."로 인용하지 않는다.

예제 32. *Prodromus florum hispanicae*에 *Centaurea funkii* var. *xeranthemoides* "Lge. ined."가 기재되었는데 이 책 전체는 Willkomm & Lange가 집필을 하였고, 각각 다른 과는 다른 저자들이 취급하고 있고 제63과, 국화과의 각주에는 "Auctore Willkomm" ["저자 Willkomm"]로 기록되었다. 합법적 출판을 위한 기재문은 Lange에 귀속되지 않으므로, 이 학명은 *C. funkii* var. *xeranthemoides* Lange ex Willk.로 인용한다. 전체의 출전 인용은 *C. funkii* var. *xeranthemoides* Lange ex Willk. in Willkomm & Lange, Prodr. Fl. Hispan 2: 154, 1865이 된다.

예제 33. Candolle (Prodr. 13 (1): 161. 1852)의 저술 중에서 출판된 학명 *Solanum dasypus*는 가지과에 속하며 이 과의 기술은 Dunal이 집필하였다. Dunal은 이 학명을 "*S. dasypus* (Drège, n. 1933, in h. DC)"로 표기함으로써 Drège에 귀속시켰다. 따라서 이 학명은 *S. dasypus* Drège ex Dunal, 또는 *S. dasypus* Dunal로 인용한다.

예제 34. Schultes & Schultes (Mant. 3: 526. 1827)는 주석에, "Besser in litt."로부터 받아서 전통 속인 *Avena*와 *Trisetum*에 대한 새로운 분류체계를 출판하였다. 새로운 속인 *Acrospelion* Bess., *Helictotrichon* Bess. 및 *Heterochaeta* Bess.의 기재를 포함 한 이 내용의 출판 저자는 Besser이다.

이 새로운 학명들은 전체 책의 저자인 Schultes & Schultes가 이를 수용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Besser를 명명자로 하여 합법적으로 출판하였다 (제36조 예제 3도 참조).

46.7. 학명이 명명법상의 출발점 보다 앞선 저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저자 뒤에 “ex”를 붙여서 저자명의 인용에 포함할 수 있다. 1753년 이후의 분류군에 대해서는 출발점 이전 저자의 분류군이 합법적으로 출판된 시점에서 계급 또는 분류학적인 지위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출발점 전의 저자는 “ex” 앞에 괄호를 넣어서 명명자로 인용할 수 있다.

예제 35. Linnaeus (1754)는 학명 *Lupinus*를 학명 출발점 이전의 저자인 Tournefort에 귀속시켰다. 이 학명은 *Lupinus* Tourn. ex L. (1753) 또는 *Lupinus* L.라고 인용한다 (제13.4조 참조).

예제 36. Gomont는 *Hydrocoleum glutinosum*를 “*Nostocaceae homocysteeae*”의 출발점이 된 출판물 (Ann. Sci. Nat., Bot., ser. 7, 15: 339. 1892)에서 “*Lyngbya glutinosa*” (Agardh, Syst. Alg.: 73. 1824)라는 학명으로 받아들였다. 이 학명은 *H. glutinosum* (C. Agardh) ex Gomont 또는 *H. glutinosum* Gomont로 인용한다.

46.8. 올바른 명명자의 인용을 결정할 때에는 그 학명이 합법적으로 출판된 출판물 (제37.5조에서 정의된)의 학명의 명명자의 귀속, 서문, 표제, 또는 사사의 내용, 그리고 본문 중의 인쇄상 또는 문체상의 구별을 포함한 오직 내적 증거만을 수용한다.

예제 37. Aiton의 *Hortus kewensis* (1789) 중에 있는 기재문은 일반적으로 Solander, 또는 Dryander에 의해 집필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책에서 출판된 새로운 분류군의 이름은, 학명과 기재문이 모두 그 저술 속에서 다른 특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iton을 저자로 한다.

예제 38. Limpricht (1885)의 저술에서 학명 *Andreaea angustata*는 “nov. sp. Lindb. in litt. ad Breidler 1884”로 명명자 귀속하면서 출판하였지만, Lindberg가 합법적 출판을 위한 기재문을 제공하였다는 내적 증거는 없다. 따라서 저자명은 Limpr. 또는 Lindb. ex Limpr.으로 인용하며, “Lindb.”로 인용하지 않는다.

46.9. 외적 증거는 저자명에 대해서 내적 증거가 없는 출판물이나 논문 중에 포함된 명명법상의 새로운 제안의 저자명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다.

예제 39. Fraser Brothers Nursery에서 활용된 식물의 카탈로그 “Cat. Pl. Upper Louisiana 1813” 저술물 중에는 어디에도 저자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다. 외적 증거에 의하면 (Stafleu & Cowan, Regnum Veg. 105: 785. 1981 참조), 이 문서와 출판된 *Oenothera macrocarpa*와 같은 명명법상의 새로운 제안은 Thomas Nuttall이 저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예제 40. *Vollständiges systematisches Verzeichniß aller Gewächse Teutschlandes...* (Leipzig 1782)라는 제목으로 발행된 책에는 저자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einem Mitgliede der Gesellschaft Naturforschender Freunde” [자연애호가 협회의 한 회원]을 저자로 지칭하고 있다. Pritzel이 한 것처럼 (Thes. Lit. Bot.: 123. 1847), G. A. Honckeny가 저술과 이 중에서 출판된 새로운 학명 (예, *Poa vallesiana* Honck., *Phleum hirsutum* Honck; 제23조 예제 14도 참조)의 저자라고 결정하기 위한 외적 증거를 이용할 수 있다.

46.10. 명명법상의 새로운 제안을 출판하고 명명자를 인용할 때 자신의 이름 앞에 “ex”라고 붙이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프로토로그 <protologue>에 “ex” 인용을 적용할 수 있다.

예제 41. 학명 *Nothotsuga*를 합법적으로 출판할 때, Page (1989)는 1951년에 Hu가 해당 학명을 나명으로 출판한 것을 언급하면서 "*Nothotsuga* H.-H. Hu ex C. N. Page"로 인용하였다. 이 학명은 Hu ex C. N. Page 또는 C. N. Page를 명명자로 한다.

예제 42. Atwood (1981)는 새로운 종 학명, *Maxillaria mombachoensis*을 당시 이미 죽은 Heller가 원래 이름을 붙였다는 주석과 함께 "*Heller* ex Atwood"로 귀속시켰다. 이 학명은 A. H. Heller ex J. T. Atwood 또는 J. T. Atwood를 명명자로 한다.

권고 46A

46A.1. 명명자인용을 위해서는 작위를 의미하는 접두사 (권고 60C.5(d-e) 참조)는 이름으로부터 분리하기 어렵지 않는 한 삭제해야 한다.

예제 1. J. B. P. A. Monet Chevalier de Lamarck에 대해 Lam.을 사용하지만, E. De Wildeman에 대해서는 De Wild.을 사용한다.

46A.2. 명명자인용에 있어 명명자 이름을 줄여 기재할 때에는 그 축약형을 구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길어야 하며, 보통 이름 전체 중에 모음 앞의 자음으로 끝나야 한다. 첫 몇 문자는 어떠한 생략도 하지 않고 제시되어야 하고, 관습에 따라서 그 이름의 마지막 특징적인 자음에 1개를 덧붙일 수 있다.

예제 2. Linnaeus는 L.; Fries는 Fr., Jussieu는 Juss., Richard는 Rich., Bertoloni에 대해서는 Bertero와 구별하기 위해 Bertol., Michaux에 대해서는 Micheli와 구별하기 위해 Michx.로 한다.

46A.3. 같은 이름의 두 명명자를 구분하기 위해 이름 (본명)이나 부수적인 명칭을 동일방식으로 줄여야 한다.

예제 3. Robert Brown은 R. Br.; Adrien de Jussieu는 A. Juss; Burman filius는 Burm. f; Johann Friedrich Gmelin은 J. F. Gmel; Johann Georg Gmelin은 J. G. Gmel; Carl Christian Gmelin은 C. C. Gmel; Samuel Gottlieb Gmelin은 S. G. Gmel; Jean Müller argoviensis (of Aargau)는 Müll. Arg이다.

46A.4. 다른 방식으로 이름을 단축하는 잘 확립된 관습이 있을 때에는 그 관습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제 4. Augustin-Pyramus de Candolle은 DC.; Saint-Hilaire는 St.-Hil ; H. G. L. Reichenbach는 Rchb.이다.

① 노트 1. Brummitt & Powell의 *Authors of plant names* (1992)는 생물체 학명의 다수의 명명자에 대해서 이 권고에 적합한 명확한 표준 축약형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식물명인덱스 [*International Plant Names Index* (www.ipni.org)]와 균류인덱스 [*Index Fungorum* (www.indexfungorum.org)]에서 필요에 따라 갱신되고 있는 이런 축약형들은 이 규약 전체 명명자의 인용에 이용된다.

권고 46B

46B.1. 분류군의 학명 명명자를 인용할 때에는 원래 출판된 문헌에서 제시된 명명자명의 로마자 표기를 통상적으로 수용한다. 명명자가 로마자 표기를 이용하지 않고 있을 때나 또는 때에 따라 다른 로마자 표기를 제시하였을 경우에는 그 명명자가 선호하는 로마자 표기, 또는 명명자가 가장 많이 사용한 로마자 표기를 수용한다. 그런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명명자의 이름은 국제적으로 이용되는 기준에 따라 로마자 표기를 한다.

46B.2. 개인명이 로마자 문자로 표기되지 않은 학명의 명명자는 이름을 로마자와 해야 하며 로마자 표기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일치시키며, 또 인쇄의 편의상 문제로 발음 구분 기호를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필수적이지 않음). 일단 명명자 자신이 개인명의 로마자 표기를 선택하면 이후 일관되게 사용해야 한다. 명명자는 가능한 편집자나 출판자에게 개인명의 로마자 표기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권고 46C

46C.1. 2명의 명명자가 공동으로 출판한 학명 뒤에는 두 명명자를 “et”나 또는 앰퍼샌드 (&) 단어를 연결해서 인용한다.

예제 1. *Didymopanax gleasonii* Britton et P. Wilsan 또는 *D. gleasonii* Britton & P. Wilson.

46C.2. 3명 이상의 명명자가 공동으로 출판한 학명의 뒤에는 원 출판문을 제외하고는 첫 명명자만을 인용하고 “et al.” 또는 “& al.”을 뒤에 붙여야 한다.

예제 2. *Lapeirousia erythrantha* var. *welwitschii* (Baker) Geerinck, Lisowski, Malaisse & Symoens (Bull. Soc. Roy Bot. Belgique 105: 336. 1972)는 *L. erythrantha* var. *welwitschii* (Baker) Geerinck & al.로 인용한다.

권고 46D

46D.1. 명명자들은 각 명명법상의 새로운 제안 뒤에 자신을 “nobis” (nob.) "우리들에 의해"나 “mihi” (m.)"나에 의해"와 같이 표현하기보다 자신의 이름(들)을 인용해야 한다.

제47조

47.1. 분류군의 고유특징이나 종의 한계를 해당 기준표본을 제외하지 않고 변경하는 것은 그 분류군의 명명자 인용을 바꾸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예제 1. Munz (1932)가 시도한 것처럼, *Arabis beckwithii* S. Watson (1887)의 원재료가 다른 2종에 속하는 것으로 되었을 때에는,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을 포함하지 않는 쪽의 종은 다른 학명 (*A. shockleyi* Munz)이 부여되며, 다른 한쪽은 원 학명 *A. beckwithii* S. Watson을 그대로 사용한다.

예제 2. Brown에 의해 개정된 *Myosotis*는 Linnaeus가 처음에 기재한 속이 아니지만, 해당 학명의 기준표본은 해당 속 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속의 학명은 *Myosoris* L.를 유지한다 (*Myosotis* L. emend. R. Br.로 인용할 수 있다: 권고 47.1 참조).

예제 3. *Centaurea jacea* L. (1753), *C. amara* L. (1763) 및 다른 종의 학명의 기준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정의된 종은 여전히 *C. jacea* L.라고 부른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C. jacea* L. emend. Coss. & Germ., *C. jacea* L. emend. Vis., 또는 *C. jacea* L. emend. Godr.라고 부른다: 권고 47A 참조).

권고 47A

47A.1. 제47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변경이 매우 많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단어를 표시하여 적절하게 축약형을 표시할 수 있다. “emendavit” (emend.) 수정함; 그 수정에 책임이 있는 명명자의 이름 앞에 둔다. “mutatis caracteribus” (mut. char.) 형질을 변경해서, “pro parte” (p. p.) 그 일부분, “excluso genere” 또는 “exclusis generibus” (excl. gen.) 그 속을 제외하고 “exclusa species” 또는 “exclusis speciebus” (excl. sp.) 그 종을 제외하고 “exclusa varietate” 또는 “exclusis varietatibus” (excl. var.) 그 변종을 제외하고 “sensu amplo” (s. ampl.) 광의, “sensu lato” (s. l.) 광의, “sensu stricto” (s. s.) 협의.

예제 1. *Phyllanthus* L. emend. Müll. Arg.; *Globularia cordifolia* L. excl. var. (emend. Lam.)

제48조

48.1. 명명자가 이미 존재하는 학명을 채택하면서 원래의 기준표본을 확실하게 배제할 경우 명명자는 후동일명의 유일한 관련 명명자의 출판으로 간주한다. 동일하게 학명을 채택한 명명자가 명확한 기본명을 인용하면서 해당 기준표본을 확실하게 배제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명명자만을 학명의 명명자로 하는 새로운 학명으로 출판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준표본의 배제는 동일 명명자에 의해 해당 기준표본을 다른 분류군에 명확하게 동시 포함시키는 작업에 의해 이뤄진다.

예제 1. Sirodot (1872)는 *Lemanea* Bory (1808)의 기준을 *Scheria* Sirodot (1872)속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Lemanea*의 속이 Sirodot (1872)에 따라 처리될 경우에는 *Lemanea* Sirodot non Bory로 인용하여야 하며, *Lemanea* "Bory emend. Sirodot"은 아니다.

예제 2. 학명 *Amorphophallus campanulatus* Decne. (1834)는 서명 *Arum campanulatum* Roxb. (1819)에 명백히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Decaisne는 후자의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이 학명은 Decaisne만을 명명자로 하는 새로운 종의 적명이 된다.

예제 3. *Myginda* sect. *Gyminda* Griseb. (Cat. Pl. Cub.: 55. 1866)의 기준은 *M. integrifolia* Poir.이지만, Grisebach는 *M. integrifolia* 이름을 잘못 적용하였다. Sargent는 이 절을 속의 계급으로 올렸을 때, Grisebach가 기재한 종, *Gyminda grisebachii*라고 이름을 정하고, *M. integrifolia*를 명시적으로 이 속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Gyminda* Sarg. (1891)는 *G. grisebachii* Sarg.를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속의 학명이며, *M. sect. Gyminda*에 근거한 새로운 계급명이 아니다.

1 노트 1. 새로운 조합, 새로운 계급의 학명 또는 대치명 (replacement name)을 다른 분류군으로 잘못 적용 하였지만 기본명이나 또는 대치이명 (replaced synonym)의 기준표본을 명확하게 제외한 경우에는 제7.3-7.4조에 따라 취급한다.

1 노트 2. 원래의 기준표본이나 또는 제7-10조에 근거해 선정된 기준표본을 제외한 의미로 해당 학명을 유지하는 것은 오직 보전 (제14.9조 참조)을 통해서 유효화 할 수 있다.

48.2. 제48.1조의 취지에서 기준표본의 제외는 다음의 표본을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 (a) 제9.1조의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 또는 제10.2조에 의해 기준으로 보는 모든 조건의 요소, (b) 제 9.11-9.13조 또는 제10.2조에 의해 기준에 지정된 모든 기준표본, 또는 (c) 제14.9조 (제52.2조(e)도 참조, 유추로 적용)에 의해 기준에 보전된 기준표본 등이다.

48.3. 인가한 명명자가 이전의 학명을 수용하면서 해당 학명의 프로토로그 <protologue>에 관련된 모든 요소를 암시적이라 하더라도 포함하지 않을 때, 또는 프로토로그가 인가명의 지정된 기준을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학명을 인가한 저자는 보전명으로 취급되는 것과 같은 후동일명을 출판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5.1조).

제49조

49.1. 이름이 적명(즉 기본명; 제6.10조)일 경우 속 또는 속 하위 분류군의 계급이 변경되지만, 해당 학명이 혹은 이 이름의 최종소명이 유지될 경우 유지된 학명의 명명자의 이름에 괄호를 넣어서 최종적으로 이름을 변경한 명명자 앞에 명시한다. 속보다 하위의 분류군이 다른 속 또는 종으로 이전할 경우 계급의 변경을 수반하거나, 그렇지 않은 것과 관계없이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예제 1. *Medicago polymorpha* L. var. *orbicularis* L. (1753)이 종의 계급으로 올라가면, *M. orbicularis* (L.) Bartal. (1776)로 표시된다.

예제 2. *Anthyllis* sect. *Aspalanthoides* DC. (Prodr. 2: 169. 1825)을 속의 계급으로 올리면, 소명 *Aspalanthoides*을 유지하면서 *Aspalanthoides* (DC.) K. Koch (1853)로 인용한다.

예제 3. *Cineraria* sect. *Eriopappus* Dumort. (Fl. Belg.: 65. 1827)는 *Tephrosieris* (Rchb.) Rchb.로 이동하였을 때, *T. sect. Eriopappus* (Dumort.) Holub (Folia Geobot. Phytotax. 8: 173. 1973)로 인용한다.

예제 4. *Cistus aegyptiacus* L. (1753)은 *Helianthemum* Mill로 이동하였을 때 *H. aegyptiacum* (L.) Mill. (1768)로 인용한다.

예제 5. *Fumaria bulbosa* var. *solida* L. (1753)이 *F. solida* (L.) Mill. (1771)라는 종으로 계급이 승격되면, 종의 학명은 *Corydalis* DC.로 옮겨졌을 때에는 *C. solida* (L.) Clairv. (1811)로 인용하며, *C. solida* "(Mill.) Clairv."라고 하지 않는다.

예제 6. 반면에, *Pulsatilla montana* var. *serbica* W. Zimm. (Feddes Repert. Spec. Nov. Regni Veg. 61: 95. 1958)은 원래 *P. montana* subsp. *australis* (Heuff.) Zämelis 하에 배치하였지만, *P. montana* subsp. *dacica* Rummelsp.로 옮겨지더라도 같은 저자 인용을 유지하며 (제24.1조 참조), var. *serbica* "(W. Zimm.) Rummelsp." (Feddes Repert. 71: 29. 1965)로 인용하지 않는다.

예제 7. *Salix* subsect. *Myrtilloides* C. K. Schneid. (III. Handb. Laubholz. 1: 63. 1904)는 원래 *S. sect. Argenteae* W. D. J. Koch 하에 있었지만, *S. sect. Glaucae* Pax로 옮겨져도 같은 저자 인용을 유지하며, *S. subsect. Myrtilloides* "(C. K. Schneid.) Dorn" (Canad. J. Bot. 54: 2777. 1976)으로 인용하지 않는다.

예제 8. Rehder (1919)가 출판한 학명 *Lithocarpus polystachyus*는 *Quercus polystachya* A. DC. (1864)에 근거하고 있지만, 원래 Candolle은 이 학명을 "Wall.! list n. 2789" (나명, nomen nudum)에 귀속시켰다. Rehder의 조합은 *L. polystachyus* (Wall. ex A. DC.) Rehder, 또는 *L. polystochyus* (A. DC.) Rehder로 인용한다 (제46.5조 참조).

49.2. 속 이상의 학명에 대해서는 괄호로 된 명명자는 인용하지 않는다.

예제 9. *Illiciaceae* A. C. Sm. (1947)은 *Illicieae* DC. (1824)를 인용하면서 합법적으로 출판하였지만, *Illiciaceae* "(DC.) A. C. Sm."로 인용하지는 않는다.

① 노트 1. 제46.7조는 1753년 이후에 학명의 출발점을 가지는 분류군의 몇몇 이름 뒤에 “ex” 라고 하는 단어의 앞에 저자 인용의 괄호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용법을 규정하고 있다.

제50조

50.1. 종 또는 종이하의 분류군이 동일 계급의 잡종 범주 (제H.10.2조 노트 1)로부터 비잡종 범주로 옮겨질 때,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도 명명자 인용은 변경되지 않지만 원래의 범주를 괄호 안에 넣어서 표시할 수 있다.

예제 1. *Stachys ambigua* Sm. (1809)은 종의 학명으로 출판되었다. 잡종으로 본다면 *S. × ambigua* Sm. (pro sp.)로 인용할 수 있다.

예제 2. *Salix × glaucopus* Andersson (1868)는 잡종 학명으로 출판되었다. 후에 Rydberg (Bull. New York Bot. Gard. 1: 270. 1899)는 이 분류군을 종으로 인정하였다. 만약 이 견해가 수용된다면, 이 학명은 *S. glaucopus* Andersson (pro hybr.)으로 인용할 수 있다.

제2절

인용에 대한 일반적인 권고

권고 50A

50A.1. 단지 이명으로서 인용되었을 뿐 합법적으로 출판되지 않은 학명을 인용할 때에는 “as synonym” (이명으로서, 제36.1(c)) 또는 “pro syn.” (이명으로서) 이라는 단어를 덧붙인다.

권고 50B

50B.1. 이름을 인용할 때에는 “nomen nudum”, 또는 “nom. nud.” 이라는 단어를 첨가해서 그 상태를 표시한다.

예제 1. 기재문이나 분류군 고유특징 없이 출판된 “*Carex bebbii*” (Olney, Carices Bor.-Amer. 2: 12. 1871)는 *Carex bebbii* Olney, nomen nudum (혹은 nom. nud., 나명)으로 인용한다.

권고 50C

50C.1. 후동일명의 인용은 “n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동일명의 명명자 이름 앞에 연결해야 하며 가능한 출판날짜를 수반하는 것이 좋다. 경우에 따라 “nec”이라고 하는 단어를 앞에 붙여서 다른 동일명도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제 1. *Ulmus racemasa* Thomas in Amer. J. Sci. Arts 19: 170. 1831, non Borkh. 1800.

예제 2. *Lindera* Thunb. Nov. Gen. Pl.: 64. 1783, non Adans. 1763.

예제 3. *Bartlingia* Brongn. In Ann. Sci. Nat. (Paris) 10: 373. 1827, non Rchb. 1824 nec F. Muell. 1882.

권고 50D

50D.1. 잘못 동정된 것은 이명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고 이명 뒤에 덧붙여야 한다. 잘못 적용된 학명은 원명명자의 이름과 오동정의 문헌 인용앞에 “auct. non”이라는 단어로 표시하여야 한다.

예제 1. *Ficus stortophylla* Warb. in Ann. Mus. Congo Belge, Bot., ser. 4, 1: 32. 1904. *F. irumuensis* De Wild., Pl. Bequaert. 1: 341. 1922. “*F. exasperata*” auct. non Vahl: De Wildeman & Durand in Ann. Mus. Congo Belge, Bot., ser. 2, 1: 54. 1899; De Wildeman, Miss. Em. Laurent: 26. 1905; Durand & Durand, Syll. Fl. Congol.: 505. 1909.

권고 50E

50E.1. 보전명 (제14조 및 부칙2-4 참조) 다음에는 합법적 인용의 경우에는 “nom. cons.”, 또는 철자가 보전되고 있을 경우는 “orth. cons.” (보전 철자)이라는 축약형을 첨가한다.

예제 1. *Protea* L., Nat. Pl.: 187. 1771, nom. cons., non L. 1753.

예제 2. *Combretum* Loeff. 1758, nom. cons. [= *Grislea* L. 1753.]

예제 3. *Glechoma* L. 1753, orth. cons., ‘*Glecoma*’.

50E.2. 제56조에 의해 폐기된 학명 뒤에 [절대폐기명 (nomina utique rejicienda), 금지명; 부칙5 참조] 공식적 인용에 있어서 “nom. rej.” <폐기명>라는 축약형을 첨가한다.

예제 4. *Betula alba* L. 1753, nom. rej.

① 노트 1. 권고 50E.2는 절대 폐기명 (nomen utique rejiciendum)에 근거한 어떤 조합에도 적용된다 (금지명; 제56.1조 참조).

예제 5. *Dryobalanops sumatrensis* (J. F. Gmel.) Kosterm. in Blumea 33: 346. 1988, nom. rej.

50E.3. 학명이 Fries 또는 Persoon에 의해 채택되어 인가되었으면 (제13.1조(d) 및 제15조 참조), 공식적 인용에 있어서 “: Fr.” 또는 “: Pers.”로 언급한다. 만약 존재한다면 인가명의 기본명에 대한 것과 인가명 또는 기본명에 근거한 모든 조합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사용한다.

예제 6. Fries (Syst. Mycol. 1: 388. 1821)는 *Boletus piperatus* Bull. (Herb. France: t. 451, fig. 2. 1790)을 수용하였고, 따라서 인가되어 *B. piperatus* Bull.: Fr로 인용한다. 이에 근거한 이후의 조합은 *Chalciporus piperatus* (Bull.: Fr.) Bataille이다.

예제 7. *Agaricus sarcocephalus* Fr. (1815): Fr,은 *Agaricus compactus* [계급 미지정 unranked] *sarcocephalus* (Fr.: Fr.) Fr. (1821)로 인가하고 있다. *Psathyrella sarcocephala* (Fr.: Fr.) Singer는 이에 근거한 이후의 조합이다.

권고 50F

50F.1. 학명이 원래 출판의 형을 변경해서 인용을 할 때에는 완전한 인용을 위해 정확한 원래의 형을 가급적이면 하나 또는 이중 인용부호를 붙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제 1. *Pyrus calleryana* Decne. (*P. mairei* H. Lév. in Repert. Spec. Nov. Regni Veg. 12: 189. 1913, '*Pirus*').

예제 2. *Zanthoxylum cribrorum* Spreng., Syst. Veg. 1: 946. 1825, "*Xanthoxylon*" (*Z. caribaeum* var. *floridanum* (Nutt.) A. Gray in Proc. Amer. Acad. Arts 23: 225. 1888, "*Xanthoxylum*").

예제 3. *Spathiphyllum solomonense* Nicolson in Amer. J. Bot. 54: 496. 1967, '*solomonensis*'.

권고 50G

50G.1. 출판되지 않은 이름에 책임 있는 전문가가 해당 출판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명명자(들)은 자신들이 수용하지 않은 이전의 출판되지 않은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 (권고 23A.3(i) 참조).

제7장

학명의 폐기

제51조

51.1. 적명은 단순히 그 학명이나 해당 소명이 어울리지 않거나, 맞지 않을 경우 또한 이보다도 다른 학명이 더 선호되거나 더 잘 알려지거나 (단, 제56.1조 참조) 학명이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만으로 폐기할 수 없다.

예제 1. 다음의 변경은 규약에 반한 것이다: *Mentha*를 *Minthe*에, *Staphylea*를 *Staphylis*에, *Tamus*를 *Tannus*, *Thamnos* 또는 *Thamnus*에, *Tillaea*를 *Tillia*, *Vincetoxicum*을 *Alexitoxicon*으로 변경하는 것, *Orobanche artemisiae*을 *O. artemisiepiphyta*에, *O. columbariae*을 *O. columbarihaerens*에, *O. rapum-genisrae*을 *O. rapun*, 또는 *O. sarothamnophyta*로 변경하는 것.

예제 2. 종소명 *quinquegona*가 라틴어와 그리스어의 혼합어 (권고 23A.3 (c)에 위반)라는 이유로, *Ardisia pentagona* DC. (1834)가 *A. quinquegona* Blume (1825) 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해서 *A. quinquegona* 라는 학명을 폐기할 수 없다.

예제 3. 해당 종이 페루에 자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학명 *Scilla peruviana* L. (1753)을 폐기할 수 없다.

예제 4. *Petrosimonia oppositifolia* (Pall.) Litv. (1911)는 *Polycnemum oppositifolium* Pall. (1771)에 근거한 학명으로, 단지 근연종인 *Petrosimonia brachiata* (Pall.) Bunge가 모든 잎이 마주나고, *P. oppositifolia*는 일부 잎이 마주나기 하거나, 어긋나기 한다는 이유만으로 폐기할 수 없다.

예제 5. 원래 영국의 식물학자 Richardson에 현정된 학명이라는 이유만으로 Kunth (1818)가 시도한 *Richardsonia*이 *Richardia* L. (1753)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Richardia*라는 속명을 폐기할 수 없다.

제52조

52.1. 보전 (제14조), 또는 인가 (제15조)되지 않는 한 해당 학명이 출판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서명이 되며, 특히 학명이 명명법상 잉여명이면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즉, 규약에 의해 해당 학명이 적용되는 분류군에 별도로 채택해야 할 학명을 언급하거나, 또는 해당 분류군의 소명에 대한 기준표본을 (제52.2조 규정에 따라) 분명하게 포함하도록 명명자가 한계를 새로운 학명에 규정하였을 경우에 잉여명이 된다 (단 제52.3조와 제59.1조 참조).

52.2. 제52.1조에 따라, 학명의 기준표본이 분명히 포함되는 경우는 다음 아래 사항을 인용하는 경우로 본다. (a) 제9.1조로 규정한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 제

10조로 규정한 원기준표본, 제9.5조로 규정한 모든 신타입 (syntype, 등가기준표본), 또는 제10.2조로 규정한 기준표본으로서 인정을 받는 모든 기준요소, (b) 제9.11-13조 또는 제10.2조로 규정한 이전에 선정된 기준표본, (c) 제14.9조로 규정한, 보전된 기준표본, 또는 (d) 해당 일러스트레이션이거나, (e) 명시적으로 또는 함축적으로 그 학명의 기준표본을 동시에 제외하지 않고 학명 그 자체나 그 시점에서 동형이명의 학명을 인용함으로써 성립된다.

예제 1. 속명 *Cainito* Adans. (1763)은 Adanson이 이명으로 인용한 *Chrysophyllum* L. (1753)에 대한 잉여명이기 때문에 서명이다.

예제 2. *Chrysophyllum sericeum* Salisb. (1796)는 Salisbury가 이명으로 인용한 *C. cainito* L. (1753)의 잉여명이기 때문에 서명이다.

예제 3. 반면에, *Salix myrsinifolia* Salisb. (1796)는 *S. myrsinites* L. (1753)라는 학명을 잘못 적용한 Hoffmann (Hist. Salic. III.: 71. 1787)의 "*S. myrsinites*"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Salisbury는 *Salix*속의 다른 14종에 대해서는 Linnaeus를 인용하면서, *S. myrsinifolia*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S. myrsinites* L.가 제외되어서 모두 적법명이 된다.

예제 4. *Picea excels* Link (1841)는 *Pinus abies* L. (1753)에 대한 잉여명인 *Pinus excelsa* Lam. (1779)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서명이다. *Picea*의 정명은 *Picea abies* (L.) H. Karst (1881)가 된다.

예제 5. 반면에, *Cucubalus latifolius* Mill. 와 *C. angustifolius* Mill.는 현재 이 학명보다 먼저 명명된 *C. behen* L. (1753)에 합쳐졌지만 서명이 되지는 않는다. Miller (1768)는 *C. behen*을 *C. latifolius*와 *C. angustifolius*와 다른 종으로 보고 이 2개의 종에 *C. behen* L.의 기준표본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예제 6. 명시적인 기준표본을 제외한 예: Dandy (Watsonia 4: 47. 1957)는 학명 *Galium tricornutum*을 출판하였을 때, 이명으로 *G. tricorne* Stokes (1787) pro parte (일부분)를 인용했지만 기준표본을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

예제 7. 기준표본을 함축적 의미에서 제외한 경우. *Tmesipteris elongata* P. A. Dang. (Botaniste 2: 213. 1891)을 새로운 종으로 출판하면서 *Psilotum truncatum* R. Br.을 이명으로 인용하였다. 그러나 다음 쪽에서 *T. truncata* (R. Br.) Desv.를 다른 종으로 인정하면서, 2쪽 이후에서는 이 2종을 검색표에서 구별하고 있다. 따라서 인용된 이명의 의미는 "*P. truncatum* R. Br. pro parte" (*P. truncatum* R. Br.의 일부)이거나, 또는 "*P. truncatum* auct. non R. Br." (*P. truncatum* R. Br. 로 잘못 적용한 경우) 중 하나이다.

예제 8. *Persicaria maculosa* Gray (1821)라는 이름 하에서 학명 *Polygonum persicaria* L. (1753)은 대치명 (replaced synonym)으로 인용되었기 때문에, *Polygonum persicaria*의 기준표본은 *Persicaria maculosa*의 기준표본에 분명히 포함된다. 그러나 *Persicaria mitis* Delarbre (1806)는 *Polygonum persicaria*의 먼저 출판된 적법 대치명 (replacement name)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일 기준표본을 공유한다. 따라서 출판된 시점에서 보면 *Persicaria maculosa*는 *Persicaria mitis*의 잉여명, 즉 서명이 된다. *Persicaria maculosa*의 사용은 보전에 의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예제 9. *Bauhinia semla* Wunderlin (1976)은 *B. retusa* Roxb. (1832), non Poir. (1811)의 대치명 (replaced synonym)으로 인용되었는데, 반면에 *B. emarginata* Roxb. ex G. Don (1832), non Mill. (1768)도 이명으로 인용되었다. 따라서 이 2개의 학명의 기준표본은 분명히 *B. semla*에 포함된다. 그러나 *B. emarginata*의 대치명 (replacement name)으로 출판된 *B. roxburghiana* Voigt (1845)는 당연히 동일 기준표본이 되므로, Wunderlin은 *B. roxburghiana*를 채택해야 한다. 따

라서 *B. semla*는 잉여명으로 서명이지만, 대치이명 <replaced synonym> *B. retusa*의 기준표본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 예제 5 참조).

예제 10. 두 이름 *Apios americana* Medik. (1787)와 *A. tuberosa* Moench (1794)는 *Glycine apios* L.의 적법적인 대치명 <replacement name>이다. *Glycine apios*의 소명을 *Apios*속으로 조합하면 반복명 (tautonym)이 되므로, 합법적으로 출판한 이름이 될 수 없다 (제23.4조). *A. tuberosa*는 출판되었을 때, 명명법적으로 잉여명이면서 서명이다. 즉, Moench는 *A. tuberosa*라는 학명을 출판할 때 *G. apios*를 이명으로 인용하였는데, *A. americana*를 예전이나 지금 모두 동일 기준표본으로 사용하고 있어, 선취권에서 올바른 학명은 *A. americana*가 된다.

예제 11. *Erythroxyllum suave* O. E. Schulz (1907)은 당시 Schulz가 이명표에 "*Erythroxyllum brevipes* DC. var. *spinescens* (A. Rich.) Griseb." (1866)을 언급함으로써, *E. spinescens* A. Rich. (1841)의 기준표본을 포함하여 서명이 된다. 따라서 Schulz는 *E. spinescens*를 올바른 학명으로 사용해야 한다.

예제 12. *Matricaria suaveolens* (1755)을 출판하였을 때, Linnaeus는 구명 <prase name>을 사용하면서 *M. recutita* L. (1753)의 모든 이명을 포함하였다. Applequist (Taxon 51: 757. 2002)는 "*M. recutita*의 모든 원재료는 *M. suaveolens*의 프로토로그 <protologue>에서 확인되며, 따라서 *M. suaveolens*는 제 52조에 따라 서명이 된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755년에는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 신타입 (syntype, 등가기준표본), 지정된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 또는 보전기준표본도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Linnaeus는 *M. recutita*라는 학명 자체도 직접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제52.2조의 어떤 판정 기준표본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M. suaveolens*는 적명이 된다.

① 노트 1. 새로운 분류군에 어떤 요소가 의심의 표시가 포함되어 있어도 즉, 물음표가 표시된 학명이 인용되어 있어도, 이로 인해 새로운 분류군의 학명이 명명법상 잉여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예제 13. *Blandfordia grandiflora* R. Br. (1810)의 프로토로그 <protologue>에서는 "*Aletris punicea* Labill. nov. holl. 1. p. 85. t. 111?"라는 내용이 이명표에 포함되어었는데, 기재한 새로운 종이 *A. punicea* Labill. (1805)와 동일종일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landfordia grandiflora*는 적명이다.

① 노트 2. 새로운 분류군에 포함된 요소가 그 후에 어떤 학명의 기준표본으로 선정되어, 후자의 학명 또는 그 소명이 채택되더라도 이 자체로 새로운 분류군의 학명이 서명이 되지는 않는다.

예제 14. *Leccinum* Gray (1821)속은 *Boletus* L. (1753)의 *B. edulis* Bull.: Fr.을 보전기준으로 *L. edule* (Bull.: Fr.) Gray에 포함되었지만, *Leccinum* Gray는 *Boletus* L.의 모든 가능한 기준표본 전부를 포함할 것이 아니라서 (실제로는 1개도 포함하지 않음) 서명이 아니다.

52.3. 만약 기본명 (필연적 적명; 제6.10조 참조), 또는 적법한 속명의 근간을 둔 학명 일 경우에는 출판할 때 명명법상 잉여명이 되더라도 단지 잉여성 때문에 서명이 되지는 않는다. 출판 때 오류가 있다면 추후에 바로 잡을 수 있다.

예제 15. *Chloris radiata* (L.) Sw. (1788)는 출판 당시에 Swartz가 적명인 *Andropogon fasciculatus* L. (1753)을 이명으로 인용하였기 때문에 명명법상 잉여명이다. 그러나 *C. radiata*는 기본명 *Agrostis radiata* L. (1759)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서명은 아니다. Hackel (Candolle & Candolle, Monogr. Phan. 6: 177. 1889)이 처리한 것처럼, *Andropogon fasciculatus*를 다른 분류학적 독립된 종으로 취급할 경우 *C. radiata*는 *Agrostis radiata*에 근거한 *Chloris*속의 정명이 된다.

예제 16. *Juglans rupestris* var. *major* Torr. (Rep. Exped. Zuni and Colorado Rivers: 171. 1853)에 근거한 *J. major* (Torr.) A. Heller (1904)는 출판되었을 당시에 적명인 *J. californica* S. Watson (1875)을 이명으로 인용하였기 때문에, 명명법상 불필요하였다. 그러나 *J. major*는 기본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명이며, *J. californica*와 분류학적으로 별개의 분류군으로 간주할 때에는 정명이 될 수 있다.

예제 17. 속명 *Hordelym* (Jess.) Hatz (1885)이 출판되었을 때, 이 학명의 기준표본인 *Elymus europaeus* L.가 이미 *Cuviera* Koeler (1802)의 기준표본이기 때문에 명명법상 불필요하다. 그러나 기본명 *Hordeum* [계급미지정 unranked] *Hordelymus* Jess. (Deutschl. Gräser: 202. 1863)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서명은 아니다. *Cuviera* Koeler는 후동일명 *Cuviera* DC. 때문에 폐기되어, 오늘날에는 *Hordelymus*는 *E. europaeus* L.를 포함한 독립된 속의 정명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예제 18. *Carpinaceae* Vest (Anleit. Stud. Bot.: 265, 280. 1818)이 출판되었을 때, *Salicaceae* Mirb. (1815)의 기준표본인 *Salix* L.를 포함하고 있어, 명명법상 불필요하다. 그러나 *Carpinaceae*는 적법적인 속명 *Carpinus* L. 어간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서명은 아니다.

① 노트 3. 잡종의 학명 출판에 따라 그 혈통에 관해 언급 때에는 해당 잡종명이 서명이 되지 않는다 (제H.5조 참조).

예제 19. 학명 *Polypodium xshivasiae* Rothm. (1962)는 *P. australe* Fée와 *P. vulgare* subsp. *prionodes* (Asch.) Rothm. 간의 잡종으로 명명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동일 저자가 *P. xfont-queri* Rothm. (1936)라는 이름을 *P. australe*와 *P. vulga* L. subsp. *vulgare*간의 잡종으로 수용하였다. 제 H.4.1조에 의해 *P. xshivasiae*는 *P. xfont-queri*의 이명이 되지만 서명은 아니다.

제53조

53.1. 보전 (제14조) 되거나 또는 인가 (제15조) 되지 않는 한 과, 속 또는 종의 학명이 후동일명일 경우, 서명이 된다. 즉, 후동일명이란 다른 기준표본에 근거하는 완전히 같은 철자의 학명이 동일 계급의 분류군으로 이미 합법적으로 출판한 학명과 일치하는 경우이다 (제53.2조와 제53.4조도 참조).

예제 1. 꿀풀과 속의 학명인 *Tapeinanthus* Boiss. ex Benth. (1848)가 수선화과의 속으로 이동될 때, 이전에 이미 합법적으로 출판된 *Tapeinanthus* Herb. (1837)의 후동일명이 된다. *Tapeinanthus* Boiss.ex Benth.는 서명으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Thuspeinanta* T. Durand (1888)로 재명명되었다.

예제 2. 학명 *Torreya* Arn. (1838)은 보전명이기 때문에, 선동일명인 *Torreya* Raf. (1818)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용가능하다.

예제 3. *Astragalus rhizanthus* Boiss. (1843)는 합법적으로 출판된 학명 *A. rhizalllus* Royle (1835)의 후동일명으로 서명이다. 따라서 *A. cariensis* Boiss. (1849)로 재명명되었다.

예제 4. *Molina racemosa* Ruiz & Pav. (1798) (국화과)는 *Molina racemosa* Cav. (1790) (말피기과)의 후동일명으로 서명이다.

예제 5. *Mora* Benth. (1839)에 근거한 *Moreae* Britton & Rose (N. Amer. Fl. 23: 201. 217. 1930)는 *Morus* L. (1754)에 근거한 *Moreae* Dumort (Anal. Fam. Pl.: 17. 1829)의 후동일명이지만, 동일명의 규정은 과 하위 계급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서명이 아니다.

① 노트 1. 합법적으로 출판된 선동일명이 서명이거나, 또는 일반적으로 이명이 존재하면, 보전 또는 인가되지 않는 후동일명은 폐기 된다 (단, 제53.조 참고)

예제 6. 합법적으로 출판된 *Zingiber truncatum* Stokes (1812) 자체가 제 52.1조 하에서 서명이기 때문에, 선동일명의 서명과 무관하게 *Zingiber truncatum* S. Q. Tong (1987)는 후동일명으로 서명이 된다. *Zingiber truncatum* S. Q. Tong 학명은 *Z. neotruncatum* T. L. Wu & al. (2000)로 재명명 되었다.

53.2 인가명이라 할지라도 만일 다른 인가명의 후동일명이면 서명이 된다 (제15조 노트1도 참고).

53.3 다른 기준표본에 근거하는 2개 이상의 속 또는 종의 학명이 매우 비슷해서 (근연 분류군에 적용되고 있는 이유로) 혼동하기 쉬울 경우에는 이 이름을 모두 동일명으로 다룬다 (제61.5조도 참조). 두 학명이 혼동하기 쉬워 동일명으로 다루어 온 명확한 사례가 있고 명명법상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 이 관례는 계속 적용 유지한다.

***예제 8.** 동일명으로 취급된 학명: *Asterostemma* Decne. (1838)와 *Asterostemma* Benth. (1880); *Pleuropetalum* Hook. f. (1846)와 *Pleuropetalum* T. Durand (1888); *Eschweilera* DC. (1828)와 *Eschweilera* Boerl. (1887); *Skytanthus* Meyen (1834)과 *Scyllanthus* Hook. (1844).

***예제 9.** *Bradlea* Adans. (1763), *Bradleja* Banks ex Gaertn. (1790) 및 *Braddeya* Vell. (1827)은 모두 Richard Bradley를 기념한 것이지만 동일명으로 간주하는데 이는 1개 이름만을 선택하지 않으면 혼동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예제 10.** 편모충류에 대해 명명된 2개의 학명 *Acanthoica* Lohmann (1902)과 *Acanthoeca* W. N. Ellis (1930)는 상당히 유사한 이름이므로 동일명으로 간주한다 (Taxon 22: 313. 1973).

***예제 11.** 매우 흡사하여 같은 속명 또는 종명에서 사용되면 혼동되기 쉬운 소명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ceylanicus*와 *zeylanicus*, *chinensis*와 *sinensis*, *heteropodus*와 *heteropus*, *macrocarpon*과 *macrocarpum*, *macrostachys*와 *macrostachyus*, *napaulensis*, *nepalensis*와 *nipalensis*, *poikilantha*와 *poikilanthos*, *polyanthemos*와 *polyanthemus*, *pteroides*와 *pteroideus*, *thibetanus*와 *tibetanus*, *thibetensis*와 *tibetensis*, *thibeticus*와 *tibeticus*, *trachycaulon*과 *trachycaulon*, *trinervis*와 *trinervius*.

***예제 12.** 혼동될 것 같지 않는 학명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Desmostachys* Miers (1852)와 *Desmostachya* (Stapf) Stapf (1898), *Euphorbia peplis* L. (1753)과 *E. peplus* L. (1753), *Gerrardina* Oliv. (1870)와 *Gerardiina* Engl. (1897), *Iris* L. (1753)과 *Iria* (Pers.) Hedw. (1806), *Lysimachia hemsleyana* Oliv. (1891)과 *L. hemsleyi* Franch. (1895)(단, 권고 23A.2 참조), *Monochaetum* (DC.) Naudin (1845)와 *Monochaete* Döll (1875), *Peltophorus* Desv. (1810; 벼과)와 *Peltophorum* (Vogel) Benth. (1840; 콩과), *Peponia* Grev. (1863)과 *Peponium* Engl. (1897), *Rubia* L. (1753)와 *Rubus* L. (1753), *Senecio napaeifolius* (DC.) Sch. Bip. (1845, "napaeifolius"; 제60조 예제 21 참조)와 *S. napifolius* MacOwan (1890; 이들의 소명은 각각 *Napaea* 및 *Brassica napus*에서 유래), *Symphostemon* Miers (1841)과 *Symphostemon* Hiem (1900), *Urvillea* Kunth (1821)과 *Durvillaea* Bory (1826).

예제 13. 동일명으로 다루지는 선동일명에 대해 보전된 학명 (부칙3 참조): *Cephalotus* Labill. (*Cephalotos* Adans에 대해), *Columellia* Ruiz & Pav. (*Columella* Lour.에 대해) 두 학명은 모두 로마 시대에 농업에 대한 저술이 있는 *Columella*를 기념한 학명. *Lyngbya* Gomont (*Lyngbye* Sommer f.에 대해), *Simarouba* Aubl. (*Simaruba* Boehm.에 대해).

예제 14. Coville는 *Gilmania* Coville (1936)를 *Phyllogonum* Coville (1893)의 대체명 <replacement name>으로 출판하였다. 왜냐하면 *Phyllogonum*을 *Phyllogonium* Bridel (1827)의 후동일명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이 2개의 학명을 동일명으로 취급하는 것은 *Index Nominum Genericorum*에서 수용하였기 때문에, 학명 *Gilmania*는 계속 적명으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학명 *Phyllogonum*과 *Phyllogonium*은 동일명으로 취급한다.

53.4. 동일 속 중 2개 아속이거나, 또는 동일 종 내 2개의 종 이하 분류군으로 구분할 때 동일 기준표본을 공유하지 않으면서 모두 서로 다른 계급이더라도 동일 최종소명에 근거하거나, 또는 혼동을 유발할 유사한 최종소명일 경우에는 동일명으로 취급한다. 이 때 나중에 발표된 후동일명은 서명이 된다.

예제 15. *Andropogon sorghum* subsp. *halepensis* (L.) Hack과 *A. sorghum* var. *halepensis* (L.) Hack. (Candolle & Candolle, Monogr. Phan. 6: 502. 1889)은 두 학명이 동일 기준표본이기 때문에 적명이다 (권고 26A.1도 참조).

예제 16. 후동일명인 *Anagallis caerulea* Schreb. (1771)에 근거한 학명 *A. arvensis* subsp. *caerulea* Hartm. (Sv. Norsk Exc.-Fl.: 32. 1846)는 이 학명 자체가 *A. caerulea* L. (1759)에 근거한 *A. arvensis* var. *caerulea* (L.) Gouan (Fl. Monsp.: 30. 1765)의 후동일명이며 따라서 서명이다.

예제 17. *Scenedesmus carinatus* var. *brevicaudatus* Hortob. (Acta Bot. Acad. Sci. Hung. 26: 318. 1981)에 근거한 *S. armatus* var. *brevicaudatus* (Hortob.) Pankow (Arch. Protistenk 132: 153. 1986)는 다른 계급의 종 이하 분류군에 적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S. armatus* f. *brevicaudatus* L. S. Péterfi (Stud. Cercet. Biol. (Bucharest), Ser. Biol. Veg. 15: 25. 1963)의 후동일명이다. 그러나 *S. armatus* var. *brevicaudatus* (L. S. Péterfi) E. H. Hegew. (Arch. Hydrobiol. Suppl. 60: 393. 1982)는 *S. armatus* f. *brevicaudatus* L. S. Péterfi와 같은 기준표본에 근거하기 때문에 후동일명은 아니다.

❶ 노트 2. 다른 속의 속 이하 구분의 학명 또는 다른 종의 종 이하 분류군 학명이면 최종소명은 동일해도 무관하다.

예제 18. *Verbascum* sect. *Aulacospenna* Murb. (Monogr. Verbascum: 34, 593. 1933)은 선행하는 *Celsia* sect. *Aulacospennae* Murb. (Monogr. Celsia: 34, 56. 1926)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권고 21B.3에 어긋나며 좋은 예는 아니다.

53.5. 복수의 학명이나 그 소명이 혼동될 만큼 유사해서 동일명으로 의심스러울 때에는 전체위원회 (제3부 참조)는 해당 분류군에 대한 위원회에 이 내용을 검토하도록 위촉한다. 동일명과 관련된 학명으로 취급되던 안 되던 간에, 이 학명에 대한 권고는 국제 식물학회에 제안되어 승인되면,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 된다. 이런 승인된 결정은 부록 7에 제시한다.

53.6. 2개 이상의 동일명이 동등한 선취권을 가질 때 유효하게 출판된 출판물 (제 29-31조)에서 다른 저자가 가장 먼저 채택된 1개의 이름이 선취권을 가지게 되면, 동시에 다른 동일명은 폐기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저자가 유효하게 출판된 출판물 내에서 동등한 선취권을 가지는 동일명 가운데 1개를 나머지 이름을 대신할 학명으로 채택한다면 재명명되지 않은 동일명은 다른 동일명에 대해 선취권을 가지는 것으로 취급한다 (권고 42A1도 참조).

예제 19. Linnaeus는 "10." *Mimosa cinerea* (Sp. Pl.: 517. 1753)와 "25." *M. cinerea* (Sp. Pl.: 520. 1753)를 동시에 출판하였다. Linnaeus는 1759년에 "중 10"을 *M. cineraria*로 재명명하고, 중 25의 학명인 *M. cinerea*를 남겼다. 따라서 "중 25", *M. cinerea*가 "중 10"에 대해 선취권을 갖는 것으로 취급한다.

예제 20. Rouy & Foucaud (Fl. France 2: 30. 1895)는 학명 *Erysimum hieraciifolium* var. *longisiliquum*을 다른 아종에 속하는 2개의 다른 기준표본을 가진 2개의 분류군을 출판하였다. 이들의 학명 중 단 1개만 유지할 수 있다.

① 노트 3. 만약 다른 속 또는 종으로 옮겨진다면, 제53.6조에 의해 재명명 또는 폐기된 동일명은 적법이면서 동일계급의 뒤의 다른 이명에 대해서 선취권이 있다.

예제 21. *Mimosa cinerea* L. (Sp. Pl.: 517 [non 520]. 1753; 제53조 예제 19를 참조)에 근거한 *M. cineraria* L. (1759)은 Druce (1914)에 의해 *Prosopis*로 옮겨지고 *P. cineraria* (L.) Druce로 되었다. 그러나 *M. cinerea*의 폐기가 성공적으로 제안된 적이 없다면 (부칙5 참조) *Prosopis*의 정명은 *M. cinerea*에 근거한 조합이어야 한다.

제54조

54.1. 아래에 기술한 부분은 제외하고 동일명에 대해서는 조류, 균류, 또는 식물로 다루어지지 않는 분류군의 학명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 (a) 예전에 조류, 균류, 또는 식물로 다루어진 분류군의 학명에 대한 후동일명은 가령 그 분류군이 이 명명규약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생물체에서 새로 분류하여도 서명이 된다.
- (b) 최초로 조류, 균류 또는 식물이 아닌 분류군에 대하여 출판된 학명은 가령 이 명명규약의 제32-45조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출판되었어도 그 학명이 적용되는 분류군이 처음으로 조류, 균류 또는 식물의 이름으로 다루어졌을 때 다른 조류, 균류 또는 식물의 학명과 동일명이 되면 서명이 된다 (제45.1조도 참조).

① 노트 1. 국제세균명명규약 (*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 of Bacteria*)에서는, 세균의 학명이 세균, 균류, 조류, 원생동물 또는 바이러스에 속하는 분류군 학명의 후동일명이면 모두 서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권고 54A

54A.1. 이 명명규약에 근거해 새로운 분류군을 명명하는 명명자는 동물이나 세균의 분류군에 이미 존재하는 학명의 사용을 가능한 피해야 한다.

제55조

55.1. 종 또는 속 이하 구분의 학명은 그 소명이 최초로 서법적인 속명 하에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적법적일 수 있다 (제22.5조도 참조).

예제 1. *Agathophyllum* Juss. (1789)는 *Ravensara* Sonn. (1782)에 대한 잉여적 대치명 <replacement name>이라 서명이지만, 학명 *A. neesianum* Blume (1851)은 적명이 된다. Meisner (1864)는 새로운 종 *Mespilodaphne mauritiana*의 이명으로 *A. neesianum*을 인용하였기 때문에, *M. mauritiana* Meisn.은 제52조에 의해 서명이 된다.

예제 2. *Calycotrix* sect. *Brachychaerae* Nied. (Engler & Prantl, Nat. Pflanzenfam. 3 (7): 100. 1892)라는 절의 이름은 비록 이 속 학명인 *Calycotrix* Meisn. (1838)가 *Calytrix* Labill. (1806)에 대한 잉여적 대치명 <replacement name>으로 출판된 이름이지만 적명이 된다.

55.2. 종 내 분류군의 학명은 그 최종소명이 최초로 서명의 종 이름에 부여되었어도 적명이 될 수 있다 (제27.2조도 참조).

예제 3. *Agropyron japonicum* var. *hackelianum* Honda (Bot. Mag. (Tokyo) 41: 385. 1927)는 *A. japonicum* (Miq.) P. Candargy (1901)의 후동일명으로 서명 *A. japonicum* Honda (1927)로 출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명이 된다 (제27조 예제 1 참조).

55.3. 이 규약 하에서 다른 제한이 없다면 이전에는 폐기된 동일명인 속에 귀속된 종과 속 이하 구분의 학명이 보전 또는 인가된 후동일명인 속명으로 귀속되더라도, 명명자, 또는 출판의 날짜를 변경함 없이 보전, 또는 인가된 속명 하에서 적명이 된다.

예제 4. *Alpinia languas* J. F. Gmel. (1791)과 *A. galanga* (L.) Willd. (1797)는 모두 명명자들에 의해 *Alpinia* L. (1753)속으로 처리되었고, 현재는 폐기되어 보전명인 *Alpinia* Roxb. (1810), nom. cons.로 귀속되지만, 이 두 종명은 인정된다.

제56조

56.1. 명명법상 불리한 변경 (제14.1조)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는 학명에 대해서는 폐기 제안을 할 수 있다. 이런 행위로 폐기된 학명이나 또는 존재할 수 있는 학명의 기본명은 폐기명의 목록 (금지명, 부칙5)에 목록화 된다. 이 목록에 있는 학명과 함께 이 학명에 근거하는 모든 조합도 동일하게 폐기되며 이 해당명은 사용하면 안 된다 (권고 50E.2 참조).

56.2. 폐기명의 목록은 항구적으로 추가나 변경을 할 수 있다. 학명의 폐기를 위한 모든 제안은 기준표본지정에 관한 고려도 포함되며, 학명의 폐기에 대한 찬성과 반대인 양쪽의 입장에서 상세한 설명을 수반해야 한다. 이런 제안은 전체위원회 (제3부 참조)에 제출해야 하며, 동(同)위원회는 이를 여러 분류군 명명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한다 (제 14.14조와 제34.1도 참조).

56.3. 명명법의 안정성을 위해 균류로 취급되는 생물체 (단, 지의형 균류와 분류학적으로 전통적인 *Mycocaliciaceae*과를 제외한 지의서식성 (地衣棲息性) 균류 포함)의 학명목록은 전체위원회 <General Committee>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목록은 전체위원회와 협의하여 구성된 적당한 국제적 규모의 소위원회, 즉 균류명명위원회 (Nomenclature Committee for Fungi, 제3부 참조)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 학명의 목록은 균류명명위원회와 전체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명명규약의 부칙이 된다. 이

목록에 기재된 학명은 제56.1조에 의해 폐기되어야 하고 사용이 인정받게 되는 것은 제 14조에 의해 보전되는 경우일 뿐이다 (제14.13조 참고).

56.4. 제56조에 의거하여 학명에 대한 폐기를 제안할 때에는 해당 분류군 명명위원회의 검토 후, 전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차후에 열리는 국제식물학회 결정에 따라 공인을 받게 된다 (제14.16조와 제 34.2조도 참조).

권고 56A

56A.1. 제56조에 의해 학명 폐기의 제안이 적합한 위원회에 심사가 의뢰될 경우 저자는 그 제안에 대한 전체 위원회의 권고가 나올 때 까지 학명의 현재 사용법에 최대한 따라야 한다 (권고 14A, 권고 34A 참고).

제57조

57.1. 제14.1조, 또는 제56.1조 하에 처리하기 위한 제안이 제출되고 동시에 기각되지 않는 한 기준표본을 포함하지 않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분류군에 대하여 널리 일관되게 사용되어 온 학명은 현재의 사용법과 상이하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예제 1. *Lycoperdon pusillum* Batsch; Pers에 근거한 학명인 *Bovista pusilla* (Batsch; Pers.) Pers는 현재 광의의 *B. limosa* Rostr. (1894)로 알려진 종을 그린 도판 (t. 41, fig. 228 in Batsch, Elench Fung. Cont. Secunda. 1789)을 기준표본으로 한다. 그러나 *B. pusilla*는 2개의 다른 종인 *B. dermoxantha* Vitt 와 *B. furfuracea* (J. F. Gmel.) Pers.이거나, 또는 이중 한 종에 대해 광범위하면서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다. *B. pusilla*의 학명을 폐기하기 위한 제안 또는 *B. pusilla*에 대해 *B. limosa*를 보전하기 위한 제안이 제출되고, 이 제안이 기각되지 않는 한, *B. pusilla*의 학명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57.2. 제56.1조, 또는 제56.3조에 의해 무성세대 (아나몰프, anamorph) 학명의 폐기를 위한 제안, 또는 제14.1조 또는 제14.13조에 의해 유성세대 (텔리몰프, teleomorph) 학명을 처리하기 위한 제안이 제출되어 기각되지 않는 한, 다형성 균류 (지의상생균류를 포함한 지의화한 균류와 *Mycocaliciaceae*처럼 전통적, 분류학적 지의류에 분류되는 균류는 제외)와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유성세대를 기준표본으로 하는 학명과 무성세대를 기준표본으로 하는 학명 모두가 해당 분류군에 넓게 사용될 경우 선취권을 가진 무성세대를 기준표본으로 한 학명은 유성세대를 기준표본으로 한 학명을 대신하지 않는다.

예제 2. Chomnunti & al. (Fungal Div. 51: 116. 2011)은 먼저 발표된 무성세대 (아나몰프, anamorph)를 기준표본으로 하는 *Polychoeton* (Pers.) Lév. (1846) 채용하기보다, 후에 출판되어 널리 이용된 유성세대 (텔리몰프, teleomorph)를 기준표본으로 하는 *Capnodium* Mont. (1849)를 선호하였다. Chomnunti & al. 는 *Capnodium*이 제14.13조에 의해 *Capnodium* 속명이 전체 위원회에서 승인되어야 하는 정명 계획리스트에 포함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런 제안 (또는 제14.1조에서 *Capnodium*을 보전하기 위한 제안, 또는 제56.1조 또는 제56.3조에서 *Polychaeton*을 폐기를 위한 제안)이 제출되어 기각되지 않는 한, *Capnodium*보다 우선적으로 *Polychaeton*의 학명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제 3. 무성세대 (아나몰프, anamorph)를 기준표본으로 한 *Pyricularia* Sacc. (1880)은 제14.1조 또는 제14.3조에 의해 보전이 제안되어 심사 중인데, 이 학명과 유성세대 (텔리몰프, teleomorph)를 기준표본으로 하는 *Magnaporthe* R. A. Krause & R. K. Webster (1972)는 모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선취권이 있다고 *Pyricularia*는 유성세대 (텔리몰프, teleomorph)를 기준표본으로 한 *Magnaporthe*를 대신하지는 않는다.

제58조

58.1. 만약에 현 규정상 문제가 없다면 서명의 최종소명은 동일 계급, 또는 다른 계급에서 다른 이름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다. 서법적 속명은 속 이하 계급 학명의 소명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결과로 만들어진 학명은 새로운 이름으로 취급되며, 서명과 같은 기준표본을 가지는 대치명 <replacement name> (제7.4조; 제7.5조와 제41조 노트 3도 참조)으로 취급하거나, 또는 다른 기준표본을 가지는 새로운 분류군의 학명으로 본다. 선취권은 서명의 출판날짜로 소급하지 않는다 (제11.3-11.4조 참조).

예제 1. 학명 *Talinum polyandrum* Hook. (1855)은 *T. polyandrum* Ruiz & Pav. (1789)의 후동일명으로, 제53.1조에 의해 서명이다. 1863년에 Bentham이 *T. polyandrum* Hook.을 *Calandrinia*로 옮겼을 때, 이를 *C. polyandra*로 처리하였다. 이 학명은 1863년부터 선취권을 가지며, *C. polyandra* "(Hook.) Benth."가 아니라 *C. polyandra* Benth.로 인용한다.

예제 2. *Hibiscus ricinifolius* E. Mey. ex Harv. (1860)가 출판되었을 때, 이명목록에 *H. ricinoides* Garcke (1849)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52.1조에 의해 서명이 된다. Hochreutiner (Annuaire Conserv. Jard. Bot. Geneve 4: 170. 1900)는 소명 *ricinifolius*를 변종의 계급에서 *H. vitifolius*와 조합하였다. 이 학명은 적법하며, 자동으로 *H. ricinoides*의 기준표본을 기준으로 하는 (제7.5조), 대치명 <replacement name>으로 취급된다. 이 학명은 *H. vitifolius* var. *ricinifolius* "(E. Mey. ex Harv.) Hochr."이 아니라, *H. vitifolius* var. *ricinifolius* Hochr.로 인용한다.

예제 3. *Collema tremelloides* var. *cyanescens* Ach. (Syn. Meth. Lich.: 326. 1814)는 Acharius가 이명표에 계급이 동일한 적명 *C. tremelloides* var. *caesium* Ach. (Lichenogr. Universalis: 656. 1810)을 인용하였기 때문에, 제52.1조에 의해 서명이다. Schaerer는 처음으로 소명 *cyanescens*를 *Parmelia cyanescens* Schaer. (1842)로 종의 계급에 사용하였지만, 이 학명은 *P. cyanescens* (Pers.) Ach. (1803)의 후동일명으로서 제53.1조에 의해 역시 서명이 된다. Rabenhorst (1845)는 이 종을 *Collema*로 옮겼는데 이 속에서는 소명 *cyanescens*가 이용 가능하다. *Collema cyanescens* Rabenh.는 1845년부터 선취권을 가진 적명이다. 이 후에 출판된 *Leptogium*에서의 조합은 *L. cyanescens* (Rabenh.) Korb.로 인용한다.

예제 4. *Geiseleria* Klotzsch (1841)는 *Decarinium* Raf. (1825)의 잉여적 대치명 <replacement name>이기 때문에 제52.1조에 의해 서명이 된다. 1856년에 Gray는 *Croton* subg. *Geiseleria*를 출판할 때부터, 이 학명은 선취권을 가지며, *C. subg. Geiseleria* "(Klotzsch) A. Gray"가 아니라 *C. subg. Geiseleria* A. Gray로 인용한다. *C. subg. Geiseleria*는 대치명 <replacement name>으로 제안되었기 때문에, 이 *Decarinium* Raf.의 기준표본은 *Geiseleria* Klotzsch가 되며 자동으로 기준종 (제7.5조)은 *C. glandulosus* L.가 된다.

i 노트 1. 제52.1조에 의해 서법적인 학명의 소명을 같은 계급에서 다시 사용할 경우에는 서법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해당 학명의 기준표본을 명백히 제외시키거나, 이 소명 사용이 불가능하지 않는 한 결과적으로 서명이 된다.

예제 5. *Menispermum villosum* Lam. (1797)는 *M. hirsutum* L. (1753)를 이명표에 인용하였으므로, 제52.1조에 의해 서명이다. *M. villosum*에 근거한 학명 *Cocculus villosus* DC. (1817)도 *M. hirsutum*의 기준표본을 제외하지 않아, *Cocculus*에서도 소명 *hirsutus*가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서명이다.

예제 6. *Cenomyce ecmocyna* Ach. (1810)는 *Lichen gracilis* L. (1753)의 서법적인 개명이 된다. *C. ecmocyna*에 근거한 *Scyphophora ecmocyna* Gray (1821) 학명도 *L. gracilis*의 기준표본을 제외하지 않았고, 따라서 *Scyphophora* 속에서 소명 *gracilis*가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서명이 된다. Leighton (1866)은 새로운 조합 *Cladonia ecmocyna*를 제안하였을 때 *L. gracilis*를 명시적으로 제외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종의 적명인 *Cladonia ecmocyna* Leight.를 출판하였다.

예제 7. *Ferreola ellipticifolia* Stokes (1812)는 이명표에 *Maba elliptica* J. R. Forst. & G. Forst. (1776)을 인용하였기 때문에, 제52.1조에 의해 서명이다. Bakhuizen van den Brink는 *F. ellipticifolia*의 대체명 〈replacement name〉으로 *Diospyros ellipticifolia* Bakh. (1933)을 출판하였으나, *M. elliptica*의 기준표본을 제외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 ellipticifolia*의 적명이 된다. 그 이유는 1933년에 Bakhuizen이 발표 때, 소명 *elliptica*는 *D. elliptica* Knowlt. (1902)가 존재하기 때문에 *D. elliptica* (J. R. Forst. & G. Forst.) P. S. Green (1969)는 후동일명, 즉 서명이 되서 (제53.1조) *Dispyros*속에서는 사용하지 못 하기 때문이다.

제8장

무성세대 균류 또는 다형성 생활주기 균류의 학명

제59조

59.1. 2013년 1월 1일 이전에 비지의형 자낭균류 및 담자균류의 분류군으로 출판된 학명은 한 개의 특정 형태[무성세대 (아나몰프, anamorph), 혹은 유성세대 (텔리몰프, teleomorph)]에 적용하는 의도를 가지거나, 또는 적용하는 의도를 함축하고 있다. 또한 그 형태 (모프, morph)의 기준표본인 것은 프로토로그 <protologue>와 다른 형태에 속할 수 있는 기준표본 (제52.2조의 규정에 따라)을 포함하였다는 이유로, 제52.2조에 의해 서명이더라도 그 명칭을 적법화 할 수 있다. 해당 학명이 그 외에 적법인 경우에는 선취권 경쟁을 할 수 있다 (제11.3조 및 제11.4조; 제57.2조도 참고).

예제 1. *Penicillium brefeldianum* B. O. Dodge (1993)은 유성세대 (텔리몰프, teleomorph)와 무성세대 (아나몰프, anamorph) 양쪽의 기준표본에 따라 기재되었다 [즉, 본 규약의 이전 판에서는, 필연적으로 유성세대 (텔리몰프, teleomorph)의 요소 단독에 근거함]. 유성세대 (텔리몰프, teleomorph)에 대한 조합명 *Eupenicillium brefeldianum* (B. O. Dodge) Stolk & D. B. Scott (1967)은 적명이 된다. "Dodge의 기준표본에서 유래한" 무성세대 (아나몰프, anamorph) 기준표본에 근거한 *Penicillium dodgei* Pitt (1980)는 *P. brefeldianum*의 유성세대 (텔리몰프, teleomorph)의 기준표본을 포함하지 않아 이것도 적명이 된다. 그러나 *Penicillium*의 종을 고려한다면 모든 상태 (형)에 대한 정명은 *P. brefeldianum*이다.

① 노트 1. 제59.1조의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균류의 이름은 감수분열 유성생식 (텔리몰프, teleomorph)는 물론, 체세포분열 무성세대 (아나몰프, anamorph)도 본 명명규약처럼 동일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① 노트 2. 이 규약의 구판에서는 다형성 균류에서의, 체세포 분열을 수반하는 무성세대 (아나몰프, anamorph)에 단독 이름을 부여하고, 균류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학명은 감수분열을 수반하는 유성세대 (텔리몰프, teleomorph)에 근거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명명규약에서는 모든 합법적인 균류의 이름은 선취권을 확립한다는 관점에서 기준표본의 생활사의 단계에 관계 없이 동등하게 다루어진다 (단, 제57.2조 참조; 제14.13조도 참조).

예제 2. *Mycosphaerella aleuritidis* (Miyake) S. H. Ou (1940)가 새로운 조합으로 출판되었을 때, *Cercospora aleuritidis* Miyake (1912)를 기준표본으로 하는 기본명 무성세대 (아나몰프, anamorph)에 대응하는 새롭게 발견된 유성세대 (텔리몰프, teleomorph)와 라틴어 기재를 동반하였다. 본 명명규약의 이전 판에서는 *M. aleuritidis*는 1940년에 출판되어, 저자를 Ou만으로 하는 유성세대 (텔리몰프, teleomorph)를 기준표본으로 하는 새로운 종의 이름으로 생각되었지만, 현재의 명명규약에서는 학명을 원래 출판된 *M. aleuritidis* (Miyake) S. H. Ou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기준표본은 기본명을 기준으로 한다.

예제 3. 유성세대 (텔리몰프, teleomorph)를 기준표본으로 하는 *Venturia acerina* Plakidas ex M. E. Barr (1968)의 프로토로그 <protologue>에서는 무성세대 (아나몰프, anamorph)를 기준표본으로

하는 *Cladosporium humile* Davi (1919)를 이명으로 포함하였다. *V. acerina*는 2013년 1월 1일 보다 이전에 출판되었기 때문에 서명은 아니지만, 이 균의 종 수준에서 가장 빠른 적명은 *C. humile*가 된다.

❶ 노트 3. 비지의류로 보는 자낭균류, 담자균류 분류군의 분리된 몰프 [morph, 즉, 무성세대 (아나몰프, anamorph), 유성세대 (텔리몰프, teleomorph)]에 대해 동시에 제안된 학명은 서로 다른 기준표본일 수 있고, 제36.2조에서 정의한 대체명 (alternative name)이 아니다.

예제 4. *Hypocrea dorotheae* Samuels & Dodd와 *Trichoderma dorotheae* Samuels & Dodd는 저자가 단일의 종으로 판단하고 PDD 83839를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으로 동시에 합법적으로 출판하였다 (Stud. Mycol. 56: 112. 2006). 이 학명은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출판되었던 것이며 (제59.1조 및 노트 2 참조), 저자에 의한 *T. dorotheae*의 학명은 PDD83839의 무성세대 (아나몰프, anamorph)에 의해 기준표본으로 한 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2개의 학명은 합법적으로 출판한 적명이 된다. 이 이름은 제36.2조에서 규정된 대체명 (alternative name)이 아니다.

제9장 정자법 및 학명의 성 <Gender>

제1절 맞춤법 (정자법)

제60조

60.1. 학명 또는 소명의 처음 출판된 철자 (원전철자)는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쇄 또는 맞춤법 상의 오류 교정 및 제60.4조 (외래어와 고전라틴어의 문자와 합자)에 의거하여 도입된 표준화, 제60.5조 (교환 할 수 있는 *u, v, i, j*), 제60.6조 (발음부호와 합자), 제60.7조 (의도적으로 만든 라틴어화), 제60.8조 (합성형), 제60.9조 (하이픈), 제60.10조 (아포스트로피/생략부호와 마침표), 제60.11조 (축약형), 제60.12조 (어미: 32.2조도 참조) 및 제60.13조 (균류의 소명)에 의해 변경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11조와 제15.1조도 참조).

예제 1. 원철자가 유지된 예: Linnaeus는 속명 *Mesembryanthemum* L. (1753) 및 *Amaranthus* L. (1753)를 의도적으로 철자를 적었는데, 언어학상 각각 "*Mesembrianthemum*"과 "*Amarantus*"로 적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Bull. Misc. Inform. Kew 1928: 113, 287, 1928을 참조), 철자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 *Phoradendron* Nutt. (1848)은 "*Phoradendrum*"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 *Triaspis mozambica* A. Juss. (1843)는 Engler (Pflanzenw. Ost-Afrikas C: 232. 1895)와 같이 "*T. mossambica*"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 *Alyxia ceylanica* Wight (1848)는 Trimen (Handb. Fl. Ceylon 3: 127. 1895)처럼 "*A. zeylanica*"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 *Fagus sylvatica* L. (1753)는 "*F. silvatica*"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고전적인 철자는 *silvatica*이지만, 중세의 철자인 *sylvatica*는 정자법 상 오류는 아니다 (권고 60E도 참조). - *Scirpus cespitosus* L. (1753)는 "*S. caespitosus*"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예제 2.** 인쇄 상의 오류 예: *Globba "brachycarpa"* Baker (1890)와 *Hetaeria "alba"* Ridl. (1896)는 각각 *Globba trachycarpa* Baker와 *Hetaeria alta* Ridl.의 인쇄 상의 오류이다 (J. Bot. 59: 349. 1921을 참조).

예제 3. "*Torilis "taihasenzanensis"* Masam. (J. Soc. Trop. Agric. 6: 570. 1934)은 같은 권의 4쪽과 5쪽의 사이에 삽입된 정오표에 기록되어 있듯, *Trollius taihasenzanensis*의 인쇄 상의 오류였다.

예제 4. 철자가 잘못된 *Indigofera "longipednnculata"* Y. Y. Fang & C. Z. Zheng (1983)은 아마도 인쇄 상의 오류이며, *I. longipedunculata*로 수정되어야 한다.

***예제 5.** 정자법상의 오류: *Gluta "benghas"* L. (1771)은 *G. renghas*의 정자법상의 오류이며, *G. renghas* L.로 인용되고 있다 (Engler in Candolle & Candolle, Monogr. Phan. 4: 225. 1883을 참조). Linnaeus에 의해 종소명으로 사용된 지방명은 "*renghas*"이며, "*benghas*"는 아니다.

이 노트 1. 제14, 11조는 과명, 속명 또는 종명의 변경된 철자의 보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예제 6. *Bougainvillea* Comm. ex Juss. ('*Buginvillaea*'), orth. cons. (철자의 보전) (부칙3을 참조).

예제 7. *Wisteria* Nutt. 1818, nom. cons.는 Caspar Wistar을 기념하여 명명된 것이지만, "*Wistaria*"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Wisteria*가 부칙3에서 사용되는 철자법이기 때문이다 (제14.8조 참조).

60.2. “원전철자”라는 말은 학명이 합법적으로 출판 될 때 사용된 철자를 의미한다. 원전철자는 첫 글자에 대문자 또는 소문자를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는다. 이는 인쇄 상 문제일 뿐이다 (제20.1조 및 제21.2조, 권고 60F참조).

60.3. 학명 교정의 자유는 변경 사항이 학명의 첫 음절, 특히 학명의 첫 번째 문자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제한된다.

***예제 8.** 속명 *Lespedeza* Michx. (1803)의 철자는 Vicente Manuel de Cespedes를 기념한 것이지만 (*Rhodora* 36: 130-132, 390-392. 1934을 참조), 변경해서는 안 된다. - *Cereus jamacaru* DC. (1828)은 비록 *jamacaru*가 지방명 "*mandacaru*"의 어구 변형이라 확신하더라도, *C. "mandacaru"*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60.4. 고전 라틴어에서는 외래 문자인 *w*, *y*, *k*를 라틴어 식물이름에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32.1(b)조 참조). 학명에서 나타나는 고전 라틴어의 외래문자인 다른 문자 및 합자, 예를 들어 독일어의 β (이중 *s*)는 고쳐 써야 한다.

60.5. 학명이 문자 *u*와 *v* 또는 *i*와 *j*가 교환 할 수 있는 형태 또는 현대적인 용법과 맞지 않는 다른 용법에 의해 출판되었을 때(예, 이중 하나를 대문자로 사용하지 않거나, 모두 사용하지 않음), 이런 문자는 현대 명명법상 사용법에 맞게 다시 수정해서 사용한다.

예제 9. *Curculigo* Gaertn. (1788)는 "*Cvrcvligo*"가 아니고, *Taraxacum* Zinn (1757)은 "*Taraxacvm*"은 아니며, *Uffenbachia* Fabr. (1763)는 "*Vffenbachia*"가 아니다.

예제 10. Person(1801)의 "*Geastrvm hygrometricvm*"과 "*Vredop pvstvla*"는 각각 *Geastrum hygrometricum* Pers.와 *Uredo pustulata* Pers.로 바꿔 쓸 수 있다.

예제 11. Miquel (1866)의 *Brachypodium "iaponicum"*은 *Brachypodium japonicum* Miq.로 바꿔 쓸 수 있다.

60.6. 발음구별 기호는 학명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기호화가 붙어있는 단어로 형성된 학명 (새로운 것, 오래된 것이라도)에서 기호화된 문자는 불가피하게 교정하여 그 기호를 제거해야 한다.

예를 들어, *ä, ö, ü*는 각각 *ae, oe, ue*로, *é, è, ê*는 *e*; *ñ*는 *n*으로, *ø*는 *oe*로, *å*는 *ao*로 변경된다. 모음이 앞 모음과 독립적으로 발음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분음부호**는 허용 된다 (예를 들어 *Cephaëlis, Isoëtes*). 함께 발음되는 것을 나타내는 합자 *-æ-* 와 *-æ-*는 각각 분리된 문자 *-ae-*와 *-oe-*로 대체해야 한다.

예제 12. 옴라우트의 표기를 바꾼 예: Carl Emil von der *Lüthe*를 기념한 "*Lühea*"는 *Luehea* Willd. (1801)로 표기를 바꾼다.

60.7. 개인명이나 지명 또는 지방명을 채택한 명명자가 철자의 변경을 의도적으로 라틴어화 한 경우, (a) 그 변경이 소명의 어미에 한정된 제60.12조가 적용되어 수정, 또는 (b) 인명의 (1) 마지막 모음 또는 마지막 자음의 생략, 또는 (2) 마지막 모음의 다른 모음으로의 전환을 취소 수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변경을 보존해야 한다.

예제 13. *Clutia* L. (1753), *Gleditsia* L. (1753) 및 *Valantia* L. (1753)은 각각 Cluyt, Gleditsch 및 Vaillant를 기리는 이름이지만, "*Cluytia*", "*Gleditschia*" 및 "*Vaillantia*"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Linnaeus는 식물학자들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Clutius*, *Gleditsius* 및 *Valantius*로 라틴어화 하였다.

예제 14. *Abies alcoquiana* Veitch ex Lindl. (1861)은 "Rutherford Alcock Esq."을 기리는 이름이지만, 그의 성을 *Alcoquius*로 의도적으로 라틴어화 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Carrière (1867)는 이 소명을 *Picea*로 바꾸면서 철자를 의도적으로 "*alcockiana*"로 변경하였다. 그럼에도 결과적 조합은 *P. alcoquiana* (Veitch ex Lindl.) Carrière로 인용하는 것이 옳다 (제61.4조 참조).

예제 15. *Abutilon glaziovii* K. Schum. (1891), *Desmodium bigelovii* A. Gray (1843) 및 *Rhododendron bureavii* Franch. (1887)은 각각 A. F. M. Glaziou, J. Bigelow 및 L. E. Bureau을 기념하고 있지만, A. "*glazioui*", D. "*bigelowii*", 또는 R. "*bureauii*"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이들 세 경우에, Glaziovius, Bigelovius 및 Bureauus는 분명히 말미의 모음, 또는 자음을 다른 자음에 변환하여 라틴어화한 결과이며, 단순히 이름만 어미변화를 시킬 필요는 없다.

예제 16. L. K. A. von Chamiso와 C. L. G. Bertero를 기리는 *Arnica chamissonis* Less. (1831)와 *Tragus berteronianus* Schult. (1824)는 A. "*chamissoi*" 또는 T. "*berteroanus*"로 변경하지는 않는다 (권고 60C.2를 참조). 이런 소명은 제3변화 명사 속격에서부터의 파생인데 (권고 60C.예제 1(b)), 통상 권장하지 않는다. 이는 사람 이름에 대한 문자 추가로 만들어진 것으로 단순 어미변화에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예제 17. *Acacia "brandegeana"*, *Blandfordia "backhousii"*, *Cephalotaxus "fortuni"*, *Chenopodium "loureirei"*, *Convolvulus "loureiri"*, *Glochidion "melvilliorum"*, *Hypericum "buckleii"*, *Solanum "rantonnei"* 및 *Zygophyllum "billardieri"*는 T. S. Brandegee, J. Backhouse, R. Fortune, J. de Loureiro, R. Melville과 E. F. Melville, S. B. Buckley, V. Rantonnet 및 J. J. H. de Labillardière (de la Billardiere)을 기려 출판하였다. 여기서 함축적으로 라틴어화한 것은 *Brandegeus*, *Backhousius*, *Fortunus*, *Loureireus*, 또는 *Loureirus*, *Melvillius*, *Buckleius*, *Rantonneu* 및 *Billardierius*인데, 이들은 제 60.7조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이 학명은 올바르게 수정된 A. *brandegeana* I. M. Johnst. (1925), B. *backhousei* Gunn & Lindl. (1845), *Cephalotaxus fortune* Hook. (1850), *Chenopodium loureiroi* Steud. (1840), *Convolvulus loureiroi* G. Don (1836), G. *melvilleorum* Airy Shaw (1971), H. *buckleyi* M. A. Curtis (1843), S. *rantonnetii* Carrière (1859) 및 Z. *billardieri* DC. (1824)로 인용한다.

**[역자 주] 분음부호 (phonetic) [a], [o], [u] 등의 소리가 후속음절의 영향으로 소리가 변하는 현상. 독일어의 für

예제 18. Jules de Seynes을 기리는 *Mycena seynii* Quél. (Bull. Soc. Bot. France 23: 351. 1877)는 *M. "seynesii"*로 변경하지 않는다. 이 인명은 함축적으로 마지막 문자 외에 더 삭제하여 만든 *Seynius*로 라틴어화 되어 있다.

❶ 노트 2. 제60.7조, 60.12조 및 권고 60C조는 수정에 의해 라틴어화한 이름에 관한 규정이다. 이 라틴어화는 인명 번역과 같은 것은 아니다 (예: Bergzabern의 라틴어화는 Tabernaemontanus; Noble의 라틴어화는 Nobilis). 인명유래의 소명은 권고 60C.2조에 의거한 것이고, 제60.7조 또는 제60.12조에 따른 표준화는 관련이 없다.

예제 19. *Wollemia nobilis* W. G. Jones & al. (1995)의 형용사 *nobilis* (속격형도 *nobilis*)는 발견자인 David Noble 성의 라틴어 이름이다. *Cladonia abbatiana* S. Steenroose (1991)는 프랑스 지의 류학자인 H. des Abbayes를 기리는 이름으로, 여기서 Abbayes가 Abbatiae (abbeys)로 번역되었다. 어느 쪽의 소명도 변경할 수 없다.

60.8. 두 개 이상의 그리스어 또는 라틴어 단어를 합성하여 만든 형용사의 소명으로 권고 60G.1(a)에 반하는 것은 권고 60G.1(b) 또는 60G.1(c)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고 60G.1(a)에 따르는 형식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특히, 일반적으로 합성어 [60G.1(a)] 대신 라틴어의 제1변화명사의 속격 단수형을 사용하여 모조합성명을 만드는 것 [권고 60G.1(c)]은 이것이 어원상의 구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면 수정해야 할 오류로 취급된다.

예제 20. *Pereskia "opuntiaeflora"* DC. (1828)의 소명은 *opuntiaeflora*로 적으며, *Myrosma "cannaefolia"* L. f. (1782)의 소명은 *cannifolia*로 적는다.

예제 21. *Cacalia "napeaeifolia"* DC. (1838)와 *Senecio "napeaeifolius"* (DC.) Sch. Bip. (1845)의 소명은 *napeaeifolia* (-us)로 적어야 한다. 이 소명은 *Napaea* L. ("*Napea*"가 아니라)의 잎과 비슷한 데서 유래하였기 때문에, 속격 단수의 어미 변화형 -ae- 대신 연결 모음 -i-가 이용되어야 한다.

예제 22. *Andromeda polifolia* L. (1753)에서, 소명은 Linnaeus 이전의 속의 명칭 (Buxbaum의 "*Polifolia*")에서 채택되어, 동격으로 이용되는 명사이며, 형용사가 아니다. 따라서 "*poliifolia*" (*Polium*와 같은 잎)로 수정해서는 안 된다.

예제 23. *Tetragonia tetragonoides* (Pall.) Kuntze (1891)은 *Demidovia tetragonoides* Pall. (1781)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종소명은 속명 *Tetragonia*와 접미사 -oides에 유래한다. 이는 1개의 명사와 1개의 접미사의 합성의 소명이지만, 2개 그리스어 또는 라틴어 단어의 합성형이 아니기 때문에 "*tetragonioides*"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60.9. 합성어의 소명에서 하이픈의 사용은 수정되어야 할 오류로 취급되므로 하이픈은 제거한다. 그러나 소명이 보통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복수의 단어에서 만들어졌거나, 또는 하이픈 앞뒤의 문자가 같은 경우는 허용 된다 (제23.1조 및 제23.3조도 참조).

예제 24. 하이픈을 삭제하는 경우: *Acer pseudoplatanus* L. (1753)는 "*pseudo-platanus*"가 아니다; *Croton ciliatoglandulifer* Ortega (1797)는 "*ciliato-glandulifer*"가 아니다; *Eugenia costaricensis* O. Berg (1856)는 "*costa-ricensis*"가 아니다; *Ficus neoebudorum* Summerh. (1932)는 "*neo-ebudorum*"가 아니다; *Lycopersicon atropurpureum* Vittad. (1842)는 "*atro-purpureum*"가 아니다; *Scirpus* sect. *Pseudoeriophorum* Jurtzev (Byull Moskovsk. Obshch. Isp. Prir., Otd. Biol. 70(1): 132. 1965)는 "*Pseudo-eriophorum*"가 아니다.

예제 25. 하이픈이 유지되는 경우: *Arhyrium austro-occidentale* Ching (1986), *Piper pseudo-oblongum* McKown (1928), *Ribes non-scriptum* (Berger) Standl. (1930), *Vitis novae-angliae* Fernald (1917).

예제 26. 하이픈을 사용하는 경우: *Arctostaphylos "uva ursi"* (L.) Spreng. (1825), *Aster "novae-angliae"* L. (1753) 및 *Coix "lacryma jobi"* L. (1753)의 소명은 각각 *uva-ursi*, *novae-angliae* 및 *lacryma-jobi*로 적는다. *Marattia "rolandi principis"* Rosenst. (1911)의 소명은 *rolandii-principis*로 적는다 (제60.12조를 참조). *Vaccinium* sect. "*Vitis idaea*" W. D. J. Koch (1837)의 소명은 *Vitis-idaea*로 적는다. *Veronica "anagallis"* L. (1753)의 소명은 *anagallis-aquatica*로 적어야 한다. (제23.3조를 참조).

1 노트 3. 제60.9조는 (조합 중에) 소명에만 적용되고, 속 또는 더 높은 계급의 분류군 학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하이픈을 붙여 발표된 속명은 보전 (제14.11조; 제 20.3조도 참고)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예제 27. *Pseudo-salvinia* Piton (1940)은 "*Pseudosalvinia*"로 변경할 수 없지만, "*Pseudo-elephantopus*"는 보전에 따라, *Pseudelephantopus* Rohr (1792)로 변경되었다.

60.10. 소명 중에 인용부호 (아포스트로피)의 사용은 수정되어야 할 오류로 취급되어 삭제한다. 마침표를 포함한 인명 또는 지명에 유래하는 소명 중에서 마침표의 사용은 수정되어야 할 오류로 취급되어 삭제한다.

예제 28. *Cymbidium "i'ansonii"* Rolfe (1900), *Lycium "o'donellii"* F. A. Barkley (1953) 및 *Solanum tuberosum* var. "*murukewillu*" Ochoa (Phytologia 65: 112. 1988)에서, 최종소명의 철자는 각각 *iansonii*, *odonellii*, 및 *murukewillu*로 적는다.

예제 29. 채집자 중의 한명의 성씨 St. John에서 유래하는 *Nesoluma "St.-Johnianum"* Lam & Meeuse (1938)의 소명의 철자는 *st-johnianum*으로 적는다.

60.11. 약자와 소명은 명명법상의 관례에 따라서 확대시켜야 한다 (제23조, *예 19도 참조).

예제 30. Antonio de Bolós y Vayreda에 헌정하는 *Allium "a-bolosii"* P. Palau (1953)의 소명 철자는 *antonii-bolosii*로 쓴다.

60.12. 권고 60C.1에 상반하는 어미 (예를 들어 *-i*, *-ii*, *-ae*, *-iae*, *-anus*, 또는 *-ianus*)의 사용은 수정되어야 할 오류로 취급한다 (제32.2조도 참조). 그러나 권고60C.2조에 의해 형성된 소명의 어미는 수정하지 않는다.

예제 31. G. N. Potanin을 기리는 *Rhododendron "potanini"* Batalin(1892)의 소명 철자는 권고 60C.1에 따라 *potaninii*로 적는다. 그러나 Theophrastus를 기리는 *Phoenix theophrasti* Greuter (1967)는 권고 60C.2가 적용되기 때문에 "*theophrastii*"로 적지 않는다.

예제 32. *Rosa "pissarti"* Carriere (Rev. Hort. 1880: 314. 1880)은 *R. "pissardi"*의 인쇄 상의 오류지만 (Rev. Hort. 1881: 190. 1881 참조), 이는 *R. pissardii*로 적어야 한다. (권고 60C.1(b) 참조).

예제 33. *Uladendron codesuri* Marc.-Berti (1971)의 소명은 인명이 아닌, 머리글자 <두자어, acronym> (CODESUR, Comisión para el Desarrollo del Sur de Venezuela)에서 유래하므로 (Brenan, Index Kew., Suppl. 16: 296. 1981과 같이) "*codesurii*"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예제 34. *Asparagus tamaboki* Yatabe (1893)와 *Agropyron kamoji* Ohwi (1942)의 소명은 각각 일본명 "tamaboki"와 일본명 "kamojigusa"에 해당되므로, "tamabokii" 및 "kamojii"로는 적지 않는다.

① 노트 4. 만약 인명으로부터 파생된 실명사의 성별 및/또는 수는 그 학명이 기념하는 사람(들)의 성별 및/또는 숫자에 부적합할 경우 명사형 소명의 어미는 60C.1에 따라서 수정한다.

예제 35. *Rosa* × "*toddii*" Wolley-Dod (J. Bot. 69. Suppl.: 106. 1931)은 "Miss E. S. Todd" (여성형)에서 이름을 따왔기 때문에, 그 소명은 *toddiae*라고 적는다.

예제 36. *Astragalus* "*matthewsii*" Podlech & Kirchhoff (Min. Bot Staatssamml. München 11: 432. 1974)는 Victoria A. Matthews (여성형)를 기념하고 있으므로, 그 소명을 *matthewsiae*로 적는다. *A. matthewsiae*는 *A. matthewsii* S. Watson(1883)의 후동일명은 아니다 (Agerer-Kirchhoff & Podlech, Mitt. Bot. Staatssamml. München 12: 375. 1976을 참조).

예제 37. *Codium* "*geppii*" (Schmidt, Biblioth. Bot. 91: 50. 1923)는 A. Gepp과 E. S. Gepp, 두 사람을 기념하고 있어, *C. geppiorum* O. C. Schmidt로 수정해야 한다.

예제 38. *Acacia* "*Bancroftii*" Maiden (Proc. Roy. Soc. Queensland 30: 26. 1918)는 "Bancroft 부자로서, 고 (故) Joseph Bancroft 박사와 그 아들 Thomas Lane Bancroft 박사를 기념한" 것이다. 이 소명은 *bancroftiorum*이라고 적는다.

예제 39. *Chamaecrista leonardiae* Britton (1930, '*leonardae*'), *Scolosanthus leonardii* Alain (1968), 및 *Frankenia leonardiorum* Alain (1968, '*leonardorum*')은 모두 Emery C. Leonard와 Genevieve M. Leonard에 의해 채집된 기준자료에 근거하고 있고, 모순된 명시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런 학명들은 소명의 어미가 의미하는 바대로, 어느 한쪽 또는 양쪽에 기리는 이름으로 수용한다.

60.13. 연관된 생명체의 속명으로부터 파생된 균류의 소명은 그 연관생명체의 허용된 철자에 따라서 사용한다. 다른 철자들은 변형철자 (정자법상의 이형체)로 여기고 수정한다 (제61조 참조).

예제 40. *Phyllachora* "*anonicola*" Chardón (Mycologia 32: 190. 1940)은 *P. anonicola* Chardón으로 변경해야 한다. 왜냐하면 "*Anona*" L.는 *Annona*로 수정한 철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Meliola* "*albizziae*" Hansf. & Deighton (Mycol. Pap. 23: 26. 1948)는 *M. albizziae*로 변경해야 한다. "*Albizzia*" Durazz는 *Albizia*로 수정한 철자이기 때문이다.

권고 60A

60A.1. 새로운 분류군명 또는 대치명 <replacement name>, 또는 그 소명이 그리스어에서 유래하고 있을 경우 라틴어로 수정하여 고전어의 용법에 따라 일치시킨다.

예제 1. 그리스어의 대기식음** <spiritus asper, 역 어퍼스트로피>을 라틴어로 대치하는 경우에는 *Hyacinthus* (ὕακινθος에서) 및 *Rhododendron* (ροδόδενδρον에서)처럼 문자 h로 치환하여야 한다.

**[역자 주] 대기식음 (spiritus asper) 그리스어의 어두 모음 또는 ρ 기음 (氣音, rough breathing)을 동반하는 발음. 역 어퍼스트로피 (')로 표시하기도 한다.

권고 60B

60B.1. 인명으로부터 유래된 새로운 속명, 또는 속 하위분류계급에 새로운 소명은 다음과 같이 만든다. (권고 20A, 1(i) 참조):

- (a) 인명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a*를 붙인다 (즉, Otto는 *Ottoa*; Sloane는 *Sloanea*), 다만 이름이 *-a*로 끝나는 경우는 *-ea*를 추가하고 (예: Colla는 *Collaea*), *-ea*로 끝나는 경우 (*Correa*처럼)는 어떤 철자도 붙이지 않는다.
- (b) 인명이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 *-ia*의 철자를 붙인다, 그러나 인명의 끝이 *-er*의 경우는 어미를 *-ia*와 *-a*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예, Sesler는 *Sesleria*, 그리고 Kerner는 *Kenera*).
- (c) 끝이 *-us*로 끝나는 라틴어화한 인명의 어미는 앞의 (a)와 (b)에서 기술한 절차를 적용하기 전에 제외한다 (예, Dillenius는 *Dillenia*).

❶ 노트 1. 해당 음절들이 문자, 합자 <ligatures>, 또는 발음구별 부호를 포함하지 않으면, 이런 어미변화로 수정되지 않는 음절들은 영향을 받지 않고, 제60.4조와 제60.6조에 의거하여 수정한다.

❶ 노트 2. 1개 이상의 속명 또는 속 이하 계급의 소명은 동일한 명명자명에 근거할 수 있다. 즉, 인명에 접두사나 접미사를 붙이거나 또는 인명의 철자순서를 바꾸거나 또는 축약형을 사용한다.

60B.예제 1. *Durvillaea* Bory (1826)와 *Urvillea* Kunth (1821); *Lapeirousia* Pourr. (1788)와 *Peyrousea* DC. (1838); *Engleria* O. Hoffm. (1888), *Englerastrum* Briq. (1894)와 *Englerella* Pierre (1891); *Bouchea* Cham. (1832)와 *Ubochea* Baill. (1891); *Gerardia* L. (1753)와 *Graderia* Benth. (1846); *Martia* Spreng. (1818)과 *Martusia* Schult. & Schult. f. (1822).

권고 60C

60C.1. 종소명 및 종 이하 분류군의 소명을 만들기 위해 인명에 라틴어의 어미를 붙일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단, 권고 60C.2 참조).

- (a) 인명이 모음 또는 *-er*로 끝나면, 명사로서 이용하는 소명은 기념되는 인물의 성과 수에 따른 소유격의 어미변화를 주는 것으로 만들어 진다 (예, Scopoli (남성)은 *scopoli-i*, Fedtschenko (남성)은 *fedtschenko-i*, Fedtschenko (여성)은 *fedtschenko-ae*, Glaziou (남성)은 *glaziou-i*, Lace (여성)은 *lace-ae*, Gray (남성)은 *gray-i*, Hooker의 부모와 자식 (남성)은 *hooker-orum*, 다만 이름이 *-a*로 끝날 경우는 *-e* (단수) 또는 *-rum* (복수)을 더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 예로, Triana (남성)은 *triana-e*, Pojarkova (여성)은 *pojarkova-e*, 그리고 Orlovskaja (여성)은 *oriovskaja-e* 등이다.
- (b) 인명이 자음 (*-er*을 제외)으로 끝나면, 명사로 이용하는 소명은 *-i*- (어간의 부속물)와 기념되는 인물의 성과 수에 따른 소유격의 어미변화를 주는 것으로 만든다 [예, Lecard (남성)은 *lecard-ii*, Wilson (여성)은 *wilson-iae*, Verlot형제는 *verlot-iorum*, Braun자매는 *braun-iarum*, Mason의 아버지 딸은 *mason-iorum* 등].
- (c) 인명이 모음으로 끝나면 형용사로서 이용하는 소명은 *-an*-과 그 속명의 성(性)에 응당한 주격단수의 어미변화를 주어서 만든다 (즉, Heyne에 관한 *Cyperus heyne-anus*, Lindley에 관한 *Vanda lindley-ana*, Bertero에 관한 *Aspidium bertero-anum*), 단, 인명이 *-a*로 끝날 경우는 *-n*-과 적당한 어미변화를 더 한다 [즉, Balansa의 어미변화는 *balansa-nus* (남성), *balansa-na* (여성) 및 *balansa-num* (중성) 등].
- (d) 인명이 자음으로 끝나면 형용사로서 이용하는 소명은 *-i*- (어간의 부속물)와 *-an*- (형용사접미어의 어간)

에 더해서 그 속명의 성에 응당한 주격단수에 어미변화를 통해 만들어 진다 (예, Webb에 대한 *Rosawebb-iana*, Griffith에 대한 *Desmodium griffith-ianum*, Hassler에 대한 *Verbena hassler-iana* 등)

❶ **노트 1.** 위에 기술된 예의 하이픈은 적절한 어미전체를 보여주기 위해서만 사용한 것이다.

600.2. 이미 그리스어나 라틴어로 된 인명, 또는 정착한 라틴어형을 가지는 인명을 이용해서 새로운 명사의 소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명사의 적절한 라틴어 소유격을 만들어야 한다 (예, *alexandri*는 Alexander 또는 Alexandre로부터, *augusti*는 Augustus 또는 August 또는 Auguste로부터, *martini*는 Martinus 또는 Martin으로부터, *linnaei*는 Linnaeus로부터, *martii*는 Martius로부터, *wislizeni*는 Wislizenus로부터, *edithae*는 Editha 또는 Edith로부터, *elisabethae*는 Elisabetha 또는 Elisabeth로부터, *murielae*는 Murieal 또는 Muriel로부터, *conceptionis*는 Conceptio 또는 Concepcion으로부터, *beatricis*는 Beatrix 또는 Beatrice로부터, *hectoris*는 Hector로부터. 그러나 Edmond Camus 또는 Aimée Camus로부터는 “*cami*”로는 안 된다). 근 현대의 새로운 성씨 (즉, 정착한 라틴어화명을 가지지 않는 성씨)는 마치 제3변화 명사인 것처럼 다루는 것을 피한다 (예, Munro에서 *munronis*, richardson에서 *richardsonis*).

600.3. 잘 정착된 라틴어화 한 인명에 근거하는 새로운 소명은 라틴어화의 전통적인 사용법을 유지한다.

예제 1. 권고 600.2의 소명에 더하여, 아래 소명은 이미 라틴어에 있거나 정착한 라틴어형을 가진 인명을 기념하고 있다. (a) 제2변화: Afzelius에 근거한 *afzelii*, Allemanius (Freire Allemão)에 근거한 *allemanii*, Bauhinus (Bauhin)에 근거한 *bauhini*, Clusius에 근거한 *clusii*, Rumphius (Rumpf)에 근거한 *rumphii*, Solandrus (Solander)에 근거한 *solandri*, (b) 제3변화: Bello에 근거한 *bellonis*, Bruno (Robert Brown)에 근거한 *brunonis*, Chamisso에 근거한 *chamissonis*, (c) 형용사 (제23.5조 참조): *afzelianus*, *clusianus*, *linnaeanus*, *martianus*, *rumphianus*, *brunonianus* 및 *chamissonianus* 등이다.

600.4. 제60.4조 및 제60.6조에 따라 라틴어의 문자, 합자, 또는 발음구별기호를 수정하지 않는 한, 인명에 근거한 새로운 소명을 만들 때에는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명의 철자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600.5. 인명에 근거해 새로운 소명이 만들어질 때의 접두어와 불변화사 (particles)는 다음과 같이 다룬다.

- (a) 스코틀랜드어식의 선조의 이름을 나타내는 접두사 “Mac”, “Mc” 또는 “M”은 “~의 아들”을 의미하지만, “mac”으로 써서, 그 이름의 나머지 부분과 합쳐 사용한다 (예, Macfadyen은 *macfadyenii*, MacGillivray은 *macgillivrayi*, McNab는 *macnabii*, M’Ken은 *mackenii*로 바꿈).
- (b) 선조의 이름인 것을 나타내는 아일랜드어의 접두사 “O”는 그 이름의 나머지 부분과 합쳐 사용하거나, 또는 생략한다 (예, O’Brien은 *obrienii*, *brienianus*, O’Kelly는 *okellyi* 등).
- (c) 관사로부터 이루어지는 접두어 (예, le, la, l’, les, el, il, lo), 또는 관사를 포함하는 접두어 (예, du, de, la, des, del, della)는 이름에 합쳐 사용한다 (예, Le Clerc은 *leclercii*, DuBuysson은 *dubuyssonii*, La Farina는 *lafarinae*, Lo Gato는 *logatoi*).
- (d) 작위 또는 성자 의미를 나타내는 성에 대한 접두어는 생략한다 (예, de Candolle은 *candollei*, de Jussieu는 *jussieui*, Saint-Hilaire는 *hilairei*, St Rémy는 *remyi*). 그러나 지명에서 유래하는 소명에서 “St”는 *sanctus* (남성), 또는 *sancta* (여성) (예, *sancti-johannis*는 St John의 것, *sanctae-helenae*는 St Helena의 미)이다.
- (e) 독일어 또는 네덜란드어의 접두어는 생략한다 (즉, von Ihering은 *iheringii*, von Martius는 *martii*, van Steenis는 *steenisi*, zu Strassen은 *strassenii*, van der Vecht는 *vechtii*). 그러나 접두어가 성의 일부로 통상 취급되는 경우는 소명 안에 포함 시킨다 (즉, Vonhausen은 *vonhausenii*, Vanderhoek는 *vanderhoekii*, Van Brunt는 *vanbruntiae*).

권고 60D

60D.1. 지명에서 유래하는 소명은 형용사인 것이 바람직하고, 통상 *-ensis*, *-(a)mus*, *-inus*, 또는 *-icus* 등의 접미어를 갖는다.

예제 1. *Rubus quebecensis* L. H. Bailey (Quebec에서), *Ostrya virginiana* (Mill.) K. Koch (Virginia에서), *Eryngium amorginum* Rech.f. (Amorgos에서), *Fraxinus pennsylvanica* Marshall (Pennsylvania에서).

권고 60E

60E.1. 새로운 분류군의 소명은 유래한 단어 또는 말의 관습적인 철자를 따르고, 라틴어 및 라틴어화가 받아들여지는 용법은 일치시켜서 사용한다 (제23.5조도 참조).

예제 1. *sinensis* (*chinensis*가 아님).

권고 60F

60F.1. 종소명 및 종 이하 분류군의 모든 소명은 소문자로 시작한다.

권고 60G

60G.1. 2개 이상의 그리스어 또는 라틴어의 단어에서 유래한 요소가 결부된 합성명 또는 소명은 실행 가능한 고전적인 용법을 따라서 만든다. 이는 다음과 같다 (권고 60G 노트 1도 참조).

(a) 표준적인 합성명에서 마지막에 위치하지 않는 명사 또는 형용사는 통상 다음과 같은 규약으로 합성형이 된다.

(1) 소유격으로 단수 격 어미 (라틴어에서는 *-ae*, *-i*, *-us*, *-is*; 음역된 그리스어에서는, *-ou*, *-os*, *-es*, *-as*, *-ous* 및 그것과 동등한 *-eos*)를 제외한다.

(2) 자음 앞에서는 연결 모음 (라틴어의 요소에는, *-i-*, 그리스어의 요소에는 *-o-*)을 더 요구한다.

예제 1. "*Quercus* 같은 잎을 가졌다"란 의미의 소명은 *quercifolia* (*Querc-*와, 연결 모음 *-i-*, 어미 *-folia*)이다.

예제 2. 학명 *Aquilegia*에서 유래하는 소명 "*aquilegifolia*"는 제60.8조에 따라 *aquilegiiifolia* (*Aquilegi-*, 연결 모음 *-i-*, 어미 *-folia*)로 변경해야 한다.

(b) (a)에 개괄적으로 기술된 부분에 예외인 경우는 흔하며, 특수한 합성형에 관해서는 이전의 사용법을 보고 배워야 한다. 명백하게 표준적이지 않은 다른 합성형을 만들 경우에는 통상 고전적인 용법을 따른다.

예제 3. 합성형인 *hydro-*와 *hydr-* (*Hydro-phyllum*)은 물에서 (*hydor*, *hydatos*)의 어원; *calli-* (*Calli-stemon*)는 형용사인 아름다운 (*kalos*)에서 유래 *meli-* (*Meli-osma*, *Meli-lotus*)는 꿀 (*mel*, *melitos*)의 어원.

(c) 모조합성명에 있어서 최종 명사 또는 형용사는 변형한 어간으로서가 아닌 격변화 어미를 단어화 한다. 예를 들면 *nidus-avis* (새둥지), *Myos-otis* (쥐의 귀), *albo-marginatus* (주변부가 흰) 등이다. 얇게 색이 물들

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소명에서 변화하는 처음 색은 자주 탈격이 된다. 왜냐하면 전치사 e, ex가 함축적으로 포함을 하기 때문이다. 즉, *atropurpureus* (흑보라색)은 “ex atro purpureus” (검은색으로 얇게 물들일 수 있는 보라색)로부터. 또, 다른 조사 성분이 같은 함성형을 가질 경우 어원상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입된 모조합성명도 있다 (제60.8조도 참조).

예제 4. 라틴어의 tube (통, *tubus, tubi*)과 trumpet (나팔, *tuba, tubae*)은 표준적인 합성어에서는 모두 동일한 소명이 된다 (예: *tubiformis*). 그러나 모조합성명인 *tubaeformis*는 *Cantharellus tubaeformis* Fr.: Fr.과 같이 "나팔 모양의"라는 점만을 의미한다.

예제 5. papaya (파파야, *Carica, Caricae*) 및 sedge (사초, *Carex, Caricis*)에서 유래하는 표준적인 합성어는 동일하지만, 모조합성명인 *caricaefolius*는 "파파야와 같은 잎"이라는 것만을 의미한다.

① 노트 1. 라틴어 어형변화명사의 소유격 단수의 어원적으로 구별할 수 있게 만들지 않는 한, 모조합성명의 형용사 소명은 오류로 취급하여 수정한다 (제60.8조).

예제 6. 소명 "*quilegiaefolia*"는 제60.8조에 따라 *aquilegiifolia* (*Aquilegi-*와, 연결 모음 *-i-*, 어미 *-folia*)로 변경되어야 한다.

① 노트 2. 위의 모든 예의 하이픈은 단지 설명을 위해서 이용한 것이다. 속명과 종소명의 하이픈 사용에 대해서는 제20.3조, 제23.1조 및 제60.9조 참조.

권고 60H

60H.1. 새로운 속명 또는 새로운 이름 전의 소명 어원에 대한 설명은 특히 의미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명하게 해야 한다.

제61조

61.1. 어떠한 학명이라도 단지 1개의 정자법상의 이형체 <orthographical variant>만이 합법적으로 출판된 것으로 취급한다. 즉, 제60조 (인쇄 상 또는 정자법상의 오류와 표준화), 제14.11조 (철자 보전), 및 제32.2조(부적당한 라틴어 어미)가 규정하였을 경우는 제외하고 원전 출판에 표현된 형 (단, 제6.10조 참조)을 말한다.

61.2. 이 규약의 목적상 단 1개 명명규약상의 기준표본만을 포함하는 경우에 변형철자 (정자법상의 이형체)는 학명 또는 최종소명 (인쇄 상 잘못을 포함)의 여러 철자, 함성형 및 어형변화형이 된다.

예제 1. *Nelumbo* Adans. (1763)와 "*Nelumbium*" (Jussieu 1789)은 *Nymphaea nelumbo* L.에 근거한 속명의 철자의 형태이며, 변형철자 (정자법상의 이형체)로 다루진다. 마찬가지로, *Musineon* Raf. (1820)과 "*Musenium*" (Nuttall 1840, 의도적인 철자의 수정)은 모두 *Seseli divaricatum* Pursh를 기준표본으로 하기 때문에, 정자법상의 이형체이다.

예제 2. *Selaginella apus* Spring (1840)의 소명은 동격의 명사이기 때문에, *apus*는 *Lycopodium apodum* L. (1753)에서 이용된 형용사 *apodus*의 정자법상의 이형체로 볼 수 없다. Spring은 *L. apodum*을 *S. apus*의 이명으로 인용하였지만, 대신 전자의 소명을 채택하고 "*S. apoda*"를 출판했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S. apus*는 출판되었을 때 명명법상 불필요하며 제52.1조에 의해 서명이 된다.

61.3. 원 출판에 새로운 분류군의 이름이나 대치명 (replacement name)의 변형철자 (정자법상의 이형체)가 제시될 경우 제60조의 조항에 일치하고 권고에 가장 적합한 것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 형체가 조항을 따르고 모두 잘 일치한다면 유효하게 출판된 본문 (제29-31조)중에서 최초의 명명자는 이형체 가운데 1개를 명시적으로 채택하며, 다른 이형체는 반드시 배제한다 (권고 42A.2도 참조).

61.4. 학명의 변형철자 (정자법상의 이형체)는 그 이름이 합법적으로 출판된 형으로 수정된다. 이런 이형체가 출판에 기재될 때에는 언제나 옳게 인쇄된 것으로 취급한다.

① 노트 1. 완전한 인용을 할 때에는, 학명의 수정되기 전의 정자법상의 원형을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고 50F).

61.5. 같은 기준표본에 근거한 혼동되는 유사명은 변형철자 (정자법상의 이형체)로 취급한다 (다른 기준표본에 근거한 혼동을 유발하는 유사한 학명, 제53.3-53.5조 참조).

예제 3. "*Geaster*" (Fries, 1829)와 *Geastrum* Pers. (1794): Pers. (1801)는 같은 기준표본을 가진 유사한 학명이다 (Taxon 33: 498, 1984를 참조). 이 학명은 2개의 다른 명사 *aster* (*asteris*)와 *astrum* (*astri*)에서 유래하지만 변형철자 <정자법상의 이형체>로 다루진다.

제2절

성 <Gender>

제62조

62.1. 속명은 고전적인 사용이나 명명자의 원래의 사용과는 관계없이 학명상의 전통에 의해 정해진 성을 유지한다. 학명상의 전통에 없는 속명은 명명자에 의해 주어진 성을 유지한다 (단, 제62.4조 참조).

① 노트 1. 속명에 대한 전통이 존재한다면, 그리스어 또는 라틴어와 일치하는 고전적인 성이 유지되지만, 다를 수도 있다.

***예제 1.** 전통에 따르면, *Adonis* L., *Atriplex* L., *Diospyros* L., *Eucalyptus* L'Hér., *Hemerocallis* L., *Orchis* L., *Stachys* L. 및 *Strychnos* L. 은 여성으로 취급한다. 반면, *Lotus* L.와 *Melilotus* Mill. 은 남성으로 한다. *Cedrus* Trew와 *Fagus* L. 은 그 어미가 남성을 의미하지만 다른 대부분의 고전어에서 채택된 수목의 학명처럼 전통적으로 여성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해당 성을 그대로 유지한다. 마찬가지로, *Rhamnus* L.은 Linnaeus가 이 속명을 남성으로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형이다. *Erigeron* L. (남성), *Phyteuma* L. (중성) 및 *Sicyos* L. (남성) 또한 역시 Linnaeus가 다른 성을 선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에 따라 고전적 성으로 재확인하였다.

62.2. 합성어의 속명은 그 합성형 주격에서 마지막 단어의 성을 따른다. 그러나 어미가 변경되었을 경우는 이에 따라 성도 변화한다.

예제 2. 학명 *Parasitaxus* de Laub. (1972)는 초기 출판 때 남성형으로 취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형이다. 이 속명은 그 마지막 부분이 *Taxus* L.에 일치하는 합성어로, *Taxus*는 전통적으로 여성형으로 취급하는 속명이다 (제62,1조).

예제 3. 합성어의 속명이면서 마지막 단어가 변경된 예로, *Dipterocarpus* C. F. Gaertn., *Stenocarpus* R. Br.이 있다. 그리스어의 남성 어미 *-carpos* (또는 *-carpus*)로 끝나는 모든 다른 합성어로, 예로, *Hymenocarpus* Savi는 남성형이 있다. *-carpa* 또는 *-carpaea*로 끝나는 것은 여성형으로, 예로, *Callicarpa* L.과 *Polycarpaea* Lam., *-carpon*, *-carpum*이 있다. 또한 *-carpium*로 끝나는 것은, 예로, *Polycarpon* L., *Ormocarpum* P. Beauv. 및 *Pisocarpium* Link 중성형이다.

(a) *-botrys*, *-codon*, *-myces*, *-odon*, *-panax*, *-pogon*, *-stemon* 및 다른 남성어로 끝나는 합성어는 남성이다.

예제 4. 속명 *Andropogon* L.과 *Oplonanax* (Torr. & A. Gray) Miq.는 초기 출판할 때 저자에 의해 중성형으로 취급되었지만 모두 남성형이다.

(b) *-achne*, *-chlamys*, *-daphne*, *-glochis*, *-mecon*, *-osma* (여성 그리스어 *οσμη*, *osme*가 근대적인 전사) 및 다른 여성어로 끝나는 합성어는 여성이다. 어미가 *-gaster*로 끝나는 학명의 경우는 예외로,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여성이어야 하나, 전통을 따라서 남성으로 다룬다.

예제 5. *Tetraglochis* Poepp., *Triglochis* L., *Dendromecon* Benth. 및 *Hesperomecon* Greene는 초기 출판할 때 중성형으로 취급되었지만, 모두 여성형이다.

(c) 합성어의 어미가 *-ceras*, *-dendron*, *-nema*, *-stigma*, *-stoma* 및 다른 중성어는 중성이다. 어미가 *-antohs* (또는 *-anthus*), *-chilos* (*-chilus* 또는 *-cheilos*) 및 *-phykos* (*-phycos* 또는 *-phycus*)로 끝나는 학명은 그리스 단어의 성인 *ανθος*, *anthos*, *Χεῖλος*, *cheilos* 및 *φυκος*, *phykos*는 중성이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전통적 남성으로 취급한다.

예제 6. *Aceras* R. Br.과 *Xanthoceras* Bunge는 초기 출판할 때 여성형으로 취급되었지만, 모두 중성형이다.

62.3. 임의로 만들어진 속명, 또는 속명으로 사용된 지방어명 또는 형용사로 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속명의 명명자들에 의해 정해진 성을 따른다. 만약 원 명명자가 성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는 다음 명명자가 성을 선정해도 좋으며, 유효하게 출판되면 (제29-31조) 그 성을 수용하여야 한다 (권고 42A,2도 참조).

예제 7. *Taonabo* Aubl. (1775)은 여성형으로, Aublet의 2종은 *T. dentata*와 *T. punctata*이기 때문이다.

예제 8. *Agati* Adans. (1763)는 성의 지정 없이 출판되었다. Desvaux (J. Bot. Agric. 1: 120. 1813)는 유효하게 출판된 출판물 중에서 이 속명을 초기 출판 후에 처음으로 채택한 저자로서 여성형으로 지정하였다. Desvaux의 지정은 수용된다.

예제 9. *Manihot* Mill. (1754)의 초기 성은 다어명 (polynomials)의 몇 증명에서 밝혀진 것처럼 여성형이다. 따라서 *Manihot*은 여성형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62.4. 원 명명자가 지정한 성에 관계없이 속명의 어미가 *-anthes*, *-oides* 또는 *-odes*로 끝나는 속명은 여성으로, *-ites*로 끝나는 것은 남성으로 다루어진다.

i 노트 2. 제14,11조는 속명의 특정성의 보전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권고 62A

62A.1. 속이 2개 또는 그 이상의 속으로 분할되는 경우 새로운 속명의 성은 유지되는 속명의 성과 같아야 한다 (권고 20A,1(i)과 60(B)도 참조).

예제 1. *Boletus* L.: Fr.이 분할되었을 때, 분할된 속은 주로 남성의 속명이 주어졌다. 즉, *Xerocomus* Quél. (1887), *Boletellus* Murrill (1909) 등 이다.

제3부

규약 관리를 위한 규정

#3.1. 국제식물학회 명명규약은 국제식물학회 총회에서 명명법부서 (Nomenclature Section)가 제안한 규약 개정의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개정할 수 있다.¹

#3.2. 명명상임위원회는 국제식물분류학연합 (IAPT) 산하에 설치하며, 이 위원회의 위원은 국제식물학회에서 선출한다. 위원회는 위원을 선임해서 소위원회 (subcommittees)를 설치하는 권한을 가진다; 취임을 원하는 임원은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다.

(1) 전체위원회 (General Committee)는 타 위원회의 간사, 조사-위원장 (rapporteur-général), 국제식물분류 연합 회장과 간사 및 명명위원에서 임명한 최소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명명법 부서 (Nomenclature Section)에 임명한다. 조사-위원장은 국제식물학회에 명명법 제안의 출판을 담당한다.

(2) 관속식물위원회 (Nomenclature Committee for Vascular Plants)

(3) 선타류명명위원회 (Nomenclature Committee for Bryophytes)

(4) 균류명명위원회 (Nomenclature Committee for Fungi)

(5) 조류명명위원회 (Nomenclature Committee for Algae)

(6) 화석식물명명위원회 (Nomenclature Committee on Fossils)

(7) 편집위원회 (Editorial Committee)는 국제식물학회에서 채택된 사안을 따르고, 본 명명규약의 작성과 출판을 책임진다. 동 (同) 규약의 편집과 관련해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직전 국제식물학회의 조사-위원장 (rapporteur-général)이 의장을 맡는다.

#3.3. 국제식물학회의 명명사무국 (Bureau of Nomenclature), 명명사무국의 간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논의되는 국제식물학회의 조직위원회에 의해 선출된 명명법 부서 (Nomenclature Section)의 회장, (2) 같은 조직 위원회에 의해 임명된 기록위원, (3) 전 국제식물학회에서 선출된 조사-위원장 (rapporteur-général), (4) 조사-위원장 (rapporteur-général)의 제안에 의한 조직위원회에서 선출된 보고 조사-부위원장 등이다.

1 만약 다른 국제식물학회가 아닐 경우에는 조류, 균류, 식물의 국제명명규약의 권한은 국제생물과학협회나 이와 유사한 당시 기구에 이양이 될 수 있다. 전체위원회는 조직을 규정하는 권한이 부여된다.

#3.4. 명명법상의 제안에 대한 투표에는 다음 2가지가 있다. (a) 예비적 지침을 의미하는 우편 투표와 (b) 국제식물학회의 명명법부서 <Nomenclature Section>에서 최종, 그리고 구속력 있는 투표.

투표 유자격자:

(a) 예비 우편 투표:

- (1) 국제식물분류학연합의 회원.
- (2) 제안자.
- (3) 명명상임위원회의 위원.

❶ 노트 1. 개인 투표권을 수집하거나 또는 양도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b) 명명부서 <Nomenclature Section> 회의에 있어서의 최종투표:

- (1) 동(同) 부회의 공식적으로 등록된 모든 구성원. 개인 투표권의 수집이나 양도는 허락하지 않는다.
- (2) 국제식물학회 명명법사무국에 의해 작성되어 전체위원회 <General Committee>에 제출된 목록에 올린 연구기관의 공식 대표 또는 대리인 마지막 승인을 위해서 이런 연구기관에는 해당 목록에 특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1-7표의 투표권이 주어진다. 넓은 의미로 어떤 연구기관도 단일 7표 이상 투표권을 가질 수 없다. 연구기관의 투표권을 특정 부 대리에게 양도할 수 있지만, 1명이 개인 투표권 1표를 포함시켜 15표 이상 행사할 수 없다. 연구기관의 표는 특정 제안에 대해 특별한 방법으로 투표권을 계산하기 때문에 명명법사무국에 보관할 수 있다.¹

1 각 국제식물학회 전에, 다음 명명법부서 (전 명명위원에 관한 투표권이 명시되지 않은)에서 투표를 원하는 기관은 국제식물학회에 1개 혹은 그 이상의 투표권의 부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반드시 통보하여야 하며, 분류학적 활동의 수준에 대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부칙1

잡종의 학명

제H.1조

H.1.1. 잡종인 것은 곱셈기호 ×의 사용, 또는 분류군의 계급을 의미하는 용어인 접두어 “notho-”¹를 붙이는 것으로 표시한다.

제H.2조

H.2.1. 이미 명명된 분류군 간의 잡종은 각각의 분류군의 학명 사이에 곱셈기호 ×을 삽입해서 표시할 수 있다. 이 표현 전체를 이후 '잡종표시'라 부른다.

예제 1. *Agrostis L. × Polypogon Desf.*; *Agrostis stolonifera L. × Polypogon monspeliensis (L.) Desf.*; *Melampsora medusae Thüm. × M. occidentalis H. S. Jacks.*; *Mentha aquatica L. × M. arvensis L. × M. spicata L.*; *Polypodium vulgare subsp. prionodes (Asch.) Rothm. × P. vulgare L. subsp. vulgare*; *Salix aurita L. × S. caprea L.*; *Tilletia caries (DC.) Tul. & C. Tul. × T. foetida (Wallr.) Liro.*

권고 H.2A

H.2A.1 잡종표시 (잡종식)에서는 보통 알파벳순으로 학명 또는 소명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잡의 방향은 잡종표시 (잡종식) 안에서 성의 부호 (우: 암컷, ♂: 수컷)를 포함시켜서 표시하거나, 암컷 식물을 먼저 두어서 표시한다. 알파벳순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순서의 기준표본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제H.3조

H.3.1. 2개 또는 그 이상 보다 많은 분류군 사이에 생긴 잡종에도 학명을 적용할 수 있다. 명명법상 취지를 위해, 분류군이 잡종인 것은 곱셈기호 ×를, 속간잡종의 학명에서는 학명 앞에, 종간잡종에서는 소명 앞에 표시하거나, 분류군의 계급을 나타내는 용어에 접두어 “notho-” (“n-”으로 생략 가능)을 붙여서 표시 한다 (제3.2조 및 제4.4조 참조). 이러한 분류군은 모든 잡종분류군이라 부른다.

1 그리스어 νόθος, 의 잡종이라는 의미

예제 1. ×*Agropogon* P. Fourn. (1934); ×*Agropogon littoralis* (Sm.) C. E. Hubb. (1946), *Melampyris* ×*columbiana* G. Newc. (2000); *Mentha* ×*smithiana* R. A. Graham (1949), *Polypodium vulgare* nothosubsp. [또는 nsubsp.] *mantoniae* (Rothm.) Schidlay (Futák, Fl. Slov. 2:225. 1966), *Salix* ×*capreola* Andersson (1867). (잡종분류군의 추정 또는 기존의 양친의 조합은 각각 제H.2조 예제 1에 제시됨)

H.3.2. 잡종분류군은 적어도 한쪽 부모의 분류군이 판명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추정만 할 경우 지정하여서는 안 된다.

H.3.3. 동일명 및 이명 판단을 위해서 곱셈기호 × 와 접두어 “notho-”는 무시된다.

예제 2. ×*Hordelymus* Bachtcev & Darevsk. (1950) (*Elymus* L. × *Hordeum* L.)은 *Hordelymus* (Jess.) Harz (1885)의 후동일명이다.

예제 3. *Digitalis grandiflora* L. × *D. purpurea* L.의 인공교잡에 의해 만들어진 육중 재배품종 4배체 (truebreeding tetraploid)는 이를 선호한다면, *D. mertonensis* B. H. Buxton & C. D. Darl. (1931)라 부를 수 있다. *Triticum* L.의 기준표본인 *T. aestivum* L. (1753) (밀)은 자연에서 발견되지 않고, 몇몇 야생종의 계통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이 되지만, 종으로 취급하고 있다. *Phlox divaricata* subsp. *laphamii* (A. W. Wood) Wherry (Morris Arbor. Monogr. 3: 41. 1955)로 알려진 분류군은, Levin (Evolution 21: 92-108. 1967)에 의하면 *P. divaricata* L. subsp. *divaricata*와 *P. pilosa* subsp. *ozarkana* Wherry와의 교배에서 유래된 안정된 산물이다. *Rosa canina* L. (1753)는 과거의 교잡 기원이라고 생각된 배수체이지만, 종으로 취급한다.

권고 H.3A

H.3A.1. 명명된 잡종에 있어 곱셈기호 ×는 학명 또는 소명에 속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부분이 아니며, 이는 이런 연관성을 표시하는 것이다. 곱셈기호와 학명 내지 소명의 최초의 문자 사이의 간격은 필요하다면, 읽기 쉽게 적당히 둔다.

① 노트 1. 잡종 방식에 있어서 곱셈기호 ×의 위치는 항상 양친의 학명 사이에 있으며 양자로부터 간격을 띄어 둔다.

H.3A.2. 만약 곱셈기호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문자의 (이탤릭이 아님) “x”로 대체시킨다.

제H.4조

H.4.1. 부모 분류군이 모두 추정 가능하거나, 이미 알고 있을 때, 잡종분류군은 그 양친으로 여겨지는 분류군에 속하는 개체 간의 교잡으로부터 유래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개체를 포함하여 한계를 정한다 (즉, F₁ 뿐만 아니라, 이에 이은 자손세대의 개체와 이 사이의 역교배 <back-cross>나 조합에 의해 태어난 개체를 포함). 따라서 특정한 잡종표시 <잡종식>에 해당하는 단 1개의 정명 <correct name>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적절한 계급에 있어서 (제H.5조) 가장 먼저 출판된 적명 (제6.5조)이며, 같은 잡종표시 <잡종식>가 적용되는 다른 학명은 이 학명의 이명이 된다 (단, 제52조 노트 3 참조).

예제 1. *Oenothera ×drawertii* Renner ex Rostański (1966)와 *O. ×wienii* Renner ex Rostański (1977)는 모두 잡종 *O. biennis* L. × *O. villosa* Thunb.에 적용되는 학명으로 판단된다. 이들 2개의 잡종종의 학명의 기준표본은 전체의 유전자 구성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지만, 먼저 출판된 학명을 정명으로 하며, 이후 출판된 학명은 해당 정명의 이명으로 취급된다.

① 노트 1. 중간잡종 및 하위 계급의 잡종분류군에 변이는 제H.12조를 따르거나, 적절하다면,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에 따라 취급할 수 있다.

제H.5조

H.5.1. 잡종분류군의 적절한 계급은 그 추정 또는 이미 알고 있는 양친의 분류군과 같은 계급이다.

H.5.2. 추정 가능하거나, 이미 알고 있는 양친의 분류군의 계급이 같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잡종분류군의 적절한 계급은 양친의 분류군의 계급 중에서 가장 하위가 된다.

예제 1. *Triticum laxum* Fr. (1842)에 근거한 조합 *Elymus ×laxus* (Fr.) Melderis & D. C. McClint. (1983)는 잡종표시(잡종식) *E. farctus* subsp. *boreoatlanticus* (Simonet & Guin.) Melderis × *E. repens* (L.) Gould의 잡종에 대해 출판되었지만, 이 조합은 이 잡종표시에 대한 계급의 관점에서 부적절하다. 그러나 *E. farctus* (Viv.) Melderis와 *E. repens* 사이의 모든 잡종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는 정명이다.

예제 2. Radcliffe-Smith는 잡종종의 학명 *Euphorbia ×cornubiensis* Radcl.-Sm. (1985)를 *E. amygdaloides* L. × *E. characias* subsp. *wulfenii* (W. D. J. Koch) Radcl.-Sm에 대해 출판했지만, 이는 옳지 않다. *E. amygdaloides*와 *E. characias* L. 사이의 모든 잡종에 대해 올바른 잡종종의 학명은 *E. ×martini* Rouy (1900)이다. 후에, 적절한 조합인 *E. ×martini* nothosubsp. *cornubiensis* (Radcl.-Sm.) Radcl.-Sm을 출판하였다 (Taxon 35: 349. 1986). 그러나 학명 *E. ×cornubiensis*는 *E. amygdaloides* × *E. wulfenii* W. D. J. Koch라는 잡종표시로 표기되는 잡종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올바른 표기 학명이다.

① 노트 1. 잡종분류군이 잡종표시(잡종식)에 대하여 부적당한 계급의 학명이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학명은 그 잡종표시(잡종식)에 대하여는 잘 못된 것이지만, 옳을 수도 있고, 또는 이후에 옳게 볼 수도 있다 (제52조 노트 3도 참조).

권고 H.5A

H.5A.1 종 또는 종이하의 계급에서 새로운 잡종분류군의 학명을 출판할 때 명명자는 그 학명 기준표본의 이미 알고 있거나, 또는 추정상의 양친에 관해서 보다 하위 계급 수준에서의 분류학적인 동일성에 관한 어떤 정보라도 제시해야 한다.

제H.6조

H.6.1. 속간잡종의 학명 (즉, 2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속간의 잡종에 대한 속 계급의 학명)은 단축 잡종표시(잡종식)이거나, 단축 잡종표시(잡종식)와 동등하다 (단, 제 11.9조 참조).

H.6.2 두 속간잡종 속명은 양친 속에 대해 채택된 속명이 1개의 단어로 결합된 단축 잡종표시(잡종식)이다. 즉, 한 부모 속명의 첫 부분 또는 전부와 다른 속명의 마지막 부분 또는 전부(단, 양쪽 모두 전부가 아닌)를 사용해서 만들어지고, 또 임의대로 이것을 연결 모음으로 합성한 한 단어가 된다.

예제 1. ×*Agropogon* P. Fourn. (1934) (*Agrostis* L. × *Polypogon* Desf.); ×*Gymnanacamptis* Asch. & Graebn. (1907) (*Anacamptis* Rich. × *Gymnadenia* R. Br.); ×*Cupressocyparis* Dallim. (1838) (*Chamaecyparis* Spach × *Cupressus* L.); ×*Seleniphyllyum* G. D. Rowley (1962) (*Epiphyllum* Haw. × *Selenicereus* (A. Berger) Britton & Rose)

예제 2. *Amaryllis* L. × *Crinum* L.에 대해서는 ×*Amarcrinum* Coultts (1925)가 옳고, "×*Crindonna*"은 옳지 않다. ×*Crindonna* 잡종표시(잡종식)는 Ragionieri (1921)가 동일 속간잡종에 대해 제안하였지만, 그 속명은 한쪽 부모로부터 채택된 속명(*Crinum*)과 다른 쪽에 대해 채택된 속명(*Amaryllis*)의 이명(*Belladonna* Sweet)에서 조합되었다. 따라서 제H.6조에 위배되므로, 제32.1조(c)에 의해 합법적으로 출판되지 않았다.

예제 3. 학명 ×*Leucadenia* Schltr. (1919)는 *Leucorchis* E. Mey. × *Gymnadenia* R. Br.에 대해 옳지만, 만약 *Leucorchis* 대신 속명 *Pseudorchis* Ség.가 채택된다면, ×*Pseudadenia* P. F. Hunt (1971)가 옳다.

예제 4. Boivin (1967)는 *Phippsia* (Trin.) R. Br. × *Puccinellia* Parl.의 속간잡종으로 판단되는 속에 대해 ×*Maltea*로 출판하였다. 이는 단축 잡종표시가 아니므로 이 속간잡종에 이 학명 사용이 불가하며, 올바른 정명은 ×*Pucciphippsia* Tzvelev (1971)이다. 그러나 Boivin은 라틴어로 기재문을 출판하고 기준표본을 지정하였으므로, *Maltea* B. Boivin은 합법적으로 출판된 속명이 된다. 만약 이 기준표본이 속간잡종이 아니라 독립된 속으로 취급된다면 이 속명은 올바른 표기가 된다.

H.6.3 4개 또는 그 이상의 속에서 유래된 속간잡종의 학명은, 인명에 어미 *-ara*를 더해서 만든다. 그러나 잡종 속명은 8음절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학명은 단축 잡종표시(잡종식)로 인정을 받는다.

예제 5. ×*Beallara* Moir (1970) (*Brassica* R. Br. × *Cochlioda* Lindl. × *Miltonia* Lindl. × *Odontoglossum* Kunth).

H.6.4. 3개 속 간의 속간잡종의 학명은 다음 (a)나 (b)중 하나가 된다. (a) 부모의 속에 계 사용되고 있는 3개의 속명이 8음절을 넘지 않는 1개의 단어로 결합된 단축 잡종표시(잡종식)에서, 3개의 속명 중의 1개의 전체 또는 처음 부분, 다른 1개의 전체 또는 그 외에 적당한 부분, 다음에 3번째의 1개의 전체 또는 마지막 부분을 붙여서 만들어지며(단, 3속 전부에 대해서 전체는 사용하지 않음), 임의지만, 1개 또는 2개의 연결 모음으로 잇거나, (b) 4속 또는 그 이상의 속에서 유래하는 속간잡종의 학명에 비슷한 형으로 만들어지는 학명, 즉, 인명에 어미 *-ara*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학명이다.

예제 6. ×*Sophrolaeliocattleya* Hurst (1898) (*Cattleya* Lindl. × *Laelia* Lindl. × *Sophronitis* Lindl.); ×*Vascostylis* Takakura (1964) (*Ascocentrum* Schltr. ex J. J. Sm. × *Rhynchostylis* Blume × *Vanda* W. Jones ex R. Br.); ×*Rodrettiopsis* Moir (1976) (*Comparettia* Poepp. & Endl. × *Ionopsis* Kunth × *Rodriguezia* Ruiz & Pav.); ×*Devereuxara* Kirsch (1970) (*Ascocentrum* Schltr. ex J. J. Sm. × *Phalaenopsis* Blume × *Vanda* W. Jones ex R. Br.).

권고 H.6A

H.6A.1. 잡종 속의 학명이 인명에 어미-*ara*를 더해서 만들어질 경우 해당 인물은 잡종분류군의 채집자, 재배자, 또는 해당 분류군 연구자인 것이 바람직하다.

제H.7조

H.7.1. 속 내 분류군의 사이의 잡종인 잡종분류군의 학명은, 그 속의 학명과, 잡종 속의 학명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단축 잡종표시 (잡종식) (제H.6.2-4조)인 소명과의 조합이다.

예제 1. 잡종 절 *Ptilostemon* nothosect. *Platon* Greuter (Boissiera 22: 159. 1973)은 *Ptilostemon* sect. *Platyrhaphium* Greuter와 *P.* sect. *Ptilostemon*의 잡종으로 구성된다. 잡종 절 *Ptilostemon* nothosect. *Plinia* Greuter (Boissiera 22: 158. 1973)는 *Ptilostemon* sect. *Cassinia* Greuter과 *P.* sect. *Platyrhaphium*의 잡종으로 구성된다.

제H.8조

H.8.1. 잡종분류군의 학명 또는 소명이 단축 잡종표시 (잡종식)일 경우에는 (제H.6-7조), 그 잡종표시 (잡종식)을 구성하는 부모의 학명은 그 부모의 분류군으로 인정되는 특성의 한계, 소속, 및 계급이 모두 올바르게 표시하여야 한다.

예제 1. 만약 *Triticum* L.이 분류학적인 견해에 따라 *Triticum* (협의)과 *Agropyron* Gaertn.을 포함하고, *Hordeum* L.이 *Hordeum* (협의)과 *Elymus* L.를 포함한다고 해석한다면, *Agropyron*과 *Elymus*사이의 속간잡종은 *Triticum* (협의)와 *Hordeum* (협의)사이의 잡종과 같은 속간잡종 × *Tritordeum* Asch. & Graebn. (1902)에 속한다. 그러나 만약 *Agropyron*이 *Triticum*과 다른 속으로 구별된다면, *Agropyron*과 *Hordeum* (협의 또는 광의) 사이의 잡종은 속간잡종 × *Agrohordeum* E. G. Camus ex A. Camus (1927)에 속한다. 마찬가지로, 만약 *Elymus*가 *Hordeum*과 별개의 속으로 구별된다면, *Elymus*와 *Triticum* (협의 또는 광의) 사이의 잡종은 속간잡종 × *Elymotriticum* P. Fourn. (1935)이 된다. 만약, *Agropyron*과 *Elymus*의 양쪽이 독립 속으로 취급된다면, 이들 사이의 잡종은 속간잡종 × *Agroelymus* E. G. Camus ex A. Camus (1927)이 된다. 이 경우에 × *Tritordeum*은 *Hordeum* (협의)와 *Triticum* (협의) 사이의 잡종에 국한되어, *Elymus*와 *Hordeum*사이의 잡종은 *Hordelymus* (Jess.) Harz (1885)의 후동일명이 되며, 따라서 × *Hordelymus* Bachtcev & Darevsk. (1950)의 대체명 <replacement name>인 × *Elyhordeum* Mansf. ex. Tsitsin & Petrova (1955)이 된다.

예제 2. *Orchis fuchsii* Druce가 *Dactylorhiza fuchsia* (Druce) Soó로 개명되었을 때, *Orchis fuchsii*와 *Coeloglossum viride* (L.) Hartm.의 잡종 × *Orchicoeloglossum mixtum* Asch. & Graebn. (1907)의 학명은 × *Dactyloglossum mixtum* (Asch. & Graebn.) Rauschert (1969)로 수정되어야 한다.

H.8.2. 잡종 속에 대해 -*ara*로 끝나는 학명은 단축 잡종표시 (잡종식)와 동등한 것이며 (제H.6.3-4조와 제H.6.4(b)), 이름이 부여된 부모로부터 유래된 것이 분류학적으로 인정되는 잡종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예제 3. 만약 *Euanthe* Schltr.가 독립의 속으로 인정되면, 동시에 그 유일한 종인 *E. sandieriana* (Rchb.) Schltr.와 *Arachnis* Blume, *Renanthera* Lour. 및 *Vanda* W. Jones ex R. Br.의 3속이 관련된 잡종은 ×*Cogniauxara* Garay & H. R. Sweet (1966)에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반대로 *E. sandieriana*가 *Vanda*에 포함된다면, 동일 잡종은 ×*Holttumara* Holttum (1958) (*Arachnis* × *Renanthera* × *Vanda*)에 속한다.

제H.9조

H.9.1. 합법적으로 출판되기 위해서는 속간잡종 또는 속의 하위 구분의 계급에 위치한 잡종분류군 (제H. 6-7조)의 학명은 그들의 부모인 속 또는 속 이하 계급의 학명에 관한 표현을 수반하면서 유효하게 출판하여야 하지만 (제29-31조 참조), 라틴어 또는 영문이거나 다른 어떠한 언어라도 기재문이나 분류군 고유특징은 필요하지 않다.

예제 1. 합법적으로 출판된 학명: ×*Philageria* Mast. (1872)는 *Lapageria* Ruiz & Pav. × *Philesia* Comm. ex Juss.라는 부모에 대한 기술과 함께 출판되었다. *Eryngium* nothosect. *Alpestris* Burdet & Miège (Candollea 23: 116, 1968)는 그 부모가 *E. sect. Alpina* H. Wolff × *E. sect. Campestris* H. Wolff라는 기술과 함께 출판되었다. ×*Agrohordeum* E. G. Camus ex A. Camus (1927)는 부모가 *Agropyron* Gaertn. × *Hordeum* L.이라는 기술과 함께 출판되었다. 후속 이명의 ×*Hordeopyron* Simonet (1935, "*Hordeopyrum*", 제32.2조 참조)는 같은 부모에 대한 기술과 함께 출판되었다.

1 노트 1. 속간잡종 및 속내분류군 계급의 잡종분류군의 학명은 단축 잡종표시 (잡종식), 또는 그것과 동등하게 다루어지므로 이 학명은 기준표본이 없다.

예제 2. 학명 ×*Ericalluna* Krüssm. (1960)은 *Calluna vulgaris* (L.) Hull × *Erica cinerea* L. 교배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식물에 대해 출판되었다. 이 식물이 잡종이 아닌, *E. cinerea*의 변이 개체라고 간주될 경우와 ×*Ericalluna* Krüssm.이라는 학명은, 이후 *Calluna* Salisb. × *Erica* L., 또는 그렇게 추정되는 식물이 발견된다면 이용 가능하다.

예제 3. ×*Arabidobrassica* Gleba & Fr. Hoffm. (Naturwissenschaften 166: 548, 1979)는 *Arabidopsis thaliana* (L.) Heynth.와 *Brassica campestris* L.의 원형질 융합의 결과 생긴 체세포 잡종이라는 부모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합법적으로 출판되었다. 이 속간잡종명은 *Arabidopsis* Heynth.와 *Brassica* L. 사이의 통상적인 교잡에서 생성된 모든 속간잡종에 대해서도 이용 가능하다.

1 노트 2. 잡종 존재를 예상하는 것만으로 단순 출판된 학명은 제36.1(b)조에 의해 합법적으로 출판한 것이 아니다.

제H.10조

H.10.1. 종 또는 종 이하 계급의 잡종분류군의 학명은 다음 규정을 따라야 한다. (a) 같은 계급에 적용되는 본 명명규약의 본문 (제32.4조 참조) 및 (b) 제H.3.1조의 위배는 수정되어야 하는 오류로 취급한다 (제11.9조 참조).

예제 1. 잡종 종명, *Melampsora ×columbiana* G. Newc. (Mycol. Res. 104: 271. 2000)는 *M. medusae* Thüm과 *M. occidentalis* H. S. Jacks.와의 잡종에 대해, 라틴어의 기재와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의 지정과 함께 합법적으로 출판되었다.

❶ **노트 1.** 종 또는 종 이하 분류군으로 출판된 후에 잡종분류군으로 간주된 분류군은, 제3조 및 제4조를 따르고, 제50조의 적용에 의해 계급을 변경하지 않고 잡종분류군으로서 표시할 수 있다 (반대 방향의 변경에도 해당됨).

H.10.2. 다음은 잡종표시 (잡종식)로 보며, 진정한 소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즉, 부모의 학명 소명을 변경하지 않은 채 하이픈으로 연결시킨 이름, 한쪽 소명의 어미만을 변경한 것, 또는 한쪽 부모의 속명에 (어미를 변화시킬지 또는 변화시키지 않고) 다른 한쪽 부모의 소명을 연결시킨 이름이다.

예제 2. Maund (Bot. Gard. 5: No. 385, t. 97. 1833)에 의해 출판된 *Potentilla "atrosanguinea-pedata"*는 *Potentilla atrosanguinea* Lodd. ex D. Don × *P. pedata* Nestl.을 의미하는 잡종식으로 간주한다.

예제 3. *Verbascum "nigro-lychnitis"* (Schiede, Pl. Hybr.: 40. 1825)는 *V. lychnitis* L. × *V. nigrum* L.의 잡종식으로 간주한다. 이 잡종에 대한 올바른 이명 <2개 이름, binary name>은 *V. ×schiedeanum* W. D. J. Koch (1844)이다.

예제 4. *Acaena ×anserovina* Orchard (1969) (*A. anserinifolia* (J. R. Forst & G. Forst.) J. Armstr. × *A. ovina* A. Cunn.)의 소명은 (권고 H.10A에 반함), 첫 번째 부모 소명의 첫 부분과 2번째 부모 소명의 전부를 결합한 것이다. 첫 번째의 소명의 어미 이상의 부분이 제외되어 있어서 *anserovina*가 진정한 소명이다.

예제 5. *Micromeria ×benthamineolens* Svent. (1969) (*M. benthamii* Webb & Berthel. × *M. pineolens* Svent.)의 소명은 (권고 H.10A에 반함), 첫 번째 부모 소명의 첫 부분과 두 번째 부모 소명의 두 번째 부분을 결합한 것이다. 어느 쪽의 소명도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benthamineolens*는 진정한 소명이다.

❶ **노트 2.** 종 또는 종 이하의 잡종분류군 학명은 기준표본을 포함하기 때문에 부모에 관한 언급은 그 학명의 적용을 결정하는 보조적인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예제 6. *Quercus ×deamii* Trel. (Mem. Natl. Acad. Sci. 20: 14. 1924)이 기재되었을 때에는 *Q. alba* L. × *Q. muehlenbergii* Engelm.의 잡종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그 기준표본이 채취된 나무의 견과에서 자란 자손을 찾아, Bartlett은 그 부모가 실제로는 *Q. macrocarpa* Michx.와 *Q. muehlenbergii*라고 결론지었다. 현재 이 결론이 받아들여진다면, *Q. ×deamii*란 학명은 *Q. macrocarpa* × *Q. muehlenbergii*에 적용되고, *Q. alba* × *Q. muehlenbergii*는 아니다.

권고 H.10A

H.10A.1 종과 종 이하 계급의 잡종분류군의 학명 소명을 만들 때, 명명자는 부모의 학명 소명의 일부분을 연결시키는 것은 피해야 한다.

권고 H.10B

H.10B.1. 이미 명명된 종 이하 분류군 사이에 생긴 잡종에 대하여 새로운 학명의 출판을 의도하였을 경우 잡종표시(잡종식)가 많이 번잡스럽지만, 보다 정보 양이 많은 것을 고려하여 명명자는 새로운 학명이 정말로 필요한지 아닌지를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한다.

제H.11조

H.11.1. 추정 또는 기준에 알고 있는 부모종이 다른 속에 속하는 중간잡종의 학명은 잡종속명과 중간잡종의 종소명의 조합이다.

예제 1. \times *Heucherella tiarelloides* (Lemoine & É. Lemoine) H. R. Wehrh는 원에 잡종인 *Heuchera* L.와 *Tiarella cordifolia* L.과의 교잡 기원이라고 판단된다 (Stearn, Bot. Mag. 165: ad t. 31. 1948을 참조). 따라서 이 학명의 기본명인 *Heuchera* \times *tiarelloides* Lemoine & É Lemoine (1912)은 옳지 않다.

H.11.2. 추정 또는 기준에 알고 있는 부모분류군이 다른 종에 속하는 경우에는 종 이하 잡종분류군 학명의 최종소명을 중간잡종의 학명의 아래에 두어도 좋다 (단, 권고 H.10B 참조).

예제 2. *Mentha* \times *piperita* L. nothosubsp. *piperita* (*M. aquatica* L. \times *M. spicata* L. subsp. *spicata*); *M.* \times *piperita* nothosubsp. *pyramidalis* (Ten.) Harley (Kew Bull. 37: 604, 1983) (*M. aquatica* L. \times *M. spicata* subsp. *tomentosa* (Briq.) Harley).

제H.12조

H.12.1. 중간잡종 내의 하위의 계급 분류군은 그 계급에서의 부모 분류군을 지정하는 의무조항 없이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계급의 비잡종 종 이하 분류 범주를 이용할 수 있다.

예제 1. *Mentha* \times *piperita* f. *hirsuta* Sole; *Populus* \times *canadensis* var. *serotina* (R. Hartig) Rehder 및 *P.* \times *canadensis* var. *marilandica* (Poir.) Rehder (제H.4조 노트 1도 참조).

① 노트 1. 부모에 관한 언급이 없을 경우 잡종분류군의 한계와 적정 계급을 권장하는 제H.4-5 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① 노트 2. 동일한 종 이하 분류군에는 제H.11.2조와 제H.12.1조는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

H.12.2. 잡종형 (nothomorph)¹ 계급으로 출판된 학명은 출판된 변종학명으로 취급한다 (제50조도 참조).

1 1981년 시드니 학회의 결과로 발행되기 전의 규약판에서는 제H.12조와 관련된 규정 하에서 오직 1개의 계급을 허용하였다. 이 계급은 변종에 해당되며, 그 범주는 잡종형 (nothomorph)으로 사용한다.

용어

규약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

규약에서 정의하지 않은 여러 용어의 특별한 용도도 제시하였다. 이 용어는 아래의 목록에 이탤릭체로 표시하였고, 그 용도에 대해 편집상의 설명을 덧붙였다.

admixture, [Not defined]

채집품에 섞인 혼합물 (표본). [미정의] - 특히 상대적으로 적은 구성분으로 분류군을 의미하거나, 채집품 중 채집자의 의도와 다른 분류군인 구성요소, 채집품 또는 그 일부가 기준표본으로 포함되지 않는 그 혼합물 (표본)은 무시된다 (제8.2조).

alternative family name (nomen alternativum)

대체과명. 제18.5조에 의해 합법적으로 출판된 것으로 취급하고,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8개의 각각의 과명에 대한 대체명 (alternative name) (제18.6조)으로 인정되는 과명. 각각은 제18.1조에 의해 속명에서부터 규약대로 만들어짐.

alternative names

대체명. 동일 명명자에 의해 동일 분류군에 대해 동시에 제안된 (제36.2조), 동일 기준표본에 근거한 2개 이상의 다른 학명.

analysis

분석 도표. 독립된 설명문을 수반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생물체의 주요한 일러스트레이션와는 별도로 (그러나 통상 동일 쪽이거나, 동일 도판상의) 동정에 도움이 되는 세부사항을 나타낸 그림 또는 여러 군의 그림 (제38.9조).

anamorph

무성세대 (아나몰프). 다형적 균류의 체세포 분열에 의한 무성적인 형 (몰프) (제59.1조 노트 1 및 2).

ascription

명명자의 귀속. 인명을 분류군의 새로운 학명, 기재문, 또는 분류군 고유특징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 (제46.3조).

author citation

명명자 인용. 학명의 설정 또는 처음 도입에 책임이 있는 명명자를 명기하는 것. 이러한 경우 명명자의 이름은 학명에 첨부함 (제46-50조).

automatic typification

자동기준표준화. (1) 명명법상 잉여명이면서, 서명으로 여러 조항 하에서 채택해야 하는 학명의 기준표본에 따른 기준지정 (제7.5조) (2) 속보다 상위 계급에 있는 분류군의 학명, 그 학명에 근거한 속명은 기준에 따른 기준 지정 (제10.6조, 제10.7조).

autonym

자동명. 채택된 합법적인 속명 또는 종명 기준표본을 각각을 포함한 속명의 하부구분 또는 종 내 분류군의 학명에서, 속명 또는 종소명을 최종소명으로 반복함으로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학명. 자동명의 최종소명에는 명명자 인용을 할 수 없다 (제22.1조, 제26.1조). [속보다 위의 계급에 자동명은 존재하지 않음.]

available. [Not defined]

이용 가능한. [미정의] - 분류군 한계 내에 기준표본이 포함되고, 그 소명을 사용해도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학명의 소명에 대해 적용함 (제11.5조 및 제15.5조) [**이용가능명** <*available name*> 참고]

available name

이용가능명. "국제동물명명규약"에 의해 출판된 학명은 "국제조류·균류·식물명명규약"에 의해 합법적으로 출판된 학명과 동등한 계급을 가짐 (제45.1조 각주).

avowed substitute

공인대치명. **대치명** <*replacement name*> 참고.

basionym

기본명. 새로운 조합 또는 새로운 계급명에 따라 출판된 적명. 기본명은 새로운 조합 또는 새로운 계급명의 최종소명과, 학명, 또는 어간을 제공함 (제6.10조) [새로운 계급명 (*name at new rank*), 새로운 조합 (*new combination*). 참고].

binary combination (binomial)

이명 조합 (이명의, 2개 이름의, binary). 속명에 종소명을 결합하여 만들어진 종의 학명 (제23.1조).

binary designation. [Not defined]

이명 <2개 이름, binary> 명칭. [미정의] - 합법적으로 출판되지는 않고, 명백하게 이명 조합 (2개 이름 조합)처럼 보이는 것 (제46.4조; 제6.3조도 참고).

binding decision

구속력있는 결정. (1) 학명이 합법적 출판이 되었는지 여부 (제38.4조), 또는 (2) 복수의 학명을 동일명으로 간주 할지 여부 (제53.5조)에 대해서 전체위원회 (General Committee)에 의한 권고로 국제식물학회에서 승인된 결정. 구속력 있는 결정은 (1)은 부칙7 또는 (2) 부칙8에 목록화 되어 제시됨.

binomial

이명의 (2개 이름의). 이명 조합 (binary combination) 참고.

combinatio nova (comb. nov.)

조합. **새로운 조합 (new combination)** 참고.

combination

조합. 속명과 그것에 결합된 1개 또는 2개의 소명으로 된, 속보다 하위의 계급 분류군의 학명 (제6.7조).

compound

합성어. 2개 이상의 그리스어 또는 라틴어의 단어에서 유래한 요소를 결합한 학명 또는 소명이며, 표준적인 합성어는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 명사 또는 소명을 변화한 어간의 형태를 취함(권고 60G.1(a)) [**모조 합성어 (pseudocompound)**도 참고].

confusingly similar names

혼동되는 유사명. 정자법상 비슷하여 혼동될 수 있는 속 또는 속보다 하위 계급의 학명. 이것은 기준표본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명으로 다뤄지며 (제53.3조, 제53.4조), 기준표본이 같을 경우에는 변형철자 (정자법상의 이형체)로 다뤄진다 (제61.5조). 전자를 동일명으로 취급할지 여부는 국제식물학회의에서 구속력 있는 결정이 내려짐 (제53.5조, 부칙8).

conserved name (nomen conservandum)

보전명. (1) 출판시에 비합법적이거나, 선취권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합법적이고 다른 특성의 학명에 대해 우선한다고 지정된 과, 속, 또는 종의 학명, 또는 경우에 따라서 속 이하 계급 또는 종 이하 분류군의 학명 (제14.1-14.7조, 제14.10조, 부칙2, 부칙3 및 부칙4). (2) 보전 절차에 따라 기준표본, 정자법, 또는 성이 결정된 학명 (제14.9조, 제14.11조, 부칙3, 부칙4).

correct name

정명. 특성의 한계, 지위 및 계급을 가진 분류군에 대해서 조항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 학명 (제6.6조, 제11.1조, 제11.3조, 및 제11.4조).

cultivar

재배품종.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에 정의 및 규정되어 있는 농학, 임학 및 원예학의 생물체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독립된 카테고리 (제28조 노트 2, 4와 5).

date of name

합법적으로 출판된 날짜. 학명의 합법 출판날짜 (제33.1조).

descriptio generico-specifica

속종명 동시기재. 속과 그것에 포함되는 유일종의 학명을 동시에 합법적 출판하는 1개의 기재문 (제38.5조).

description. [Not defined]

기재문. [미정의] - 분류군의 특징에 대해 출판된 기술, 기재문 (또는 분류군 고유특징)은 학명의 합법적 출판에 필요함 (제38.1조(a) 및 제38.3조).

descriptive name

기술명. 속명으로부터 형성되지 않은 과 이상의 분류군 이름 [과보다 상위 계급에 있는 분류군의 속명에 근거하지 않는 학명 (제16.1조(b))].

designation. [Not defined]

명칭. [미정의] - 학명과 같이 이름을 지칭하는 용어지만 (1) 합법적으로는 출판되어 있지 않고, 이 규약상 학명이 아닌 이름 (제6.3조 및 제46.4조), 또는 (2) 학명으로 볼 수 없는 이름 (제20.4조, 제23.4조 및 제23.6조).

diagnosis

분류군 고유특징. 어떤 분류군을 다른 분류군과 구별하기 위해 그 분류군의 저자가 언급한 기술 (제38.2조). 분류군 고유특징 (또는 기재문)은 학명의 합법적 출판에 필요함 (제38.1조(a)).

duplicate

복제표본. 같은 채집자에 의해 동시에 만들어진, 단일 종 또는 종 내 분류군의 단일 채집품의 부분 (제8.3조 각주).

effective publication

유효 출판. 제29-31조에 합치한 출판 (제6.1조).

element (as applied to typification). [Not defined]

요소 (기준설정 시 적용). [미정의] - 기준으로 인정되는 1개의 표본 또는 일러스트레이션. 속 또는 속 이하 계급의 학명에 대한 기준의 지정 또는 인용을 위해 그 기준 표본과 동등하다고 간주되는 종의 학명에도 적용 (제10.1조).

epithet. [Not defined]

소명. [미정의] - 조합에서 속의 학명과 계급을 나타내는 용어 이외의 단어를 말함. 하이픈으로 연결된 복수의 단어는 한 단어와 동등함 (제6.7조, 제11.4조, 제21.1조, 제23.1조 및 제24.1조, 제H.10.2조 참고).

epitype

에피타입 (epitype, 추가기준표본).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 lectotype, 선정기준표본), 또는 이전에 지정된 네오타입 (neotype, 신기준표본) 또는 합법적 출판 된 학명에 관련한 모든 원재료에 근거하여도, 그 학명을 분류군에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한 동정이 불가능 할 경우 기준표본을 해석하기 위해 선택한 1개의 표본 또는 일러스트레이션 (제9.8조).

ex-type (ex typo), ex-holotype (ex holotypo), ex-isotype (ex isotypo), etc.

전생체기준표본, 전생체정가기준표본, 전생체복제기준표본 등. 학명의 기준이 대사적으로 비활성인 상태에서 영구히 보존된 배양주일 경우 그 기준표본에서 얻은 살아있는 분리주 (권고 8B.2).

final epithet

최종소명. 속 이하 계급의 계급이거나, 종 또는 종 이하 분류군의 계급이거나, 어떤 조합 중에서 최후에 위치하는 소명 (제11.4조 각주).

forma specialis

특별 품종. 특이 생리형 (특별품종, special form) 참고.

fossil-taxon

화석분류군. 화석을 기준표본으로 하는 학명을 가진 분류군 (구조의 분류군을 제외) (제1.2조 및 제13.3조).

gathering. [Not defined]

채집품. [미정의] - 같은 채집자에 의한 동일 장소, 동일 시간에 채집된 1개 또는 복수의 표본으로 된 한 쌍의 수집품을 말함 (제8.2조 및 제8.3조 각주).

heterotypic synonym (taxonomic synonym).

이형이명 (분류학적 이명). 같은 분류군을 나타내는 학명과는 서로 다른 기준표본에 근거한 학명 (제14.4조). 국제동물명명규약과 국제세균명명규약 (세균규약)에서는 각각 “주관적 이명 (subjective synonym)”으로 불림 (제14.4조 각주).

holotype

홀로타입 (정기준표본). 저자에 의해 사용된, 또는 명명법상의 기준표본으로 저자에게 지정된, 단 1개의 표본 또는 일러스트레이션 (제9.1조).

homonym

동일명. 다른 기준표본에 근거한 동일 계급의 분류군에 대해 출판된 학명과 같은 철자의 다른 학명 (제53.1조). 노트. 다른 유형에 기초하여 같은 최종소명을 가진 동일 속 내의 하위계급 또는 같은 종 내의 종내 분류군의 학명은, 연결사가 학명의 일부는 아니기 때문에, 계급이 다르더라도 동일명임 (제53.4조).

homotypic synonym (nomenclatural synonym)

동형이명 (명명법상 이명). 학명이 다르지만 같은 기준표본에 근거한 학명 (제14.4조); 국제동물명명규약과 국제세균명명규약 (세균규약)에서는 각각 “객관적 이명 (objective synonym)”으로 불림 (제14.1조 각주).

hybrid formula

잡종표시 (잡종식). 잡종 부모인 분류군의 학명과 그들 사이의 곱의 기호로 구성된 표현 (제H.2.1조).

illegitimate name

서명. 합법적으로 출판된 학명이며 특정의 조항 (제6.4조), 주로 잉여명 (제52조)과 동일명 (제53조 및 제54조)에 관한 규약에 어긋남.

illustration

일리스트레이션. 생물체의 특징을 묘사 (촬영)한 1개의 도면 또는 사진. 즉, 압엽표본 (눌러 만든 표본)의 화상이나 주사전자현미경 사진 (제8.1조 각주).

improper Latin termination

부적합한 라틴어미. 규약에서 규정한 어미변화를 따르지 않는 학명 또는 소명의 어미 (제16.3조, 제18.4조, 제19.7조, 및 제32.2조) 부적당한 라틴어미 사용.

indelible autograph

손으로 제작된 인쇄물 <수기인쇄>. 기계적 또는 그래픽 인쇄기술 (석판인쇄, 오프셋, 금속 에칭 (동판화), 등)에 의해 복제된 친필 자료 (제30.5조).

indirect reference

간접적 출전 인용. 이전에 유효하게 출판된 기재문 또는 분류군 고유특징을 사용하는 것 (제38.14조) 또는 기본명 (basonym)이나 대치이명 <replaced synonym> (replaced synonym)이 존재하는 것 (제41.3조)을 명명자 인용이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해 (비록 암시적이라 할지라도) 명백하게 지시함.

informal usage

임의사용. 동일 계급을 나타내는 용어를 분류학상의 배열에서 2개 이상의 불연속인 위치에서 사용함. 주. 이런 사용된 학명은 합법적으로 출판되었지만, 계급이 부여되지 않음 (제37.8조).

infraspecific. [Not defined]

종 이하. [미정의] – 종보다 하위의 계급.

isoepitype

아이조에피타입 (후기준복제표본). 에피타입 (epitype, 추가기준표본)의 복제표본 (권고 9C). 역주. 명명법용어집을 참고

isolectotype

아이조렉토타입 (선정기준복제표본).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lectotype, 선정기준표본)의 복제표본 (권고 9C).

isoneotype

아이조신타입 (신기준복제표본). 네오타입 (neotype, 신기준표본)의 복제표본 (권고 9C).

isonym

동명. 같은 기준표본에 근거하여 다른 시기에 별개의, 아마도 다른 명명자에 의해 출판된 동일한 학명. 노트: 가장 먼저 출판된 동명 (同名)만이 명명법상의 계급을 가짐(제6조, 노트 2, 단, 제14.15조 참고).

isosyntype

아이조신타입 (등가기준복제표본). 신타입 (syntype, 등가기준표본)의 복제표본 (제9.12조).

isotype

아이조타입 (동기준표본).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의 복제표본 (제9.4조)

lectotype

렉토타입 (선정기준표본). 출판 시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이 없을 경우 또는 1개의 기준표본이 2개 이상의 분류군에 속할 때, 원재료 중 명명법상의 기준표본으로 지정된 1개의 표본 또는 일러스트레이션 (제9.2조).

legitimate name

적명. 규약에 따르고 있는 합법적으로 출판된 학명 중 서명이 아닌 학명 (제6.5조) [서명 (*illegitimate name*)도 참고].

misplaced term

잘못 적용된 용어. 이 규약에 지정되어 있는 상대적인 순서에 반해서 이용된 계급을 의미하는 용어 (제18.2조, 제19.2조, 제37.6조 및 제37조 노트 1).

monotypic genus

1속1종 (단형속). 단 하나의 이명 (2개 이름, binomial)만이 합법적으로 출판된 속 (제38.6조) (**유일종**도 참고).

name

학명. 적명이거나 서명에 상관없이, 합법적으로 출판된 이름 (제6.3조) (명칭도 참고).

name at new rank (status novus)

새로운 계급명. 이전에 다른 계급으로 출판된 적명에 근거한 새로운 학명으로서, 이전에 다른 계급으로 출판된 정명은 기본명이며, 새로운 계급명의 최종소명, 학명, 또는 어간이 됨 (제6.10조 및 제7.4조) (**기본명, 새로운 조합**도 참고).

name of a new taxon

새 분류군명. 그 자체가 합법적으로 출판된 학명, 즉 이전에 합법적으로 출판된 학명에 근거하지 않은 이름; 이것은 새로운 조합, 새로운 계급명, 대치명 (replacement name) (공인대치명)이 아님 (제6.9조).

neotype

네오타입 (신기준표본). 원재료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소재불명일 경우에 한해서, 명명법상의 기준표본으로 이용하기 위해 선택된 1개의 표본, 또는 일러스트레이션 (제9.7조).

new combination (combinatio nova)

새로운 조합. 속보다 하위 계급의 새로운 이름으로, 이전에 출판된 적명에 근거하며, 이 적명은 기본명이 되고, 새로운 조합의 최종소명을 제공함 (제6.10조 및 제7.4조) (**기본명, 신분류명**도 참고).

new name. [Not defined]

새로운 학명. [미정의] – 합법적으로 출판된 학명 (**명명법상 새로운 제안**도 참고).

nomen alternativum (nom. alt.)

대체명. 대체과명 (alternative family name) 참고.

nomen conservandum (nom. cons.)

보전명. 보전명 (conserved name) 참고.

nomen novum (nom, nov.)

대치명. 대치명 <replacement name> 참고.

nomen nudum (nom, nud.)

나명. 기재문 또는 분류군 고유특징을 수반하지 않거나, 또는 기재문 또는 분류군 고유특징의 출전 인용을 수반하지 않고 출판된 새 분류군의 지정 (제38조 예제1, 권고 50B).

nomen rejiciendum (nom, rej.)

폐기명. 제14조에 의해 보전된 학명을 위해 폐기된 학명, 또는 제56.1조 (부칙2A, 3, 4, 및 5)에 의한 폐기된 이름 (**폐기명** <rejected name> 참고).

nomen utique rejiciendum (suppressed name)

금지명. 제56.1조에 의해 폐지된 학명, 주식. 이 학명과 이것을 기본명으로 하는 모든 학명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부칙 5 참고).

nomenclatural novelty

명명법상 새로운 제안. 일부 또는 전체의 범주. 즉, 새 분류군의 학명, 새로운 조합, 새로운 계급명, 대치명 <replacement name> (제6조 노트 3; 제6조 노트 4도 참고) (**새로운 이름**도 참고).

nomenclatural synonym

명명법상 이명. 동형이명 (*homotypic synonym*) 참고.

nomenclatural type

명명법상 기준. 분류군의 학명에 영구적으로 관련된 요소 (제7.2조).

non-fossil taxon

비화석 분류군. 비화석 기준표본에 근거한 학명의 분류군 (제13.3조).

nothogenus

속간잡종. 2개 이상의 다른 속간의 잡종으로 생긴 속 (제3.2조).

nothomorph

잡종형. 이전에 유일한 종 이하 분류군을 의미하던 용어. 변종과 같은 계급으로 종간잡종으로 인정. 잡종형으로 출판된 학명은 현재 변종의 학명으로 취급받고 있음 (제H.12.2조 및 각주).

nothospecies

종간잡종. 2종 이상의 다른 종간에 발생한 잡종의 종 (제3.2조).

nothotaxon

잡종분류군. 잡종의 분류군 (제3.2조 및 제H.3.1조).

objective synonym

객관적 이명. 동형이명 (*homotypic synonym*) 참고.

opera utique oppressa

인용금지 작업 (도서). 인용금지 작업 (*suppressed works*) 참조.

organism

생물체. 이 규약에서 이 용어는 전통적으로 식물학자, 균류학자, 및 조류학자가 연구한 생물체에 대해서만 적용 (전문 제2 각주, 전문 제8).

original material

원재료.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을 고를 수 있는 다수의 표본 및 일러스트레이션 (자세한 사항은 제9.3조 및 노트 2.4 참고. 제9.10조도 참고).

original spelling

원전철자. 새 분류군의 학명 또는 대치명 <replacement name>이 합법적으로 출판되었을 때 채택된 철자 (제60.2조).

orthographical variants

변형철자 (정자법상의 이형체). 단 1개의 명명법상의 기준표본에 근거한 학명 또는 그 최종소명의 다양한 철자, 합성어, 및 어형변화형 학명 (제61.2조).

page reference

쪽 인용. 기본명 또는 대치이명 <replaced synonym>이 합법적으로 출판되거나, 또는 프로토토크 <protologue>에 기재된 쪽 번호 또는 복수 쪽 번호의 인용(제41조 노트 1).

paratype

파라타입 (중기준표본). 만약 프로토토크 <protologue>에 2개 이상의 표본이 동시에 기준표본으로 지정된 경우 홀로타입 (holotype, 정기준표본)도 아이조타입 (isotype, 동기준표본)도 아니고, 또한 신타입 (syntype, 등가기준표본) 중 1개의 표본도 아닌 프로토토크 <protologue>에 인용된 표본 (제9.6조).

position. [Not defined]

지위. [미정의] - 분류 체계 중에서, 계급에 관계없이 한 분류군이 다른 분류군에 대해 상대적인 배치를 한 경우 (원칙 IV, 제6.6조 및 제11.1조).

priority

선취권. 적명 (제11조), 또는 선동일명 (제53조 노트 1)의 합법적 출판의 날짜, 또는 기준표본지정 (제7.9조 및 제7.10조)의 날짜에 의해 확립되는 선행 우위의 권리.

protologue

프로토로그. 학명의 합법적 출판과 함께 출판된 모든 관련 사항, 즉, 기재문, 분류군 고유특징, 일러스트레이션, 출전 인용, 이명리스트, 분포지리적 자료, 표본인용, 논의 및 견해 (권고 8A.4 각주).

provisional name

예정명. 관련 분류군, 또는 분류군의 한계, 지위 또는 계급 등 미래에 수용될 것을 기대하여 제안된 지정이름 (제36.1조).

pseudocompound

모조합성명. 2개 또는 그 이상의 그리스어 또는 라틴어의 단어에 유래한 요소를 결합한 학명 또는 소명, 그리고 마지막에 위치하지 않은 명사 또는 형용사, 변화한 어간이 아닌 격변화 어미를 수반한 단어로 구성된 경우 (권고 G.1(c)) (**합성어도** 참고).

rank. [Not defined]

계급. [미정의] - 분류학상의 체급에서 분류군의 상대적인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함 (제2.1조).

rejected name

폐기명.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름으로 규정된 학명. 본 명명규약 중 다른 규정에 우선되는 제14조 또는 제56.1조 (**폐기명**과 **금지명** 참고)에 의해 합법적 조치나 또는 출판 때 명명법상 잉여명 (제52조)이거나, 후동일명 (제53조 및 제54조)이기 때문.

replaced synonym

대치이명. 대치명 (공인대치명, avowed substitute)에 근거하여 이미 기준에 출판된 학명이 적명, 또는 서명인 경우. 적법인 경우에는 대치된 이명이 최종소명, 학명, 또는 대치되는 학명의 어간이 되지 않음 (제6.11조).

replacement name (avowed substitute, nomen novum)

대치명 (공인대치명) 이전에 출판된 적명 또는 서명에 근거한 새로운 학명. 이전의 학명은 대치이명 <replaced synonym>이며, 그것이 적명이었어도 최종소명, 학명, 또는 대치되는 학명의 어간이 되지 않음 (제6.11조 및 제7.3조).

sanctioned name

인가명. 인가 작업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선동일명이나 경합하는 이명에 대해 보전되어 있는 것처럼 취급되는 균류의 학명 (제15조).

special form (forma specialis)

특이생리형 (특별품종). 생리학적 견지에서 특징이 부여되지만 형태학적 견지에서 는 거의 또는 전혀 특징을 부여할 수 없는 기생 생물, 특히 균류의 분류군으로, 이에 대한 명명법은 이 규약에서는 취급하고 있지 않음 (제4조 노트 4).

specimen

표본. 종 또는 종 이하 분류군의, 동시에 만들어진 채집품 또는 채집품의 일부이며, 혼합물은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한 개의 품으로 붙어 있거나, 같은 표본의 일부가 레이블에 명시된 부분으로 몇 점의 부품이 붙어있음 (제8.2조 및 제8.3조).

status

계급. (1) 유효 출판, 합법적 출판, 적법성 및 정확함에 입각하는 명명법상의 입장 (제6조 및 제12.1조). (2) 분류학적 계층체계에서 분류군의 계급 (**새로운 계급명** 참고).

status novus (stat. nov.)

새로운 계급명. 새로운 계급의 학명 (name at new rank) 참조.

subdivision of a family

과와 속 사이의 분류계급. 과와 속 사이 계급의 모든 분류군 (제4조 노트 2).

subdivision of a genus

속 이하 계급. 속과 종 사이 계급의 모든 분류군 (제4조 노트 2).

subjective synonym

주관적 이명. 이형이명 (heterotypic synonym) 참조.

superfluous name

잉여명. 출판 시에 명명자에 의해 한계가 정해진 분류군이 학명의 기준표본을 분명하게 포함하도록 적용된 학명, 또는 조항에서 채택해야 하는 소명 (제52.1조).

suppressed name

금지명. 금지명 (nomen utique rejiciendum) 참고.

suppressed works (opera utique oppressa)

인용금지 작업. 특정계급의 학명이 합법적으로 출판되지 않고, 금지하도록 규정한 작업 (제34.1조 및 부칙VI).

synonym. [Not defined]

이명. [미정의] - 같은 분류군에 적용되는 복수의 학명 중 1개 (**이형이명, 동형이명** 참고).

syntype

신타입 (등가기준표본). 홀로타입 (holotype, 정가기준표본)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프로토크로그 <protologue>에 인용된 모든 표본, 또는 프로토크로그 <protologue>에 기준표본으로 동시에 지정된 2개 또는 그 이상의 표본들 (제9.5조).

tautonym

반복명. 종소명이 속의 학명을 정확하게 반복하는 이명 (2개 이름) 지정 (제23.2조).

taxon (taxa)

분류군 (분류군들). 모든 계급의 분류학적 군 (제1.1조).

taxonomic synonym

분류학적 이명. 이형이명 (heterotypic synonym) 참고.

teleomorph

유성세대 (텔리몰프, 완전세대형). 다형적 균류의 감수분열에 의한 유성적 형태 (제59조 노트 1 및 노트 2).

type

기준표본, 명명법상의 기준 (nomenclatural type) 참고.

type designation. [Not defined]

기준표본 지정. [미정의] - 학명의 기준표본 확립을 명확히 하는 기술. 즉, (1) 프로토크로그 <protologue>에서 홀로타입 (holotype, 정가기준표본) (제 9.1조) 또는 신타입 (syntype, 등가기준표본) (제9.5조)을 지정하는 것, 또는 (2) 제9-10조의 규정에 의해 제7.7조-10조에 따라 렉토타입 (lectotype, 선정기준표본), 네오타입 (neotype, 신기준표본), 또는 에피타입 (epitype, 추가기준표본)을 나중에 지정하는 것.

unispecific. [Not defined]

유일종의. [미정의] - 단일 종이 있는.

validate. [Not defined]

합법화. [미정의] - 학명을 합법적으로 출판하는 것. 학명을 합법적으로 출판시킨 기재문이나 분류군 고유특징, 일러스트레이션의 문맥에서 이용된 것 (예: 제38조 예제 20, 제43.3조, 및 제46조 예제 6)을 지칭.

validly published

합법적인 출판. 유효하게 출판되고, 제32-제45조, 또는 H.9조를 따르는 것 (제6.2조) (**명칭, 학명** 참조).

voted example

투표의 예. 이 규약 중에서 별표 (*)로 제시된 것과 관련 조항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나 그 사례를 적절하게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명상의 실재를 규정하기 위해 국제식물학회에서 의결된 예제. 따라서 투표의 예제는 규약과 동등하며, 규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만 편집위원회에 의해 제시된 다른 예제와는 비교된 비교됨 (제7조 *예제13 각주).

학명 색인

이 색인은 규약 본문과 부록1에 실린 모든 학명을 포함하고 있다. 주제 색인 (172쪽)처럼 모든 참조는 쪽이 아니라, 규약의 조항, 권고 등을 표시하였다.

<i>Abies alcoquiana</i> Veitch ex Lindl.	60.Ex.14	- <i>cinereus</i> Schaeff.	23.Ex.13
- <i>balsamea</i> (L.) Mill.	23.Ex.5, 23.Ex.6	- <i>compactus</i> [unranked] <i>sarcocephalus</i> (Fr. : Fr.) Fr.	Rec.50E.Ex.7
- " <i>koreana</i> var. <i>yuanbaoshanensis</i> "	30.Ex.11	- <i>equestris</i> L.	15.Ex.5
<i>Abutilon glaziovii</i> K. Schum., not " <i>glazioui</i> "	60.Ex.15	- <i>ericetorum</i> Pers.	15.Ex.1
<i>Acacia bancroftiorum</i> Maiden, not " <i>Bancrofti</i> "	60.Ex.38	- <i>ericetorum</i> Pers. : Fr.	15.Ex.1
- <i>brandegeana</i> I. M. Johnst., not " <i>brandegeana</i> "	60.Ex.17	- <i>fascicularis</i> Huds. : Fr.	41.Ex.6
<i>Acaena anserinifolia</i> (J. R. Forst. & G. Forst.)	J. Armstr. H.10.Ex.4	- <i>flavorineus</i> Pers.	15.Ex.5
- × <i>anserovina</i> Orchard	H.10.Ex.4	- " <i>octogesimus nonus</i> " (Schaeffer, 1763)	23.Ex.13
- <i>ovina</i> A. Cunn.	H.10.Ex.4	- <i>sarcocephalus</i> Fr. : Fr.	Rec.50E.Ex.7
<i>Acanthoeca</i> W. N. Ellis	53.Ex.10	- <i>umbelliferus</i> L.	15.Ex.1
<i>Acanthoica</i> Lohmann	53.Ex.10	<i>Agathopyllum</i> Juss.	55.Ex.1
<i>Acer pseudoplatanus</i> L.,	60.Ex.24	- <i>neesianum</i> Blume	55.Ex.1
not " <i>pseudo-platanus</i> "	60.Ex.6	<i>Agati</i> Adans.	62.Ex.8
<i>Aceras</i> R. Br.	62.Ex.6	× <i>Agroelymus</i> A. Camus	11.Ex.40, H.8.Ex.1
" <i>Acorales</i> " (Kirschleger, 1853 as <i>Acoroidées</i>)	16.Ex.5	× <i>Agrohordeum</i> A. Camus	H.8.Ex.1, H.9.Ex.1
<i>Acorales</i> Reveal	16.Ex.5	× <i>Agropogon</i> P. Fourn.	H.3.Ex.1, H.6.Ex.1
<i>Acrospelion</i> Bess.	46.Ex.34	- <i>littoralis</i> (Sm.) C. E. Hubb.	H.3.Ex.1
<i>Adenantha</i> <i>bicolor</i> Moon	7.Ex.9	<i>Agropyron</i> Gaertn.	11.Ex.40, H.8.Ex.1, H.9.Ex.1
<i>Adiantum capillus-veneris</i>	23.Ex.1	<i>Agropyron desertorum</i> var. <i>pilosiusculum</i>	(Melderis) H. L. Yang 41.Ex.15
<i>Adonis</i> L.	62.Ex.1	- - f. <i>pilosiusculum</i> Melderis	41.Ex.15
<i>Aesculus</i> L.	11.Ex.6	- <i>japonicum</i> Honda, non (Miq.) P.Candargy	27.Ex.1, 55.Ex.3
<i>Aextoxicaceae</i>	18.Ex.1	- - var. <i>hackelianum</i> Honda	27.Ex.1, 55.Ex.3
<i>Aextoxicon</i>	18.Ex.1	"var. <i>japonicum</i> "	27.Ex.1
<i>Agaricaceae</i>	37.Ex.6	- <i>kamoji</i> Ohwi, not " <i>kamojii</i> "	60.Ex.34
<i>Agaricus</i>	41.Ex.6	- <i>kengii</i> (Keng.) Tzvelev	41.Ex.24
- "tribus" <i>Hypoloma</i> Fr. : Fr.	41.Ex.6	<i>Agrostis</i> L.	23.Ex.14, H.2.Ex.1, H.6.Ex.1
- "tribus" <i>Pholiota</i> Fr. : Fr.	37.Ex.11	[-" <i>A. Reygeri</i> I", " <i>A. Reyg. II</i> ", " <i>A. Reyg. III</i> ",	
- <i>atricapillus</i> Batsch	15.Ex.4	<i>A. alpina. II.</i> (Honckeny, 1782)	23.Ex.14
- <i>cervinus</i> Hoffm. : Fr., non Schaeff.	15.Ex.4	- <i>alpina</i> Scop.	23.Ex.14
		- <i>radiata</i> L.	52.Ex.15
		- " <i>reygeri-prima</i> "	23.Ex.14

- <i>stolonifera</i> L.	H.2.Ex.1		46.Ex.24
<i>Albizia</i> , not " <i>Albizzia</i> "	60.Ex.40	- <i>fasciculatus</i> L.	52.Ex.15
<i>Alcicirnopteris hallei</i> J. Walton	1.Ex.1	- <i>martini</i> Roxb.	41.Ex.4
<i>Aletris punicea</i> Labill.	52.Ex.13	- <i>sorghum</i> subsp. <i>halepensis</i> (L.) Hack.	53.Ex.15
" <i>Alexitoxicon</i> "	51.Ex.1	- - var. <i>halepensis</i> (L.) Hack.	53.Ex.15
<i>Algae</i>	13.1(e)	" <i>Anema</i> " (Nylander, 1879)	38.Ex.8
<i>Alkanna</i> Tausch	11.Ex.17	<i>Anema nummulariellum</i> Forsell,	
<i>matthioli</i> Tausch	11.Ex.17	not "Nyl."	38.Ex.8
- <i>tinctoria</i> Tausch	11.Ex.17	<i>Anema alpina</i> L.	9.Ex.4
<i>Allium antonii-bolosii</i> P. Palau, not " <i>a.-bolosii</i> "	60.Ex.30	<i>Anemone</i> × <i>elegans</i> Decne. pro sp.	11.Ex.39
		- <i>hupehensis</i> (Lemoine & E. Lemoine)	
<i>Aloe perfoliata</i> L.	24.Ex.4	Lemoine & E. Lemoine	11.Ex.39
- - var. <i>vera</i> L.	6.Ex.12, 24.Ex.4	- × <i>hybrida</i> Paxton	11.Ex.39
- <i>vera</i> (L.) Burm. f.	6.Ex.12	- <i>vitifolia</i> Buch.-Ham. ex DC.	11.Ex.39
<i>Alpinia</i> Roxb., nom. cons., non L.	55.Ex.4	<i>Angiosperma</i>	16.Ex.2
- <i>galanga</i> (L.) Willd.	55.Ex.4	<i>Anisothecium</i> Mitten	6.Ex.3
- <i>languas</i> J. F. Gmel.	55.Ex.4	<i>Annona</i> , not " <i>Anona</i> "	60.Ex.40
<i>Alsophila kalbreyeri</i> Baker, non C. Chr.	6.Ex.1, 41.Ex.19	" <i>Anonymos</i> " (Walter, 1788)	20.Ex.9
- " <i>kalbreyeri</i> " (C. Christensen, 1905)	41.Ex.19	- " <i>aquatica</i> " (Walter, 1788)	35.Ex.3
- <i>podophylla</i> Baker, non Hook.	6.Ex.1	<i>Anthemis</i> subg. <i>Ammanthus</i>	
<i>Alternaria</i> Nees	14.Ex.13	(Boiss. & Heldr.) R. Fern	6.Ex.10
<i>Alyssum flahaultianum</i> Emb.	39.Ex.3	- <i>valentina</i> L.	10.Ex.1
<i>Alyxia ceylanica</i> Wight, not " <i>zeylanica</i> "	60.Ex.1	<i>Anthocerotae</i>	13.1(c)
<i>Amaranthus</i> L., not " <i>Amarantus</i> "	60.Ex.1	<i>Anthophyta</i>	16.Ex.2
× <i>Amarcrinum</i> Coutts	H.6.Ex.2	" <i>Anthopogon</i> "	20.4.Note.2
<i>Amaryllidaceae</i>	53.Ex.1	<i>Anthyllis</i> sect. <i>Aspalathoides</i> DC.	
<i>Amaryllis</i> L.	H.6.Ex.2		41.Ex.1, 49.Ex.2
<i>Amblyanthera</i> Müll. Arg., non Blume	53.Ex.7	- <i>barba-jovis</i> L., not " <i>Barba jovis</i> "	23.Ex.16
<i>Ammanthus</i> Boiss. & Heldr.	6.Ex.10	<i>Antidesmatinae</i> Müll. Arg.	Rec.19A.Ex.1
<i>Amomum zedoaria</i> Christm.	53.Ex.4	<i>Antidesmatoideae</i> Hurus.	Rec.19A.Ex.1
<i>Amorphophallus campanulatus</i> Decne.	48.Ex.2	<i>Antirrhinum spurium</i> L.	11.Ex.8
<i>Amphiprora</i> Ehrenb.	45.Ex.1	<i>Apiaceae</i>	18.5
<i>Amphitecna</i> Miers	14.Ex.7	<i>Apios</i>	52.Ex.10
<i>Amygdalaceae</i> Marquis	19.Ex.5	- <i>americana</i> Medik.	52.Ex.10
<i>Amygdaloideae</i> Arn.	19.Ex.5	- <i>tuberosa</i> Moench	52.Ex.10
<i>Amygdalus</i> L.	19.Ex.5	<i>Apium</i> L.	18.5
<i>Anacamptis</i> Rich.	H.6.Ex.1	<i>Apocynum androsaemifolium</i> L.,	
<i>Anacyclus</i> L.	10.Ex.1	not " <i>fol. [foliis] androsaemi</i> "	23.Ex.18
- <i>valentinus</i> L.	10.Ex.1	<i>Aquilegia</i>	Rec.60G.Ex.2
<i>Anaeromyces polycephalus</i> (Y. C. Chen & al.)	29.Ex.1	× <i>Arabidobrassica Gleba</i> & Fr. Hoffm.	H.9.Ex.3
Fliegerová & al.	29.Ex.1	<i>Arabidopsis</i> Heynh.	H.9.Ex.3
<i>Anagallis arvensis</i> subsp. <i>caerulea</i> Hartm.	53.Ex.16	- <i>thaliana</i> (L.) Heynh.	H.9.Ex.3
- - var. <i>caerulea</i> (L.) Gouan	53.Ex.16	<i>Arabis beckwithii</i> S. Watson	47.Ex.1
- <i>caerulea</i> Schreber, non L.	53.Ex.16	- "Sekt. <i>Brassicarabis</i> " (Schulz, 1936)	39.Ex.1
" <i>Anchusa tinctoria</i> " (sensu Linnaeus, 1762)	11.Ex.17	- "Sekt. <i>Brassicoturritis</i> " (Schulz, 1936)	39.Ex.1
		- <i>shockleyi</i> Munz	47.Ex.1
<i>Andraea angustata</i> Lindb. ex Limpr.	46.Ex.38	<i>Arachnis</i> Blume	H.8.Ex.3
<i>Andromeda polifolia</i> L., not " <i>poliifolia</i> "	60.Ex.22	<i>Arctostaphylos uva-ursi</i> (L.) Spreng.,	
<i>Andropogon</i> L.	62.Ex.4	not " <i>uva-ursi</i> "	60.Ex.26
- <i>drummondii</i> Steud., not "Nees ex Steud."		<i>Ardisia pentagona</i> A. DC.	51.Ex.2
		- <i>quinquegona</i> Blume	51.Ex.2

<i>Areca</i> L.	18.5	“Willd. ex Roem. & Schult.”	46.Ex.12
<i>Arecaceae</i>	18.5	<i>Avena</i>	46.Ex.34
<i>Arenaria</i> L.	11.Ex.12	<i>Baloghia pininsularis</i> Guillaumin	40.Ex.3, 46.Ex.20
- ser. <i>Anomalae</i>	21.Ex.1	<i>Bartlingia</i> Brongn.,	
- <i>stricta</i> Michx.	11.Ex.12	non Rchb. nec F. Muell.	Rec.50C.Ex.3
- <i>uliginosa</i> Schleich. ex Schldl.	11.Ex.12	<i>Bartramia</i>	20.Ex.1
<i>Arnica chamissonis</i> Less.,		<i>Basidiomycota</i>	59.1, 59.Note.3
not “ <i>chamissoi</i> ”	60.Ex.16	<i>Bassia parkii</i> G. Don	9.Ex.7
<i>Aronia arbutifolia</i> var. <i>nigra</i>		<i>Batodendron</i> Chachlov, non Nutt.	43.Ex.2
(Willd.) F. Seym.	41.Ex.14	<i>Bauhinia emarginata</i> Roxb. ex G. Don	52.Ex.9
<i>Artemisia nova</i> A. Nelson	23.Ex.11	- <i>retusa</i> Roxb. (1832) non Poir.	7.Ex.5, 52.Ex.9
<i>Arum campanulatum</i> Roxb.	48.Ex.2	- <i>roxburghiana</i> Voigt,	7.Ex.5, 52.Ex.9
- <i>dracunculul</i> L.	11.Ex.13	- <i>semila</i> Wunderlin	7.Ex.5, 52.Ex.9
<i>Arytera</i> sect. <i>Mischarytera</i>	6.Ex.6	<i>Beallara</i> Moir	H.6.Ex.5
<i>Ascocentrum</i> Schltr. ex J. J. Sm.	H.6.Ex.6	<i>Behen</i> Moench	11.Ex.14
<i>Ascomycetes</i>	16.Ex.2, 38.Ex.7	- “ <i>behen</i> ”	11.Ex.14
<i>Ascomycota</i>	16.Ex.2, 38.Ex.7, 59.1, 59.Note.3	- <i>vulgaris</i> Moench	11.Ex.14
<i>Ascomycotina</i>	16.Ex.2	<i>Belladonna</i> Sweet	H.6.Ex.2
<i>Aspalathoides</i> (DC.) K. Koch	41.Ex.1, 49.Ex.2	<i>Berberis</i> L.	14.Ex.2
<i>Asparagus tamaboki</i> Yatabe,		<i>Besenna</i> A. Rich.	36.Ex.10
not “ <i>tamabokii</i> ”	60.Ex.34	- <i>anthelmintica</i> A. Rich.	36.Ex.10
<i>Asperococcus castaneus</i> Hook	46.Ex.22	<i>Betula alba</i> L., nom. Rej.	Rec.50E.Ex.4
- <i>pusillus</i> Carmich.	46.Ex.22	<i>Biatorina</i> A. Massal.	10.Ex.6
<i>Aspidium berterooanum</i>	Rec.60C.1(c)	- <i>atropurpurea</i> (Schaeerer) A. Massal.	10.Ex.6
<i>Asplenium dentatum</i> L.,		- <i>griffithii</i> (Ach.) A. Massal.	10.Ex.6
not “ <i>Trich. dentatum</i> ”	23.Ex.19	<i>Blandfordia backhousei</i> Gunn	
<i>Aster</i> L.	11.Ex.38, 18.5	& Lindl., not “ <i>backhousii</i> ”	60.Ex.17
- <i>novae-angliae</i> L.,		- <i>grandiflora</i> R. Br.	52.Ex.13
not “ <i>novae angliae</i> ”	60.Ex.26	<i>Blephilia</i>	35.Ex.6
<i>Asteraceae</i> Martinov	18.5, 29.Ex.2, 30.Ex.19	- <i>ciliata</i>	35.Ex.6
× <i>Asterago</i> Everett	11.Ex.38	<i>Blumea</i> DC., non Rchb.	14.Ex.11
<i>Asterostemma</i> Decne.	53.Ex.8	<i>Boletellus</i> Murrill	Rec.62A.Ex.1
<i>Astragalus cariensis</i> Boiss.	53.Ex.3	<i>Boletus</i> L. : Fr.	52.Ex.14, Rec.62A.Ex.1
- (<i>Cycloglottis</i>) <i>contortuplicatus</i>	Rec.21A.Ex.1	- <i>edulis</i> Bull. : Fr.	52.Ex.14
- <i>matthewsiae</i> Podlech		- “ <i>lacrymans</i> ” Wulfen	15.Ex.2
& Kirckhoff, not “ <i>matthewsii</i> ”	60.Ex.36	- <i>piperatus</i> Bull. : Fr.	Rec.50E.Ex.6
- <i>matthewsii</i> S. Watson	60.Ex.36	- <i>ungulatus</i> Schaeff.	23.Ex.13
- <i>rhizanthus</i> Boiss., non Royle	53.Ex.3	- “ <i>vicesimus sextus</i> ” (Schaeffer, 1763)	23.Ex.13
- <i>trimestris</i> L.	9.Ex.8	<i>Bouchea</i> Cham.	Rec.60B.Ex.1
- (<i>Phaca</i>) <i>umbellatus</i>	Rec.21A.Ex.1	<i>Bougainvillea</i>	60.Ex.6
<i>Asterostemma</i> Benth.	53.Ex.8	<i>Bovista dermoxantha</i> Vitt.	57.Ex.1
“ <i>Atherospermaceae</i> ” (Lindley, 1846)	18.Ex.9	- <i>furfuracea</i> (J. F. Gmel.) Pers	57.Ex.1
<i>Atherospermataceae</i> R. Br., “ <i>Atherospermeae</i> ”	18.Ex.9	- <i>limosa</i> Rostr.	57.Ex.1
<i>Athyrium austro-occidentale</i> Ching	60.Ex.25	- <i>plagiochiloides</i> Steph.&Spruce	57.Ex.1
<i>Atriplex</i> L.	23.Ex.11, 62.Ex.1	<i>Brachiolejeunea</i> (Spruce) Steph. & Spruce	41.Ex.9
- “ <i>nova</i> ” (Winterl, 1788)	23.Ex.11	<i>plagiochiloides</i> Steph. & Spruce	41.Ex.9
<i>Atropa bella-donna</i>	23.Ex.1	<i>Brachypodium japonicum</i> Miq.,	
<i>Atropa sideroxyloides</i> Willd.,		not “ <i>iaponicum</i> ”	60.Ex.11
not <i>Atropa sideroxyloides</i> “Roemer & Schultes”,		<i>Braddleya</i> Vell.	53.Ex.9
not <i>bnor A. sideroxyloides</i>		<i>Bradlea</i> Adans.	53.Ex.9

<i>Bradleya</i> Banks ex Gaertn.	53.Ex.9	- <i>monandrum</i> Nutt.	46.Ex.4
<i>Brassia</i> R. Br.	H.6.Ex.5	<i>Calystrix</i> Labill.	55.Ex.2
<i>Brassica</i> L.	18.5, H.9.Ex.3	<i>Cambogia gummi-gutta</i> L., not " <i>G. gutta</i> "	
- <i>campestris</i> L.	H.9.Ex.3		23.Ex.19
- <i>napus</i>	53.Ex.12	<i>Camellia</i> L.	13.Ex.3
- <i>nigra</i> (L.) W. D. J. Koch	23.Ex.5	<i>Campanopsis</i> (R. Br.) Kuntze	11.Ex.2
<i>Brassicaceae</i>	18.5	<i>Campanula</i> sect. <i>Campanopsis</i> R. Br.	11.Ex.2
<i>Brazzeia</i> Baill.	35.Ex.8	" <i>Canarium pimela</i> " (Leenh. 1959)	6.Ex.2
"tribus <i>Brevipedunculata</i> " (Huth, 1895)	37.Ex.8	<i>Canarium pimela</i> K. D. Koenig	6.Ex.2
<i>Bromelia</i>	16.Ex.1	<i>Candida populi</i> Hagler & al.	8.Ex.7
<i>Bromeliineae</i>	16.Ex.1	<i>Canna</i> L.	6.Ex.7
<i>Bromus inermis</i> subsp.		- <i>indica</i> L.	6.Ex.7
<i>pumpellianus</i> (Scribn.) Wagnon	36.Ex.15	<i>Cannaceae</i> Juss.	6.Ex.7
- - var. <i>pumpellianus</i> (Scribn.) C. L. Hitchc.	36.Ex.15	<i>Cantharellus tubaeiformis</i> Fr. : Fr.	Reg.60G.Ex.4
		<i>Capnodium</i> Mont.	57.Ex.2
- <i>mollis</i> L.	23.Ex.5	<i>Cardamine</i> L.	11.Ex.19
- <i>pumpellianus</i> Scribn.	36.Ex.15	<i>Cardaminum</i> Moench	14.Ex.3
- <i>sterilis</i> L.	14.Ex.9	<i>Carex</i> L.	37.Ex.4, Reg.60G.Ex.5
<i>Brosimum</i> Sw.	36.Ex.11	- " <i>bebbii</i> " Olney, nom. nud.	Rec.50B.Ex.1
<i>Brunfelsia</i> L., not " <i>Brunsfelsia</i> "	13.Ex.4	- sect. " <i>Eucarex</i> "	21.Ex.1
<i>Bryopsis</i>	30.Ex.16	- [unranked] <i>Scirpinae</i> Tuck.	37.Ex.4
<i>Bupleurum hamiltonii</i> var. <i>paucifulcrans</i>		- sect. <i>Scirpinae</i> (Tuck.) Kük.	37.Ex.4
(C.Y. Wu ex R.H. Shan & Yin Li) M.L.		- " <i>bebbii</i> : (Olney, 1871)	Rec.50B.Ex.1
Shen & M.F. Watson	46.Ex.17	<i>Carica</i>	Rec.60G.Ex.5
- <i>tenure</i> var. <i>paucifulcrans</i> C.Y. Wu ex R.H.		<i>Carpinaceae</i> Vest	52.Ex.18
Shan & Yin Li.	46.Ex.17	<i>Carpinus</i> L.	52.Ex.18
<i>Cacalia napeaifolia</i> DC., not " <i>napeaefolia</i> "	60.Ex.21	<i>Caryophyllaceae</i> Juss.	18.Ex.6, 19.Ex.7
		<i>Caryophyllales</i>	16.Ex.1
<i>Cactaceae</i> Juss.	18.Ex.3	<i>Caryophyllidae</i>	16.Ex.1
<i>Cactales</i> Dumort. 'Cactarieae'	16.Ex.4	<i>Caryophylloideae</i> Arn.	19.Ex.7
" <i>Cactarieae</i> " (Dumortier, 1829)	16.Ex.4	<i>Caryophyllus</i> Mill. non L.	16.Ex.1, 18.Ex.6, 19.Ex.7
<i>Cactus</i> L.	16.Ex.4, 18.Ex.3, 22.Ex.5, 41.Ex.5	<i>Cassia chamaecrista</i> L.,	22.Ex.9, 41.Ex.8
- [unranked] <i>Melocactus</i> L.	22.Ex.5	[unranked] <i>Chamaecrista</i> L.	22.Ex.9, 32.Ex.1, 41.Ex.8
- <i>ficus-indica</i> L.	41.Ex.5	<i>Castanella</i> Spruce ex Benth. & Hook. f.	10.Ex.2
- <i>mammillaris</i> L.	22.Ex.5	- <i>granatensis</i> Triana & Planch.	10.Ex.2
- <i>melocactus</i> L.	22.Ex.5	<i>Cattleya</i> Lindl.	H.6.Ex.6
- <i>opuntia</i> L.	41.Ex.5	<i>Caulerpa pinnata</i> C. Agardh	6.Ex.14
<i>Cainito</i> Adans.	52.Ex.1	- <i>racemosa</i> (Forssk.) J. Agardh	7.Ex.8
<i>Calandrinia</i>	58.Ex.1	var. <i>racemosa</i>	7.Ex.8
- <i>polyandra</i> Benth., not "(Hook.) Benth."	58.Ex.1	<i>Caulinia</i> Moench, non Willd.	22.Ex.7
" <i>Calicium debile</i> Turn. and. Borr. Mss."		- " <i>sect. Caulinia</i> "	22.Ex.7
(Smith, 1812, pro syn.)	46.Ex.14	- sect. <i>Hardenbergia</i> (Benth.) Kuntze	22.Ex.7
<i>Callicarpa</i> L.	62.Ex.3	<i>Cedrus</i> Trew	62.Ex.1
<i>Callistemon</i>	Rec.60G.Ex.3	<i>Celsia</i> sect. <i>Aulacospermae</i> Murb.	53.Ex.18
<i>Callixene</i> Comm. ex Juss.	14.Ex.5	<i>Cenomyce ecmocyna</i> Ach.	58.Ex.6
<i>Calluna</i> Salisb.	H.9.Ex.2	<i>Centaurea</i>	6.Ex.14
- <i>vulgaris</i> (L.) Hull	H.9.Ex.2	subg. <i>Crupina</i> Pers.	6.Ex.9
<i>Calothyrsus</i> Spach	11.Ex.6	- <i>amara</i> L.	47.Ex.3
<i>Calycotrix</i> Meisn.	55.Ex.2	- - subsp. <i>weldeniana</i> (Rchb.) Kušan	6.Ex.13
-sect. <i>Brachychaetae</i> Nied.	55.Ex.2		
<i>Calyptidium</i> Nutt.	46.Ex.4		

- <i>benedicta</i> (L.) L.	6.Ex.8	- <i>dampieri</i> Lindl.	11.Ex.24
- <i>chartolepis</i> Greuter	6.Ex.14	- <i>formosus</i> (D. Don) Ford & Vickery	11.Ex.24
- <i>crupina</i> L.	6.Ex.9	- <i>oxleyi</i> Lindl.	11.Ex.24
- <i>cyanus</i> L.	6.Ex.14	- <i>speciosus</i> (D. Don) Asch. & Graebn., non (Endl.) Steud.	11.Ex.24
- <i>funkii</i> var. <i>xeranthemoides</i> Lange ex Willk.	46.Ex.32	<i>Climaciodeae</i> Grout, not " <i>Climacieae</i> "	19.Ex.9
- <i>intermedia</i> Mutel	6.Ex.14	<i>Clusia</i> L.	18.5
- <i>jacea</i> L.	47.Ex.3	<i>Clusiaceae</i>	18.5
- - subsp. <i>weldeniana</i> (Rchb.) Greuter	6.Ex.13	<i>Clutia</i> L., not " <i>Cluytia</i> "	60.Ex.13
- - var. <i>weldeniana</i> (Rchb.) Briq.	6.Ex.13	" <i>Clypeola minor</i> " (Linnaeus, 1756)	33.Ex.1
- <i>weldeniana</i> Rchb.	6.Ex.13	<i>Cnicus benedictus</i> L.	6.Ex.8
<i>Centrospermae</i>	16.Ex.2	" <i>Cnidium peucedanoides</i> H. B. et K." (Bentham & Hooker, 1867)	35.Ex.6
<i>Cephaëlis</i>	60.6	<i>Cocculus</i>	58.Ex.5
<i>Cephaelis acanthacea</i> Steyerm.	8.Ex.4	- <i>villosus</i> DC.	58.Ex.5
<i>Cephalotaxus fortunei</i> Hook., not " <i>fortunei</i> "	60.Ex.17	<i>Cochloda</i> Lindl.	H.6.Ex.5
<i>Cephalotos</i> Adans.	53.Ex.13	<i>Codium geppiorum</i> O. C. Schmidt, not "geppii"	60.Ex.37
<i>Cephalotus</i> Labill.	53.Ex.13	<i>Coeloglossum viride</i> (L.) Hartm.	H.8.Ex.2
<i>Ceratocystis omanensis</i> Al-Subhi & al.	31.Ex.4	× <i>Cogniauxara</i> Garay & H. R. Sweet	H.8.Ex.3
<i>Cercospora aleuritidis</i> Miyake	59.Ex.2	<i>Coix lacryma-jobi</i> L., not " <i>lacryma jobi</i> "	60.Ex.26
<i>Cereus jamacaru</i> DC., not " <i>mandacaru</i> "	60.Ex.8	<i>Collaea</i>	Rec.60B.1(a)
<i>Cervicina</i> Delile	11.Ex.2	<i>Collema</i>	58.Ex.3
<i>Chalciporus piperatus</i> (Bull. : Fr.) Bataille	Rec.50E.Ex.6	- <i>cyanescens</i> Rabenh.	58.Ex.3
<i>Chamaecrista</i> (L.) Moench	41.Ex.8	- <i>tremelloides</i> var. <i>caesium</i> Ach.	58.Ex.3
- <i>leonardiae</i> Britton	60.Ex.39	- - var. <i>cyanescens</i> Ach.	58.Ex.3
<i>Chamaecyparis</i> Spach	H.6.Ex.1	<i>Columella</i> Lour.	53.Ex.13
<i>Centaurea intermedia</i> Mutel	6.Ex.14	<i>Columellia</i> Ruiz & Pav.	53.Ex.13
<i>Chenopodium loureiroi</i> Steud., not " <i>loureirei</i> "	60.Ex.17	<i>Combretaceae</i> R. Br.	14.Ex.4
<i>Chloris</i>	52.Ex.15	<i>Combretum</i> Loeffl.	Rec.50E.Ex.2
- <i>radiata</i> (L.) Sw.	52.Ex.15	<i>Comparettia</i> Poepp. & Endl.	H.6.Ex.6
<i>Chlorophyta</i>	16.Ex.2	<i>Compositae</i>	18.5, 53.Ex.4
<i>Chlorosarcina</i> Gerneck	7.Ex.12	<i>Conferva ebenea</i> Dillwyn	7.Ex.3
- <i>elegans</i>	7.Ex.12	<i>Coniferae</i>	16.Ex.2
- <i>minor</i>	7.Ex.12	<i>Conophytum</i> N. E. Br., not "Haw."	36.Ex.4
<i>Chlorosphaera</i> G. A. Klebs	7.Ex.12	- <i>littlewoodii</i> L. Bolus	41.Ex.13
<i>Chrysophyllum</i> L.	52.Ex.1	- <i>marginatum</i> subsp. <i>littlewoodii</i> (L. Bolus) S. A. Hammer	41.Ex.13
- <i>cainito</i> L.	52.Ex.2	<i>Convolvulus</i> L.	20.Ex.1, 37.Ex.3
- <i>sericeum</i> Salisb.	52.Ex.2	- [unranked] " <i>Occidentales</i> " (House, 1908)	37.Ex.3
<i>Cineraria</i> sect. <i>Eriopappus</i> Dumort.	49.Ex.3	- [unranked] " <i>Sepincoli</i> " (House, 1908)	37.Ex.3
<i>Cistus aegyptiacus</i> L.	49.Ex.4	- [unranked] " <i>Soldanellae</i> " (House, 1908)	37.Ex.3
<i>Cladium iridifolium</i> (Bory) Baker	41.Ex.20	- <i>bicoloro</i> Vahl, non Dest.	7.Ex.6
<i>Cladonia abbatiana</i> S. Stenroos	60.Ex.19	- <i>bracteatus</i> Vahl	7.Ex.6
- <i>ecmocyna</i> Leight.	58.Ex.6	- <i>cantabrica</i> L.	23.Ex.6
<i>Cladosporium humile</i> Davis	59.Ex.3	- <i>loureiroi</i> G. Don not " <i>loureirei</i> ",	60.Ex.17
<i>Claudopus</i> Gillet	11.Ex.20	<i>Coralliodes gorgonina</i> Bory	34.Ex.3
<i>Cleistogenes</i> Keng	20.Ex.5	" <i>Coriales</i> " (Lindley, 1833)	16.Ex.4
<i>Clematis</i> L.	30.Ex.15	<i>Coriaria</i>	16.Ex.4
<i>Clianthus</i>	11.Ex.24	<i>Coriariales</i> Lindl.	16.Ex.4
- <i>dampieri</i> Brown	11.Ex.24	<i>Cornus</i> " <i>gharaf</i> " (Forsskål, 1775)	23.Ex.12

- <i>paucinervis</i> Hance, non Heer	11.Ex.36	<i>Cyperus heyneanus</i>	Rec. 60C.1(c)
- <i>sanguinea</i>	23.Ex.1	Cyrrilloideae Torr. & A. Gray 'suborder Cyrilleae'	
<i>Correa</i>	Rec.60B.1(a)		19.Ex.1
<i>Corydalis</i> DC.	49.Ex.5	<i>Cystocoleus ebeneus</i> (Dillwyn) Thwaites	7.Ex.3
- <i>solida</i> (L.) Clairv., not "(Mill.) Clairv."	49.Ex.5	<i>Cytisus</i> Desf.	11.Ex.11
<i>Coscinodisceaceae</i> Kütz., 'Coscinodisceae'	18.Ex.8	- <i>biflorus</i> L'Hér.	11.Ex.11
<i>Costus</i> subg. <i>Metacostus</i>	21.Ex.1	- <i>fontanesii</i> Spach	11.Ex.11
<i>Cotyledon sedoides</i> DC.	11.Ex.18	<i>Daboecia cantabrica</i> (Huds.) K. Koch	23.Ex.5
" <i>Crataegus laurentiana</i> var. <i>dissimilifolia</i> "		× <i>Dactyloglossum mixtum</i>	
(Kruschke, 1965)	40.Ex.5	(Asch. & Graebn.) Rauschert	H.8.Ex.2
<i>Crepis</i>	46.Ex.10	<i>Dactylorhiza fuchsii</i> (Druce) Soó	H.8.Ex.2
- <i>praemorsa</i> subsp. <i>praemorsa</i>	38.Ex.4	<i>Damapana</i> Adans.	14.Ex.11
- - subsp. <i>tatrensis</i>	38.Ex.4	<i>Decarinium</i> Raf.	58.Ex.4
- <i>lyrata</i> (L.) Froel., not <i>C. lyrata</i>		<i>Delesseria bonnemaisonii</i> G. Agardh	7.Ex.2
"(L.) Froel. ex DC."	46.Ex.10	- <i>gmelinii</i> J. V. Lamour.	7.Ex.2
"× <i>Crindonna</i> " (Ragionieri, 1921)	H.6.Ex.2	- <i>palmetta</i> (Stackh.) J. V. Lamour.	7.Ex.2
<i>Crinum</i> L.	H.6.Ex.2	<i>Delissea eleeleensis</i> H. St. John	8.Ex.2
<i>Croton</i> subg. <i>Geiseleria</i> "A. Gray",		<i>Delphinium</i> L.	10.Ex.7, 37.Ex.8
not "(Klotzsch) A. Gray"	58.Ex.4	- " <i>tribus Brevipedunculata</i> " (Huth, 1895)	37.Ex.8
- <i>ciliatoglandulifer</i> Ortega, not " <i>ciliato-glandulifer</i> "	60.Ex.24	- " <i>tribus Involuta</i> " (Huth, 1895)	37.Ex.8
<i>glandulosus</i> L.	58.Ex.4	- <i>consolida</i> L.	10.Ex.7
<i>Cruciferae</i>	18.5	- <i>peregrinum</i> L.	10.Ex.7
<i>Crupina</i> (Pers.) DC.	6.Ex.9	<i>Demidovia tetragonoides</i> Pall.	60.Ex.23
<i>Cucubalus angustifolius</i> Mill.	52.Ex.5	" <i>Dendrobium sibuyanense</i> "	
- <i>behen</i> L.	11.Ex.14, 52.Ex.5	(Lubag-Arquiza & al. 2005)	8.Ex.6, 40.Ex.4
- <i>latifolius</i> Mill.	52.Ex.5	<i>Dendromecon</i> Benth.	62.Ex.5
<i>Cucurbita argyrosperma</i> Huber	26.Ex.6	<i>Dendrosicus</i> Raf.	14.Ex.7
- - var. <i>stenosperma</i> (Pangalo) Merrick		<i>Dentaria</i> L.	11.Ex.19
& D. M. Bates	26.Ex.6	<i>Derbesia</i>	30.Ex.16
- <i>mixta</i> Pangalo	26.Ex.6	<i>Desmidiaceae</i>	13.1(e)
- - var. <i>cyanoperizona</i> Pangalo	26.Ex.6	<i>Desmodium bigelovii</i> A. Gray, not " <i>bigelowii</i> "	60.Ex.15
- - var. <i>mixta</i>	26.Ex.6	- <i>griffithianum</i>	Rec. 60C.1(d)
- - var. <i>stenosperma</i> Pangalo	26.Ex.6	<i>Desmostachya</i> (Stapf) Stapf	53.Ex.12
× <i>Cupressocyparis</i> Dallim.	H.6.Ex.1	<i>Desmostachys</i> Miers	53.Ex.12
<i>Cupressus</i> L.	H.6.Ex.1	× <i>Devereuxara</i> Kirsch	H.6.Ex.6
<i>Curculigo</i> Gaertn., not " <i>Cvrcvligo</i> "	60.Ex.9	<i>Dianthus monspessulanus</i>	23.Ex.1
" <i>Cuscuteae</i> " (Presl, 1822)	38.Ex.17	<i>Dichantheium hirstii</i> (Swallen) Kartesz	Rec.30A.Ex.1
<i>Cuviera</i> DC., nom. cons., non Koeler	52.Ex.17	<i>Dichelodontium</i> Hook. f. & Wilson ex Broth.	46.Ex.16
<i>Cyanea</i>	8.Ex.2	- <i>nitidum</i> (Hook. f. & Wilson) Broth.	46.Ex.16
<i>Cyanobacteria</i>	Prep.8	<i>Dicranella</i> (Müll. Hall.) Schimp.	6.Ex.3
<i>Cyanus</i>	6.Ex.14	<i>Didymopanax gleasonii</i> Britton & Wilson	Rec.46C.Ex.1
- <i>segetum</i> Hill	6.Ex.14	<i>Digitalis grandiflora</i> L.	H.3.Ex.3
<i>Cylindrocladiella infestans</i> Boesw.	41.Ex.12	- <i>mertonensis</i> B. H. Buxton & C. D. Darl.	H.3.Ex.3
<i>Cylindrocladium "infestans"</i> (Peerally, 1991)	41.Ex.12	- <i>purpurea</i> L.	H.3.Ex.3
<i>Cymbidium iansonii</i> Rolfe, not " <i>i'ansonii</i> "	60.Ex.28	<i>Delissea eleeleensis</i> H. St. John	8.Ex.2
<i>Cymbopogon martini</i> (Roxb.) Will. Watson	41.Ex.4	<i>Dillenia</i>	Rec.60B.1(c)
<i>Cyperaceae</i> Juss., "ordo Cyperoideae"	18.Ex.4		

<i>Dionysia</i> Fenzl	11.Ex.7	- - subsp. <i>boreoatlanticus</i>	
- sect. <i>Ariadna</i> Wendelbo	11.Ex.7	(Simonet & Guin.) Melderis	H.5.Ex.1
- sect. <i>Dionysiopsis</i> (Pax) Melch.	11.Ex.7	- × <i>laxus</i> (Fr.) Melderis & D. C. McClint.	
<i>Diospyros</i> L.	58.Ex.7, 62.Ex.1		H.5.Ex.1
- <i>elliptica</i> (J. R. Forst. & G. Forst.) P. S.		- <i>repens</i> (L.) Gould	H.5.Ex.1
Green, not Knowlt.	58.Ex.7	<i>Embelia sarasiniorum</i>	23.Ex.1
- <i>ellipticifolia</i> Bakh.	58.Ex.7	<i>Enallagma</i> Baill.	14.Ex.7
<i>Dipterocarpus</i> C. F. Gaertn.	62.Ex.3	<i>Enantioblastae</i>	16.Ex.2
× <i>Disophyllum</i> ‘Frühlingsreigen’	28.Ex.2	<i>Enargea</i> Banks ex Gaertn.	14.Ex.5
<i>Dodecatheon</i> L.	22.Ex.4	<i>Endolepis</i> Torr., non Schleid.	11.Ex.35
- sect. “ <i>Etubulosa</i> ” (Knuth, 1905)	22.Ex.4	<i>Englerastrum</i> Briq.	Rec.60B.Ex.1
- <i>meadia</i> L.	22.Ex.4	<i>Englerella</i> Pierre	Rec.60B.Ex.1
<i>Donia formosa</i> G. Don	11.Ex.24	<i>Engleria</i> O. Hoffm.	Rec.60B.Ex.1
- <i>speciosa</i> G. Don	11.Ex.24	<i>Entoloma</i> (Fr. ex Rabenh.) P. Kumm.	11.Ex.20
“ <i>Dractula trigonopetala</i> ”(Meyer & al., 2012)		<i>Epidendrum triquetrum</i> Sw.	46.Ex.23
	30.Ex.5	<i>Epilichen</i> Clem.	32.Ex.5
<i>Dracunculus</i> Mill.	11.Ex.13	<i>Epiphyllum</i> Haw.	H.6.Ex.1
- <i>vulgaris</i> Schott	11.Ex.13	<i>Equisetum palustre</i> var. <i>americanum</i>	6.Ex.6
“ <i>Drepanolobus</i> ” Nutt.	46.Ex.19	- - f. <i>fluitans</i>	6.Ex.6
<i>Drimys</i> J. R. Forst. & G. Forst.	18.Ex.6	<i>Erica</i> L.	19.Ex.4, H.9.Ex.2
<i>Dryobalanops sumatrensis</i> (J. F. Gmel.)		- <i>cinerea</i> L.	H.9.Ex.2
Kosterm., nom. rej.	Rec. 50E.Ex.5	<i>Ericaceae</i> Juss.	19.Ex.4
<i>Drypetae</i> Hurus.	Rec. 19A.Ex.1	<i>Ericales</i>	3.Ex.2
<i>Drypetinae</i> Griseb.	Rec. 19A.Ex.1	× <i>Ericalluna</i> Krüssm.	H.9.Ex.2
<i>Durvillaea</i> Bory	53.Ex.12, Rec. 60B.Ex.1	<i>Ericaceae</i> D. Don	19.Ex.4
<i>Dussia</i> Krug & Urb. ex Taub.	6.Ex.5	<i>Ericoideae</i> Endl.	19.Ex.4
- <i>martinicensis</i>	6.Ex.5	<i>Erigeron</i> L.	62.Ex.1
<i>Eccilia</i> (Fr. : Fr.) P. Kumm.	11.Ex.20	- <i>plantagineus</i> Greene	9.Ex.12
“ <i>Echii altera species</i> ” (Dodonaeus, 1583)		<i>Eriobotrya japonica</i> ‘Golden Ziad’	28.Ex.2
	7.Ex.10	- - ‘Maamora Golden Yellow’	28.Ex.2
“ <i>Echinocereus sanpedroensis</i> ”		<i>Erioderma chilense</i>	35.Ex.8
(Raudonat & Rischer, 1995)	8.Ex.1	- “ <i>velligerum</i> ”	35.Ex.8
<i>Echinops</i>	30.Ex.8	- <i>polycarpum</i> subsp. <i>verruculosum</i> Vain.	35.Ex.7
- <i>antalyensis</i> C. Vural	30.Ex.8	“ <i>Erioderma velligerum</i> subsp. nov”	35.Ex.8
<i>Echium lycopsis</i> L.	7.Ex.10	<i>Eryngium</i> nothosect. <i>Alpestris</i> Burdet & Miège	
<i>Eclipta erecta</i> L.	11.Ex.23	pro sect.	H.9.Ex.1
- <i>prostrata</i> (L.) L.	11.Ex.23	- sect. <i>Alpina</i> H. Wolff	H.9.Ex.1
<i>Ectocarpus mucronatus</i> D. A. Saunders	41.Ex.11	sect. <i>Campestris</i> H. Wolff	H.9.Ex.1
“ <i>Egeria</i> ” (Néraud, 1826)	38.Ex.1	- <i>amorginum</i> Rech. f.	Rec. 60D.Ex.1
<i>Elaeocarpaceae</i> Juss., not “Juss. ex DC.”	46.Ex.6	<i>Erysimum hieracifolium</i> var.	
“ <i>Elaeocarpeae</i> ” (Jussieu, 1808)	46.Ex.6	<i>longisiliquum</i> Rouy & Foucard	53.Ex.20
<i>Elcaja “roka”</i> (Forsskål, 1775)	23.Ex.12	<i>Erythroxyllum brevipes</i> DC. var. <i>spinescens</i>	
“ <i>Elodes</i> ” (Clusius, 1601)	10.Ex.3	(A. Rich.) Griseb.	52.Ex.11
<i>Elodes</i> Adans.	10.Ex.3	- <i>spinescens</i> A. Rich.	52.Ex.11
× <i>Elyhordeum</i> Mansf. ex Tsitsin & Petrova		- <i>suave</i> O. E. Schulz	52.Ex.11
	H.8.Ex.1	<i>Eschweilera</i> DC.	53.Ex.8
× <i>Elymopyrum</i> Cugnac	11.Ex.40	<i>Eschweilera</i> Boerl.	53.Ex.8
× <i>Elymotriticum</i> P. Fourn.	H.8.Ex.1	<i>Euanthe</i> Schltr.	H.8.Ex.3
<i>Elymus</i> L.	11.Ex.40, H.3.Ex.2, H.8.Ex.1	- <i>sanderiana</i> (Rchb.) Schltr.	H.8.Ex.3
- <i>europaeus</i> L.	52.Ex.17	<i>Eucalyptus</i> L’Hér.	62.Ex.1
- <i>farctus</i> (Viv.) Melderis	H.5.Ex.1	<i>Eucommia</i> Oliv.	38.Ex.19

<i>Eucommiales</i> Nêmejc ex Cronquist	38.Ex.19	<i>Fucales</i>	16.Ex.1
<i>Eucryphia</i>	46.Ex.5	<i>Fucus</i>	16.Ex.1
<i>Eucryphiaceae</i> Gay	46.Ex.5	- <i>palmetta</i> S. G. Gmel.	7.Ex.2
<i>Eugenia ceibensis</i> Standl.	8.Ex.5	- <i>pinnatus</i> L. f., non Huds.	6.Ex.14
- <i>costaricensis</i> O. Berg, not “ <i>costa-ricensis</i> ”		- <i>racemosus</i> Forssk.	7.Ex.8
	60.Ex.24	<i>Fuirena</i> Rottb.	20.Ex.10
<i>Eulophus</i>	35.Ex.6	- <i>umbellata</i> Rottb.	35.Ex.4
- <i>peucedanoides</i>	35.Ex.6	<i>Fumaria bulbosa</i> var. <i>solida</i> L.	49.Ex.5
<i>Eumotia gibbosa</i> Grunow	38.Ex.15	- <i>densiflora</i>	32.Ex.4
<i>Eupenicillium brefeldianum</i> (B. O. Dodge)		- <i>gussonei</i>	23.Ex.1
Stolk & D. B. Scott	59.Ex.1	- <i>officinalis</i>	32.Ex.4
“ <i>Euphlebiium sibuyanense</i> ”		- “ <i>xsalmonii</i> ” (Druce, 1908)	32.Ex.4
(Clements & Cootes, 2009)	40.Ex.4	- <i>solida</i> (L.) Mill.	49.Ex.5
<i>Euphorbia amygdaloides</i> L.	H.5.Ex.2	<i>Fungi</i>	13.1(d), 37.Ex.6,
- subg. <i>Esula</i> Pers	22.Ex.8	<i>Galium tricorne</i> Stokes	52.Ex.6
- subsect. <i>Tenellae</i>	21.Ex.1	- <i>tricornutum</i> Dandy	52.Ex.6
- sect. <i>Tithymalus</i>	21.Ex.1	- <i>verum</i> L. subsp. <i>verum</i>	24.Ex.3
- <i>characias</i> L.	H.5.Ex.2	- - var. <i>verum</i>	24.Ex.3
- - subsp. <i>wulfenii</i> (W. D. J. Koch) Radcl.-Sm.		<i>Gasteromyces</i>	13.1(d)
	H.5.Ex.2	“ <i>Geaster</i> ” (Fries, 1829)	61.Ex.3
- × <i>cornubiensis</i> Radcl.-Sm.	H.5.Ex.2	<i>Geastrum</i> Pers. : Pers.	61.Ex.3
- <i>esula</i> L.	22.Ex.8	- <i>hygrometricum</i> Pers.,	
- “ <i>jaroslavii</i> ” (Poljakov, 1953)	36.Ex.12	not “ <i>Geastrvm hygrometricvm</i> ”	60.Ex.10
- × <i>martini</i> Rouy	H.5.Ex.2	<i>Geiseleria</i> Klotzsch	58.Ex.4
- - nothosubsp. <i>cornubiensis</i>		<i>Gentiana lutea</i>	6.Ex.6
(Radcl.-Sm.) Radcl.-Sm	H.5.Ex.2	- <i>pneumonanthe</i> L.	23.Ex.6
- <i>peplis</i> L.	53.Ex.10	- <i>tenella</i> var. <i>occidentalis</i>	6.Ex.6
- <i>peplus</i> L.	22.Ex.8, 53.Ex.12	<i>Geranium andicola</i> [unranked]	37.Ex.5
- <i>wulfenii</i> W. D. J. Koch	H.5.Ex.2	- <i>longipedicellatum</i> (Loes.) R. Knuth	37.Ex.5
- <i>yaroslavii</i> Poljakov	36.Ex.12	- <i>molle</i> L.	23.Ex.5
<i>Eurya hebeclados</i> Y. Ling	9.Ex.6	- <i>robertianum</i>	23.Ex.1
<i>Faba</i> Mill.	18.5	<i>Gerardia</i> L.	Rec. 60B.Ex.1
<i>Fabaceae</i>	18.5, 19.8, 53.Ex.12	<i>Gerardiina</i> Engl.	53.Ex.12
<i>Faboideae</i>	19.8	<i>Gerrardina</i> Oliv.	53.Ex.12
<i>Fagus</i> L.	62.Ex.1	<i>Giffordia</i> Batters	41.Ex.11
- <i>sylvatica</i> L., not “ <i>silvatica</i> ”	60.Ex.1	- <i>mucronata</i> (D. A. Saunders)	
<i>Ferreola ellipticifolia</i> Stokes	58Ex.7	Kjeldsen & Phinney	41.Ex.11
<i>Festuca myuros</i> L.	26.Ex.2	<i>Gilia grinnellii</i> Brand	7.Ex.7
<i>Ficus crassipes</i> F. M. Bailey, non (Heer) Heer	11.Ex.37	- <i>splendens</i> H. Mason & A. D. Grant	7.Ex.7
- “ <i>exasperata</i> ” auct., non Vahl	Rec. 50D.Ex.1	- - subsp. <i>grinnellii</i>	7.Ex.7
- <i>irumuensis</i> De Wild., Pl. Bequaert.	Rec. 50D.Ex.1	<i>Gilmania</i> Coville	53.Ex.14
		<i>Ginkgo</i> L.	11.Ex.30, 18.Ex.2
- <i>neoëbudarum</i> Summerh.,		- <i>huttonii</i> (Sternb.) Heer	11.Ex.30
not “ <i>neo-ebudarum</i> ”	60.Ex.24	<i>Ginkgoaceae</i>	18.Ex.2
- <i>stortophylla</i> Warb.	Rec.50D.Ex.1	<i>Ginkgoites</i> Seward	11.Ex.30
- <i>tiliifolia</i> Baker, non (A. Braun) Heer	11.Ex.37	- <i>huttonii</i> (Sternb.) M. Black.	11.Ex.30
- <i>tremula</i> Warb., non (Heer) Heer	11.Ex.37	- <i>obovata</i> (Nath.) Seward	11.Ex.30
<i>Filago</i>	20.Ex.1	<i>Glechoma</i> L., orth. cons.,	
<i>Frankenia leonardiorum</i> Alain	60.Ex.39	‘ <i>Glecoma</i> ’	Rec. 50E.Ex.3
<i>Fraxinus pennsylvanica</i> Marshall	Rec. 60D.Ex.1	<i>Gleditsia</i> L., not “ <i>Gleditschia</i> ”	60.Ex.13
		<i>Globba trachycarpa</i> Baker,	

not " <i>brachycarpa</i> "	60.Ex.2	- <i>sphondylium</i> L.	11.Ex.26
<i>Globularia cordifolia</i> L. excl. var. (emend. Lam.)		-- subsp. <i>sibiricum</i> (L.) Simonk.	11.Ex.26
	Rec. 47A.Ex.1	-- "subsp. <i>lecokii</i> "	11.Ex.26
<i>Glochidion melvilleorum</i> Airy Shaw,		<i>Hesperomecon</i> Greene	62.Ex.5
not " <i>melvilliorum</i> "	60.Ex.17	<i>Hesperonia glutinosa</i> Standl.	33.Ex.22
<i>Gloeosporium balsameae</i> Davis	23.Ex.6	<i>Hetaeria alta</i> Ridl., not " <i>alba</i> "	60.*Ex.2
<i>Gloriosa</i>	20.Ex.1	<i>Heterochaeta</i> Bess.	46.Ex.34
<i>Gluta renghas</i> L., not " <i>benghas</i> "		<i>Heterotrichum pulchellum</i> Fisch.	6.Ex.7
	35.Ex.3, 60.Ex.5	<i>Heuchera</i> L.	H.11.Ex.1
<i>Glycine apios</i> L.	52.Ex.10	- × <i>tiarelloides</i> Lemoine & É. Lemoine	H.11.Ex.1
<i>Gnaphalium barrelieri</i> Ten.	11.Ex.4	× <i>Heucherella tiarelloides</i> (Lemoine & É. Lemoine)	
- <i>conglobatum</i> Viv.	11.Ex.4	H. R. Wehrh.	H.11.Ex.1
- " <i>fruticosum flavum</i> " (Forsskål, 1775)	23.Ex.15	<i>Hewittia</i> Wight & Arn.	7.Ex.5
<i>Gnetidae</i> Cronquist & al.	16.Ex.3	- <i>bicolor</i> Wight & Arn.	7.Ex.5
<i>Gnetophytina</i>	16.Ex.1	<i>Hibiscus ricinifolius</i> E. Mey. ex Harv.	58.Ex.2
<i>Gnetopsida</i> Engl.	16.Ex.3	- <i>ricinoides</i> Garcke	58.Ex.2
" <i>Gnetum cleistostachyum</i> " (Cheng, 1975)	37.Ex.1	- <i>vitifolius</i> L.	58.Ex.2
<i>Gnetum</i>	16.Ex.1	-- var. <i>ricinifolius</i> Hochr.,	
- " <i>cleistostachyum</i> "	40.Ex.1	not A749(E. Mey. ex Harv.)Hochr.	58.Ex.2
<i>Gossypium tomentosum</i> Nutt. ex Seem.	46.Ex.27	<i>Hieracium oribates</i> Brenner	7.Ex.11
<i>Graderia</i> Benth.	Rec. 60B.Ex.1	- <i>saxifragum</i> subsp. <i>oreinum</i> Dahlst. ex Brenner	
<i>Gramineae</i> Juss.	18.5, 19.Ex.3, 53.Ex.12		7.Ex.11
<i>Graphis meridionalis</i> M. Nakan.	33.Ex.2	× <i>Holttumara</i> Holttum	H.8.Ex.2
<i>Grislea</i> L.	Rec. 50E.Ex.2	<i>Hordelymus</i> (Jess.) Harz	
<i>Guttiferae</i>	18.5	20A.Ex.1, 52.Ex.15, H.3.Ex.2, H.8.Ex.1	
<i>Gyminda</i> Sarg.	48Ex.3	× <i>Hordelymus</i> Bachtcev & Darevsk.	
- <i>grisebachii</i> Sarg.	48Ex.3	non (Jess.) Harz	H.3.Ex.2, H.8.Ex.1
<i>Gymnadenia</i> R. Br.	H.6.Ex.1, H.6.Ex.3	× <i>Hordeopyron</i> Simonet, not " <i>Hordeopyrum</i> "	
- <i>rubra</i> Wettst.	9.Ex.3		H.9.Ex.1
× <i>Gymanacampis</i> Asch. & Graebn.	H.6.Ex.1	<i>Hordeum</i> L.	
<i>Gymnospermae</i>	16.Ex.2	Rec. 20A.Ex.1, H.3.Ex.2, H.8.Ex.1, H.9.Ex.1	
<i>Haptanthus</i> Goldberg & C. Nelson	3.Ex.1	- [unranked] <i>Hordelymus</i> Jess.	
<i>Hedysarum</i>	20.Ex.1		Rec. 20A.Ex.1, 52.Ex.15
<i>Heliantheae</i>	30.Ex.19	<i>Hosackia</i> [unranked] <i>Drepanolobus</i> , Torrey & Gra	
<i>Helianthemum</i> Mill.	49.Ex.4		46.Ex.19
- <i>aegyptiacum</i> (L.) Mill.	49.Ex.4	<i>Hyacinthus</i>	Rec. 60A.Ex.1
- <i>italicum</i> var. <i>micranthum</i> Gren. & Godr.	11.Ex.15	- <i>non-scriptus</i> L., not " <i>non scriptus</i> "	23.Ex.16
- <i>penicillatum</i> Thibaud ex Dunal	11.Ex.15	<i>Hyalodiscus</i> Ehrenb.	11.Ex.33
- - var. <i>micranthum</i> (Gren. & Godr.) Grosser	11.Ex.15	- <i>laevis</i> Ehrenb.	11.Ex.33
<i>H. barrelieri</i> (Ten.) Greuter	11.Ex.4	<i>Hydrocoleum glutinosum</i> (C. Agardh) ex Gomont	46.Ex.34
- <i>conglobatum</i> (Viv.) Steud.	11.Ex.4	<i>Hydrophyllum</i>	Rec. 60G.Ex.2
- <i>stoechas</i> subsp. <i>barrelieri</i> (Ten.) Nyman	11.Ex.4	<i>Hymenocarpos</i> Savi	62.Ex.3
<i>Helictotrichon</i> Bess.	46.Ex.34	" <i>Hypericum</i> " (Tournefort, 1700)	10.Ex.3
<i>Helleborus niger</i> L.	23.Ex.5	<i>Hypericum aegypticum</i> L.	10.Ex.3
<i>Hemerocallis</i> L.	62.Ex.1	- <i>buckleyi</i> M. A. Curtis, not " <i>buckleii</i> "	60.Ex.15
<i>Hemisphace</i> (Benth.) Opiz	41.Ex.3, 46.Ex.15	- <i>elodes</i> L.	10.Ex.3
<i>Hepaticae</i>	13.1(c), 13.Ex.1	<i>Hypholoma</i> (Fr. : Fr.) P. Kumm.	33.Ex.7
<i>Heracleum sibiricum</i> L.	11.Ex.26	- <i>fasciculare</i> (Huds. : Fr.) P. Kumm.	33.Ex.7
- - subsp. <i>lecokii</i> (Godr. & Gren.) Nyman	11.Ex.26	<i>Hypocrea dorotheae</i> Samuels & Dodd	59.Ex.4
- - subsp. <i>sibiricum</i>	11.Ex.26	" <i>Ibidium</i> " (Salisbury, 1812)	34.Ex.9

<i>Iffoga</i>	20.Ex.1	<i>Leccinum</i> Gray	52.Ex.14
<i>Illiciaceae</i> A. C. Sm., not "(DC.) A. C. Sm."		- <i>edule</i> (Bull. : Fr.) Gray	52.Ex.14
	49.Ex.8	<i>Leguminosae</i>	18.5, 19.8, 53.Ex.12
<i>Impatiens</i>	20.Ex.1	<i>Lejeunea</i> subg. <i>Brachiolejeunea</i> Spruce	41.Ex.9
- <i>noli-tangere</i> L.	23.Ex.1	<i>Lemanea</i> Sirodot, non Bory	46.Ex.18, 48.Ex.1
- <i>noli-tangere</i> L., not " <i>noli tangere</i> "	23.Ex.16	<i>Leptogium</i>	58.Ex.3
<i>Indigofera longipedunculata</i> Y. Y. Fang & C. Z.		- <i>cyanescens</i> (Rabenh.) Körb.	58.Ex.3
Zheng, not " <i>longipednnculata</i> "	60.Ex.4	<i>Leptonia</i> (Fr. : Fr.) P. Kumm.	11.Ex.20
"tribus <i>Involuta</i> " (Huth, 1895)	33.Ex.25	" <i>Leptostachys</i> "	20.Note.2
<i>Ionopsis</i> Kunth	H.6.Ex.6	<i>Lespedeza</i> Michx.	60.Ex.8
<i>Iria</i> (Pers.) Hedw.	53.Ex.10	<i>Lesquerella lasiocarpa</i>	
<i>Iris</i> L.	53.Ex.12	(Hook. ex A. Gray) S. Watson	11.Ex.28
<i>Isoëtes</i>	60.6	- - subsp. <i>berlandieri</i> (A. Gray)	
<i>Johannesteijsmannia magnifica</i> J. Dransf.	8.Ex.3	Rollins & E. A. Shaw	11.Ex.28
<i>J. californica</i> S. Watson	52.Ex.16	- - var. <i>berlandieri</i> (A. Gray) Payson	11.Ex.28
- <i>major</i> (Torr.) A. Heller	52.Ex.16	- - var. <i>hispida</i> (S. Watson)	
- <i>rupestris</i> var. <i>major</i> Torr.	52.Ex.16	Rollins & E. A. Shaw	11.Ex.28
" <i>Juncus bufonius</i> var. <i>occidentalis</i> "		- - subsp. <i>lasiocarpa</i>	11.Ex.28
(Hermann, 1975)	41.Ex.18	<i>Leucadendron</i> R. Br.	14.Ex.10
- " <i>sphaerocarpus</i> " auct. Am., non Nees	41.Ex.18	× <i>Leucadenia</i> Schltr.	H.6.Ex.3
<i>Juniperus chinensis</i> L.	28.Ex.3	<i>Leucodon nitidulus</i> Hook. f. & Wilson	46.Ex.16
- × <i>pfitzeriana</i> 'Wilhelm Pfitzer'	28.Ex.3	<i>Leucorchis</i> E. Mey.	H.6.Ex.3
- <i>sabina</i> L.	28.Ex.3	<i>Lichen debilis</i> Sm.	46.Ex.14
<i>Karschia</i>	38.Ex.5	- <i>gracilis</i> L.	58.Ex.6
<i>Kedamatha</i> P. K. Mukh. & Constance	38.Ex.9	- <i>murale</i> Schreb.	41.Ex.10
- <i>sanctuarii</i> P. K. Mukh. & Constance	38.Ex.9	- <i>saxatilis</i> L.	9.Ex.9
<i>Kengia</i> Packer	20.Ex.5	<i>Liliales</i> Perleb	16.Ex.3
<i>Kernera</i>	Rec.60B.1(b)	<i>Liliineae</i> Rchb.	16.Ex.3
<i>Kratzmannia</i> Opiz	38.Ex.21	<i>Lilium tianschanicum</i> N. A.	
<i>Kyllinga</i> Rottb.	20.Ex.10	Ivanova ex Grubov	46.Ex.25
<i>Labiatae</i>	18.5, 53.Ex.1	<i>Linaria</i> Mill.	11.Ex.8
<i>Labyrinthodyction</i> Valkanov	45.Ex.4	- " <i>linaria</i> "	23.Ex.3
" <i>Laconiella</i> "	43.Ex.1	- <i>spuria</i> (L.) Mill.	11.Ex.8
- <i>sardinica</i>	43.Ex.1	" <i>Lindenia</i> "	30.Ex.12
<i>Laelia</i> Lindl.	H.6.Ex.6	<i>Lindera</i> Thunb., non Adans.	Rec.50C.Ex.2
<i>Lamiaceae</i>	18.5	<i>Linum multiflorum</i> Lam.	23.Ex.4
<i>Lamium</i> L.	18.5	- <i>radiola</i> L.	23.Ex.4
" <i>Lanceolatus</i> " (Plumstead, 1952)	20.Ex.4	<i>Liquidambar</i>	20.Ex.1
<i>Lapageria</i> Ruiz & Pav.	H.9.Ex.1	<i>Lithocarpus polystachyus</i>	
<i>Lapeirousia</i> Pourr.	Rec.60B.Ex.1	(Wall. ex A. DC.) Rehder	49.Ex.8
- <i>erythrantha</i> var. <i>welwitschii</i>		<i>Lithospermum tinctorium</i> L.	11.Ex.17
(Baker) Geerinck & al.	Rec.46C.Ex.2	" <i>Lobata</i> " (Chapman, 1952)	20.Ex.4
<i>Lasiobelonium corticale</i> (Pers. : Fr.) Raitv.		<i>Lobelia spicata</i> Lam.	26.Ex.1
	41.Ex.21	- - "var. <i>originalis</i> " (McVaugh, 1936)	24.Ex.3
<i>Laurentia frontidentata</i> E. Wimm.		- - var. <i>spicata</i>	26.Ex.1
	9.Ex.3, 40.Ex.2	- <i>taccada</i> Gaertn.	41.Ex.7
<i>Lecanidion</i> Endl.	15.Ex.3	<i>Lobeliaceae</i> Juss. "ordo naturalis <i>Lobeliaceae</i> "	18.Ex.4
<i>Lecanora campestris</i> "f. <i>pseudistera</i> "		<i>Lophiolaceae</i> Nakai	37.Ex.2
(Grumann, 1963)	41.Ex.16	<i>Loranthus</i> (sect. <i>Ischnanthus</i>) <i>gabonensis</i>	
- <i>pseudistera</i> Nyl.	41.Ex.10		Rec.21A.Ex.1
- <i>saxicola</i> Ach.	41.Ex.10		

- <i>macrosolen</i> Steud. ex Rich., not "Steud."		<i>Malpighia</i> L.	22.Ex.2
	38.Ex.2	- sect. <i>Apyrae</i> DC.	22.Ex.2
<i>Lotus</i> L.	62.Ex.1	- subg. <i>Homoistylis</i> Nied.	22.Ex.2
<i>Luehea</i> Willd., not "Lühea"	60.Ex.12	- sect. <i>Malpighia</i>	22.Ex.2
<i>Lupinus</i> Tourn. ex L.	46.Ex.35	- subg. <i>Malpighia</i>	22.Ex.2
<i>Luzuriaga</i> Ruiz & Pav.	14.Ex.5	- <i>emarginata</i> DC.	46.Ex.13
<i>Lycium odonellii</i> F. A. Barkley,		- <i>glabra</i> L.	22.Ex.2
not "o'donellii"	60.Ex.28	<i>Malpighiaceae</i>	53.Ex.4
<i>Lycoperdon</i>	30.Ex.18	× <i>Maltea</i> B. Boivin	H.6.Ex.4
- " <i>americanum</i> "	30.Ex.18	<i>Malus</i> Mill.	19.Ex.5
- <i>atropurpureum</i> Vittad.,		" <i>Malvaceae</i> " (Adanson, 1763)	39.Ex.4
not " <i>atro-purpureum</i> "	60.Ex.24	<i>Malvastrum bicuspidatum</i> subsp.	
- " <i>cokeri</i> "	30.Ex.18	<i>tumidum</i> S. R. Hill	34.Ex.13
- " <i>estonicum</i> "	30.Ex.18	- - var. <i>tumidum</i> S. R. Hill	34.Ex.13
- <i>pusillum</i> Batsch : Pers	57.Ex.1	<i>Malvidae</i> Thorne & Reveal	39.Ex.4
<i>Lycopersicon esculentum</i> Mill.	14.Ex.1	<i>Mammillaria</i> Haw.	18.Ex.3
- <i>lycopersicum</i> (L.) H. Karst.	14.Ex.1	<i>Manihot</i> Mill.	20.Ex.1, 62.Ex.9
<i>Lycophyta</i>	16.Ex.2	<i>Marattia</i>	16.Ex.1
<i>Lycopinae</i> B. T. Drew & Sytsma	30.Ex.3	- " <i>rolandi principis</i> " Rosenst. ,	
<i>Lycopodiophyta</i>	16.Ex.1	not " <i>rolandii-principis</i> "	60.Ex.26
<i>Lycopodium</i> L.	13.Ex.2, 16.Ex.1	<i>Marattidae</i>	16.Ex.1
- <i>apodum</i> L.	61.Ex.2	<i>Martia</i> Spreng.	Rec.60B.Ex.1
- <i>clavatum</i> L.	13.Ex.2	<i>Martisia</i> Schult. & Schult. f.	Rec.60B.Ex.1
- <i>inundatum</i> L.	26.Ex.5	<i>Masdevallia echidna</i> Rchb. f.	23.Ex.7
- - var. <i>bigelovii</i> Tuck.	26.Ex.5	<i>Matricaria recutita</i> L.	52.Ex.12
- - var. <i>inundatum</i>	26.Ex.5	- <i>suaveolens</i> L.	52.Ex.12
<i>Lycopsis</i> (Ray, 1724)	7.Ex.10	<i>Maxillaria mombachoensis</i> A. H.	
<i>Lynghya</i> Gomont	53.Ex.13	Heller ex J. T. Atwood	46.Ex.40
- <i>glutinosa</i> C. Agardh	46.Ex.36	<i>Mazocarpon</i> M. J. Benson	11.Ex.1
<i>Lynghyca</i> Sommerf.	53.Ex.13	<i>Meclatis</i>	30.Ex.15
<i>Lysimachia hemsleyana</i> Oliv.		<i>Medicago orbicularis</i> (L.) Bartal.	49.Ex.1
	Rec.23A.2, 53.Ex.12	- <i>polymorpha</i> L.	26.Ex.4
- <i>hemsleyi</i> Franch.	Rec.23A.2, 53.Ex.12	- - var. <i>orbicularis</i> L.	49.Ex.1
<i>Lythrum salicaria</i> L.	23.Ex.6	<i>Melampsora</i> × <i>columbiana</i> G. Newc.	
<i>Maba elliptica</i> J. R. Forst. & G. Forst.	58.Ex.7		H.3.Ex.1, H.10.Ex.1
" <i>Machaerina iridifolia</i> " (Koyama, 1956)	41.Ex.20	- <i>medusae</i> Thüm.	H.2.Ex.1, H.10.Ex.1
<i>Macrosporium</i> Fr.	14.Ex.13	- <i>occidentalis</i> H. S. Jacks.	H.2.Ex.1, H.10.Ex.1
<i>Macrothyrsus</i> Spach	11.Ex.6	<i>Melantheen</i> (Kittel, 1840)	19.Ex.10
<i>Magnaporthe</i> R. A. Krause		<i>Melanthieae</i> Griseb., not " <i>Melanthiae</i> " Kitt.	
& R. K. Webster	57.Ex.3		19.Ex.10
<i>Magnolia</i>	16.Ex.1	<i>Melilotus</i>	23.Ex.19, Rec.60G.Ex.3, 62.Ex.1
- <i>foetida</i> (L.) Sarg.	11.Ex.5	<i>Meliola</i>	41.Ex.16
- <i>grandiflora</i> L.	11.Ex.5	- <i>albiziae</i> Hansford & Deighton,	
- <i>virginiana</i> var. <i>foetida</i> L.	11.Ex.5	not " <i>albizziae</i> "	60.Ex.40
<i>Magnoliophyta</i>	16.Ex.1	<i>Meliosma</i>	Rec.60G.Ex.3
<i>Mahonia</i> Nutt.	14.Ex.2	<i>Menispermum hirsutum</i> L.	58.Ex.5
- <i>japonica</i> DC.	28.Ex.1	- <i>villosum</i> Lam.	58.Ex.5
- ' <i>Japonica</i> '	28.Ex.1	<i>Mentha</i>	51.Ex.1
<i>Mairia</i>	30.Ex.20	- <i>aquatica</i> L.	H.2.Ex.1, H.11.Ex.3
<i>Malaceae</i> Small	19.Ex.5	- <i>arvensis</i> L.	H.2.Ex.1
<i>Maloideae</i> C. Weber	19.Ex.5	- × <i>piperita</i> f. <i>hirsuta</i> Sole	H.12.Ex.1

- - <i>nothosubsp. piperita</i>	H.11.Ex.3	<i>Musa basjoo</i> Siebold & Zucc. ex Inuma	36.Ex.6
- - <i>nothosubsp. pyramidalis</i> (Ten.) Harley		<i>Musci</i>	13.1.(b), 13.Ex.1, 13.Ex.2
	H.11.Ex.3	" <i>Musenium</i> "	61.Ex.1
- - <i>nothosubsp. Pyramidalis</i> (Ten.) Harley		<i>Musineon</i> Raf. (Nuttall, 1840)	61.Ex.1
	H.11.Ex.2	<i>Mussaenda frondosa</i> L.,	
- × <i>smithiana</i> R. A. Graham	H.3.Ex.1	not " <i>fr. [fructu] frondoso</i> "	23.Ex.18
- <i>spicata</i> L.	H.2.Ex.1	" <i>Mycena</i> s.l."	30.Ex.17
- - <i>subsp. spicata</i>	H.11.Ex.2	<i>Mycena</i>	30.Ex.17
- - <i>subsp. tomentosa</i> (Briq.) Harley	H.11.Ex.2	- <i>coccinea</i> (Murrill) Singer,	
<i>Merulius lacrimans</i> (Wulfen : Fr.) Schum.	15.Ex.2	non (Sowerby) Quéf.	6.Ex.14
<i>Mesembryanthemum</i> L.,		- <i>coccineoides</i> Grgur.	6.Ex.14
not <i>Mesembrianthemum</i>	60.Ex.1	- <i>seynii</i> Quéf., not " <i>seynesii</i> "	60.Ex.18
- <i>sect. Minima</i> Haw.	34.Ex.4	- <i>taiwanensis</i> Rexer	30.Ex.17
<i>Mespilodaphne mauritiana</i> Meisn.	55.Ex.1	<i>Mycocaliciaceae</i>	14.13, 56.3, 57.2
<i>Mespilus</i>	41.Ex.14	<i>Mycosphaerella aleuritidis</i> S. H. Ou	59.Ex.2
- <i>arbutifolia</i> var. <i>nigra</i> Willd.	41.Ex.14	<i>Myginda</i> <i>sect. Gymina</i> Griseb.	48.Ex.3
<i>Metasequoia</i> Hu & W. C. Cheng,		- <i>integrifolia</i> Poir.	48.Ex.3
nom. cons., non Miki	11.Ex.32	<i>Myogalum boucheanum</i> Kunth	34.Ex.7
- <i>disticha</i> (Heer) Miki	11.Ex.32	<i>Myosotis</i> L.	47.Ex.2, Rec.60G.1(c)
- <i>glyptostroboides</i> Hu & W. C. Cheng	11.Ex.32	<i>Myrcia laevis</i> O. Berg, non G. Don	7.Ex.4
<i>Micromeria benthamii</i> Webb & Berthel.		- <i>lucida</i> McVaugh	7.Ex.4
	H.10.Ex.5	<i>Myrosma cannifolia</i> L. f., not " <i>cannaefolia</i> "	
- × <i>benthamineolens</i> Svent.	H.10.Ex.5		60.Ex.20
- <i>pineolens</i> Svent.	H.10.Ex.5	<i>Nanobubon hypogaeum</i> J. Magee	30.Ex.4
<i>Microsporidia</i>	Prep.8, 13.1.(d), 45.Note.1	<i>Napaea</i> L.	53.Ex.12, 60.Ex.21
<i>Miltonia</i> Lindl.	H.6.Ex.5	" <i>Napea</i> "	60.Ex.21
<i>Mimosa cineraria</i> L.	53.Ex.19, 53.Ex.21	<i>Narcissus pseudonarcissus</i> L.,	
- <i>cinerea</i> L. 1753, No. 10, non L. 1753 No. 25	53.Ex.19, 53.Ex.21	not " <i>Pseudo Narcissus</i> "	23.Ex.17
" <i>Minthe</i> "	51.Ex.1	<i>Nartheciaceae</i> Fr. ex Bjurzon	18.Ex.7
<i>Minuartia</i> L.	11.Ex.12	<i>Narthecium</i> Gérard	18.Ex.7
- <i>stricta</i> (Sw.) Hiern	11.Ex.12	<i>Nasturtium</i> Mill.	14.Ex.3
<i>Mirabilis glutinosa</i> Kuntze	41.Ex.22	<i>Nasturtium</i> R. Br., nom cons., non Mill.	14.Ex.3
- <i>laevis</i> <i>subsp. glutinosa</i> (Standl.) A. E. Murray,		- " <i>nasturtium-aquaticum</i> "	23.Ex.3
not (A. Nels.) Murray	41.Ex.22	" <i>Nelumbium</i> "(Jussieu, 1789)	61.Ex.1
<i>Molina racemosa</i> Ruiz & Pav., non Cav.	53.Ex.4	<i>Nelumbo</i> Adans.	18.Ex.2, 61.Ex.1
<i>Monarda ciliata</i> L.	35.Ex.6	<i>Nelumbonaceae</i>	18.Ex.2
<i>Monochaete</i> Döll	53.Ex.12	<i>Neoptilota</i> Kylin	44.Ex.1
<i>Monochaetum</i> (DC.) Naudin	53.Ex.12	<i>Neotysonia phyllostegia</i> (F. Muell.)	
<i>Monotropa</i> L.	19.Ex.6	Paul G. Wilson	46.Ex.7
<i>Monotropaceae</i> Nutt.	19.Ex.6	<i>Nepeta</i> × <i>faassenii</i> Bergmans ex Stearn, not	
<i>Montanoa</i> Cerv.	30.Ex.19	"Bergmans" nor "Lawrence"	32.Ex.2
- <i>imbricata</i> V. A. Funk	30.Ex.19	<i>Nesoluma st.-johnianum</i> Lam & Meeuse,	
<i>Montia parvifolia</i> (DC.) Greene	25.Ex.1	not "St.-Johnianum"	60.Ex.29
- - <i>subsp. flagellaris</i> (Bong.) Ferris	25.Ex.1	<i>Neves-armondia</i> K. Schum.	20.Ex.8
- - <i>subsp. parvifolia</i>	25.Ex.1	<i>Nolanea</i> (Fr. : Fr.) P. Kumm.	11.Ex.20
<i>Mora</i> Benth.	53.Ex.5	<i>Nostocaceae</i>	13.1(c), 46.Ex.36
<i>Moreae</i> Britton & Rose	53.Ex.5	<i>Nothotsuga</i> Hu ex C. N. Page	46.Ex.41
<i>Moreae</i> Dumort.	53.Ex.5	<i>Nymphaea nelumbo</i> L.	61.Ex.1
<i>Morus</i> L.	53.Ex.5	<i>Odontoglossum</i> Kunth	H.6.Ex.5
<i>Mouriri</i> <i>subg. Pericrene</i>	6.Ex.6	<i>Oedogoniaceae</i>	13.1(e)
		<i>Oenothera biennis</i> L.	H.4.Ex.1

- × <i>drawertii</i> Renner ex Rostanski	H.4.Ex.1	<i>Parietales</i>	16.Ex.2
- <i>macrocarpa</i> Nutt.	46.Ex.39	<i>Parmelia cyanescens</i> (Pers.) Ach., non Schaeer.	
- <i>villosa</i> Thunb. subsp. <i>villosa</i>	H.4.Ex.1		58.Ex.3
- × <i>wienii</i> Renner ex Rostanski	H.4.Ex.1	- <i>saxatilis</i> (L.) Ach.	9.Ex.9
<i>Omphalaria nummularia</i> Durieu & Mont.	38.Ex.1	- <i>serrana</i> A. Crespo & al.	9.Ex.9
<i>Omphalina coccinea</i> Murrill	6.Ex.14	<i>Parnassiales</i> Nakai	37.Ex.2
<i>Oncidium</i> Sw.	46.Ex.23	<i>Partitatheca</i> D. Edwards & al.	30.Ex.6
- <i>triquetrum</i> (Sw.) R. Br.	46.Ex.23	<i>Patellaria</i> Fr. : Fr., non Hoffm.	15.Ex.3
<i>Opegrapha oulocheila</i> Tuck.	9.Ex.1	<i>Paullinia paullinioides</i> Radlk.	10.Ex.2
<i>Oplopanax</i> (Torr. & A. Gray) Miq.	62.Ex.4	<i>Pavia</i> Mill.	11.Ex.6
<i>Opuntia</i> Mill.	41.Ex.5	<i>Peltophorum</i> (Vogel) Benth.	53.Ex.12
- <i>ficus-indica</i> (L.) Mill.	41.Ex.5	<i>Peltophorus</i> Desv.	53.Ex.12
- <i>vulgaris</i> Mill.	41.Ex.5	<i>Penicillium</i>	59.Ex.1
" <i>Opuntia vulgo herbariorum</i> "		- <i>brefeldianum</i> B. O. Dodge	59.Ex.1
(Bauhin & Cherler, 1650-1651)	41.Ex.5	- <i>dodgei</i> Pitt	59.Ex.1
× <i>Orchicoelogglossum mixtum</i> Asch. & Graebn.		<i>Peponia</i> Grev.	53.Ex.12
	H.8.Ex.2	<i>Peponium</i> Engl.	53.Ex.12
<i>Orchis</i> L.	62.Ex.1	<i>Pereskia opuntiaeflora</i> DC.,	
- <i>fuchsii</i> Druce	H.8.Ex.2	not " <i>opuntiaeflora</i> "	60.Ex.20
"ordo <i>Cyeroideae</i> "	18.Ex.4	<i>Peridermium balsameum</i> Peck	23.Ex.5
"ordo naturalis <i>Lobeliaceae</i> "	18.Ex.4	<i>Persicaria maculosa</i> Gray	52.Ex.8
"ordo <i>Xylomaceae</i> "	18.Ex.4	- <i>mitis</i> Delarbre	52.Ex.8
<i>Oreodoxa regia</i> Kunth	14.Ex.6	- <i>rundinata</i> (Buch.-Ham. ex D. Don) Masam.	
<i>Ormocarpum</i> P. Beauv.	62.Ex.3		41.Ex.2
<i>Ornithogalum</i> L.	36.Ex.7	- <i>segetum</i> (Kunth) Small,	
- <i>boucheanum</i> (Kunth) Asch.	36.Ex.7	not " <i>segeta</i> " (Small, 1903)	23.Ex.7
- " <i>undulatum</i> hort. Bouch." (Kunth, 1843)	36.Ex.7	<i>Petalodinium</i> Cachon & Cachon-Enj.	45.Ex.2
<i>Orobanche artemisiae</i>	51.Ex.1	<i>Petrophiloides</i> Bowerb.	11.Ex.31
- " <i>artemisiiepiphyta</i> "	51.Ex.1	<i>Petrosimonia brachiata</i> (Pall.) Bunge	51.Ex.4
- <i>columbaria</i>	51.Ex.1	- <i>oppositifolia</i> (Pall.) Litv.	51.Ex.4
- " <i>columbarihaerens</i> "	51.Ex.1	<i>Peyrousea</i> DC.	Rec.60B.Ex.1
- " <i>rapum</i> "	51.Ex.1	<i>Peziza corticalis</i> Pers., not "Mérat", nor "Fr."	
- <i>rapum-genistae</i>	51.Ex.1		41.Ex.21
- " <i>sarothamnophyta</i> "	51.Ex.1	<i>Phaelypea</i> (Browne, 1756)	38.Ex.11
"sectio <i>Orontiaceae</i> " (Brown, 1810)	37.Ex.7	<i>Phalaenopsis</i> Blume	H.6.Ex.6
<i>Osbeckia</i> L.	53.Ex.7	<i>Phaseolus leptostachyus</i> "var. <i>pinnatifolius</i> "	
<i>Ostrya virginiana</i> (Mill.) K. Koch	Rec.60D.Ex.1	(Freitag, 2002)	36.Ex.14
<i>Ottoa</i>	Rec.60B.1(a)	- " <i>f. purpureus</i> " (Freitag, 2002)	36.Ex.14
<i>Pachysphaera</i> Ostenf.	11.Ex.34	× <i>Philageria</i> Mast.	H.9.Ex.1
<i>Palma elata</i> W. Bartram	14.Ex.6	<i>Philesia</i> Comm. ex Juss.	H.9.Ex.1
<i>Palmae</i>	18.5	<i>Philgamia</i> Baill.	38.Ex.12
<i>Panax nossibiensis</i> Drake	38.Ex.14	- <i>hibbertioides</i> Baill.	38.Ex.12
" <i>Pancheria humboldtiana</i> Guillaumin,		<i>Phippisia</i> (Trin.) R. Br.	H.6.Ex.4
not "Guillaumin ex H. C.		<i>Phleum hirsutum</i> Honck.	46.Ex.40
Hopkins & J. Bradford"	46.Ex.21	<i>Phlox divaricata</i> L. subsp. <i>divaricata</i>	H.3.Ex.3
<i>Papaver rhoeas</i>	23.Ex.1	-- subsp. <i>laphamii</i> (A. W. Wood) Wherry	H.3.Ex.3
<i>Papilionaceae</i>	18.5, 19.8	- <i>drummondii</i> 'Sternenzauber'	28.Ex.2
<i>Papilionoideae</i>	19.8	- <i>pilosa</i> subsp. <i>ozarkana</i> Wherry	H.3.Ex.3
<i>Paradinandra</i> Schönenberger & E. M. Früs		<i>Phlyctidia</i> Müll. Arg.	35.Ex.2
	3.Ex.2	- " <i>andensis</i> " (Müller, 1880)	35.Ex.2
<i>Parasitaxus</i> de Laub.	62.Ex.2	- <i>boliviensis</i> (Nyl.) Müll. Arg.	35.Ex.2

- " <i>brasiliensis</i> " (Müller, 1880)	35.Ex.2	not "(Walter) J. F. Gmel."	35.Ex.3
- " <i>hampeana</i> " (Müller, 1880)	35.Ex.2	<i>Platycarya</i> Siebold & Zucc.	11.Ex.31
- <i>ludoviciensis</i> Müll. Arg.	35.Ex.2	<i>Plectranthus</i> L'Hér.	14.Ex.8
- " <i>sorediiformis</i> " (Müller, 1880)	35.Ex.2	- <i>fruticosus</i> L'Hér.	14.Ex.8
<i>Phlyctis andensis</i> Nyl.	35.Ex.2	- <i>punctatus</i> (L. f.) L'Hér.	14.Ex.8
- <i>boliviensis</i> Nyl.	35.Ex.2	<i>Pleione</i> subg. <i>Scopulorum</i>	21.Ex.1
- <i>brasiliensis</i> Nyl.	35.Ex.2	<i>Pleuripetalum</i> T. Durand	53.Ex.8
- <i>sorediiformis</i> Kremp.	35.Ex.2	<i>Pleuropetalum</i> Hook. f.	53.Ex.8
<i>Phoebe calcarea</i> S. K. Lee & F. N. Wei	9.Ex.2	<i>Plumbaginaceae</i>	18.Ex.1
<i>Phoenix theophrasti</i> Greuter, not " <i>theophrastii</i> "	60.Ex.31	<i>Plumbago</i>	18.Ex.1
<i>Pholiota</i> (Fr. : Fr.) P. Kumm.	37.Ex.11	<i>Pluteus</i> Fr.	15.Ex.4
<i>Phoradendron</i> Nutt., not " <i>Phoradendrum</i> "	60.Ex.1	- <i>atricapillus</i> (Batsch) Fayod	15.Ex.4
<i>Phyllachora annonicola</i> Chardon, not " <i>anonicola</i> "	60.Ex.40	- <i>cervinus</i> (Schaeff.) P. Kumm.	15.Ex.4
<i>Phyllanthus</i> L. emend. Müll. Arg.	Rec.47A.Ex.1	<i>Pneumocystis</i> P. Delanoë & Delanoë	45.Ex.6
<i>Phyllerpa prolifera</i> var. <i>firma</i> Kütz., not "var. <i>Ph. firma</i> "	24.Ex.6	- <i>Carinii</i> P. Delanoë & Delanoë	45.Ex.6
<i>Phyllogonium</i> Bridel	53.Ex.14	- <i>jirovecii</i> Frenkel, ' <i>jiroveci</i> '	45.Ex.7
<i>Phyllogonum</i> Coville	53.Ex.14	<i>Poa</i> L.	18.5, 19.Ex.3
<i>Physconia</i> Poelt	10.Ex.4	- <i>sibirica</i> Roshev	6.Ex.7
- <i>pulverulacea</i> Moberg	10.Ex.4	- <i>vallesiana</i> Honck.	46.Ex.40
- <i>arnoldianum</i> Hepp., not "Hepp ex Arnold"	46.Ex.11	<i>Poaceae</i> Barnhart	18.5, 19.Ex.3
<i>Physospermum</i> Cuss.	30.Ex.1	<i>Poëae</i> R. Br.	19.Ex.3
<i>Phyteuma</i> L.	62.Ex.1	<i>Poinae</i> Dumort.	19.Ex.3
<i>Picea</i>	52.Ex.4, 60.Ex.14	<i>Polifolia</i> (Buxbaum, 1721)	60.Ex.22
- <i>abies</i> (L.) H. Karst.	52.Ex.4	<i>Polycarphae</i> Lam.	62.Ex.3
- <i>alcoquiana</i> (Veitch ex Lindl.) Carrière, not " <i>alcockiana</i> "	60.Ex.14	<i>Polycarpon</i> L.	62.Ex.3
- <i>excelsa</i> Link	52.Ex.4	<i>Polychaeton</i> (Pers.) Lév.	57.Ex.2
<i>Pinaceae</i>	46.Ex.28	<i>Polycnemum oppositifolium</i> Pall.	51.Ex.4
" <i>Pineae</i> Spreng"	46.Ex.28	<i>Polygonum</i>	37.Ex.9
<i>Pinopsida</i>	16.Ex.1	- <i>persicaria</i> L.	52.Ex.8
<i>Pinus</i>	16.Ex.1	- <i>runcinatum</i> Buch.-Ham. ex D. Don	41.Ex.2
- <i>abies</i> L.	52.Ex.4	- <i>segetum</i> Kunth	23.Ex.7
- <i>excelsa</i> Lam.	52.Ex.4	<i>Polypodium australe</i> Fée	52.Ex.19
- <i>mertensiana</i> Bong.	7.Ex.1	- <i>filix-femina</i> L., not " <i>F. femina</i> "	23.Ex.19
<i>Piper pseudo-oblongum</i> McKown	60.Ex.25	- <i>filix-mas</i> L., not " <i>F. mas</i> "	23.Ex.19
<i>Piptolepis</i> Benth.	38.Ex.10	- <i>font-queri</i> Rothm.	52.Ex.19
- <i>phillyreoides</i> Benth.	38.Ex.10	- <i>fragile</i> L., not " <i>F. fragile</i> "	23.Ex.19
<i>Piratinera</i> Aubl.	36.Ex.11	- <i>shivasiae</i> Rothm.	52.Ex.19
<i>Piromyces polycephalus</i> Y. C. Chen & al.	29.Ex.1	- " <i>subulatum</i> "	38.Ex.13
" <i>Pirus mairei</i> "	Rec.50F.Ex.1	- <i>vulgare</i> nothosubsp. <i>mantoniae</i> (Rothm.) Schidlay	H.3.Ex.1
<i>Pisocarpium</i> Link	62.Ex.3	- - subsp. <i>prionodes</i> (Asch.) Rothm.	52.Ex.19, H.2.Ex.1
<i>Pittosporaceae</i>	46.Ex.30	- - subsp. <i>vulgare</i>	52.Ex.19, H.2.Ex.1
<i>Pittosporum buxifolium</i> K. M. Feng ex W. Q. Yin, not K. M. Feng ex C. Y. Wu & H. W. Li, nor C. Y. Wu & H. W. Li	46.Ex.30	<i>Polypogon</i> Desf.	H.2.Ex.1, H.6.Ex.1
<i>Planera aquatica</i> J. F. Gmel.,		- <i>monspeiliensis</i> (L.) Desf.	H.2.Ex.1
		<i>Pooideae</i> Asch.	19.Ex.3
		<i>Populus</i> × <i>canadensis</i> var. <i>marilandica</i> (Poir.) Rehder	H.12.Ex.1
		- - var. <i>serotina</i> (R. Hartig) Rehder	H.12.Ex.1
		<i>Porella</i>	13.Ex.1
		- <i>pinnata</i> L.	13.Ex.1

<i>Porroglossum echidna</i> (Rchb. f.) Garay,		- sect. <i>Cassinia</i> Greuter	H.7.Ex.1
not " <i>echidnum</i> " (Garay, 1953)	23.Ex.7	- nothosect. <i>Platon</i> Greuter	H.7.Ex.1
<i>Potamogeton</i>	18.Ex.1	- sect. <i>Platyrrhaphium</i> Greuter	H.7.Ex.1
<i>Potamogetonaceae</i>	18.Ex.1	- nothosect. <i>Plinia</i> Greuter	H.7.Ex.1
<i>Potentilla atrosanguinea</i> Lodd. ex D. Don		- sect. <i>Ptilostemon</i>	H.7.Ex.1
	H.10.Ex.2	- <i>chamaepeuce</i> (L.) Less.	11.Ex.9
- " <i>atrosanguinea-pedata</i> " (Maund, 1833)		- <i>muticus</i> Cass.	11.Ex.9
	H.10.Ex.2	<i>Puccinellia</i> Parl.	H.6.Ex.4
- <i>pedata</i> Nestl.	H.10.Ex.2	× <i>Pucciphippsia</i> Tzvelev	H.6.Ex.4
<i>Prasinophyta</i>	11.Ex.34	<i>Pulsatilla montana</i> subsp.	
<i>Primula</i> sect. <i>Dionysiopsis</i> Pax	11.Ex.7	<i>australis</i> (Heuff.) Zämelis	49.Ex.6
<i>Prosopis</i>	53.Ex.21	- - subsp. <i>dacica</i> Rummelsp.	49.Ex.6
- " <i>cineraria</i> " (Druce, 1914)	53.Ex.21	- - var. <i>serbica</i> W. Zimm.,	
<i>Protea</i> L. 1771, nom. cons., non L. 1753		not "(W. Zimm.) Rummelsp."	49.Ex.6
	14.Ex.10, Rec.50E.Ex.1	<i>Pyraceae</i>	19Ex.5
- <i>cynaroides</i> (L.) L.	14.Ex.10	<i>Pyricularia</i> Sacc.	57.Ex.3
<i>Protodiniaceae</i> Kof. & Swezy,		<i>Pyroideae</i> Burnett	19Ex.5
not " <i>Protodiniaceae</i> "	45.Ex.5	<i>Pyrola</i> L.	19Ex.6
<i>Protogaecia allonensis</i> Herend. & al.	1.Ex.2	<i>Pyrolaceae</i> Link	19Ex.6
<i>Psathyrella sarcocephalus</i> (Fr. : Fr.) Singer		<i>Pyroloideae</i> Kostel.	19Ex.6
	Rec.50E.Ex.7	<i>Pyrophacus</i> F. Stein	11.Ex.29
× <i>Pseudadenia</i> P. F. Hunt	H.6.Ex.3	<i>Pyrus</i> L.	19.Ex.5, 41.Ex.14
<i>Pseudelephantopus</i> Rohr, nom. cons.,		- <i>calleryana</i> Decne.	Rec.50F.Ex.1
not <i>Pseudo-elephantopus</i>	60.Ex.27	- <i>maireri</i> H. Lévl., not " <i>Pirus</i> "	Rec50F.Ex.1
" <i>Pseudoditrichaceae</i> " (Steere & Iwatsuki, 1974)		<i>Quercus</i>	60G.Ex.1
	38.Ex.16	- <i>alba</i> L.	H.10.Ex.6
<i>Pseudoditrichum</i> (Steere & Iwatsuki, 1974)		- × <i>deamii</i> Trel.	H.10.Ex.6
	38.Ex.16	- <i>frainetto</i> 'Hungarian Crown'	28.Ex.2
- <i>mirabile</i> Steere & Iwatsuki	38.Ex.16	- <i>macrocarpa</i> Michx.	H.10.Ex.6
<i>Pseudolarix</i> Gordon	10.Ex.5	- <i>muehlenbergii</i> Engelm.	H.10.Ex.6
- <i>amabilis</i> (J. Nelson) Rehder	10.Ex.5	- <i>polystachya</i> A. DC.	49.Ex.8
<i>Pseudorchis</i> Ség.	H.6.Ex.3	<i>Quisqualis</i> L.	20.Ex.8
<i>Pseudo-salvinia</i> Piton, not " <i>Pseudosalvinia</i> "		<i>Racodium rupestre</i> Pers.	7.Ex.3
	60.Ex.27	" <i>Radicula</i> "	20.Ex.2
<i>Pseudoyougia</i> D. Maity		<i>Radicula</i> Moench	20.Ex.2
& Maiti sect. <i>Pseudoyougia</i>	22.Ex.6	<i>Radiola</i> Hill	23.Ex.4
- sect. <i>Simulatrixes</i> (Sennikov) D. Maity & Maiti	22.Ex.6	- <i>linoides</i> Roth	23.Ex.4
		- " <i>radiola</i> " (Karsten, 1882)	23.Ex.4
<i>Psilotum truncatum</i> R. Br.	52.Ex.7	<i>Ranunculaceae</i>	30.Ex.15
- " <i>truncatum</i> " auct., or R. Br. pro parte	52.Ex.7	<i>Ranzanioideae</i> Nakai	37.Ex.2
" <i>Psoroma murale</i> Samp"	41.Ex.10	<i>Raphidomonas</i> F. Stein	16.Ex.6
<i>Pteridium aquilinum</i> subsp. <i>caudatum</i> (L.) Bonap.		<i>Raphidophyceae</i> Chadeff. ex P. C. Silva	16.Ex.6
	Rec.26A.Ex.2	<i>Ravensara</i> Sonn.	55.Ex.1
- - var. <i>caudatum</i> (L.) Sadeb.	Rec..26A.Ex.2	<i>Renanthera</i> Lour.	H.8.Ex.3
<i>Pteridophyta</i> Bergen & B. M. Davis		<i>Rhamnus</i> L.	62.Ex.1
	13.1(a), 16.Ex.3	- sect. <i>Pseudofrangula</i> Grubov	Rec.22A.Ex.1
<i>Pteridophytina</i> B. Boivin	16.Ex.3	- subg. <i>Pseudofrangula</i> (Grubov) Brizicky	Rec.22A.Ex.1
" <i>Pteridospermaexylon</i> " (Greguss, 1952)	36.Ex.5		
- " <i>theresiaae</i> " (Greguss, 1952)	36.Ex.5	- <i>vitis-idaea</i> Burm. f., not " <i>vitis idaea</i> "	23.Ex.16
<i>Pteris caudata</i> L.	Rec.26A.Ex.2	<i>Rhaptopetalaceae</i> (Pierre, 1897)	36.Ex.8
<i>Ptilostemon</i> Cass.	11.Ex.9	<i>Rhaptopetalum</i> Oliv.	36.Ex.8

<i>Rheedia kappleri</i> Eyma	9.Ex.5	- <i>regia</i> (Kunth) O. F. Cook	14.Ex.6
<i>Rheum ×cultorum</i>		<i>Rubia</i> L.	53.Ex.12
(Thorsrud & Reisaeter, 1948)	32.Ex.2	<i>Rubus</i> L.	53.Ex.12
<i>Rhododendreae</i> Brongn.	19.Ex.4	- <i>aculeatiflorus</i> Hayata	11.Ex.10
<i>Rhododendroideae</i> Endl.	19.Ex.4	- - var. <i>taitoensis</i> (Hayata) T. S.	
<i>Rhododendron</i> L.		Liu & T. Y. Yang	11.Ex.10
19.Ex.4, 20.Ex.1, 22.Ex.1, Rec.60A.Ex.1		- <i>ammicola</i> Blanch., not " <i>amnicolus</i> "	23.Ex.8
subg. <i>Rhododendron</i> .	22.Ex.1	- <i>fanjingshanensis</i> L. T. Lu ex Boufford & al.	
<i>aureodorsale</i> (W. P. Fang ex J. Q. Fu)			46.Ex.26
Y. P. Ma & J. Nielsen	30.Ex.7	- <i>quebecensis</i> L. H. Bailey	Rec.60D.Ex.1
- <i>bureavii</i> Franch., not " <i>bureaui</i> "	60.Ex.15	- <i>taitoensis</i> Hayata	11.Ex.10
<i>potaninii</i> Batalin, not " <i>potanini</i> "	60.Ex.31	- - var. <i>taitoensis</i>	11.Ex.10
<i>Rhodophyllaceae</i>	18.Ex.1	<i>Rumex cantabricus</i> Rech. f.	23.Ex.5
<i>Rhodophyllidaceae</i>	18.Ex.1	<i>Saccharomyces</i> Meyen	16.Ex.6
<i>Rhodophyllis</i>	18.Ex.1	<i>Saccharomycetes</i> G. Winter	16.Ex.6
<i>Rhodophyllus</i>	18.Ex.1	<i>Sacheria</i> Sirodot	48.Ex.1
<i>Rhodora</i> L.	19.Ex.4	<i>Sadleria hillebrandii</i> Rob.	41.Ex.17
<i>Rhodoreae</i> D. Don	19.Ex.4	- " <i>pallida</i> " (sensu Hillebrand, 1888),	
<i>Rhodymenia</i> Grev., not " <i>Rhodomenia</i> "	14.Ex.12	non Hook. & Arn.	41.Ex.17
<i>Rhynchospora</i>	37.Ex.10	<i>Salicaceae</i> Mirab.	18.Ex.1, 52.Ex.18
<i>Rhynchosstylis</i> Blume	H.6.Ex.6	<i>Salicornia europaea</i> L.	26.Ex.3
<i>Ribes non-scriptum</i> (Berger) Standl.	60.Ex.25	- - var. <i>herbacea</i> L.	26.Ex.3
<i>Richardia</i> L.	51.Ex.5	<i>Salix</i> L.	18.Ex.1, 52.Ex.3, 52.Ex.18
<i>Richardsonia</i> Kunth	51.Ex.5	- sect. <i>Argentaeae</i> W. D. J. Koch	49.Ex.7
<i>Ricinocarpaceae</i> Hurus.	6.Ex.11	- sect. <i>Glaucuae</i> Pax	49.Ex.7
<i>Ricinocarpeae</i> Müll.-Arg.	6.Ex.11	- subsect. <i>Myrtilloides</i> C. K. Schneid.,	
<i>Ricinocarpos</i> Desf.	6.Ex.11	not "(C. K. Schneid.) Dorn"	49.Ex.7
- sect. <i>Anomodiscus</i>	21.Ex.1	- <i>aurita</i> L.	H.2.Ex.1
<i>Rodauea</i> W. Rossi & Santam.	30.Ex.2	- <i>caprea</i> L.	H.2.Ex.1
× <i>Rodrethiopsis</i> Moir	H.6.Ex.6	- × <i>capreola</i> Andersson	H.3.Ex.1
<i>Rodriguezia</i> Ruiz & Pav.	H.6.Ex.6	- <i>glaucops</i> Andersson (pro hybr.)	50.Ex.2
<i>Roegneria hirsuta</i> Keng	41.Ex.24	- <i>humilis</i> Marshall	11.Ex.27
<i>Roridomyces</i> Rexer	30.Ex.17	- - var. <i>microphylla</i> (Andersson) Fernald	11.Ex.27
<i>Rorippa</i> Scop.	14.Ex.3	- - var. <i>tristis</i> (Aiton) Griggs	11.Ex.27
<i>Rosa</i> L.	18.Ex.1, 19.Ex.2, 19.Ex.5,	- <i>myrsinifolia</i> Salisb.	52.Ex.3
	20.Ex.1, 46.Ex.1	- " <i>myrsinites</i> " sensu Hoffm., non L.	52.Ex.3
- <i>canina</i> L.	H.3.Ex.3	- <i>tristis</i> Aiton	11.Ex.27
- <i>gallica</i> L.	46.Ex.1	- - var. <i>microphylla</i> Andersson	11.Ex.27
- - var. <i>eristyla</i> R. Keller	46.Ex.1	- - var. <i>tristis</i>	11.Ex.27
- - var. <i>gallica</i>	46.Ex.1	<i>Salvia</i> sect. <i>Hemisphace</i> Benth.	41.Ex.3, 46.Ex.15
- <i>glutinosa</i> var. <i>leioclada</i> H. Christ	24.Ex.7	- " <i>africana coerulea</i> " (Linnaeus, 1753)	23.Ex.15
- <i>jundzillii</i> f. <i>leioclada</i> Borbás	24.Ex.7	- <i>grandiflora</i> subsp. <i>willeana</i> Holmboe,	
- <i>pissardii</i> Carrière, not " <i>pissardi</i> ",		subsp. " <i>S. willeana</i> "	24.Ex.5
nor " <i>pissarti</i> "	60.Ex.32	- - <i>oxyodon</i> Webb & Heldr.	30.Ex.10
- × <i>toddiae</i> Wolley-Dod, not "× <i>toddii</i> "	60.Ex.35	<i>Sapium</i> subsect. <i>Patentinervia</i>	21.Ex.1
- <i>webbiana</i>	Rec.60C.1(d)	<i>Saxifraga aizoon</i> [var. <i>aizoon</i> subvar.	
<i>Rosaceae</i> Juss.	18.Ex.1, 19.Ex.2, 19.Ex.5,	<i>brevifolia</i> f. <i>multicaulis</i>] subf.	
	46.Ex.1, 53.Ex.18	<i>surculosa</i> Engl. & Irmsch.	24.Ex.1
<i>Roseae</i> DC.	19.Ex.2	<i>Scaevola taccada</i> (Gaertn.) Roxb.	41.Ex.7
<i>Rosoideae</i> Endl.	19.Ex.2	<i>Scandix pecten-veneris</i> L., not " <i>pecten</i> ♀"	23.Ex.2
<i>Roystonea elata</i> (W. Bartram) F. Harper	14.Ex.6	<i>Scenedesmus armatus</i> var.	

<i>brevicaudatus</i> (Hortob.) Pankow, non (L. S. Péterfi) E. H. Hegew.	53.Ex.17	<i>Sersalisia</i> R. Br.	36.Ex.1
- f. <i>brevicaudatus</i> L. S. Péterfi	53.Ex.17	- ? <i>acuminata</i> Baill.	36.Ex.1
- <i>carinatus</i> var. <i>brevicaudatus</i> Hortob.	53.Ex.17	<i>Seseli divaricatum</i> Pursh	61.Ex.1
" <i>Schaenoides</i> " (Rottbøll, 1772)	20.Ex.10	<i>Sesleria</i>	Rec.60B.1(b)
<i>Schiedea "gregoriana"</i> (Degener, 1936)	39.Ex.2	<i>Setaria excurrens</i> var. <i>leviflora</i> Keng ex S. L. Chen	40.Ex.6
- <i>kealiae</i> Caum & Hosaka	39.Ex.2	<i>Sicyos</i> L.	62.Ex.1
<i>Schinus molle</i> L.	23.Ex.6	- <i>triqueter</i> Moç. & Sessé ex Ser.	46.Ex.13
<i>Schoenoxiphium</i>	46.Ex.3	<i>Sida retusa</i> L.	9.Ex.10
- <i>altum</i> Kukkonen	46.Ex.3	<i>Sideroxyylon</i> L., not " <i>Sideroxylyum</i> "	13.Ex.4
<i>Schoenus</i> L.	20.Ex.10	<i>Sigillaria</i> Brongn.	11.Ex.1
<i>Scilla peruviana</i> L.	51.Ex.3	<i>Sigillariostrobus</i> Schimp.	11.Ex.14
<i>Scirpoides</i> Ség.	35.Ex.4, 38.Ex.18	<i>Silene</i> L.	11.Ex.14
" <i>Scirpoides</i> " (Rottbøll, 1772)	20.Ex.10, 35.Ex.4	- <i>behen</i> L.	11.Ex.14
- " <i>paradoxus</i> " (Rottbøll, 1772)	35.Ex.4	- <i>cucubalus</i> Wibel	11.Ex.14
<i>Scirpus</i> L.	20.Ex.10	- <i>vulgaris</i> (Moench) Garcke	11.Ex.14
- sect. <i>Pseudoëriophorum</i> Jurtzev, not sect. " <i>Pseudo-eriophorum</i> "	60.Ex.24	<i>Simarouba</i> Aubl.	53.Ex.13
- <i>cespitosus</i> L., not " <i>caespitosus</i> "	60.Ex.1	<i>Simaruba</i> Boehm.	53.Ex.13
- <i>iridifolius</i> Bory	41.Ex.20	<i>Siphonia</i> Benth., not Rich. ex Schreb.	30.Ex.12
<i>Sclerocroton</i>	11.Ex.22	<i>Skeletonema</i> Grev.	6.Ex.4
- <i>integerrimus</i> Hochst.	11.Ex.22	<i>Skeletonemopsis</i> P. A. Sims	6.Ex.4
- <i>reticulatus</i> Hochst.	11.Ex.22	<i>Skytanthus</i> Meyen	53.Ex.8
<i>Scleroderma</i>	18.Ex.1	<i>Sladenia integrifolia</i> Y. M. Shui & W. H. Chen	Rec.40A.Ex.1
<i>Sclerodermataceae</i>	18.Ex.1		Rec.60B.1(a)
<i>Scolosanthus leonardii</i> Alain	60.Ex.39	<i>Sloanea</i>	Rec.60B.1(a)
<i>Scyphophora ecmocyna</i> Gray	58.Ex.6	<i>Smilax "caule inermi"</i> (Aublet, 1775)	23.Ex.9
<i>Scytanthus</i> Hook.	53.Ex.8	<i>Smithia</i> Aiton, nom. cons., non Scop.	14.Ex.11
<i>Scytopetalaceae</i> Engl.	36.Ex.8	<i>Solanaceae</i>	46.Ex.33
<i>Scytopetalum</i> (Pierre, 1897)	36.Ex.8	<i>Solanum</i> L.	11.Ex.3, 22.Ex.3
" <i>Scytosiphon castaneus</i> "	46.Ex.22	- sect. <i>Acanthophora</i> Dunal	11.Ex.3
<i>Sebastian-schaueria</i> Nees	20.Ex.8	- sect. <i>Leptostemonum</i> Dunal	11.Ex.3
<i>Sebertia</i> Engl., not "Pierre ex Baill."	36.Ex.1	- subg. <i>Leptostemonum</i> Bitter	11.Ex.3
- " <i>acuminata</i> Pierre (ms.)" (Baillon, 1891)	36.Ex.1	- subg. <i>Minon</i> Raf.	22.Ex.3
	36.Ex.1	- sect. <i>Pseudocapsicum</i> (Medik.) Roem. & Schult.	22.Ex.3
<i>Sedum</i> L.	11.Ex.18	- "subg. <i>Pseudocapsicum</i> "	22.Ex.3
- <i>candollei</i> Hamet	11.Ex.18	- subg. <i>Solanum</i>	22.Ex.3
- <i>eriocarpum</i> subsp. <i>spathulifolium</i> 't Hart	40.Ex.7	- <i>baretiae</i> Tepe	31.Ex.5
	40.Ex.7	- <i>dasyopus</i> Drège ex Dunal	46.Ex.33
- <i>sedoides</i> (Decne.) Raym.-Hamet	11.Ex.18	- <i>lycopersicum</i> L.	14.Ex.1
<i>Selaginella</i>	31.Ex.6	- <i>mammosum</i> L.	11.Ex.3
- "apoda"	61.Ex.2	- <i>melongena</i> var. <i>insanum</i> Prain	24.Ex.2
- <i>apus</i> Spring	61.Ex.2	- <i>pseudocapsicum</i> L.	22.Ex.3
<i>Selenicereus</i> (A. Berger) Britton & Rose	H.6.Ex.1	- <i>rantonnetii</i> Carrière, not " <i>rantonnei</i> "	60.Ex.17
× <i>Seleniphyllum</i> Rowley	H.6.Ex.1	<i>tuberosum</i> var. " <i>murukewillu</i> " Ocho,	
<i>Sempervivum sedoides</i> Decne.	11.Ex.178	not <i>murukewillu</i>	60.Ex.28
<i>Senecio napeaifolius</i>		- <i>umtuma</i> Voronts. & S. Knap	6.Ex.7
(DC.) Sch. Bip., not " <i>napeaifolius</i> "	53.Ex.12, 60.Ex.21	<i>Solidago</i> L.	11.Ex.38
- <i>napiifolius</i> MacOwan	53.Ex.12	× <i>Solidaster</i> H. R. Wehrh.	11.Ex.38
<i>Serratula chamaepeuce</i> L.	11.Ex.9	<i>Solms-laubachia</i> Muschl. ex Diels	20.Ex.8
		<i>Sophora tomentosa</i> subsp.	

<i>occidentalis</i> (L.) Brummitt	46.Ex.8	- <i>punctata</i> Aubl.	62.Ex.7
× <i>Sophrolaeliocattleya</i> Hurst	H.6.Ex.6	<i>Tapeinanthus</i> Boiss. ex Benth.,	
<i>Sophronitis</i> Lindl.	H.6.Ex.6	non Herb.	41.Ex.2, 53.Ex.1
" <i>Sorghum drummondii</i> Nees"	46.Ex.24	<i>Taraxacum</i> Zinn, not " <i>Taraxacvm</i> "	60.Ex.9
<i>Spartium biflorum</i> Desf.	11.Ex.11	<i>Tasmanites</i> E. J. Newton	11.Ex.34
<i>Spathiphyllum solomonense</i> Nicolson,		<i>Taxus</i> L.	62.Ex.2
not " <i>solomonensis</i> "	Rec.50F.Ex.3	- <i>baccata</i> var. <i>variegata</i> Weston	28.Ex.1
<i>Spergula stricta</i> Sw.	11.Ex.12	-- 'Variegata'	28.Ex.1
<i>Spermatophyta</i>	13.1(a)	<i>Tephrosieris</i> (Rchb.) Rchb.	49.Ex.3
<i>Sphagnaceae</i>	13.1(b), 13.1(c)	- sect. <i>Eriopappus</i> (Dumort.) Holub	49.Ex.3
<i>Sphagnum</i> "b. <i>Sph. rigida</i> " (Lindberg, 1862)		<i>Terminaliaceae</i> J. St.-Hil.	14.Ex.4
	21.Ex.2	<i>Tersonia cyathiflora</i> (Fenzl)	
- sect. <i>Rigida</i> (Lindb.) Limpr.	21.Ex.2	A. S. George ex J. W. Green	46.Ex.29
- sect. " <i>Sphagna rigida</i> " (Limpricht, 1885)	21.Ex.2	<i>Tetraglochin</i> Poepp.	62.Ex.5
- [unranked] <i>Rigida</i> Lindb.	21.Ex.2	<i>Tetragonia tetragonoides</i> (Pall.) Kuntze	60.Ex.23
<i>Sphenocleioideae</i> Lindl.,		<i>Tetramelas thiopolizus</i> (Nyl.) Giralt & Clerc	
"Sub-Order ? <i>Sphenocleaceae</i> "	19.Ex.1		42.Ex.1
<i>Spiraea</i> L.	19.Ex.5	" <i>Thamnos</i> ", " <i>Thamnus</i> "	51.Ex.1
<i>Spiraceae</i>	19.Ex.5	<i>Thea</i> L.	13.Ex.3
<i>Spiraeoideae</i> Arn.	19.Ex.5	<i>Thunbergia</i> Retz., nom. cons.,	
<i>Spondias mombin</i>	23.Ex.1	non Montin	19.Ex.8
<i>Stachys</i> L.	62.Ex.1	<i>Thunbergioideae</i> T. Anderson	19.Ex.8
- × <i>ambigua</i> Sm. (pro sp.)	50.Ex.1	<i>Thuspeinanta</i> T. Durand	41.Ex.1, 53.Ex.1
- <i>palustris</i> subsp. <i>pilosa</i> (Nutt.) Epling		<i>Thymus britannicus</i> Ronniger	11.Ex.16
	Rec.26A.Ex.1	- <i>praecox</i> subsp. <i>arcticus</i> (Durand) Jalas	11.Ex.16
-- var. <i>pilosa</i> (Nutt.) Fernald	Rec.26A.Ex.1	-- subsp. <i>britannicus</i> (Ronniger) Holub	11.Ex.16
<i>Stammnostoma</i> A. Long	1.Ex.3	- <i>serpyllum</i> L. subsp. <i>arcticus</i> (Durand) Hyl.	
- <i>huttonense</i> A. Long	1.Ex.3		11.Ex.16
<i>Staphylea</i> , not " <i>Staphylis</i> "	51.Ex.1	-- var. <i>arcticus</i> Durand	11.Ex.16
<i>Stenocarpus</i> R. Br.	62.Ex.3	-- subsp. <i>britannicus</i> (Ronniger)	
" <i>Sterocaulon subdenudatum</i> " Havaas	36.Ex.6	P. Fourn.	11.Ex.16
<i>Stillingia</i>	11.Ex.22	<i>Tiarella cordifolia</i> L.	H.11.Ex.1
- <i>integerrima</i> (Hochst.) Baill.	11.Ex.22	<i>Tibetoseris</i> sect. <i>Simulatrices</i> Sennikov	22.Ex.6
<i>Strychnos</i> L.	62.Ex.1	Sennikov sect. <i>Tibetoseris</i>	22.Ex.6
<i>Suaeda</i> (Forsskål, 1775)	35.Ex.1	<i>Tilia</i>	10.Ex.4
- " <i>baccata</i> " (Forsskål, 1775)	35.Ex.1	<i>Tillaea</i> , not " <i>Tillia</i> "	51.Ex.1
- " <i>vera</i> " (Forsskål, 1775)	35.Ex.1	<i>T. barclayana</i> var. <i>minor</i> (Gilmartin) Butcher	
<i>Swainsona formosa</i> (D. Don) Joy Thomps.			41.Ex.23
	11.Ex.23	- <i>bryoides</i> Griseb. ex Baker	9.Ex.11
<i>Symphostemon</i> Hiern	53.Ex.12	- <i>lateritia</i> André	41.Ex.23
<i>Symphyostemon</i> Miers	53.Ex.12	<i>Tilletia caries</i> (DC.) Tul. & C. Tul.	H.2.Ex.1
<i>Synthlipsis berlandieri</i> A. Gray	11.Ex.28	- <i>foetida</i> (Wallr.) Liro.	H.2.Ex.1
- var. <i>berlandieri</i>	11.Ex.28	<i>Tillia</i>	51.Ex.1
- var. <i>hispidata</i> S. Watson	11.Ex.28	<i>Tithymalus</i>	36.Ex.12
<i>Synthyris</i> Benth. subg. <i>Synthyris</i>	11.Ex.25	- " <i>jaroslavii</i> " (Poljakov, 1953)	36.Ex.12
<i>Synthyris</i> subg. <i>Plagiocarpus</i> Pennell	11.Ex.25	<i>Tmesipteris elongata</i> P. A. Dang.	52.Ex.7
<i>Talinum polyandrum</i> Hook.,		- <i>truncata</i> (R. Br.) Desv.	52.Ex.7
non Ruiz & Pav.	58.Ex.1	<i>Torreya</i> Arn., nom. cons., non Raf.	53.Ex.2
<i>Tamus</i> , not " <i>Tamnus</i> "	51.Ex.1	<i>Tragus berteronianus</i> Schult.,	
<i>Taonabo</i> Aubl.	62.Ex.7	not " <i>berteroanus</i> "	60.Ex.16
- <i>dentata</i> Aubl.	62.Ex.7	<i>Tremellaceae</i>	37.Ex.6

<i>Triaspis mossambica</i> A. Juss., not "mozambica"	60.Ex.1	<i>Valeriana</i> sect. <i>Valerianopsis</i>	21.Ex.1
<i>Trichipteris kalbreyeri</i> (Baker) R. M. Tryon	41.Ex.19	<i>Vanda</i> W. Jones ex R. Br.	H.6.Ex.6, H.8.Ex.3
<i>Trichoderma dorotheae</i> Samuels & Dodd	59.Ex.4	- <i>lindleyana</i>	Rec.60C.1(c)
<i>Tricholomataceae</i> Pouzar, not <i>Tricholomataceae</i> (Roze, 1876)	18.Ex.10	× <i>Vascostylis</i> Takakura	H.6.Ex.6
<i>Trichomanes</i>	23.Ex.19	<i>Venturia acerina</i> Plakidas ex M. E. Barr	59.Ex.3
<i>Trifolium</i>	23.Ex.19	<i>Verbascum</i> sect. <i>Aulacosperma</i> Murb.	53.Ex.18
- <i>indicum</i> L., not " <i>M. indica</i> "	23.Ex.19	- <i>lychnitis</i> L.	H.10.Ex.3
<i>Triglochin</i> L.	62.Ex.5	- " <i>nigro-lychnitis</i> " (Schiede, 1825)	H.10.Ex.3
<i>Trilepisium</i> Thouars	38.Ex.20	- <i>nigrum</i> L.	23.Ex.5, H.10.Ex.3
- <i>madagascariense</i> DC.	38.Ex.20	- × <i>schiedeanum</i> W. D. J. Koch	H.10.Ex.3
<i>Trimerophytina</i> H. P. Banks	16.Ex.6	<i>Verbena hassleriana</i>	Rec.60C.1(d)
<i>Trimerophyton</i> Hopping	16.Ex.6	<i>Verbesina alba</i> L.	11.Ex.23
<i>Trisetum</i>	46.Ex.34	- <i>prostrata</i> L.	11.Ex.23
<i>Triticum</i> L.	H.3.Ex.3, H.8.Ex.1	<i>Veronica</i> L.	11.Ex.25
- <i>aestivum</i> L.	H.3.Ex.3	- subg. <i>Synthyris</i> (Benth.) M. M.	
- <i>laxum</i> Fr.	H.5.Ex.1	Mart. Ort. & al.	11.Ex.25
× <i>Tritordeum</i> Asch. & Graebn.	H.8.Ex.1	- <i>anagallis-aquatica</i> L., not " <i>anagallis</i> [▽]"	23.Ex.2, 60.Ex.26
<i>Trollius taihasenzenanensis</i> Masam., not " <i>Torilis</i> "	60.Ex.3	<i>Verrucaria aethiobola</i> Wahlenb., not "Wahlenb. in Acharius", nor "Wahlenb. ex Ach."	46.Ex.9
<i>Tropaeolum majus</i> L.	23.Ex.5	<i>Vexillifera</i> Ducke	6.Ex.5
<i>Tsuga</i>	7.Ex.1	- <i>micranthera</i>	6.Ex.5
- <i>heterophylla</i> (Raf.) Sarg.	7.Ex.1	<i>Viburnum ternatum</i> Rehder	46.Ex.2
- <i>mertensiana</i> (Bong.) Carrière	7.Ex.1	<i>Vicia</i> L.	18.5, 46.Ex.31
<i>Tuber</i> F. H. Wigg. : Fr.	20.Ex.3	- <i>amurensis</i> f. <i>sanneensis</i> Y. C. Jiang & S. M. Fu, not Y. C. Jiang & S. M.	
- <i>gulosorum</i> F. H. Wigg.	20.Ex.3	Fu ex Ma & al.	46.Ex.31
<i>Tuberculodinium</i> D. Wall	11.Ex.29	<i>Vinca major</i> L.	23.Ex.5
<i>Tursicola podocnemicola</i>	29.Ex.3	<i>Vincetoxicum</i>	51.Ex.1
<i>Ubochea</i> Baill.	Rec.60B.Ex.1	<i>Viola hirta</i> L.	24.Ex.7
<i>Uffenbachia</i> Fabr., not " <i>Vffenbachia</i> "	60.Ex.9	- " <i>qualis</i> " (Krocker, 1790)	23.Ex.10
<i>Uladendron codesuri</i> Marc.-Berti, not <i>codesurii</i>	60.Ex.33	- <i>tricolor</i> var. <i>hirta</i> Ging.	24.Ex.7
<i>Ulmus racemosa</i> Thomas, non Borkh.	Rec.50C.	<i>Vitellaria paradoxa</i> C. F. Gaertn.	9.Ex.7
Ex.1		- subsp. <i>nilotica</i> (Kotschy) A. N. Henry & al.	9.Ex.7
<i>Umbelliferae</i>	18.5	- subsp. <i>paradoxa</i>	9.Ex.7
<i>Uredinales</i>	13.1(d)	<i>Vitis novae-angliae</i> Fernald	60.Ex.25
<i>Uredo pustulata</i> Pers., not " <i>Vredo pvstvlata</i> "	60.Ex.10	<i>Vriesea barclayana</i> var. <i>minor</i> Gilmartin	41.Ex.23
<i>Uromyces fabae</i>	23.Ex.1	<i>Vulpia myuros</i> (L.) C. C. Gmel.	26.Ex.2
<i>Urosatheae</i> Nakai	37.Ex.2	- - " <i>subsp. pseudo-myuros</i> (Soy.-Will.) Maire & Weiller"	26.Ex.2
<i>Urtica "dubia?"</i> (Forsskål, 1775)	23.Ex.10	<i>Wahlenbergia</i> Roth	11.Ex.2
<i>Urvillea</i> Kunth	53.Ex.12, Rec.60B.Ex.1	<i>Waltheria americana</i> L.	11.Ex.21
<i>Ustilaginales</i>	13.1(d)	- <i>indica</i> L.	11.Ex.21
<i>Uva-ursi</i> Duhamel, not " <i>Uva ursi</i> " (Miller, 1754)	20.Ex.7	<i>Wintera</i> Murray	18.Ex.6
<i>Vaccinium</i> sect. " <i>Vitis idaea</i> " W. D. J. Koch, not " <i>Vitis-idaea</i> "	60.Ex.26	<i>Winteraceae</i> R. Br. ex Lindl.	18.Ex.6
- <i>cantabricum</i> Huds.	23.Ex.5	<i>Wisteria</i> Nutt., not " <i>Wistaria</i> "	60.Ex.7
<i>Valantia</i> L., not " <i>Vaillantia</i> "	60.Ex.13	<i>Wollemia nobilis</i> W. G. Jones & al.	60.Ex.19
		<i>Xanthoceras</i> Bunge	62.Ex.6
		<i>Xanthoxylon</i> , " <i>Xanthoxylum</i> "	Rec.50F.Ex.2

<i>Xerocomus</i> Quél.	Rec.62A.Ex.1	<i>Zingiber truncatum</i> Stokes,	
<i>Xylomataceae</i> Fr., "ordo <i>Xylomaceae</i> "	18.Ex.4	non S. Q. Tong	53.Ex.6
<i>Zanthoxyleae</i> Dumort.	37.Ex.1	- <i>neotruncatum</i> T. L. Wu & al.	53.Ex.6
<i>Zanthoxylum caribaeum</i> var. <i>floridanum</i> (Nutt.) A.		<i>Zygophyllum billardierei</i> DC.,	
Gray, not " <i>Xanthoxylum</i> "	Rec.50F.Ex.2	not " <i>billardierii</i> "	60.Ex.17
- <i>cribrosum</i> Spreng., not		<i>Zyrphelis</i>	30.Ex.20
" <i>Xanthoxylon</i> "	Rec.50F.Ex.2		

주제 색인

이 색인의 모든 참조는 쪽이 아니라 규약의 조항, 권고 등을 표시하였고 다른 부호는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다: Div.=부; Ex.=예제; fn.=각주; Gl.=용어; H.= 부록 1 (잡종); N.= 노트; Pre.=전문; Prin.=원칙; Arabic numerals = 조항 혹은 그에 따른 문자는 권고

참조의 편이를 위해 몇 개의 소색인은 다음과 같은 머릿 단어, 즉, 축약형, 정의, 소명, 출판, 표기와 단어 아래에 포함시켰다.

규약 본문과 부록1에 기재된 라틴 학명은 주제에 포함시키지 않고, 학명색인에 제시하였다.

Abbreviation, author's name	저자 축약	46A	n- (notho-)	H.3.1
- herbarium name		40.N.4	nob. (nobis)	46D
- personal name		60B.N.2	nom. alt. (nomen alternativum)	
- ranks		5A		18.5-6, 19.Ex.3, 19.8
			nom. cons. (nomen conservandum)	50E.1, G1.
<i>Abbreviations:</i> 축약			nom. nov. (nomen novum)	6.11, 32A, G1.
auct. (auctorum)		50D	nom. nud. (nomen nudum)	50B, G1.
cl. (class)		5A	nothosp. (nothospecies)	5A
comb. nov. (combinatio nova)	6.10, 32A, G1.		op. cit. (opere citato)	41A
comb. & stat. nov. (combinatio et status novi)	6.N.4		ord. (order)	5A
comb. in stat. nov. (combinatio in status novo)	6.Ex.13.		orth. cons. (orthographia conservanda)	50E.1
emend. (emendavit)		47A	PDF (Portable Document Format)	29.1
& (et)		46C.1	p. p. (pro parte)	47A
& al. (et aliorum)		46C.2	pro hybr. (pro hybrida)	50.Ex.2
excl. gen. (excluso genere, exclusis generibus)	47A		pro sp. (pro specie)	11 Ex. 39, 50.Ex.1
excl. sp. (exclusa specie, exclusis speciebus)	47A		pro syn. (pro synonymo)	50A
excl. var. (exclusa varietate, exclusis varietatibus)	47A		s. ampl. (sensu amplo)	47A
f. (forma)		5A	s. l. (sensu lato)	47A
fam. (family)		5A	s. str. (sensu stricto)	47A
gen. (genus)		5A	sect. (section)	5A
gen. nov. (genus novum)	6.9, 32A		ser. (series)	5A
ICNCP (<i>Internationa Code of Nomenclature for</i>			stat. nov. (status novus)	7.3
<i>Cultivated Plants</i>)	28.N.2		subg. (subgenus)	5A
ISBN (international Srandard Book Number)	29.1		subsp. (subspecies)	5A
ISSN (international Srandard Serial Number)	29.1		tr. (tribe)	5A
loc. cit. (loco citato)		41A	var. (variety)	5A
m. (mihi)		46D		
mut. char. (mutatis characteribus)		47A	Absence of a rule	규정의 부재
			Abstract of nomenclatural novlties	Pre. 13

명명법상 새로운 제안의 요약	30A.4	-- priority	59.N.2
Abstracting journals 초록지	30A.2	-- type	59.N.2
Acceptance of name 학명의 수용	34.1(a), 33.1	<i>Anthoceratae</i>	13.1(c)
Adjective, as epithet 접미어, 소명으로서		Apostrophe, deletion 인용부호, 삭제	60.10
23.1+5+6(a+c), 24.2, 60.8, 60C.1(c-d), 60D		Appendices 부칙	Prep. 9-10
- as noun	20A.1(f)	Appendix, I, see Hybrid 부칙	
- plural, as epithet	21.2, 21B.2-3	-- IIA	14.1+N.1, 18.Ex.10, 50E.1
- - as noun	18.1, 19.1	-- IIB	14.1+5+15, 19.5+Ex.5-6, 50E.1
Admixture 혼합물	8.2, G1.	- III	10.Ex.4-5, 13.Ex.4, 14.1+3+N.1+Ex11+13, 18.Ex.7, 19.Ex.8, 50E.1, 53.Ex.13, 60.Ex.6-7
Agreement, grammatical, see under Gender		- IV	14.1+N.1-2, 50E.1
합의, 문법적, 성별 부분을 참고		- V	50E.2, 53.Ex. 21, 56.1
- in number	60.N.4	- VI	20.N.2, 34.1
Agricultural plants, designation		- VII	38.4
농업 식물, 명칭	4.N.3, 28.N.2-5	- VIII	53.5
Algae, Fungi, and Plants		Arbitrary formation, epithet	
조류, 균류 및 식물	Pre.2+8, Prin.1	임의작성, 종소명	23.2
Algae, Committee for 조류, 위원회	Div. III.2	- generic name	20.1, 62.3
- fossil vs. non-fossil	11.8	Archiving, electronic material	
- homonymy with bacterial name	54.N.1	기록, 전자인쇄물	29A
- illustration	44.2, 44A	Article(s), in personal name	
- Latin description or diagnosis	44.1	인명관련 조항	60C.5(c)
- living culture from holotype	8B.1	- of the Code	Pre. 4
- names classes and subclasses	16.3	<i>Ascomycetes</i> , pleomorphic	
- originally assigned to group not covered by this Code	45.4	<i>Ascomycetes</i> , 다형성의	59
- starting points	13.1(e)	Ascription, definition 귀속, 정의	46.3, G1.
Alliance, instead of order		- effect on author citation	46.2+5+N.3
목의 학명을 대신하는 Alliance	17.2	Asexual form, see Anamorph	
Alteration of circumscription, author citation		무성 형성, 무성세대 참고	
종의 한계의 변경, 명명자의 인용	47, 47A	Author, citation (see also Citation)	
- of rank, author citation	49	저자 인용	46, G1.
- - priority	11.2	-- alteration of diagnostic characters	47
- of status, hybrid/non-hybrid	50	-- autonyms	22.1, 26.1
Alternative names 대체명	36.2, G1.	-- basionym	49
- different ranks	36.2	-- change of rank	19A.Ex.1, 49
- families	10.6, 11.1, 18.5-6, G1.	-- external evidence	46.9
- pleomorphic fungi	59.N.3	-- followed by "in"	46.N.1+Ex.32
- subfamily	10.6, 11.1, 19.8	-- homonyms	50C
- valid publication	36.2	-- hybrid names	50
Ambiguity, avoidance 애매함, 회피	Pre. 1	-- incorrect form	41.6
Amendment, see Modification 수정안, 수정 참고		-- internal evidence	46.8+N.3
<i>American code of botanical nomenclature</i>		-- omission	22.1, 26.1
미국식물명명규약	10.*Ex.7	-- parenthetical	49
Ampersand (&) 앰퍼샌드	46C	-- pre-starting point authors	46.7
Anagram 철자순서의 변경	20.Ex.1, 60B.N.2	-- unchanged	18.4, 19.7, 21.4, 24.4, 32.2, 47
Analysis 분석도표	38.9, G1.	-- with "&" or "& al."	46
- equivalence for organisms other than vascular plants	38.10	-- with "ex"	46.5-7+9
- for valid publication	38.7-9	Author names, abbreviation	
Anamorph 무성세대	59.N.1-2, G1.	명명자, 축약	46A+N.1
- naems not alternative	59.N.3	-- own to be used	46D
		-- romanization	46B

Authors, methods of working		Bona fide researchers	진정성을 가진 연구자	7A
명명자, 연구 방법	9A.1	Bryophyta, Committee for		
- of proposals	Div. III.4	선택식물, 위원회		Div.III
Autograph, indelible	인쇄물, 수기의 30.4-5, G1.	Bureau of Nomenclature		
Automatic typification, see Type		명명사무국		Div.III.3+4(b2)
자동기준표준화, 기준표본 참고	7.5, 10.6-7, G1.	- officers		Div.III.3
Autonym 자동명	6.8, G1.	Canonization, prefix indicating		
- establishment	22.3, 26.3	성자, 가르키는 접두어		60C.5(d)
- in new combination	11.N.4	Capital initial letter		
- infraspecific taxa	26.1	첫번째 글자는 대문자		20.1, 21.2, 60.2
- no author name	22.1, 26.1	Catalogue 카타로그		30.6
- priority	11.6	“Caulis”, not a generic name		
- subdivisions of genus	22.1	속명이 될 수 없는 “Caulis”		20.Ex.6
- valid publication	6.N.1, 32.3	CD-ROM		30A.Ex.1
Available, epithet		Change of name, proper reasons		
이용가능, 종소명	11.5, 15.6, 58, G1.	학명의 변경, 정당한 이유		Pre. 12
- name	14.10	Choice between names, see under Priority		
- printed matter	31.1	학명 중의 선택, 선취권 참고		
- under zoological Code	45.Ex.1.fn.	Choice of type, see Lectotype and Designation		
Avowed substitute, see Replacement name		기준표본의 선정, 선정기준표본과 지정 참고		
공인대치명		Circumscription 한계		Prin.IV, 6.6, 11.1
Back-cross 역교배	H.4.1	- alteration, citation		47, 47A
Bacterial names 세균의 학명	54A	- anticipation		36.1(b)
- nomenclature, see International		- causing nomenclatural superfluity		52.1
<i>Code of nomenclature of bacteria</i>		- nothotaxon		H.4
- taxa	54A	Citation (see also Author citation)		
<i>Basidiomycetes</i> , pleomorphic		인용 (명명자 인용도 참고)		
담자균류, 다형성의	59	- altered circumscription		47A
Basionym 기본명	6.10, 52.3, G1.	- basionym		41.3+5-6
- author citation	49	- bibliographic error		41.6+8
- reference	41, 41A	- concrete detail of type		40.N.2
- - full and direct	41.5+7, 41A	- date of publication		31B.1
- - indirect	41.3	- holotype		40.3
- - mere cross-reference to bibliography	41A	- homonym		50C
- - not given	41.4	- identifier issued by recognized repository		42.1
- restriction	41.2	- lectotype		9D, 40.2-3
- type	7.3	- “loc. cit.”, avoid use		41A
- without indication of rank	37.3	- misapplied name		50D
Bibliographic citation, error 출판 인용, 오류	41.6	- name not validly published		50A
- use of “in”	46.N.1	- nomen conservandum		50E.1
Bigeneric hybrid 양친 속	H.6.2	- nomen nudum		50B
Binary combination, See Combination		- “op. cit.”, avoid use		41A
이명 조합, 조합 참고		- orthographical variant		61.N.1
- - as epithet	24.4	- rules to follow		46
- system	20.2	- single element		40.3
Binding decision 구속력있는 결정	Pre9, G1.	- synonym		36.1, 50A
- In descriptive material satisfying		Class (classis), abbreviation 강, 단축형		5A
requirements for valid publication	38.4	- name		16.3
- on homonymy	53.5	- rank		3.1
Binomial 이명	23.1, G1.	Classical usage, see Tradition		
Blue-green algae 남조류	Pre.8	전통적 사용, 관례 참고		

Coalball	탄구 식물	8A.3	연결 모음	60.Ex.21, 60G.1(a2)
Code, editing	규약, 편집	Div.III.2	Conservation (see also Deposited material and Preservation)	
- governance		Pre.7, Div.III	보전명	Pre.9, 14, 14A, G1.
- modification		Div.III.1	- aims	14.1-2
“Cohors”, instead of order			- approved by General Committee	14.16
“목” 대신인 “cohors”		17.2	- citation	50E
Collection, culture or genetic resources			- combination under conserved homonym	55.3
수집물, 배양주 또는 유전자 자원		8B.1	- date, effect on competing names	14.N.3
- public		7A	- - not affecting priority	14.5-7
Collection data, citation	채집기록, 인용	40.N.2	- extent	14.4-5+10
- illustrated material		8A.2	- family name	14.1+4-5
Colon, use in sanctioned name			- - based on illegitimate generic name	18.3
: (콜론), 인가된 이름에 사용		50E.3	- - places of publication	14.15
Combination (see also New Combination)			- gender	14.11, 62.N.2
조합(새로운 조합도 참고)		6.7, G1.	- generic name	14.1+4
- based on rejected name	14.4+7+10, 50.N.1, 56.1		- illegitimate name	6.4, 14.1
- binary	21.1+4, 23.1, 24.4, G1.		- junior homonym	14.6+10+14, 53.1
- ternary	24.1		- limitation of priority by	11.3
- under conserved later homonym	55.3		- lists permanently open	14.12
- valid publication	35.2		- name against itself	14.N.1 +fn.
Committees, nomenclature	위원회, 명명규약		- - name of a subdivision of a genus	14.1
14.12-13+16, 14A, 29.3, 34.1-2, 56A, 34A, 38.4, 42.3, 53.5, 56.2-4, Div.III.2			- - name of an infraspecific taxon	14.1
Compact disk	콤팩트디스크(CD-ROM)	30A.Ex.1	- no entry to be deleted	14.14
Component, fungal, in lichens			- overrides sanctioning	15.6
구성, 균류의, 지의류에서		13.1(d)	- proposal	14.12+16, 14A
Compound	합성어	60G.1(a), G1.	- species name	14.1+4+N.2
- correctable epithets		60.8	- spelling	14.8+11, 60.N.1
- generic names, gender		62.2	- type	14.3+8-9, 48.N.2
- names and epithets		60G.1	Correct, grammar	정확한, 문법 Pre. 1
Condensed formula			- name	Prin. IV, 6.6, 11.1+3-4, G1.
단축 참조표시		H.6.1-2+4, H.7	- - choice	11.3+N.3, 14.5-7, 15.3-5
- as epithet		H.7, H.8.1	- - of nothotaxon	H.4-5, H.8
- commemorating person	H.6.3-4, H.6A, H.8.2		- - of pleomorphic fungus	59.1
- form	H.6.2-4, H.7		- - potentially	52.3, H.5.N.1
- name equivalent to		H.6.3-4, H.6A, H.8.2, H.9.N.1	- spelling, see Orthography	
- no type		40.1, H.9.N.1	Correction slip	30A.2
- nothogeneric name	20.N.1, H.6, H.6A, H.8-9		Cultivar	재배품종 28.N.2, G1.
- - more than two parental genera	H.6.3-4		- epithet	28.N.2+4
- - valid publication	32.1©+N.2, 40.1, H.9		Cultivated organisms	원예된 생물체 Pre. 11, 28
- parental generic names	H.8.1, H.9.1		- from the wild	28.1
Conflict with protologue			Culture	배양체 8.4
프로토로그와의 모순		9.19(b), 9A.4, 10.2+5	- collection	8B.1
Confused name, not to be used			- from type	8B.2
혼동되는 학명, 사용해서는 안 되는		57	- metabolically inactive state	8.4, 8B.2-3, 40.N.3
Confusingly similar names			Custom (see also Tradition), author abbreviation	
혼동되는 유사명		53.3-5, 61.5, G1.	관습 (관례도 참고), 명명자 축약형	46A.4
- binding decision		53.5	- established	Pre. 13, 23.8
- treated as homonyms		53.3-5	- prevailing	Pre. 1
Connecting vowel			Date, of autonym	자동명의 낱자 32.3
			- of name, definition	33.1, G1.

- - Linnaean generic	13.4, 38.N.1	Heterotypic synonym	14.4, G1.
- of publication	31.1-3, 31A, 31B.1, 31C.1	Holotype	9.1, G1.
- - starting point works	13.1+N.1	Homonym	53.1, G1.
- unchanged	16.3, 18.4, 19.7, 24.4, 32.7	Homotypic synonym	14.4, G1.
Decision, request for	심사 요청 38.4, 53.5	Hybrid formula	H.2.1, G1.
Deep-freezing 동결보존	8.4	Illegitimate name	6.4, G1.
<i>Definitions: 정의</i>			
Admixture	G1.	Illustration	8.1.fn., G1.
Alternative family names	18.6, G1.	Illustration with analysis	38.9-10
Alternative names	36.2, G1.	Improper Latin termination	G1.
Analysis	38.9, G1.	Indelible autograph	30.5, G1.
Anamorph	59.N.1-2, G1.	Indirect reference	38.14, G1.
Ascription	46.3, G1.	Informal usage	G1.
Author citation	G1.	Infraspecific	G1.
Automatic typification	G1.	Isoeotype	9C, G1.
Autonym	6.8, G1.	Isolectotype	9C, G1.
Available	G1.	Isonotype	9C, G1.
Available name	45.Ex.1.fn., G1.	Isonym	G1.
Avowed substitute	6.11, G1.	Isosytype	9.12, G1.
Basionym	6.10, 41.5, G1.	Isotype	9.4, G1.
Binary combination	23.1, G1.	Later homonym	53.1
Binary designation	G1.	Lectotype	9.2, G1.
Binding decision	38.4, 53.5, G1.	Legitimate name	6.5, G1.
Binomial	G1.	Misplaced term	G1.
Combinatio nova	G1.	Monotypic genus	38.6, 40.6, G1.
Combination	6.7, G1.	Name	6.3, G1.
Compound	60G.1, G1.	Name at new rank (status novus)	6.10, 7.3, G1.
Confusingly similar names	53.3-53.5, G1.	Name below rank of genus	11.4
Conserved name	14, G1.	Name of new taxon	6.9, G1.
Correct name	6.6, 11.4, G1.	Name of infraspecific taxon	24.1
Cultivar	G1.	Name of species	23.1
Date of name	33.1, G1.	Neotype	9.7, G1.
Descriptio generico-specifica	38.5, G1.	New combination	6.10, 7.3, G1.
Description	G1.	New name	G1.
<i>Definitions(continued)</i>			
Descriptive name	G1.	Nomen alternativum (nom. alt.)	18.6, G1.
Designation	G1.	Nomen conservandum (nom. cons.)	14.1, G1.
Diagnosis	38.2, G1.	Nomen novum (nom. nov.)	6.11, G1.
Duplicate	8.3.fn., G1.	Nomen nudum (nom. nud.)	38.Ex.1, 50B, G1.
Effective publication	6.1, 29-30, G1.	Nomen rejiciendum (nom. rej.)	14, 56.1, G1.
Element	G1.	Nomen utique rejiciendum (suppressed name)	56.1, G1.
Epithet	6.7, 21.2, 23.1-2, 24.2, G1.	Nomenclatural novelty	6.N.3-4, G1.
Epitype	9.8, G1.	Nomenclatural synonym	14.4, G1.
Ex-type, ex-holotype, ex-isotype	8B.2, G1.	Nomenclatural type	7.2, G1.
Final epithet	11.4.fn., G1.	Non-fossil material	13.3
Forma specialis	4.N.4, G1.	Non-fossil taxon	13.3, G1.
Fossil material	13.3	Non-valid publication	36.1
Fossil-taxon	1.2, G1.	Nothogenus	3.2, G1.
Gathering	G1.	Nothomorph	H.12.2.fn., G1.
		Nothospecies	3.2, G1.
		Nothotaxon	H.3.1, G1.
		Objective synonym	14.4.fn., G1.

Online	29.2	-- any language	43.N.1, 44.N.1
Opus utique oppressa	34.1, G1.	-- as requirement for valid publication	38.1
Organism	Pre.2.fn.+8, G1.	-- author of	46.N.2
Original material	9.2-3+N.2-4, G1.	-- binging decision	38.4
Original spelling	60.2, G1.	-- combined generic and specific	38.5+12
Orthographical variant	61.2, G1.	-- doubtful	38.4
Page reference	41.N.1, G1.	-- English	39.2, 39A, 43.1
Paratype	9.6, G1.	-- Latin	39.1-2, 39A, 43.1, 44.1
Position	G1.	-- none provided in protologue	38.1+N.1
Priority	7.9-10, 11, 53.N.1, G1.	-- pre-Linnaean	38A
Protologue	8A.4.fn., G1.	-- provision	38.1+5+11-12, 38B+E
Provisional name	36.1(b), G1.	-- published before 1753	38A
Pseudocompound	60G.1(c), G1.	-- reference	
Rank	G1.		32A, 38.1+11-14, 39.1-2, 43.1-2, 44.1-2
Rejected name	14.4, 56.1, G1.	--- full and direct	38.13
Replaced synonym	6.11, G1.	--- indirect	38.14
Replacement name (avowed substitute, nomen novum)	6.11, G1.	--- not acceptable	38.5
Sanctioned name	9.10, 14.1(d), 15.1, G1.	--- of a genus	38.12
Special form (forma specialis)	4.N.4, G1.	--- restricted	38.11
Specimen	8.2+4, G1.	--- unequivocal association with author	
Status	6.12.1, G1.		46.2+5+N.2-3
Status novus (stat. nov.)	6.10, 7.3, G1.	Descriptive, name 기술명	16.1, G1.
Subdivision of family	4.N.2, G1.	- phrase	23.6-7
Subdivision of genus	4.N.2, G1.	Designation (see also Unitary)	
Subjective synonym	14.4.fn., G1.	명칭 (한 개의 단어로 구성된)	G1.
Superfluous name	52.1, G1.	Designation of type (see also Lectotype)	
Suppressed works (opera utique oppressa)	34.1, G1.	기준표본의 선정 (선정기준표본도 참고)	
Synonym	G1.		9D, 10.1+5-6, 10A
Syntype	9.5, G1.	- effective, requirements	7.9-10+N.2
Tautonym	23.4, G1.	- "here designated", "hic designatus"	7.10
Taxon (taxa)	1, G1.	- mandatory	40.1-6, 40A
Taxonomic synonym	14.4, G1.	- statement	7.10
Teleomorph	59.N.1-2, G1.	- supersedable	10.5
Type	7.2, G1.	<i>Desmidiaceae</i> , starting point	
Type designation	G1.	면지말과, 시작점	13.1(e)
Unispecific	G1.	Diacritical signs	
Validate	G1.	발음구분기호	46B.2, 60.6, 60B.N.1, 60C.4
Valid publication	6.2	Diaeresis	60.6
Validly published	32-45, G1.	Diagnosis (see also Description)	
Voted example	7.*Ex.13.fn., G1.	분류군고유특징(또한 기술 참고)	38.2, G1.
Delivery, printed matter to carrier		- accompanying description	39A
배포, 인쇄물을 운반업자에게	31A	- definition	38.2-3
Deposited material, access policy		- doubtful	38.4
보관된 재료, 이용 정책	7A	Diagnostic characters, alteration	
- specification of herbarium	9.22, 40.7+N.4	분류군고유특징, 변경	47, 47A
Descriptio generico-specifica		Diatoms	
종-속의 기재문	38.5, G1.	규조류	1.2, 11.7-8, 13.1(f)+3, 38.Ex.15
Description, in addition to diagnosis		Digital repository	디지털 등록기관
기재문, 분류군의 고유특징과 함께	39A, G1.	Direction of cross	교잡의 방향
- or diagnosis, ascription	46.2+5+N.3	Disadvantageous change of name	
		불리한 학명의 변경	56.1

Division (divisio) or phylum, name		- - name of associated organism	60.13
문, 학명	16.1	- - illegitimate name	58
- rank	3.1, 16.N.1	- - personal name	23A.1, 60.7, 60C.1-5
Doubt 의문	Pre.13, 36.1, 52.N.1	- - vernacular name	60.7
Duplicate, definition	복제표본, 정의 8.3.fn., G1.	- etymology	60H
Editorial Committee 편집위원회	Div.III.2	- final	11.4.fn., 27, G1.
Effective publication, as requirement for valid publication		- fungal name	60.13
유효출판, 합법 출판을 위한 필요요소로서	32.1	- hyphenation	60.9
- date	31.1+Ex.4	- inadmissible	21.3, 23.4+6, 24.3-4
- definition	6.1, 30, G1.	- initial letter	60F
- electronic material	29.1+N.1	- nothotaxon	H.10.2, H.10A, H.11.2
- indelible autograph	30.4-5	- not Latin form	28.N.5
- non-specific newspapers	30.6	- recommended spelling	60E
- printed matter accompanying specimens	30.7+N.3	- sequence in hybrid formula	H.2A.1
- seed-exchange lists	30.6	<i>Epithets</i> (see also Index to scientific names):	
- theses	30.8+N.4+Ex.15-20	소명 (학명 인텍스트도 참고)	
- trade catalogues	30.6	<i>abbatiana</i>	60.Ex.19
Electronic publication 전자출판		<i>afzelianus, afzelii</i>	60C.Ex.1
29+29A, 30.1-3+N.1-2, 30A.1, 31.1-2		<i>albiziae</i> , not " <i>albizziae</i> "	60.Ex.40
- alterations not effectively published	30.3	<i>albomarginatus</i>	60G.1(c)
- archiving	29A	<i>alcoquiana</i> , not " <i>alcockiana</i> "	60.Ex.14
- content	30.N.2	<i>allemanii</i>	60C.Ex.1
- early and later versions with different pagination	41.N.2	<i>alexandri</i>	60C.2
- date when issued in parallel with printed matter	31.2	<i>alta</i> , not " <i>alba</i> "	60.*Ex.2
- preliminary and final versions	30.2, 30A.1	<i>annicola</i> , not " <i>annicolus</i> "	23.Ex.8
Element, citation 요소, 인용	40.3, 52.2	<i>annicola</i> , not " <i>anonicola</i> "	60.Ex.40
- conflicting with description	9A.4	<i>amorginum</i>	60D.Ex.1
- heterogeneous	9.14, 9A.4	<i>anagallis-aquatica</i> , not " <i>anagallis</i> ∇"	23.Ex.2, 60.Ex.21
- inclusion	52.2	<i>anton-bolosii</i> , not " <i>a-bolosii</i> "	60.Ex.30
- - with doubt	52.N.1	<i>aquilegiiolia</i> , not " <i>aquilegifolia</i> ",	
English, description or diagnosis		<i>nor aquilegiaefolia</i>	60.G.Ex.2+6
영어, 기재문 또는 분류군고유특징	39.2, 39A, 43.1	<i>atropurpureum</i> , not " <i>atro-purpureum</i> "	60.Ex.24
Ennoblement, prefix indicating		<i>atropurpureus</i>	60G.1(c)
작위, 가르키는 접두사	60C.5(d)	<i>augusti</i>	60C.2
Ephemeral printed matter 인쇄부수	30A.2	<i>austro-occidentale</i> , not " <i>austrooccidentale</i> "	60.Ex.25
Epithet (see also Adjective and Noun)		<i>backhousei</i> , not " <i>backhousii</i> "	60.Ex.17
소명 (형용사와 명사도 참고)	6.7, 21.2, 23.1-2, 24.2, G1.	<i>balansana, -um, -us</i>	60C.1(c)
- abbreviated	60.11	<i>bancroftiorum</i> , not " <i>bancroftii</i> "	60.Ex.38
- avoidance	23A.2-3, 60C.4, H.10A	<i>bauhini</i>	60C.Ex.1
- compound	60.8, 60G.1	<i>beatricis</i>	60C.2
- considered as hybrid formula	H.10.2	<i>bellonis</i>	60C.Ex.1
- cultivar	28.N.2	<i>berteroanum</i>	60C.1(c)
- customary spelling	60E	<i>berteronianus</i> , not " <i>berteroanus</i> "	60.Ex.16
- definite association with genus or species name	35.2	<i>bigelovii</i> , not " <i>bigelowii</i> "	60.Ex.15
- derived from, geographical name	23A.1, 60.7, 60D	<i>billardierei</i> , not " <i>billardierii</i> "	60.Ex.17
		<i>brandegeana</i> , not " <i>brandegeana</i> "	60.Ex.17
		<i>brauniarum</i>	60C.1(b)
		<i>brienianus</i>	60C.5(b)
		<i>brunonianus, brunonis</i>	60C.Ex.1
		<i>buckleyi</i> , not " <i>buckleyii</i> "	60.Ex.17

<i>bureavii</i> , not “bureaui”	60.Ex.15	<i>loureiroi</i> , not “loureirei” nor “loureiri”	60.Ex.17
<i>caespitosus</i> , <i>caespitosus</i>	60.Ex.1	<i>macfadyenii</i>	60C.5(a)
“cami”	60C.2	<i>macgillivrayi</i>	60C.5(a)
<i>candollei</i>	60C.5(d)	<i>mackenii</i>	60C.5(a)
<i>cannifolia</i> , not “ <i>cannaefolia</i> ”	60.Ex.20	<i>macnabii</i>	60C.5(a)
<i>caricaefolius</i>	60G.Ex.5	<i>macrocarpon</i> , <i>macrocarpum</i>	53.*Ex.11
<i>cespitosus</i> , <i>caespitosus</i>	60.Ex.1	<i>macrostachys</i> , <i>macrostachyus</i>	53.*Ex.11
<i>ceylanica</i> , <i>zeylandica</i>	53.*Ex.9, 60.Ex.1	“ <i>mandacaru</i> ”	60.Ex.8
<i>chamissonianus</i> , <i>chamissonis</i>	60C.Ex.1	<i>martii</i>	60C.2+5(e)
<i>chamissonis</i> , not “ <i>chamissoi</i> ”	60.Ex.16	<i>martianus</i>	60C.Ex.1
<i>chinensis</i> , <i>sinensis</i>	53.*Ex.11, 60E.Ex.1	<i>martini</i>	60C.2
<i>ciliatoglandulifer</i> , not “ <i>ciliato-glandulifer</i> ”	60.Ex.24	<i>masoniorum</i>	60C.1(b)
<i>clusianus</i> , <i>clusii</i>	23A.1, 60C.Ex.1	<i>matthewsiae</i> , not “ <i>matthewsii</i> ”	60.Ex.36
<i>codesuri</i> , not “ <i>codesurii</i> ”	60.Ex.33	<i>melvilleorum</i> , not “ <i>melvilliorum</i> ”	60.Ex.17
<i>conceptionis</i>	60C.2	<i>mombin</i>	23.Ex.1
<i>costaricensis</i> , not “ <i>costa-ricensis</i> ”	60.Ex.24	<i>mossambica</i> , <i>mozambica</i>	60.Ex.1
<i>dahuricus</i>	23A.1	<i>munronis</i>	60C.2
<i>dubuyssonii</i>	60C.5(c)	<i>murielae</i>	60C.2
<i>echidna</i> , not “ <i>echidnum</i> ”	23.Ex.7	<i>murukewillu</i> , not “ <i>murukewillu</i> ”	60.Ex.28
<i>edithae</i>	60C.2	<i>napaeifolia</i> , not “ <i>napeaeifolia</i> ”	60.Ex.21
<i>elisabethae</i>	60C.2	<i>napaeifolius</i> , not <i>napiifolius</i>	53.*Ex.12
<i>fedtschenkoi</i> , <i>fedtschenkoe</i>	60C.1(a)	<i>napaulensis</i> , <i>nepalensis</i> , <i>nipalensis</i>	53.Ex.11
<i>fortunei</i> , not “ <i>fortuni</i> ”	60.Ex.17	<i>neoëbudarum</i> , not “ <i>neo-ebudarum</i> ”	60.Ex.24
“ <i>genuinus</i> ”	9A.3, 24.3	<i>nidus-avis</i>	60G.1(c)
<i>geppiorum</i> , not “ <i>geppii</i> ”	60.Ex.37	<i>nobilis</i>	60.Ex.19
<i>glazioui</i>	60C.1(a)	<i>non-scriptum</i> , not “ <i>nonscriptum</i> ”	60.Ex.25
<i>glaziouvii</i> , not “ <i>glazioui</i> ”	60.Ex.15	<i>nova</i>	23.Ex.11
<i>grayi</i>	60C.1(a)	<i>novae-angliae</i> , not “ <i>novaeangliae</i> ”	60.Ex.25-6
<i>griffithianum</i>	60C.1(d)	<i>obrienii</i>	60C.5(b)
<i>hassleriana</i>	60C.1(d)	<i>odonellii</i> , not “ <i>o’donellii</i> ”	60.Ex.28
<i>hectoris</i>	60C.2	<i>okellyi</i>	60C.5(b)
<i>hemisleyana</i> , <i>hemsleyi</i>	23A.2., 53*Ex.12.	<i>opuntiaiflora</i> , not “ <i>opuntiaeflora</i> ”	60.Ex.20
<i>heteropodus</i> , <i>heteropus</i>	53.*Ex.11	“ <i>originalis</i> ”, “ <i>originarius</i> ”	24.3
<i>heyneanus</i>	60C.1(c)	<i>orlovskajae</i>	60C.1(a)
<i>hilairei</i>	60C.5(d)	<i>pecten-veneris</i> , not “ <i>pecten ♀</i> ”	23.Ex.2
<i>hookerorum</i>	60C.1(a)	<i>penmsylvanica</i>	60D.Ex.1
<i>iansonii</i> , not “ <i>i’ansonii</i> ”	60.Ex.28	<i>peplis</i> , <i>peplus</i>	53.*Ex.12
<i>iheringii</i>	60C.5(e)	<i>pissardii</i> , not “ <i>pissardi</i> ”, nor “ <i>pissarti</i> ”	60.Ex.32
<i>jamacaru</i> , not “ <i>mandacaru</i> ”	60.*Ex.8	<i>poikilantha</i> , <i>poikilanthos</i>	53.*Ex.11
<i>jussieui</i>	60C.5(d)	<i>pojarkovae</i>	60C.1(a)
<i>kamoji</i> , not “ <i>kamojii</i> ”	60.Ex.34	<i>polifolia</i> , not “ <i>poliifolia</i> ”	60.Ex.22
<i>laceae</i>	60C.1(a)	<i>polyanthemos</i> , <i>polyanthemus</i>	53.*Ex.11
<i>lacryma-jobi</i> , not “ <i>lacrymajobi</i> ”	60.Ex.26	<i>porsildiorum</i>	23A.1
<i>lafarinae</i>	60C.5(c)	<i>potaninii</i> , not “ <i>potanini</i> ”	60.Ex.31
<i>lecardii</i>	60C.1(b)	<i>Pseudoeriophorum</i> , not “ <i>Pseudo-eriophorum</i> ”	60.Ex.24
<i>leonardiae</i> , <i>leonardii</i> , <i>leonardiorum</i>	60.Ex.39	<i>Pseudo-oblongum</i> , not “ <i>Pseudoblongum</i> ”	60.Ex.25
<i>leclercii</i>	60C.5(c)	<i>pseudoplatanus</i> , not “ <i>pseudo-platanus</i> ”	60.Ex.24
<i>lindleyana</i>	60C.1(c)	<i>pteroides</i> , <i>pteroides</i>	53.*Ex.11
<i>limmaei</i>	60C.2	<i>quebecensis</i>	60D.Ex.1
<i>limmaeanus</i>	60C.Ex.1	<i>quinquegona</i>	51.Ex.2
<i>logatoi</i>	60C.5(c)		

주제색인

<i>remyi</i>	60C.5(d)	- bibliographic reference to be provided	9.21
<i>rantonnetii</i> , not “ <i>rantonnei</i> ”	60.Ex.17	- location to be specified	9.21, 9D
<i>renghas</i> , not “ <i>benghas</i> ”	60.*Ex.5	Error, application of name on transfer	
<i>richardsonis</i>	60C.2	에러, 학명 이동의 적용	7.3
<i>rolandii-principis</i> , not “ <i>rolandi principis</i> ”	60.Ex.26	- bibliographic citation	41.6+8
<i>rumphianus</i> , <i>rumphii</i>	60C.Ex.1	- correctable spelling	60.1+8-12
<i>saharae</i>	23A.1	- formal	46.3
<i>sanctae-helena</i>	60C.5(d)	Established custom, see Custom	
<i>sancti-johannis</i>	60C.5(d)	(형성된 관습 참고, 관례 참고)	
<i>scopolii</i>	60C.1(a)	Establishment, cultivar epithets	
<i>segetum</i> , not “ <i>segeta</i> ”	23.Ex.7	재배품종의 소명	28.N.5
<i>seyunii</i> , not “ <i>seyenesii</i> ”	60Ex.18	“et” (&) et (엠펙센드)	46C.1
<i>silvatica</i> , <i>sylvatica</i>	60.Ex.1	Etymology 어원	60H
<i>sinensis</i>	53.*Ex.11, 60E.Ex.1	Euphony 어조	Pre. 1
<i>steenisi</i>	60C.5(e)	“ex” in author citation	저자명의 인용에서의 “ex”
<i>st-johinianum</i> , not “ <i>St.-Johnianum</i> ”	60Ex.29		46.5-7
<i>strassenii</i>	60C.5(e)	Examples in the Code	규약에서의 예제 Pre.4
<i>sylvatica</i> , <i>silvatica</i>	60.Ex.1	- voted	7.Ex.13.fn., G1.
<i>tamaboki</i> , not “ <i>tamabokii</i> ”	60.Ex.34	Exclusion of type, see under Type	
<i>tetragonoides</i> , not “ <i>tetragonioides</i> ”	60.Ex.23	기준표본의 제외, 기준표본 참고	
<i>theophrasti</i> , not “ <i>theophrastii</i> ”	60.Ex.31	External evidence in publication	
<i>thibetensis</i> , <i>tibetensis</i>	53.*Ex.11.	출판물에서의 외적 증거	46.9
<i>thibeticus</i> , <i>tibeticus</i>	53.*Ex.11.	ex-type (ex typo), ex-holotype (ex holotypo), ex-isotype (ex isotypa)	
<i>toddiae</i> , not “ <i>toddii</i> ”	60.Ex.35	전생체기준표본, 전생체정가기준표본,	
<i>trachycarpa</i> , not “ <i>brachycarpa</i> ”	60.*Ex.2	전생체복제기준표본	8B.2, G1.
<i>trachycaulon</i> , <i>trachycaulum</i>	53.Ex.11	Family (familia), abbreviation	과, 단축형 5A
<i> trianae</i>	60C.1(a)	- name	18
<i>trinervis</i> , <i>trinervius</i>	53.*Ex.11	- alternative	10.6, 11.1, 18.5-6, G1.
<i>tubaeflorus</i>	60G.Ex4	- based on illegitimate generic name	18.3
<i>tubiformis</i>	60G.Ex4	- conservation	14.1+4+5
“ <i>typicus</i> ”	9A.3, 24.3	- correction of termination	18.4
<i>uva-ursi</i> , not “ <i>uvaiürsi</i> ”	60.Ex.26	- form	18.1-2
<i>vanbruntiae</i>	60C.5(e)	- type	10.6, 18.N.1
<i>vanderhoekii</i>	60C.5(e)	- valid publication	38.11.1
<i>vechti</i>	60C.5(e)	- rank	3.1
“ <i>veridicus</i> ”, “ <i>verus</i> ”	24.3	- change	19A.1-2
<i>verlotiorum</i>	60C.1(b)	- termed order	18.2+N.3
<i>virginiana</i>	60D.Ex.1	- subdivision of, see Subdivision of family	
<i>Vitis-ideae</i> , not “ <i>Vitis idaea</i> ”	60.Ex.26	Female symbol	암(여성) 부호 H.2A.1
<i>vonhausenii</i>	60C.5(e)	Figure, see Illustration	그림, 일러스트레이션 참고
<i>webbiana</i>	60C.1(d)	Final epithet	
<i>wilsoniae</i>	60C.1(b)	최종소명	11.4+fn.+N.2, 26.1-2, 27, G1.
<i>wislizeni</i>	60C.2	First, see Priority	첫번째, 선취권 참고
<i>zeylanica</i> , <i>ceylanica</i>	53.*Ex.11, 60.Ex.1	“Folium”, not a generic name	속명으로 쓸 수 없는 “Folium” 20.Ex.6
Epitype, definition	에피타입(추가기준표본), 정의	Forestry, organisms used in	임학, 사용되는 생물체 4.N.3, 28.N.2
- designation	9.8, G1	Form (forma), (see also Infraspecific taxon),	
- effective, requirements	9.8, 9D	abbreviation	품종, (종간 분류군도 참고), 단축형 5A
- first to be followed	7.9-10, 9.8+21+N.7	- rank	4.1
- illustration	9.20		
	9.8		

- Forma specialis, definition
 특별 품종 4.N.4, G1.
- Fossils (see also Coalball, Wood)
 화석 (탄구, 화석목도 참고) Pre.8, 13.3
- Committee on Div.III.2
- description or diagnosis 43.1, 43.2
- life-history stage 1.2, 11.1, 59.N.2
- name, priority 11.7
- - type 7.N.1, 8A.3, 8.4-5
- - valid publication 41.3, 43.2
- - - illustration required 43.2-3
- preservational state 1.2, 11.1
- starting point 13.1(f)
- type specimen 43.3
- vs. non-fossil 11.8, 13.3
- Fossil-taxon 화석분류군 1.2, G1.
- Full stop, deletion 마침표, 삭제 60.10
- Fungi (see also Anamorph, Teleomorph),
 Committee for
 곰팡이류 (무성생식, 유성세대도 참고), 위원회
 14.13, 42.3, 56.3, Div.III.2
- associated organism 60.13
- epithet, derived from name associated organism 60.13
- excluding lichen-forming 14.13, 56.3, 57.2
- formae speciales 4.N.4
- homonymy with bacterial name 54.N.1
- host 38E
- indication of sanctioned status 50E.3
- lichen-forming 13.1(d), 42.1
- lichenicolous 14.13, 56.3, 57.2
- lists of accepted names 14.13
- lists of names to be rejected 56.3
- living culture from holotype 8B.1
- names of higher taxa 16, 16A
- non-lichen-forming 59.1+N.3
- originally assigned to group not covered by this
 code 45.1
- parasitic 4.N.4, 38E
- pleomorphic 57.2, 59
- - alternative names 59.N.3
- - legitimacy of names 59.1
- - priority of names 57.2, 59.N.2
- starting point 13.1(d)
- Gasteromycetes*, starting point
 배균류, 시작점 13.1(d)
- Gathering, 채집품 8.2, G1.
- location 40.N.2
- part 8.2
- reference to 9.5, 40.2-3
- single 3, 9.17, 40.3
- Gender, agreement in
 성, 일치하는 21.2, 23.5, 24.2, 60.N.4
- generic name 62, 62A
- - arbitrarily formed name 62.3
- - assigned by author 62.1+3
- - compound 62.2
- - conservation 14.11
- - correction of epithets 23.5, 60.N.4
- - feminine when commemorating person 20A.1(i)
- - irrespective of original author 62.2+4+Ex.2+4-6
- - nomenclatural tradition 62.1+N.1
- - not apparent 62.3
- - when genus is divided 62A
- General Committee 전체위원회
 14.12-13+16, 14A, 29.3,
 34.1-2, 34A, 38.4, 53.5, 56.2-4,
 56A, Div.III.2+4
- Generic, see Genus 속의, 속 참고
- Genitive, see under Noun 소유격, 명사 참고
- Genus (genera) (see also Nothogenus)
 속 (속간 잡종도 참고) 3, 20, 20A
- abbreviation 5A
- monotypic 38.5-6, 40.6, G1
- name 20, 20A
- - adjective used as noun 20A.1(f), 62.3
- - as autonym epithet 22.1-4+Ex.1
- - capital initial letter 20.1
- - coinciding with technical term 20.2
- - commemorating person 20A.1(i), 60B
- - composed arbitrarily 20.1, 62.3
- - conservation 10.4+N.2, 14.1+3-4, 60.N.1-3
- - form 20.1
- - - advisable 20A.1(a+e+i)
- - - not advisable 20A.1(b-d+f-h+j)
- - gender, see Gender
- - hyphenated 20.3, 60.N.3
- - illegitimate 22.5, 55.1
- - in Linnaean works 13.4, 38.N.1
- - not regarded as such 20.4
- - type 10.1-5+N.1-2
- - - designation 10.1+5
- - - inclusion 10.2-3
- - - indication 40.1-4
- - valid publication 40.3+6, 38.7+11+N.1
- - vernacular 62.3
- rank 3.1
- - raised section or subgenus 21B.4, 49
- subdivision, see Subdivision of genus
- Geographical names, in epithets 지명, 소명에서

	23A.1+3(j), 60.7, 60D		14.10, 22.N.2, 53.1, G1.
- use of "St."	60C.5(d)	- by conservation	14.9
Grammatical correctness	문법적 정확성 Pre.1	- by exclusion of type	48
Greek, gender of nouns		- choice between simultaneous	53.6
그리스어, 명사의 성	62.N.1	- citation	46.3, 50C
- personal names	60C.2	- conserved later	14.9-10, 53.1, 55.3
- transliteration	60A	- disregard hybrid status	H.3.3
- word elements	60G	- earlier	14.6+10, 53.N.1
Handwritten material	친필 자료 30.1+5	- equal priority	53.6
<i>Hepaticae</i> , starting point		- illegitimate	21.N.1, 24.N.2, 53.1-2+N.1
우산이끼류, 시작점	13.1(c)	- infraspecific taxa, same species	24.N.2, 53.3
Herbarium, abbreviation		- later	
표본관, 단축형	40.N.4, 40A.4		11.N.5, 15.N.1, 22.7, 48.1, 53.1-2+N.1, G1.
- access policy	7A	- names likely to be confused	53.3-5
- author's herbarium	9A.1	- of conserved name	14.10
- sheet	8.2, 9.12, 9A.3	- rejected, earlier	14.10
- to be specified	9.21-22, 9D, 40.7+N.4, 40A.4	- - later	53.N.1
Heterotypic synonym	이형이명 14.4, G1.	- - legitimate	41.10
Hierarchy of ranks	계층체계에서의 계급 2-5	- sanctioned	53.1-2+N.1
- subordinate taxa	25, 36.1(d)	- subdivisions of same genus	21.N.1
Holotype (holotypus) (see also Type)		- taxon not treated as algae, fungi, or plants	54.1
정기준표본 (기준표본도 참고)	9.1, 10.N.1, G1.	- unranked	37.3
- automatic	7.3-6	Homotypic synonym	동형이명 14.4, G1.
- collection data	8A.2, 40.3	Horticultural organisms used in	
- definite indication	7.5	원예학에서 사용되는 생물체	4.N.3, 28.N.2
- designation	7.5+9-10, 9.1+5	Host name	숙주의 학명 38E
- destroyed	9.11+13	- adaptation to, specific form	4.N.4
- duplicate	9.3	Hybrid	잡종
- equivalent in modern language	40.6	Pre.8, 3.2, 4.4, 20.N.1, 28.N.1, 32.4, 50, H.1-12	
- identification ambiguous	9.8	- anticipation of existence	H.9.N.2
- illustration	8.1, 8A.1-2, 9.1	- arising in cultivation	28.N.1
- included species names		- change to non-hybrid status	50
	10.2-3, 22.6, 40.3, 52.2(e)	- condensed formula, see Condensed formula	
- inclusion, in subordinate taxon		- formula	23.6(d), H.2, H.2A, H.4.1, H.10.2, G1.
	7.5, 22.1-2, 22A, 26.1-2, 26A	- - definition	H.2.1
- - in other taxon	48	- - more informative	H.10B.1
- - single element	40.3	- genus, see Nothogenus and Condensed formula	
- indication	9.11, 40.1-7, 40A	- multiplication sign	H.1-2, H.3.1+3, H.3A
- living	8.4, 8B.1-2	- name, see under Nothotaxon	
- location	40.7	- parental taxa, see under Nothotaxon	
- lost	9.11+13	- prefix notho (n-)	3.2, H.1, H.3.1+3
- missing	9.2+7+11+13	- rank, see under Nothotaxon	
- more than one taxon	9.2+11-12+N.1-2	- species, see Nothospecies	
- permanently preserved	8.4+Ex.5+7, 8B.2-3	- statement of parentage	52.N.3
- - in public herbarium	7A	- - of secondary importance	H.10.N.2
- previously published species name	40.3	- status, indication of	50, H.1.1, H.2
- rediscovered	9.19	- taxon, see Nothotaxon	
- specimen data	8A.2, 40.3	- variety, see Nothomorph	
- supporting epitype	9.8	Hyperlink	하이퍼링크 30.N.2
Homonym (see also Confusingly similar names)		Hyphen, in compound epithet	
동일명 (혼동을 유발하는 유사한 이름도 참고)		하이픈, 합성어의 소명에서	

- 23.1, 23A.3(d), 60.9+N.3
- in generic name 20.3, 60.N.3
 - in hybrid designation H.10.2
- Identifier for fungal name
- 식별자, 균류의 학명을 위한 42, 42A
- citation, as condition of valid publication 42.1
 - encouraged in choices of name, orthography, or gender 42.A.2
 - issuance by recognized repository 42
- Illegitimate name 서명 6.4, 52-54, G1.
- autonyms 27.2+Ex.1
 - becoming legitimate later 6.4
 - by conservation 6.4, 14.1
 - by sanctioning 6.4, 53.2
 - family 18.3
 - genus 18.3, 55.1
 - homonyms 21.N.1, 24.N.2, 53.1-2, 54
 - hybrid 52.N.3
 - species 55.2
 - subdivision of family 19.6
 - type 7.5
- Illustration, advisable 일러스트레이션, 바람직한 38D.1
- algae 44.2, 44A
 - as type 8.1, 8A, 9.1-2+7-8, 10.4, 40.3+5+7
 - equivalent to description 38.7+10-11
 - fossil plant 9.15, 43.2-3
 - of type 44A
 - original material 9.2.
 - scale 38D.3
 - specimen used 8A.1-2, 32D.2, 44A
 - with analysis 38.7-10, G1.
- Improper, see Incorrect 부적합한, 부적당한 참고
- “in” in citation 46.N.1
- Inadmissible, see under Epithet
- 인정할 수 없는, 소명 부분 참고
- Inclusion of type 기준의 포함 22.1-3, 22A, 26, 26A, 40.2, 52.1-2
- Incorrect (see also Orthography, correction), Latin termination
- 부정확한(정자법과, 정확성도 참고), 라틴어의 어미 16.3, 18.4, 19.7, 32.2, G1.
- name 52.3, H.5.N.1
- Indelible autograph 손으로 제작된 인쇄물 30.4-5, G1.
- Index herbariorum* Index herbariorum 40.N.4
- Index kewensis* Index kewensis 41.7
- Index of fungi* 균류 인덱스 41.7+Ex.16
- Index fungorum* 균류 인덱스 46A.N.1
- Indexing centre 목록을 만드는 연구센터 30A.3
- Indication, of rank, see Rank 명시, 계급의, 계급 참고
- of type, see type
- Indirect reference 간접적 출전인용 38.13-14, G1
- Infrageneric, see Epithet, Intraspecific, Species, Subdivision of genus
- 속간의, 소명 참고, 종간의, 종, 속 이하의 계급
- Intraspecific, autonym 종간의, 자동명 26
- epithet (see also Epithet) 24, 24A-B, 26, 26A-B, 27
 - binary combination instead of 24.4
 - cultivar 28.N.2+4-5
 - form 24.2
 - grammatical agreement 24.2
 - inadmissible 24.3-4
 - nothaxon H10.N.1, H.10A, H.11.2
 - to be avoided 24B.1, 26A.1-3
 - to be retained 24B.2, 26A.3
 - under illegitimate species name 55.2
 - ranks 4.1-2
 - change 24B.2
 - not clearly indicated 37.1
 - only one admitted 37.4
 - name 24, 26-27
 - form 24.1
 - homonymous within species 53.4
 - legitimate 55.2
 - valid publication 35.1, 38.8+11
 - taxon 24-27, H.10-12
 - assignment to species 3.N.1
 - including type of species name 26.1-2, 26A, 27
 - rank not indicated 37.4
- Institution, see Collection and Herbarium
- 연구기관, 수집물과 표본관 참고
- Institutional votes 연구기관의 표 Div.III.4(b2)+fn.
- Intentional latinization 의도적으로 만든 라틴어화 60.7
- Intercalated ranks 삽입된 계급 4.3
- Intergeneric hybrid, see Nothogenus
- 속간 잡종, 속간잡종 참고
- Interim designation 임시 명칭 23.Ex.12
- Internal evidence in publication 출판물에서의 내적 증거 30.N.4, 46.8
- absence 46.9
-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Plant Taxonomy 국제, 식물분류학회 Div.III.2+4(a1)
- Botanical Congress 14.16+Ex.8, 34.2, 53.5, Div.III
 - Bureau of Nomenclature Div.III.3-4(b2)
 - decisions 14.16, 32.10, 53.5, 56.2, Div.III.2(7)
 - plenary session Div. III.1
 - code of Nomenclature for Cultivated Plants

- Pre.11, 28.N.2+4-5, H.4.N.1
 - code of nomenclature of Bacteria [Prokaryotes] Pre.8.fn., 14.4.fn., 54.N.1
 - code of zoological Nomenclature 13.1(d), 14.4.fn., 45.Ex.1-2+4-7+Ex.1.fn.
 - Commission for the Nomenclature of Cultivated Plants Pre.11
 - Mycological Congress 42.3
 - Plant Name Index 46A.N.1
 - Standard Book [or Serial] Number 29.1
 - - inappropriate 30.N.1
 - Union of Biological Sciences Div.III.1.fn.
 Isoeotype 후기준복제표본 9C, G1.
 Isolectotype 선정기준복제표본 9C, G1.
 Isonotype 신기준복제표본 9C, G1.
 Isonym 동명 6.N.2, 14.15+N.1, G1.
 Isosyntype 등가기준복제표본 9.12+N.2, G1.
 Isotype 동기준표본 9.4+12, G1.
 Kingdom (regnum), rank 계, 계급 3.1
 Later homonym, see Homonym
 후동일명, 동일명 참고
 Latin, and latinization, accepted usage
 라틴어, 라틴어화, 받아들여지는 용법 60E
 - - geographical names 23A.1-2, 60.7+N.2, 60D
 - - personal names 23A.1-2, 60.7+N.2, 60C
 - - vernacular names 60.7+N.2, 62.3
 - description or diagnosis 39.1-2, 43.1, 44.1, 39A
 - termination 32.2, 60B, 60C.1, G1.
 - transliteration to, see Romanization
 - word elements 60G
 Lectotype (see also Designation of type)
 선정기준표본 (기준표본의 선정도 참고) 9.2, 10.N.1, G1.
 - designation 9.11-12, 9A, 9D
 - - effective, requirements 7.9-10, 9.22
 - - first to be followed 9.19
 - destroyed 9.16
 - identification ambiguous 9.8
 - illustration 8.1, 8A.1, 9.2+15
 - inclusion, in named taxon 26.2, 40.2, 52.2(b)+N.1-2
 - location to be specified 9.22
 - names of fossil species 9.15
 - precedence over neotype 9.13
 - preserving current usage 9A.4
 - previously designated 9.16, 26.2, 52.2(b)
 - previously published species name 40.3
 - supersedable 9.15+18
 - supporting epitype 9.8
 Legitimate name 적명 6.5, 51, 52.3+N.1-3, G1.
 - by conservation 14.1
 - epithet under illegitimate or rejected name 55.1-3
 - maintenance 51
 - nothotaxon H.4.1
 - priority 11.3-5, 53.N.1
 Letters, foreign to classical Latin
 문자, 고전 라틴어에서 외래 문자 32.1(b), 60.4, 60B.N.1, 60C.4
 - initial 20.1, 21.2, 60.3, 60F
 - used interchangeably 60.5
 Lichen-forming fungi 지의형 균류 13.1(d)
 Ligatures 합자 60.4+6
 Limitation of priority, see under Priority
 선취권의 제한, 선취권 부분 참고
 Linnaean binary system 린네의 이명법 20.2
 - symbols 23.3
 Lyophilization 동결건조 8.4
 Mail vote 우편 투표 Div.III.4(a)
 Male symbol 수(남성) 부호 H.2A.1
 Manuscript 원고 30.1, 30.5
 - names 23A.3(i)
 - notes 9A.3
 Mechanical methods of typification
 기준표본화의 기계적인 방법 9A.2, 10.5(b)
 Metabolically inactive state
 대사적으로 불활성화 상태 8.4, 8B.2-3, 40N.3
 Microfilm 마이크로필름 30.1
 Microspordia 미포자충류 Pre.8, 13.1(d), 45.N.1
 "mihi", as author citation
 나에 의해, 명명자 인용으로서의 46D
 Misapplied name
 잘못 적용된 용어 7.4, 41.3.N.3, 48.N.1, 50D, 57
 Misplaced term 잘못 적용된 용어 37.6, G1.
 Modification of this Code
 코드의 수정 Pre.7, Div.III
 - Appendix II-IV 14
 - Appendix V 56.1
 - Appendix VI 34.1
 - Appendix VII 38.4
 - Appendix VIII 53.5
 Monotypic genus 단형속 38.5-6, 40.6, G1.
 Morph, see Fungi, pleomorphic
 형태, 균류 참고, 다형류의
 Morphology, technical term
 형태학, 전문용어 20.2
 Multiplication sign
 곱셈기호 H.1-2, H.3.1, H.3A
 Musci, starting point 선류, 시작점 13.1(b)
 Mycocaliciaceae Mycocaliciaceae 14.13, 56.3, 57.2
 Name (see also Adjective, Author, Nomenclature, Personal name, Noun)

- 학명 (형용사, 명명자, 명명, 개인의 이름, 명사 참조) 6.3, 12, G1.
- abbreviated 60.11
 - alternative 36.2, 59.N.3, G1.
 - - of family 10.6, 11.1, 18.5-6, G1.
 - - of subfamily 10.6, 11.1, 19.8
 - ascription 46.2+5+N.3
 - at the new rank(status novus) 6.10, 7.3, 41, G1.
 - restrictions 41.2
 - type 7.3
 - valid publication 41
 - avowed substitute, see Replacement name
 - based on generic name 7.1, 10.7, 16.1, 18.1+3, 19.4-6
 - class or subclass 16
 - compound 60G
 - confused 57
 - confusingly similar 53.3-5, 61.5, G1.
 - conserved, see Conservation
 - contrary to rules Pre.5, Pre.12
 - correct 6.5, 11, 14.5-7, 15.3-4, H.4, G1.
 - current usage 57
 - derived, from Greek 60A
 - - from person's name 60B
 - etymology 60H
 - euphony Pre.1
 - first syllable 60.3
 - illegitimate, see Illegitimate
 - initial letter 20.1, 21.2, 60.3
 - in thesis 30.8+N.4+Ex.16-20
 - misapplied 7.4, 41.N.3, 48.N.1, 50D, 57
 - not to be adopted 38C.1
 - not validly published 14.15, 30 Ex.18-19, 34.1, 35, 36.1-2, 37.1, 41.4+6-7
 - of division or phylum 16.3+N.1
 - of family 10.6, 18, 19A.1
 - of genus 10.1-5, 20, 20A, 21B.4
 - of hybrid, see Hybrid
 - of infraspecific taxon 24, 24A-B, 25-26, 26A, 27
 - of new taxon 6.9
 - of order or suborder 17.1-2, 17A, 18.2, 19.2
 - of species 23
 - of subdivision of family 10.6, 19, 19A
 - of subdivision of genus 10.1-2+5, 21, 21A-B, 22, 22A
 - subdivision of subphylum 16.2+3
 - of subfamily, termed suborder 19.2+N.1
 - of suprafamilial taxon 10.7, 11.10, 16.1+N.2, 16A
 - of taxon of lower rank than variety 26A.3
 - orthography, errors 33.2, 50F, 60.1+3+8-12, 61.1+N.1
 - - variants 61
 - rank, see Rank
 - reasons for change Pre.12
 - regularity Pre.1
 - rejected, see Rejection
 - replacement 7.4
 - spelling 13.4, 14.11, 33.2, 50F, 60, 60A-H, 61
 - stability Pre.1, 14.1-2, 56.1
 - superfluous 52.1+3
 - type, see Type
 - useless creation Pre.1
 - with question mark 36.1, 52.N.1
 - words, not generic names 20.4
- Natural order (ordo naturalis)
Natural order (ordo naturalis) 과명 대신 쓰는 표현 18.2
- “nec”, in homonym citation “nec”, 동일명 인용시 50C
- Neotype 네오타입 9.7, G1.
- designation 9.11, 9B, 9D
 - - effective, requirements 7.9-10, 9.22
 - - first to be followed 9.19
 - identification ambiguous 9.8
 - illustration 8.1, 8A.1, 9.7+13
 - inclusion, in named taxon 26.2, 52.2(b)+N.1-2
 - location to be specified 9.22, 9D
 - precedence of lectotype 9.1
 - preserving usage 9.17
 - previously designated 9.8, 26.2, 52.2(b)
 - supersedable 9.18-19
 - supporting epitype 9.8
- New combination 새조합 6.10, 7.3, 41, G1.
- restriction 41.2
 - type 7.3
 - valid publication 41
- Newspaper, non-scientific 신문, 비과학적 30.6
- Nixus, instead of order Nixus, “목(order)” 대신 17.2
- “nobis”, as author citation
우리들에 의해, 명명자 인용으로서 46D
- Nomen conservandum (see also Conservation)
보전명 (보전도 참고) 14, 14A, 50E.1, G1.
- Nomen novum, see Replacement name
대치명 (대치명 replacement name 참고)
- Nomen nudum 나명 50B, G1.
- Nomen rejiciendum (see also Rejected name)
폐기명 G1.
- Nomen specificum legitimum 정통 종명 23.6
- Nomen triviale 구명 23.7

Nomen utique rejiciendum		-- author citation	50
금지명	510E.N.1, 56, G1.	-- correct	H.4-5, H.8, H.11-12
Nomenclatural novelties		-- legitimate	52.N.3
명명법상 새로운 제안	6.N.3-4, G1.	-- validly published	38.1, 40.1, 32.4, H.9, H.10.1(a)+3, H.12.2
- authorship, as ascribed	46.2	- parental taxa	52.N.3, H.2, H.2A, H.3.2, H.45, H.5A, H.6.2+4, H.8-9, H.10.2+N.2, H.10A, H.11, H.12.1+N.1
-- cite by name	46D	- rank (see also Nothospecies, Nothogenus, Nothomorph)	3.2, 4.4, 32.4, 50, H.1, H.3.1, H.4-5, H.12
-- determined by external evidence	46.9	-- appropriate	H.5.1-2
-- inclusion of "ex"	46.10	-- inappropriate	H.5.N.1
- avoid publishing in ephemeral matter	30A.2	-- infraspecific	4.4, H.3.1, H.4.N.1, H.10, H.10A-B, H.11.2, H.12
- ensure availability through space and time	30A.3	-- subdivision of genus	H.7, H.9
- indicate with "novus" or an abbreviation	32A	- variation	H.4.N.1, H.12
- of fungi, deposite information in recognized repository	42A.1	Noun (see also Gender), in apposition	명사 (성도 참고), 동격의
- mention in summary or abstract	30A.4	- as epithet	21.2, 21B.2-3, 23.1+6(a), 60.N.4
Nomenclatural synonym 명명적 이명	14.4, G1.	-- genitive	23A.1-2, 60C.1(a-b)
Nomenclatural type, see Type 명명법상 기준		-- genitive plural	21.2
Nomenclature, biological 명명법, 생물학적	Pre.1	-- section	21B.2-3
- contrary to rules	Pre.5+12	-- subgenus	21B.2-3
- disadvantageous change	14.1, 56.1	- descriptive	23.1, 23.6(a)
-- independence	Prin.I.	- compound	60G
-- principles	Prin.I-VI	- as name	20.1
-- stability	14.2	-- plural adjective	18.1, 19.1
- Committees		Objective synonym 객관적 이명	14.4.fn., G1.
14.12-13+16, 14A, 29.3, 34.1-2, 34A, 38.4, 42.3, 53.5, 56.2-4, 56A, Div.III.2		<i>Oedogoniaceae</i> , starting point	
- of algae, fungi, and plants	Pre.2-3+8	붓뚜껑말과, 시작점	13.1(e)
- Section	Div.III.1-3+4(b)	Online, definition 온라인, 정의	29.2
-- voting	Div.III.4(b)	- publication	29.1-2
"non", in homonym citation "non", 동일명 인용시	50C	Opus utique oppressa 인용 금지작업	34.1, G1.
Non-fossil, material 비화석, 자료	13.3	Order (ordo), abbreviation 목, 단축형	5A
- taxon	13.3, G1.	- name	17, 17A
- vs fossil	11.8, 13.3	- rank	3.1
<i>Nostocaceae</i> , starting point 구슬말과, 시작점	13.1(e)	-- intended as family	18.2+N.3
"notho-", etymology	H.1.fn.	-- termed otherwise	17.2
- prefix	3.2, H.1, H.3.1+3	- relative, of ranks	5, 37.6
Nothogenus 속간 잡종	3.2, G1.	Organism(s), associated to fungi	
- name, see Condensed formula		생물체, 균류과 연관된	60.13
- rank	3.2, H.1, H.4-5, H.12	- covered by this Code	Pre.2+8
Nothomorph 잡종형	H.12.2+fn., G1.	- in cultivation	28
Nothospecies 종간잡종	3.2, G1.	- individual, belonging to taxa	2.1
- epithet	H.3.3	- living, not as types	8.4
- name	H.11.1	- other than vascular plants, illustration	38.10
- parents from different genera	H.11.1	- parasitic	38E
- rank	3.2, 32.4, 50	- parent, of a fossil-taxon	1.2
Nothotaxon (see also Hybrid)		- small, as nomenclatural type	8.2
잡종분류군 (잡종도 참고)	H.3.1, G1.	- special categories in agriculture, forestry, and	
- circumscription	H.4.1		
- name (see also Condensed formula)			
Pre. 8, 28.N.1, 32.4, H.1-12			

horticulture	Pre.11, 5.N.3, 28.N.2+4-5	- in epithets	23A.1-2, 60C
- treated as algae, fungi, and plants	Pre.8	- in generic name	20A.1(i), 60B
Original material 원재료	9.2-3+N.2-4, G1.	- in nothogeneric name	H.6.3-4, H.6A
- identification ambiguous	9.8	- intentional latinization	60.7
- not extant	9.13	- romanization	46B
- rediscovered	9.19(a)	- well-established latinized form	60C.2
Original spelling 원전철자	60.2, 61.1, G1.	Phrase name 구명	23.6-7
- indication of	50F	Phylum, see Division 문, Division(문) 참고	
- correction	33.2, 60.1	Plants (see Algae, Fungi, and Plants, Cultivated and Organisms)	
- retention	60.1, 60B.N.1, 61.1	식물 (조류, 균류와 식물, 재배된, 생물체 참고)	
- standardization	60.5-6+8-12	- originally assigned to group not covered by this code	45.N.2
- variant	61.3	Pleomorphic fungi, see Fungi, pleomorphic	
Orthographical variant 변형철자	61.2, G1.	다형성 균류, 균류, 다형성 참고	
- citation	50F, 61.N.1	Pleonasm 중복중어	23A.3(e)
- confusingly similar	61.5, G1.	Polyploid 배수체	H.3.Ex.3
- correction	61.4	Popular periodicals 대중적인 정기간행물	30A.2
- in original publication	61.3	Portable Document Format PDF형식	29.1
- not validly published	61.1	- archival standard	29A.1
Orthography 철자법	60-61	- successor to	29.3
- conservation	14.11	Position 지위	Prin.IV, 6.6, 11.1, G1.
- correction	23.7, 33.2, 60.1+3+5-6+8-12, 60C.1, 60G.N.1, 61.1	- anticipation	36.1(b)
- epithets	60.8-12, 60A-H	Prefix (see also Word elements)	
- error	60.1+8-12, 60G.N.1, 61.1	접두어 (단어의 구성요소도 참고)	5A.1
- Linnaean, generic names	13.4	- <i>Eu-</i>	21.3
- - phrase-like epithets	23.7	- in personal name	60B.N.2, 60C.4
- standardization	60.5-6+8-12	- notho- (n-)	3.2, 5A.1, H.1, H.3.1+3
- variant, see Orthographical variant		- sub-	4.2+N.1, 5A.1
Page reference 쪽 인용	41.5+N.1, G1.	Preparation 용기	8.2, 9.14
Pagination 쪽번호	31C	Preservation (see also Deposited material)	
- is not content	30.N.2	보전 (보관된 재료도 참고)	
Parasite 기생생물	4.N.4	- impossible	8.4, 8B.2, 40.5.
- host name	38E	- permanent	8.1-4, 8B.2, 40.N.3
Paratype 종기준표본	9.6, G1	- place	7A, 8B.1, 40.7
Parentage, see Nothotaxon, parental taxa		President,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Plant Taxonomy 회장, 국제식물학회	Div.III.2(1)
부모, 잡종분류군 참고, 부모의 분류군		- Nomenclature Section	Div.III.3(1)
Parentheses 괄호 속에	21A, 49, 50	Pre-starting-point, author	
Particles, in personal names		명명법상의 출발점보다 앞선, 저자	46.7
불변화사, 인명에 있어	46A.1, 60C.5	- publication	38A
Patronymic prefix 선조의 이름을 나타내는 접두사	60C.5(a-b)	Previous editions of this <i>Code</i>	
Period, deletion 마침표, 삭제	60.10	이 규약의 이전 판	Pre.14, 59.N.2
Periodical, date 정기간행물, 날짜	31C	Principles 원칙	Pre.3, Prin.I-VI
- popular	30A.2	Printed matter (see also Publication), accompanying specimens 인쇄물 (출판도 참고), 동봉한 표본	30.7+N.3
- separates	31.3, 31C	- delivery to carrier	31A
- taxonomic	30A.3	- ephemeral	30A.2
Personal name (see also Author), anagram		Priority 선취권	G1.
명명자명 (명명자도 참고), 철자순서를 바꾼 말	60B.N.2	- equal	11.5, 53.6
- diacritical signs	60.6, 60B.N.1		
- Greek or Latin	60C.2		

주제색인

- of autonyms	11.6	- non-scientific newspaper	30.6
- of choice	11.5+N.2, 53.6, 61.3, 62.3	- online	29.1-2
- of designation of type	7.9-10, 9.19, 10.5	- place of, correct in all circumstances	14.15
- of homonyms	53.6+N.1	- popular periodical	30A.2
- of names	11, 16A	- printed herbarium labels	30.Ex.14
- - based on fossil vs non-fossil type	11.8	- printed matter accompanying specimens	30.7+N.3
- - legitimate	53.N.1	- seed-exchange list	30.6
- - limitation	11.2-4+6-7, 13-15	- separates	31.3, 31C
- - - to rank	11.2	- taxonomic	46.1
- - of higher taxa	11.10, 16A	- theses	30.8+N.4+Ex.15-20
- - of hybrids	11.9	- trade catalogues	30.6
- - of pleomorphic fungi	57.2, 59.1+N.2	- valid, see Valid publication	
- - unaffected by, date of conservation	14.N.3		
- - - date of sanctioning	15.N.1		
- - unranked	37.3		
- principle	Prin.III	<i>Publications:</i> 출판물	
Prokaryotes (see also Bacteria)		Aiton, Hort. Kew. (1789)	46.Ex.37
원핵생물체 (균류도 참고)	Pre.8.fn.	Aiton, Hort. Kew., ed. 2 (1810-1813)	46.Ex.23
Pronunciation, difficult in Latin		Aublet, Hist. Pl. Guiane (1775)	23.Ex.9
발음, 라틴어로 어려운	20A.1	Berchtold & Presl, Pfir. Rostlin (1820)	18.*Ex.5, 38.Ex.17
Proposal, to amend this Code		Bornet & Flahault, Rév. Nostoc. Hét. (1886-1888)	13.1(e)
제안, 이 규약의 수정을 위한	Div.III.4	Britton & Brown, Ill. Fl. N. U.S., ed. 2 (1913)	10.*Ex.7
- to conserve name	14.12+16, 14A	Browne, Civ. Nat. Hist. Jamaica (1756)	38.Ex.11
- to reject name	14.16, 14A, 56.1-2	Brummitt & Powell, Auth. Pl. Names (1992)	46A.N.1
- to suppress work	34.1-2	Burman, N. L., Fl. Ind. (1768)	23.Ex.16
Protologue 프로토로그(기재문)	8A.4.fn., G1.	Don, see Sweet	
- bibliographic reference	46.1	Forsskål, Fl. Aegypt.-Arab. (1775)	23.Ex.10+12+15, 35.Ex.1
- conflict with	9.19(b), 9A.3, 10.5(a)	Fraser Brothers Nursery, see Nuttall	
- generic	10.2+4	Fraser Brothers Nursery, Nuttall 참고	
- guide in lectotypification	9A.2	Fries, E. M., Elench. Fung. (1828)	13.1(d)
- page reference	41.N.1	- Syst. Mycol. (1821-1832)	13.1(d), 37.9
Provisional name 예정명	23.Ex.12, 36.1+Ex.5, G1.	Fries, T. M., Lich. Arct. (1861)	31.Ex.2
Pseudocompound 모조합성명	60G.1(c), G1.	Gomont, Monogr. Oscill. (1892)	13.1(e), 46.Ex.36
<i>Pteridophyta</i> , starting point 양치류, 시작점	13.1(a)	Hedwig, Sp. Musc. Frond. (1801)	13.1(b)
Public meeting 공개된 모임	30.1	Hirn, Monogr. Oedogon. (1900)	13.1(e)
Publication (see also Simultaneous)		Honckeny, Verz. Gew. Teutschl. (1782)	23.Ex.14, 46.Ex.40
출판물 (동시에도 참고)	37.5, 46.8+N.3	Jussieu, Gen. Pl. (1789)	13.1(a+c)
- abstracting journals	30A.2	Kartesz, [contrib. in] Synth. N. Amer. Fl. (1999)	30A.Ex.1
- date	31, 31A, 33	(CD-ROM)	
- effective, see Effective publication		Krocker, Fl. Siles. (1787)	23.Ex.10
- electronic, see Electronic publication		Kummer, Führer Pilzk. (1871)	41.Ex.6
- ephemeral printed matter	30A.2	Léveillé, Fl. Kouy-Tchéou(1914-1915)	30.Ex.9
- external evidence	46.9	Link, Handbuch (1829-1833)	37.Ex.6
- index	30A.4	Linnaeus, Amoen. Acad., 4 (1759)	33.Ex.1
- in parts	37.5, 31B	- Fl. Monsp. (1756)	33.Ex.1
- indelible autograph	30.4-5.G1.	- Gen. Pl., ed. 5 (1754)	13.4, 38.N.1
- independently of accompanying specimens	30.N.3		
- internal evidence	30.8+N.4, 37.5, 46.8		
- - absence	46.9		

- Herb. Amboin. (1754)	36.Ex.2	- priority outside	11.2
- Sp. Pl. (1753)		- relative order	5, 37.6-9
13.1(a+c-e)+4+N.1, 26.Ex.3-4,		- secondary	4.1+N.1
35.Ex.5, 38.N.1		- simultaneous different	36.2
- Sp. Pl., ed. 2 (1762-1763)	13.4, 38.N.1	- single infraspecific	37.4
Maire, Fl. Afrique N., 3 (1955)	26.Ex.2	- term denoting	3.1, 4.1-2, 21.1, 24.1, 32.N.1
Miller, Gard. Dict., ed. 8 (1768)	35.Ex.5, 41.Ex.5	- - informal usage	37.8, G1.
Nuttall, Cat. Pl. Upper Louisiana (1813)	46.Ex.39	- - misplaced	37.6-9+N.1.G1.
Persoon, Syn. Meth. Fung. (1801)	13.1(d)	Rapporteur-général	
Ralfs, Brit. Desmid. (1848)	13.1(e)	조사-위원장	Div.III.2(1+7)+3(3)
Reyger, Tent. Fl. Gedan. (1763)	23.Ex.14	Recommendations, in this Code	
Rottbøll, Descr. Pl. Rar. Progr. (1772)		권고, 이 조약에서	Pre. 4+6
20.Ex.10, 35.Ex.4		Recorder, Nomenclature Section	
Schaeffer, Fung. Bavar. Palat. Nasc. (1763-1774)		기록위원, 명명법부서	Div.III.3(2)
23.Ex.13		Reference, page 인용, 쪽	41.5+N.1
Schlotheim, Petrefactenkunde (1820)	13.1(f)	- to basionym or replaced synonym	41.1
Séguier, Pl. Veron. (1745-1754)	38.Ex.18	- to previous description or diagnosis	
Sprague, Nom. Prop. Brit. Bot. (1929)		38.1+11-14, 38A, 44.1, 38.11	
7.Ex.13, 10.Ex.1+7		- - full and direct	38.13
Sternberg, Vers. Fl. Vorwelt, 1 (1820)	13.1(f)	- - indirect	38.14
Stuedel, Nomencl. Bot. (1821-1824)	35.Ex.5	- - not acceptable	38.5
Stickman, see Linnaeus (1754)		- - of a genus	38.12
Sweet, Hort. Brit., ed. 3 (1839)	38.*Ex.3	- - restricted	38.11
Walter, Fl. Carol. (1788)	20.Ex.9, 35.Ex.3	- to previous illustration	43.2, 44.2
Webb & Heldreich, Cat. Pl. Hisp. (1850)	30.Ex.10	Regnum, see Kingdom	계(계(Kingdom) 참고)
Willdenow, Sp. Pl. (1797-1803)	31.Ex.1	Reihe, instead of order	Reihe, 목 대신에 17.2
Winterl, Index Hort. Bot. Univ. Hung. (1788)		Rejected name	폐기명 G1.
23.Ex.11		- combination based on	14.4
Publishing author, see Author		Rejection, of name	
출판 저자, 저자 참고		폐기명	Pre.9, 50E.2, 56, 56A, G1.
Purpose of giving a name	학명을 부여하는 목적	- - against conserved name	14.4+6-7+10
Pre. 1		- - approval by General Committee	56.4
Question mark	의문부호 36.1, 52.N.1	- - as illegitimate	52-54, 58
Quotation marks	인용부호 50F	- - authorized subject to decision	56.4
“Radix”, not a generic name		- - disallowed	51
“Radix”, 속명으로 쓸 수 없는	20.Ex.6	- - not affecting legitimacy	14.10
Rank	계급 Pre.1, Prin.IV, 2-5, 6.6, 11.1, G1.	- - overriding sanctioning	15.6
- alteration, author citation	49	- - proposal	14.16, 14A, 56.1-2
- anticipation	36.1(b)	- of proposal	57
- appropriate, for hybrid	H.5	Relative order of ranks	
- basic	2	계급의 상대적인 순서	5, 37.6-9
- - prefix sub-	4.2+N.1	Replaced synonym	대치이명 6.11, G1.
- further intercalated	4.3	- reference	41, 41A
- hierarchy	2	- - full and direct	41.5+7, 41A
- inappropriate, for hybrid	H.5.N.1	- - indirect	41.3
- indication	21.1, 21A, 24.1, 37.2+5	- - mere cross-reference to bibliography	41.A
- not indicated	37.1-3	- restrictions	41,2
- nothotaxon		- type	7.4
3.2, 4.4, 50, H.1.4-5, H.3.1, H.5, H.12		- without indication of rank	37.3
- particular	Prin.IV	Replacement name	대치명 6.11, 7.4, 41, G1.
- principal	3	- replacing illegitimate name	58

주제색인

- restrictions	41.2	열 (속의 하위계급도 참고)	4.1, 21.1
- type	7.4	- abbreviation	5A
- valid publication	41	- epithet, a plural adjective	21B.2
Repository, digital 저장소, 디지털	29A.2	Sex, of persons 사람의 성별	60.N.4, 60C.1(a-b)
- recognized (for fungal names)	42, 42A	Sexual forms, see Telemorph 유성세대 참고	
- - appointment and cancellation of	42.3	Sexual symbols 성적 부호	H.2A.1
- - requirements for designation of information	42.2	Signs, see Symbols 기호, 부호 참고	
Request for a decision 결정의 요청	38.4, 53.5	Simultaneous publication	
Restoration, of rejected name 복원, 폐기명	14.6-7	(see also Priority of choice)	
Retention of name authorized subject to decision		동시 출판 (선택의 선취권도 참고)	
결의에 의해 공인된 학명의 보전	14.16	11.5-6, 13.1(e)+N.1, 36.2, 53.6, 59.N.2-3, 61.3	
Retroactivity of rules 규약의 소급	Prin.VI	Small organisms, type 소형 생물체, 기준표본	8.2
Roman script, use of in indicating a type		Special form (forma specialis)	
로마자, 기준표본을 표현하는 용도	40A.2	특이생리형(특별 품종)	4.N.4
Romanization of personal names		Species (see also Nothospecies)	
개인명의 로마자 표기	46B.2	종 (종간잡종도 참고)	3.1-2, 23, 23A
Rules, absence or doubt 규정, 없거나 의심스러울 때		- abbreviation	5A
	Pre.13	- assignment to genus	3.N.1
- in this Code	Pre.4+5	- epithet (see also Epithet)	6.7, 23.1-2, 23A
- retroactivity	Prin.VI	- - adjectival	23.5, 60C.1(e), 60D
Sanctioning 인가	13.1(d), 15, G1.	- - compound	60.8-9, 60G
- colon used to indicate	50E.3	- - correct spelling, see Orthography	
- competing names	15.3-4	- - etymology	60H
- date not affecting priority	15.N.1	- - formation	23.1-3+5, 23A, 60.8-11, 60C-1
- homonym	15.1-2+N.1, 53.1-2, 55.3	- - grammatical agreement	23.5, 38.13, 60.12, 60C.1
- - creation of	48.3	- - inadmissible	23.4+6
- earlier not illegitimate	15.2	- - initial letter	60F
- illegitimate name	6.4, 52.1	- - Linnaean	23.3+7-8
- indication by author citation	50E.3	- - termination	
- overridden by conservation or rejection	15.6		23.5, 23A.3(a), 38.13, 60.12, 60C.1-2, 60D
- spelling	15.1	- - to adopt	23A.1+3(a)
- typification of names	7.5, 9.2+10+N.4, 10.2+5	- - to avoid	23A.2+3(b-j), 60C.2
- works	13.1(d)	- - two or more words	23.1
Scale of figure 그림의 축척	38D.3	- - under illegitimate generic name	55.1
Scientific plant names in Latin		- - with apostrophe	60.10, 60C.5(a-c)
라틴어로 된 식물의 학명	Prin.V	- - with hyphen	23.1, 60.9, 60G.N.2
Secretary,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Plant		- - with symbol	23.3
Taxonomy 간사, 국제식물분류연합	Div.III.2(1)	- name	23
Section (sectio) (see also Subdivision of genus)		- - conserved	14.1+4+N.2
절 (속의 하위계급도 참고)	4.1, 21.1	- - equivalent to type	10.1
- abbreviation	5A	- - illegitimate	52, 53.1, 55.2
- change in rank	21B.4	- - legitimate	55.1
- epithet, from personal name	60B	- - not regarded as such	23.6
- - preferably a noun	21B.2	- - type	8-9, 8A-9B, 10.N.2, 40.3-7, 40A
- - same as for subgenus	22A	- - - typifying name of supraspecific taxon	
Seed-exchange lists 종자교환목록	30.6		10.1-4+6, 22.5-6+N.2
Selection of type, see Designation and Lectotype		- - valid publication	
기준표본의 선택, 명칭과 선정기준표본 참고			23.3-7, 32.1, 35.2, 38.1+5-14, 40.3-7, 41.3-5
Separates 분리인쇄	31.3, 31C	- raised infraspecific taxon	24B.2
Series (see also Subdivision of genus)		- rank	2, 3.1-2+N.1

- tautonym	23.4	- including type of family name	19.4-5
- unitary designation	20.4	- name	19, 19A
Specimen (see also Collection and Type)		- - illegitimate	19.6
표본 (수집물과 기준표본도 참고)		- - termination	19.1+3+7, 19A.1, 32.2
	8, 8A, G1.	- - type	10.6
- cited in protologue	9.5-6	- - valid publication	19.6, 32.1, 38.1+11
- fossil	8.4-5, 8A.3	Subdivision of genus	
- illustrated	8A.1, 38D.2, 44A	속 이하 계급	4.N.2, G1.
- impossible to preserve	40.5	- assignment to genus	3.N.1
- reference to detail	40.N.2	- autonyms	22.1-4+N.1, 22B
Spelling, see also Original spelling, Orthography		- - type	7.6, 10A
철자 (원전 철자, 철자법도 참고)		- change in rank	21B.4
- conservation	14.11	- epithet	21, 21A-B
- correction		- - capital initial letter	21.2
	23.7, 33.2, 60.1+3+5-6+8-12, 60C.1,	- - condensed formula	H.7, H.8.1
	60G.N.1, 61.1	- - etymology	60H
- epithets	60.8-12, 60A-H	- - form	21.2-3, 21B.3, 60B
- error	60.1+8-12, 60G.N.1, 61.1	- - from constituent species	22.6
- Linnaean, generic names	13.4	- - grammatical agreement	21.2
- - phrase-like epithets	23.7	- - inadmissible	21.3
- standardization	60.1+5-6+8-12	- - parenthetical, in species name	21A
- variant, see Orthographical variant		- - same in different ranks	22A
<i>Spermatophyta</i> , starting point		- - to adopt	21B.2+4, 22A, 60B
종자식물, 시작점	13.1(a)	- - to avoid	21B.3
<i>Sphagnaceae</i> , starting point		- - under illegitimate generic name	55.1
물이끼류, 시작점	13.1(b-c)	- homonyms	21.N.1, 53.3
“Spina”, not a generic name		- hybrid	32.N.2, H.7, H.8.1, H.9
“Spina”, 속명으로 사용할 수 없는	20.Ex.6	- name	21.1
<i>Spiritus asper</i> 기름부호	60A.Ex.1	- - illegitimate	21.N.1, 53.4
“St.” in epithets “St.” 소명에서	60C.5(d)	- - legitimate	55.1
Stability of names 학명의 안정성		- - type	10.1-3+5+N.1, 22.6, 22A
	Pre.1, 14.1-2, 56.1	- - valid publication	32.1, 35.2, 38.11, H.9
Standard species 표준종	7.*Ex.13, 10.Ex.1	- nomenclaturally typical	10A, 22.1-2
Starting points, nomenclatural		Subdivision (subdivisio) or subphylum, name	
시작점, 명명법상	13.1	아문, 학명	16.2+3
- - taxonomic position of type	13.2	- rank	4.2
- - valid publication of names	13.1, 32.1(a)	Subfamily (subfamilia) (see also Subdivision of family), name	
Status, hybrid vs. non-hybrid		아과 (과와 속 사이의 분류계급도 참고), 학명	19.1
계급, 잡종 대 비잡종	50	- rank	4.2
- of name	6.1-6, 12, G1.	- - termed suborder	19.2+N.1
Status novus, see Name, at new rank		Subforma (see also Intraspecific taxon)	
새로운 계급명		아품종 (종간 분류군도 참고)	4.2
Stem augmentation (see also Word elements)		Subfossil type 아화석 기준표본	11.7
어간의 부속물 (단어의 구성요소도 참고)	60C.1(b)	Subgenus (see also Subdivision of genus),	
Stratigraphic relations 층서학적 관계	13.3	abbreviated as <i>gug.</i> , not “subgen.”	
sub-, in rank designation sub-, 계급의 명칭에서		아속 (속과 종 사이의 분류계급도 참고),	
	4.1	축약형은 <i>subgen.</i> 이 아니라 <i>gug.</i> 임	5A
Subclass (subclassis), name 아강, 학명	16.3	- change in rank	21B.4
- rank	4.2	- epithet, preferably noun	21B.2
Subdivision of family		- - from personal name	60B
과와 속사이의 분류계급	4.N.2, G1.		

주제색인

- - same in different ranks	22A	- citation as	36.1, 50A
- rank	4.2, 21.1+N.1	- heterotypic	14.4. G1.
Subjective synonym 주관적 이명	14.4.fn., G1.	- homotypic	14.4. G1.
Suborder (subordo), name 아목, 학명	17.1	- nomenclatural	14.4. G1.
- - improper Latin termination	32.2	- objective	14.4.fn., G1.
- rank	4.2	- regardless of multiplication sign	H.3.4
- - intended as subfamily	19.2	- regardless of prefix “notho-”	H.3.4
Subordinate taxa 하위분류군의 학명	25, 36.1(d)	- replaced	41.5
Subphylum, see Subdivision		- subjective	14.4.fn., G1.
아문, 아문(subdivision)도 참고		- taxonomic	14.4. G1.
Subregnum 아계	4.2	Syntype(s) 등가기준표본	9.5, 10.N.1, 40.N.1, G1.
Subsection (subsectio)		- designated as lectotype	9.12
(see also Subdivision of genus)		- duplicate	9.12
아절 (속과 종 사이의 분류계급도 참고)	4.2	- inclusion of all	52.2
- epithet a plural adjective	21B.2	Tautonym 반복명	23.4, G1.
Subseries (see also Subdivision of genus)		Taxon (taxa)	
아열 (속과 종 사이의 분류계급도 참고)	4.2	분류군 (분류군들)	Pre.1, Prin.I-V, 1.1, G1.
- epithet a plural adjective	21B.2	- change in rank	19A, 21B.4, 49, 24B.2
Subspecies (see also Intraspecific taxon)		- fossil, see fossil-taxon	
아종 (중간 분류군도 참고)	4.2	incertae sedis	3.N.1
- epithet, same in varietal rank	26A.1-2	- new	54A
- - maintenance in infravarietal ranks	26A.3	- not originally covered by this code	32.N.3, 45.1+N.2
Substantive, see Noun 명사, 명사(noun)도 참고		-not treated as algae, fungi, or plants	Prin.I, 54
Subtribe (subtribus)		- one correct name	Prin.IV, 11.1
(see also Subdivision of family), name		- parental, see under Hybrid	
아족 (과와 속 사이의 분류계급도 참고), 학명	19.3	- subordinate	25, 36.1(d)
- rank	4.2	- transferred	49, 50
Subvariety (subvarietas)		- treated as algae, fungi, or plants	
(see also Intraspecific taxon)		Pre. 8, Prin. I, 45.1, 54	
아변종 (중간 분류군도 참고)	4.2	- treated as plants	45.N.2
Suffix, see Word elements		- unranked	37.1-3
접미사, 단어의 구성요소 참고		Taxonomic, articles 분류학적, 논문	30A.3
Summary of nomenclatural novelties		- group, see Taxon	
명명법상 새로운 제안의 요약	30A.4	- position, see Position	
Sum of subordinate taxa 종속된 분류군의 합	25	- publications	30A.3
Superfluous name 잉여명	52.1, G1.	- rank, see Rank	
- basionym legitimate	52.3	- synonym	14.4, G1.
- illegitimate	52.1	Technical term, morphology	
- not illegitimate	52.3+N.1-2	전문용어, 형태학	20.2
Supplementary ranks 추가 계급	4.3	Telemorph 유성세대	59.N.1-2, G1.
Suppressed works 인용금지작업	Pre.9, 34.1, G1.	Termination (see also Word elements)	
- approval by General Committee	34.2	어미 (단어의 구성요소도 참고)	
- proposal under study	34A.1	16.1+3-4, 17, 18.1, 19.1+3, 19A.1, 20A.1(a),	
- suppression authorized subject to decision	34.2	60.12, 60B-D, H.6.3-4, H.6A, H.8.2	
Suprageneric names 속보다 상위의 학명	37.2	- contrary to rules	60.12
Symbols (see also Multiplication sign)		- correction when improper	18.4, 19.7, 60.7+11-12
부호 (곱셈 기호도 참고)	23.3	- epithet, from geographical name	60D
- female	9.Ex.6, 23.Ex.2, 40.Ex.1, H.2A.1	- - from personal name	60.12, 60B-C
- Linnaean	23.3, 23.Ex.2	- incorrect but name validly published	32.2
- male	9.Ex.6, 40.Ex.1, H.2A.1		
Synonym 이명	G1.		

- Latin if possible	20A.1	- conservation (see also preservation)	10.4+N.2, 14.9
Tetraploid 4배체	28.Ex.3, H.3.Ex.3	- correction of citation	9.Ex.2
Thesis 학위논문	30.8+N.4+Ex.15-20	- correction of term	9.9+N.4
Trade catalogue 상업 카탈로그	30.6	- culture	8.4, 40.N.3
Tradition, classical 전통적인, 고전적인	60A.1, 60C.3, 60E, 60G.1, 62.N.1	- data of illustrated material	8A.2
- nomenclatural	60.11, 62.1-2	- definite indication	7.5
<i>Transcriptions</i> (and related subjects.):		- definition	7.2
표기 (그리고 관련된 주제들)		- deposit	7A, 8B.1, 40.7
ae, for ä, æ, è, é, or ê	60.6	- designation, see Designation	G1.
ao, for å	60.6	- duplicate	8.3+fn., 9.4
diacritical signs	60.6, 60C.4	- equivalent term	7.10, 7.Ex.12-13, 40.6
e, for è, é, or ê	60.6	- exclusion	47, 48, 52.2, 58.N.1
h, for spiritus asper	60A.Ex.1	- from context of description	7.7-8, 9.N.1
Greek to Latin	60A	- identification ambiguous	9.8
i & j used interchangeably	60.1, 60.5	- illustration	8.1, 8A.1-2, 9.1-2+7-8, 40.5
k, permissible in scientific names	60.4	- inclusion, in named taxon	10.2-3, 22.1-3, 22A, 26, 26A, 40.1, 52.1-2
letters foreign to classical Latin	60.4, 60C.4	- - in other taxon	48
Linnaean symbols	23.3-4	- - single element	40.3
ligature	60.4	- indication	9.11, 24.3, 40, 40A
n, for ñ	60.6	- interpretative	9.8
oe, for ö, ø, or œ	60.6	- living	8.4+Ex.6, 8B.1-2
spiritus asper	60A.Ex.1	- location	7A, 8B.1, 40.7
ss, for ß	60.4	- mechanical designation	9A.2, 10.5
u & v used interchangeably	60.1, 60.5	- metabolically inactive state	8.4, 8B.2-3, 40.N.3
ue, for ü	60.6	- missing	9.2+7+11+13
w, permissible in scientific names	60.4	- mis-use of term	9.9
x, used for '	H.3A	- more than one individual	8.2
y, permissible in scientific names	60.4	- more than one taxon	9.11, 9A.4
Transfer, hybrid/non-hybrid		- not always typical of taxon	7.2
이동, 잡종 / 비잡종	50, H.10.N.1	- not conspecific with material associated with the protologue	10.2
- to other genus or species	49	- not conspecific with material associated with the sanctioning treatment	10.2
Transliteration to Latin, see Romanization		- number identifying	9D, 40A.3
라틴어로의 번역, 로마자 표기		- of autonym	7.6
Tribe (tribus) (see also Subdivision of family), in Fries's Systema		- of basionym	7.3
족 (과와 속 간의 계급도 참고), Fries's Systema	37.9	- of condensed formula	40.1, H.9.N.1
- name	19.3	- of name, alternative	10.6, 18.5
- rank	4.1	- - at new rank	7.3
Trigeneric hybrid, name		- - conserved	10.4+N.2, 14.3+8-9, 48.N.2
3개의 속 간의 잡종, 학명	H.6.4	- - erroneously applied	7.3
Type (typus) (see also Holotype, Lectotype, Neotype, etc.)		- - family	10.6, 18.N.1
기준표본 (정기준표본, 선정기준표본, 신기준표본 등도 참고) Prin.II, 7-8+10, G1.		- - - alternative	10.6, 18.5
- acceptance, by typifying author	7.10	- - - included in subdivision of family	19.4
- anamorphic	59.1	- - fossil taxon	8.5, 13.3
- automatic 7.3-6, 10.6-7, 16.1, 17.1, 22.6, G1.		- - genus	10.1-5, 10A, 14.3
- collection data	8A.1-2, 40.3	- - illegitimate	7.5
- concrete detail	40.N.2	- - of pleomorphic fungi	57.2, 59.1+N.2-3
		- - rejected	14.3

- - nothaxon	40.1, H.9.N.1, H10.N.2	this Code	45.1+N.2
- - sanctioned	7.5, 9.2+10+N.4, 10.2+5	- - unaffected by conservation	14.N.3
- - species or infraspecific taxon	8-9, 8A-9B	- - unaffected by sanctioning	15.N.1
- - subdivision, of family	7.1, 10.6	- - unaffected by correction of original spelling	33.2
- - - of genus	10.1-5+N.3, 10A, 22.6	- despite taxonomic doubt	36.1
- - subfamily, alternative	10.6, 19.8	- not by mere mention of subordinate taxa	34.1(d)
- - suprafamilial taxon	7.1, 10.7, 16.1, 17.1	- not by reference to general indices	41.7
- validly published by reference	7.7	- not of name, cited as synonym	36.1(c)
- - with later starting point	7.8	- - proposed in anticipation	36.1, H.9.N.2
- of new combination	7.3	- - provisional	36.1(b)
- of orthographic variants	61.2+5	- not when misplaced term denotes rank	37.6
- of replacement name	7.4	- of autonym	22.3, 26.3, 32.3
- original	9.15, 14.Ex.10, 22.2, 48.2+N.2, 52.2	- of basionym	32, 38, 41.3, 41A
- preservation, impossible	8.4, 8B.2, 40.N.3	- of combination	35.1-2
- - permanent	8.1-4, 8B.2, 40.N.3	- of name, algae	44,45.1+N.2
- - place	7A, 8B.1, 40.7	-- alternative	36.2, 59.N.3
- previously designated	9.16, 22.2, 26.2, 52.2(b)	-- at new rank	41
- rediscovered	9.19	- - family	18, 38.11
- required	40.2	- - fossil-taxon	43
- serious conflict with protologue	9.19(b), 10.5(a)	-- fungi	42, 45
- single specimen	8.1	- - genus	38.5+7+11, 40.3
- standard species	7.*Ex.13	- - - Linnaean	13.4, 38.N.1
- stratigraphic relations	13.3	- - hybrid	32.4, H.9, H.10.1
- taxonomic position	13.2, H.10.N.2	- - infraspecific taxon	38.8+11, 40.2-7
- teleomorphic	59.1+N.2	- - monotypic new genus	38.5-6, 40.6
Typescripts	타자기로 친 원고 30.1	- - new taxon	38
Typification, see Designation, Lectotype, Neotype		- - organisms other than vascular plants	38.10
기준표본지정, 명칭, 선정기준표본, 신기준표본 참고		- - nothogenus	H.9
- principle	Prin. II, 10.7	- - nothospecies or lower ranked hybrid	H.10.1
Typographic error	인쇄상의 오류 60.1, 61.1	- - species	38.5+7-8+11, 40.2-3+7
Typography, matter of	인쇄, ~의 문제 60.2	- - subdivision of family	19.6, 38.11
Typus, see Type	기준표본, 기준표본(Type)참고	- - subdivision of genus	38.11, 40.2
Unitary designation of species		- - taxon not originally covered by this Code	
종에 대해 한 단어로 구성된 명칭	20.4(b)		32.N.3, 45.1+N.2
Unpublished, material	미출판, 자료 30.1	- - of new combination	41
- names	23A.3(i), 50G	- of orthographical variant	61.1
Unranked taxa	계급이 부여되지 않은 분류군 37.1-3	- of replacement name	41
<i>Uredinales</i> , starting point	녹병균목, 시작점 13.1(d)	- requirements	32-45
URL (<i>Uniform Resource Locator</i>)		- - acceptance of name	33.1, 36.1(a)
URL	30.N.2	- - association of epithet with name	35.2
Usage, see Custom and Tradition		- - citation of identifier issued by recognized repository	42.1
사용, 관례와 전통 참고		- - citation of basionym or replaced synonym	41.3+5
- current, to be followed pending General Committee's recodendation	14A, 34A, 56A	- - - despite bibliographic error	41.6
<i>Ustilaginales</i> , starting point		- - - despite incorrect author citation	41.6
감노트균목, 시작점	13.1(d)	- - compliance with provisions on form of name	32.1(c), 32.2
Valid publication		- - description or diagnosis	38.1+4-5+11+13
합법적 발표	6.2, 12.1, 32-45, H.9	- - any language	43.N.1, 44.N.1
- date	33.1, 45.1+N.2, 31B-C	- - - binding decision	38.4
- - for names of taxa not originally covered			

- - - English	39.2, 39A, 43.1	야생의, 원예적으로 재배한 생물체	28.1
- - - Latin	39.1-2, 39A, 43.1, 44.1	Wood, fossil 나무, 화석	8A.3
- - effective publication	32.1(a)	Word, Greek or Latin	
- - illustration	38.7+10-11, 43.2, 44.2, 44A	단어, 그리스어 또는 라틴어	60G
- - - with analysis	38.7-10, G1.	- last in compound, gender	62.2
- - indication of rank	37.1	- not epithet or name	20.4(a), 35.N.1
- - indication of type	40, 40A	- standing independently	60.9
- - reference to basionym or replaces synonym		Word element, omitted in suprafamilial name	
- - - to date	41, 41A	단어의 구성요소, 과이상의 학명에서 생략된	16.4
- - - to description or diagnosis			
	7.7, 38.1+11-14, 38A, 39.1-2, 43.1, 44.1	<i>Word elements:</i> 단어의 구성요소	
- - - full and direct	38.13	-a	60B.1(a-b), 60C.1(a+c)
- - - indirect	38.14	-aceae	16.1, 18.1, 19.1, 19A.1
- - - not acceptable	38.5	-achne	62.2(b)
- - - of a genus	38.12	-ae	18.1, 60.12, 60C.1(a), 60G.1(a)(1)
- - - restricted	38.11	-ae-	60.6
- - to illustration	43.2, 44.2	-ales	17.1
- - - to page or plate	41.5+N.1	-an-	60C.1(c-d)
- - - to places where requirements previously fulfilled	33.1	-ana	60C.1(c)
- - - to detail of type	40.N.2	-anthes	62.4
- - specification of type herbarium	40.7	-anthos, -anthus	62.2(c)
- - statement of parentage	H.9	-anum	60C.1(c)
- starting points	13.1	-anus	60.12, 60C.1(c), 60D
Variant, see under Orthography		-ara	H.6.3-4, H.6A.1, H.8.2
이형체, 정자법 부분 참고		-as	18.1, 60G.1(a)(1)
Variety (varietas) (see also Intraspecific taxon and Nothomorph)		-aster (-asteris), -astrum (-astri)	61.Ex.1
변종 (종간 분류군과 잡종형 참고) 4.1, H.12.2 +fn.		-botrys	62.2(a)
- abbreviation	5A	-carpa, -aea, -ium, -on, -os, -um, -us	62.Ex.3
- epithet, same in subspecies rank	26A.1-2	-ceras	62.2(c)
- - different from infravarietal	26A.3	-cheilos, -chilos, -chilus	62.2(c)
- single infraspecific rank	37.4	-chlamys	62.2(b)
Vascular plants, Committee for 관속식물, 위원회	Div.III.2	-clad-	16.4
Vernacular name 지방명	60.7, 62.3	-cocc-	16.4
Version of record 출판본	30.Ex. 6-7	-codon	62.2(a)
Vice-rapporteur 보고담당 부위원장	Div.III.3(4)	-cola	23.5
Vote, final 투표, 최종의	Div.III.4(b)	-cyst-	16.4
- institutional	Div.III.4(b2) +fn.	-daphne	62.2(b)
- personal	Div.III.4(b)	-dendron	62.2(c)
- preliminary	Div.III.4(a)	-e	60C.1(a)
- qualifications	Div.III.4	-ea	60B.1(a)
Vowel, connecting		-eae	19.3+7, 19A.1
모음, 연결하는		-ensis	60D
	16.1, 60.Ex.21, 60G.1(a)(2), H.6.2+4	-eos	18.1, 60G.1(a)(1)
- final	60B.1(a), 60C.1(a+c)	-er	60B.1(b), 60C.1(b)
- transcription	60.5-6	-es	18.1, 60G.1(a)(1)
Watermark 투명무늬	30.N.2	eu-	21.3
Wild, organisms from in cultivation		-gaster	62.2(b)
		-glochis	62.2(b)
		-i	18.1, 60.12, 60C.1(a), 60G.1(a)(1)
		-i-	60.Ex.21, 60C.1(b+d), 60G.1(a2)+Ex.6

주제색인

-ia	60B.1(b)	-viridae	16.3
-iae	60.12, 60C.1(b)	-virinae	19.3
-ianus, -iana, -ianum	60.12, 60C.1(d)	-virus	20.1
-iarum	60C.1(b)		
-icus	60D	Work, see Publication 출판물, 출판 참고	
-idae	16.3	World Wide Web 광역정보서비스	29.2
-ii	60.12, 60C.1(b)	World directory of collections of cultures of microorganisms	40.N.4
-inae	19.3, 19A.1	Zoological names 동물명	54A
-ineae	17.1	- nomenclature, see International code of zoological nomenclature	
-inus	60D	- taxa	54A
-iorum	60C.1(b)		
-is	18.1, 60G.1(a)(1)		
-ites	62.4		
-mecon	62.2(b)		
-monad-	16.4		
-myces	62.2(a)		
-myces-	16.4		
-mycetes	16.3-4		
-mycetidae	16.3		
-mycota	16.3-4		
-mycotina	16.3		
-n-	60C.1(c)		
-nema	62.2(c)		
-nemat-	16.4		
-nus, -na, -num	60C.1(c), 60D		
-o-	16.1, 60G.1(a)(2)		
-odes	62.4		
-odon	62.2(a)		
-oideae	19.1+7, 19A.1		
-oides	62.4		
-opsida	16.3-4		
-orum	60C.1(a)		
-os	18.1, 60G.1(a)(1)		
-osma	62.2(b)		
-ou	18.1, 60G.1(a)(1)		
-ous	18.1, 60G.1(a)(1)		
-panax	62.2(a)		
-phyceae	16.3-4		
-phycidae	16.3		
-phycos, -phycus, -phykos	62.2(c)		
-phycota	16.3		
-phyta, -phyton	16.3-4		
-phytina	16A.2		
-pogon	62.2(a)		
-rum	60C.1(a)		
-sancta, sanctus	60C.4(d)		
-stemon	62.2(a)		
-stigma	62.2(c)		
-stoma	62.2(c)		
-us	18.1, 60B.1(c), 60G.1(a)(1)		
-virales	17.1		

번역본 후기

국내에서 학명에 대한 이해 부족은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가 부족이 원인이고 이런 문제점을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하는 것은 우리말로 된 번역본의 규약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다행히 국립수목원이 이런 번역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와 제의가 있어 2015년부터 2년에 걸쳐 전문을 번역하게 되었다.

번역의 기초는 직역을 목표로 하였는데 일부 내용은 풀어서 설명을 추가로 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 번역본의 한계도 아울러 있다. 최근 세대들이 한자를 잘 몰라 될 수 있으면 풀어서 쓰는 방식을 선호하였고, 필요하다면 한자의 병기보다는 영어 용어의 병기를 시도하였다.

번역에서 용어의 번역에 많은 혼동과 고민이 있었다. 국내에서 초기에 이유성, 이상태 현 재식물분류학에서는 valid (합법적), legitimate (적법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이후 valid (정당공표), legitimate (합법적 발표)라는 번역 용어를 사용하여 매우 혼동되고 있다. 본 번역서에는 초기 번역된 합법적-적법적이라는 표현을 채택하였다.

통상 신종기재를 하거나 기준표본 관련한 논문에서는 모두 영문이나 라틴어의 표현인 holotype, holotypus 와 같은 표현을 논문에서 사용해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이를 일본의 영향을 받아 정가기준표본과 같은 한자어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 기준표본과 관련해서는 모두 type, typus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야 해서 현재 이런 의도적 번역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기존에 익숙한 일부 학자나 일반인을 위해 병기하였다.

번역서에서 괄호는 원본에 있을 경우 통상적으로 '()'을 사용하였으나, 번역 상 병기나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하기 위해 '< >' 라는 괄호를 사용하였다. 일부 번역자의 생각으로 추가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표 2개 (**)를 표시하여 주석으로 해당 쪽에 일부 첨가하였다.

2017년에는 중국 셴젠 (심천 深圳)에서 학회가 있어 이 책자가 나오자마자 2018년에 새로운 번역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번역서에서 수정되어 용어나 번역 내용의 해석에 대한 의견은 전문가나 비전문가의 자유로운 제기와 토의가 있었으면 한다.

번역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편집과 문장 수정을 준 대학원생 김혜원과 이해진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과제 운영을 위해 여러 의견을 준 국립수목원의 장계선 연구사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

2011년 서울대학교 연구처 ‘교수학술활동경비지원’으로 멜버른 학회에 참석할 수 있었던 기회(장진성)와 2015년-2016년 2년간 국립수목원에서 지원한 ‘국제명명규약(ICN)번역’ 과제(장진성, 홍석표)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2006-2007년 하버드대학 방문 연구중 많은 학문적 조언과 가르침을 준 Gandhi Kanchi 박사에게 감사드립니다.

2016년 10월
역자 장진성, 홍석표



IAPT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Plant Taxonomy

IAPT – Central Office

Institute of Botany, Slovak Academy of Sciences
Dúbravská cesta 9, 845 23 Bratislava, SLOVAKIA
TEL.: +421-2-5942-6151; FAX: -6150
email: office@iapt-taxon.org

www.iapt-taxon.org

Secretary-General: Prof. RNDr. Karol Marhold, PhD.

IAPT - Managing Secretary: Dipl.-Ing. Eva Senková
Institute of Botany, Slovak Academy of Sciences
Dúbravská cesta 9, 845 23 Bratislava, SLOVAKIA

Dr. You Mi Lee
Director
KOREA NATIONAL ARBORETUM
415 Gwangneungsumokwon-ro,
Soheul-eup, Pocheo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487-821

Bratislava, 20 September 2015

Dear Dr. You Mi Le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Plant Taxonomy as the copyright holder of the *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 for algae, fungi, and plants*, published in *Regnum Vegetabile 154*, by A. R. G. Gantner Verlag KG (ISBN 978-3-87429-425-6), hereby grants your institution the right to publish its Korean translation. You have all rights to publish the translation in a printed form and/or online, providing that the copyright holder of the original English edition is clearly indicated.

A statement that the exactness and quality of translation is a sole responsibility of the translator(s) and not of either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Plant Taxonomy or the Editorial Committee of the *Code* should be included as well.

Please note that the current version of the *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 for algae, fungi, and plants* was considerably changed compared with the last edition of the *International Code of Botanical Nomenclature* and therefore we strongly advise you not to follow any previous translation of the *Code* and to start the translation completely anew.

Yours sincerely,

Karol Marhold
IAPT Secretary-General

역자 약력소개

장진성 (Chin-Sung Chang)

quercus@snu.ac.kr

식물분류 및 수목학 전공

- 1989년 미국 조지아대학 식물학과 Ph.D. (이학박사)
1994년~1998년 수원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1998년~ 현재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1996년~ 현재 IUCN Redlist Korean Plants 평가자 (authority coordinator)

홍석표 (Suk-Pyo Hong)

sphong@khu.ac.kr

식물계통분류학 전공

- 1991년 스웨덴 옘살라대학교 식물계통분류학과 Ph.D. (이학박사)
1994년~현재 경희대학교 이과대학 생물학과 교수
2013년~현재 경희대학교 자연사박물관 관장
1996년~현재 영국 린네학회 펠로우 (The Linnean Society of London, Fellow)



ISBN 979-11-87031-42-0